

헌법9조의 사상수맥



KENPO 9JO NO SISO SUIMYAKU

Copyright © 2007 S. Yamamuro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in Japan by Asahi Shimbun Publications Inc., Japan.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Asahi Shimbun Publications Inc., Japan
through Imprima Korea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헌법9조의 사상수맥

지음 아마무로 신이치 | 옮김 박동성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경과 세기를 초월한 연계를 추구하며

지나가면 모두 잊혀지거나 스스로 잊어버린다. 변화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만 넘쳐난다. (「고독과 선언(孤獨派宣言)」)

시인[歌人] 미야 슈지[宮柎二]의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감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 끝 무렵이었는데, 당시 고도경제성장 후 일본 사회의 변모나 헌법9조의 추이 등과 겹쳐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1949년 6월의 『단가잡지(短歌雜誌)』(제3권 6호)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山西省] 등지에서 병사로서 5년을 보낸 미야의 눈에는 패전에서 겨우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난 일본인의 변화가 이렇게 비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60년이 흐르면서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진 일본에서 변화에 상처를 입는 고통이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는 ‘현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헌법이 합치하지 않으므로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증가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문제의 중심적 과제인 헌법9조에 대해 학생들뿐 아니라 전문 영역이 다른 친우들 중에도 조문의 해석이나 학설 등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본 국헌법, 그 중에서도 제9조에 대한 법학적인 검토는 많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법학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헌법9조가 전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정’ 또는 ‘유지’할 것인가를 다룬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은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오히려 헌법9조를 경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헌법9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규정하는 전쟁포기나 군비 철폐 등의 사상이나 이념이 생겨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9조에 연결되어 있는 사상의 수맥을 따라가지만 그 목적은 단지 과거의 사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생겨 성장한 사상을 우리의 재산으로 공유하며 선인과 차세대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면, 우리가 계승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금후의 사회를 구상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이나 이론에 국적이나 민족에 따른 가치의 차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도 일본인이기 이전에 인류의 일원

으로서 공통의 유산을 계승해 갈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책에서는 국경이나 세기를 초월하여 연결된 사상수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지면 관계로 시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한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더 많은 사상수맥과 연결시켜 가기를 바라면서, ‘발밑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가 설 수 있는 곳을 깊이 파라. 거기에는 반드시 샘이 있다’는 선인의 말에 따라 이제부터 우리가 서 있는 발치에 흐르는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료를 인용할 때는 읽기 쉽도록 가타가나를 히라가나로 바꾸기도 하고, 옛날식 가나를 현대식 가나로 고치기도 하고, 한문이나 현대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메이지시대의 문장 등을 현대어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사료 중에는 원문 그대로 쓴 것이 있습니다. 또 인용자에 의한 주석은 []로, 참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쪽)으로 표시했습니다.

야마무로 신이치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할 때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취임한 것은 일관되게 군인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일본 본국의 정치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은 긴밀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패전 전의 일본에서 반전이나 군비철폐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강한 비판이 있었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일본에서도 청일전쟁 이전에는 스스로가 식민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 민족들의 연계나 세계 연방 혹은 세계정부가론 등이 주창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경

밖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890년에 개최된 제1회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이 말한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일본의 국경선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바깥에 있는 한반도를 이익선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병합으로 한반도가 주권선 내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그 바깥에 있는 중국 동북부(만주 지역)가 이익선이 되고, 거기가 만주국에 의해 주권선이 되면 또 그 바깥인 몽골이 이익선이 되어서 「만몽은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하게 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중국 북부(회북)를 분리하는 공작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선과 이익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확대는 진척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주권선 내부와 이익선을 확장해 가기 위한 군비확충을 수반하고 동시에 군인의 정치적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의 확장과 군부 지배가 강해진 것이 동시진행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이 『동양경제신보』라는 잡지를 거점으로 논지를 전개한 이시바시 단잔[石橋澹山]이었습니다. 전후에 수상이 된 이시바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본이 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국운의 발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시기에 이시바시는 소일본(小日本)주의야말로 일본이 유일하게 채택해야 할 국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3·1독립 운동에 대해서 조선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 하에서 어떤 선정을 베풀더라도 절단코 만족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독

립 자치를 얻을 때까지 결코 반항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의 반항을 완화하고 무용한 희생을 회피하는 길은 조선인을 자치 민족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조선인 폭동에 대한 이해」 1919년 5월 15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독립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 모든 식민지와 조차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조선·대만·만주를 버리고, 중국에서도 손을 떼고, 사할린도 시베리아도 필요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1921년 7월 3일)를 일본인에게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일본의 국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하여 이시바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쟁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며, 일본이 「만주·대만·조선·사할린 등도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타국의 침략을 당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곳을 우리 영토로 만들거나 혹은 우리 세력 범위로 만드는 것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국방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군비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지 군비의 필요로부터 생겨난 결과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만·중국·조선·시베리아·사할린을 우리 국방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모르는가, 그 울타리아말로 가장 위험한 불쏘시개인 것을」(「대일본주의의 환상」 1921년 7월 30일)이라고.

긴 인용이 되었지만 이시바시의 예언대로, 일본은 이익선이라는 「국방의 담」을 튼튼히 하려고 식민지의 확장과 군비의 확충을 도모했고, 과연 「국방의 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이시바

시의 주장처럼 일본이 자진해서 식민지를 포기했다 군비가 필요 없
지고 군비철폐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일본이 조선이나 대
만 등의 식민지를 출선해서 포기했다면 이시바시가 주장한 것처럼 영
국이나 미국 등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도덕적 지위
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군사명령 등의 통수권, 군대
의 편성과 상비군의 예산 결정권, 선전포고와 강화 등 군사 관계의 권
한은 천황대권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는 물론 내각도 이에 관여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군사 사항에 대해
서는 천황에 대한 상주권(上奏權)을 가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반전사상이 강해져도 군부가 군비 축
소나 군비철폐, 나아가 반전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실행
에 옮길 수는 없는 것이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현재의 일본국헌법 제66조에는 내각 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은 현
역군인이 아닌 「문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9조
에서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을 부인함으로써 반전사상을 명기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자위대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일본인은 신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반감이 생기는 것은 필연이라
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조문과 현실 사이에 이중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국제적으로도 일본에 대
하여 회의적인 눈초리가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헌법9조에서 규정한대로 현실을 맞추
어서 자위대를 해소할 것인가, 혹은 헌법9조를 개정해서 자위군의 존

재를 명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큰 주장이 서로 경쟁해 온 것이 전후 일본정치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쟁점을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심각한 대립 관계가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전전에는 반전사상은 식민지를 해방하지도 군비를 철폐하지도 못했고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전후에는 아시아 민족들에게 일본 군국주의가 끼친 갖가지 가해의 역사를 근거로 반전사상을 조문화한 헌법9조가 실질적으로 핵심이 빠져버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의 사상수맥을 추적한 이 책은 「패배의 사상사」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변명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한 장비와 훈련에 인생의 귀중한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있는 이상 의심을 깊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진척시키는 것이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가 시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전사상은 결코 일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연계에 의해 동아시아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김옥균의 「삼화(三和)주의」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동아시아 공통의 사상 유산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체험한 프랑스의 앙리 바르뷔스의 반전사상운동인 클라르테운동은 일본의 고마키 오우미[小牧近江]를 통해서 한국의 김기진(金基鎭)이나 김희명(金熙明) 등의 동조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세

계적인 사상연쇄 속에서 반전사상이 묻혀 있는 수맥을 발견하는 것도 단지 과거의 유물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상적 축적을 밝혀 가는 작업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한국의 반전사상을 발견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의 독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세계적 시야 속에서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반전의 사상수맥을 탐구하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설령 그것이 「패배의 사상사」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희망의 사상사」가 될 수 있는 맹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 「패배의 사상사」로 끝낸다면 그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패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는 일본이나 동아시아가 반전 지대가 되고 각국이 군비철폐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긴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1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위법이라고 간주한다거나 국제기구를 만들어 전쟁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며 전쟁을 해도 전쟁에 의한 해결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아온 대로입니다.

그러면 반전사상의 수맥이 「희망의 사상사」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짧은 지면이어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선 헌법9조와 헌법 전문의 규정에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즉 「평화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권리」, 「평화

속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인권 중의 인권으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사고방식은, 세계 속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 선언」 제3조에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 1976년 「평화적 생존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에 「이 권리 및 그 밖의 인권 존중은 인류 공동의 이익이며, 모든 국가의 모든 분야의 진보를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이다」고 하여 국제법적 권리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名古屋) 고등 재판소는 2008년 4월에 「평화적 생존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의 보장도 평화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근원적인 인권」이라고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법적 권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이나 폭력에 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고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Structural and Indirect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 그 사람이 실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을 밑돌았을 경우 거기에는 폭력이 존재한다」(『구조적 폭력과 평화』)라고 폭력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실현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가 사회에서 보장될 때 비로소 개인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본서에서도 다룬 유엔 개발계획(UNDP)이 취하는 방향인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으로 변화하는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또 일본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국가는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통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글로벌리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지에 압도적인 경제 격차가 발생하고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격차가 새로운 구조적 폭력이나 전쟁을 야기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원인이 되는 빈곤, 기아, 억압, 차별, 소외 등을 없애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반전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반전운동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구조적 폭력을 해소해 감으로써 절망 때문에 전쟁에 이르는 것을 막는다는 방향으로 반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서로 역량 강화를 해 간다는 사고방식도 반전사상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헌법9조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헤이그세계평화회의의 100주년인 1999년 5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세계시민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약 100개국에서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때 「힘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세계를 이행시키는 방안을 토의했으며, 채택된 아젠다 『공정한 세계질서를 위한 기본 10원칙』의 제1항에서는 「각국 의회는 일본의 헌법9조와 같이 전쟁 포기 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2008년 5월에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멧세 등을 회의장으로 해서 「9조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31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서 『전쟁을 폐절하기 위한 9조 세계선언』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서도 「9조의 주요 원칙의 유지·확대를 지구 규모로 촉진해 가

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평화의 문화를 보급해 갈 것」과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평화 속에 살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서 서약했습니다.

헌법9조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만을 요구하는 「일국평화주의」일 뿐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비판은 「일국평화주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9조를 개정해서 군비를 가지는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논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헤이그세계시민평화회의」 이후의 흐름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9조의 정신을 세계 각국이 공유함으로써 세계평화를 달성해 가야 하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연계에 기대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서로 원한을 증폭시킬 뿐이며, 그 결과로서 가장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시민, 특히 여성이나 아이, 노인 등의 약자라는 명약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 여성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씨도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전쟁의 없는 세계로, 모든 나라가 헌법9조를 가지는 세계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9조의 정신은 일본 국내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점차 인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서 헌법9조의 존재 의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의 군사적

강대화나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본에서도 핵개발로 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에게 정당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효과밖에 없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립화를 자초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물며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군사력 강화에는 더 강한 군사력 강화로 맞선다는 선택이 의미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를 비핵화하는 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동북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로, 나아가 유라시아로 확장해 가면서 해결하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주목해야 것이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이 아닐까요?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은 1976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첫 수뇌회의에서 체결된 다국 간 조약이며 전문에 있듯이 「세계의 평화, 안정, 조화를 한층 촉진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내외의 모든 평화애호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맺어진 것입니다. 이 조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4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거기에서는 자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분쟁 「특히 지역의 평화 및 조화를 해칠 위험이 있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고 항상 계약국 간에 우호적인 교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1928년의 부전조약, 그리고 일본국헌법 제9조와 같은 정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당사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와 지역의 평화

나 조화를 해칠 위험이 있는 분쟁 등의 사태를 인지하기 위하여 가입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하는 이사회가 관여하는 것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은 유럽연합(EU)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유럽연합이 평화유지를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크게 의존하고 지역 외의 위협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도 출병한 것에 비하여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에서는 분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군사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쟁 포기를 결정한 조약의 가입국을 늘여 감으로써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당초 5개국으로 출발한 조약은 동남아시아 이외의 나라는 지역 내 모든 국가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외에도 러시아나 프랑스, 미국, 유럽연합 등 2009년 11월 시점에서 27개의 국가와 조직이 가입한 광대한 범위와 영역에 걸친 조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국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베트남은 해역의 국경문제가 존재하지만 육상 국경문제를 대화로 해결했으며, 인도와 중국도 수십 년에 걸친 분쟁과 대립에 일단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유효성은 한정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9조가 목표로 삼고 있는 평화 창출의 길은 다국간 조약으로 가능하고 있다는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거없는 희망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절망할 뿐이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절망으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요?

이상 일본국헌법 제9조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술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헌법9조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는 큰 모순도 있고 일본 국내에서는 앞으로는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전사상과 운동은 결단코 점령군인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군국주의 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의 「또 하나의 길」을 추구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서현주 선생과 박동성 선생께서는 자신의 생산적인 연구에 썬야 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번역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두터운 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초가을
야마무로 신이치

이 책은 아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가 2007년 출간한 『헌법9조의 사상수맥(憲法9條の思想水脈)』(朝日新聞出版)을 번역한 것이다. 『헌법9조의 사상수맥』은 2008년에 제11회 시바 료타로상을 수상했다. 헌법9조는 패전 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어 면면히 이어져 온 평화운동과 반전사상의 도달점이라는 점을 당파성 없이 냉정한 자료 비판으로 검증했다는 것이 수상 이유이다.

저자인 아마무로 신이치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로 근대일본정치사를 전공한 정치학자이다. 그는 헌법9조의 옹호자로, 평화헌법의 사상수맥을 구미의 사상적 전통 속에서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사상 흐름 속에서도 발견해내고 있다. 그는 헌법9조가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바탕이 이미 일본에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다. 헌법9조는 미국에 의

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며 지켜나
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자생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메미야¹는 미국이 승전국의 지위를 이용해 점령개혁 정
책을 펴므로써 일본인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
한다. 1940년대 초에 이미 전후 일본의 개혁 결과를 담보할 맹아를 가
지고 있었는데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천황제 문제에 관
해서도, 일본인의 손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면 천황제를 폐지했을 것이
나 미국이 전후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천황제를 이용하고 상징적
인 천황제를 존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헌법9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 책과 몇 가
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겠다.

1. 헌법9조의 성격

일본국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헌법 제2장에서
유래한다. 제2장은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제목은 ‘전쟁의 포기’다.
주요 내용은 전쟁, 무력 위협,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가능한 상황도 만들지 말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헌법9조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쟁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적이 쳐들어와도 반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45년 연

¹ 兩宮昭一(2008), 『占領と改革』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⑦, 岩波書店.

합군에 항복한 일본은 전쟁의 참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새 헌법을 만들어 1947년 공포했다. 이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인류평화를 구현할 이상적인 헌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헌법9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제정 당시부터 전쟁포기와 자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자위대의 창설이나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과 관련한 위헌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 공포 직후인 1947년 문부성이 발행한 『새로운 헌법 이야기』가 일본 신헌법의 취지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² 다음은 이 책의 6장 ‘전쟁의 포기’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전쟁에 아버지나 형님이 참가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혹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공습으로 집이나 식구를 잃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무섭고 슬픈 기억을 가지고 싶지 않겠지요. 이 전쟁을 해서 일본에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섭고 슬픈 일이 많이 있었을 뿐이지요. 전쟁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전에도 세계전쟁이 끝난 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또 이런 대전쟁을 일으킨 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번 헌법에서는 일본이 결코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군대·군함·비행기 등 전쟁을 하기 위한

2 文部省(1947), 『あたらしい憲法のはなし』.

것은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는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력의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라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은 올바른 일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한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일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결코 전쟁으로 상대를 이겨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평화롭게 상담을 하여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결국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는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전쟁의 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 사이 좋게, 세계 모든 나라가 좋은 친구가 되면 일본은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은 헌법 공포 직후에 나온 정부의 공식 견해로, 학자들이나 매스컴의 해석보다 더 공신력을 지닌다. 즉 침략을 위한 전쟁은 물론 방어를 위한 전쟁도 하지 않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의 군대도 가지지 않는다는 헌법9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해석은 문부성뿐 아니라 당시 헌법 제정에 참가했던 정부 당국자도 빈번하게 내려 왔다.

‘전쟁포기’가 일본 헌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전쟁포기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헌법이다. 1790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혁명의 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9개 조항을 결정했는데, 그 중 제4

조에 전쟁포기가 명시되었다. 브라질도 1891년과 1934년의 헌법에 ‘ 스스로 혹은 타국과 연합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침략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1928년에는 파리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15개국이 부전조약을 체결하고, ‘체결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상호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이 조약을 비준했다. 1947년 이탈리아공화국도 헌법 제11조에 ‘이탈리아는 다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 또는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³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포기와 군비철폐,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평화주의의 기축을 구성하며 역대 어떤 헌법보다 강하게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9조는 타국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타국이 공격을 가하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평화헌법을 가지면 항구적으로 평화가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출발한 것이다.

2. 헌법9조의 제정 과정

패전 후 헌법을 비롯한 전후 일본의 모든 제도는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개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전쟁의 핵심이었던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전쟁 역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맥아더는 천황의 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일본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일본 사회가 구심점 없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

3 하세가와 마사야스 지음·최은봉 옮김(2000), 『일본의 헌법』, 소화.

을 없애고자 했으며, 헌법에 전쟁포기 조항을 넣어 천황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미국은 일본 점령과 관련해 두 개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평화적이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고, 일본을 민주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국헌법은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여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세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연합국 총사령부(GHQ)는 일본국헌법의 기초가 일본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를 절차적 자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애초부터 개입하지는 않았다.

1945년 12월 일본 정부에서 헌법 조사의 중심이 된 마쓰모토위원회의 원칙은 ① 천황의 통치 대권 유지, ② 의회의 권한 확대, ③ 책임내각제 확립, ④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강화였다. 극비리에 추진되던 헌법 개정 작업은 1946년 2월 1일 마이니치신문에 특종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위원회의 헌법 시안은 천황의 지위에 실질적 변동이 없고, 군대를 유지하는 등 메이지 헌법과 큰 차이가 없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하고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태평양전쟁에서 친족 등을 잃은 기억이 생생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점령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헌법안이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GHQ는 마쓰모토 안이 제출되기 전에 민정국에서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일본인들이 받아들여 일본 정부 안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GHQ 안은 대일본제국 헌법에 비추어 제1장은 ‘천황’, 제2장은 ‘전쟁의 포기’로 설정됐다. 이 안의 기초를 주도한 휘트니는 ‘전쟁의 포기’

를 제1장으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점령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포츠담선언과 피점령국의 기본 법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헤이그조약을 준수하고, 특히 일본인들이 신헌법을 지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신헌법의 제정이 아니라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 절차를 취하고 장별 편성도 대일본제국 헌법의 형식을 따르게 된 것이다.

1946년 2월 4일부터 밤낮으로 극비의 기초 작업이 진행되어 12일에 모델 초안이 완성되었다(이 기간을 ‘밀실의 9일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3일 아침 외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무상 마쓰모토 조지[松本蒸治], 종전연락사무국 차장 시라스 지로[白洲次郎] 등 일본 측과 휘트니 국장 등 연합군 측이 가진 회의에서 GHQ 안이 제시됐다. GHQ 안은 제8조가 전쟁포기 조항이었다(이후 수정 과정에서 제1장 ‘천황’에 1조가 추가되어서 제9조가 되었다). 이 안에 대하여 마쓰모토가 거부 태도를 보이자, 휘트니는 천황제를 유지하고 연합국의 점령기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일본 측을 설득했다. 맥아더와 휘트니는 전쟁포기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천황을 전범으로 소추하지 않고 천황제가 유지되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 측은 이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9조, 즉 전쟁포기 조항을 누가 처음 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수상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라는 설,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라는 설, 심지어 천황이 제안했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시데하라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논란은 일본국헌법이 맥아더의 일방적인 강요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개헌파와 일본 측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자주적인 것이라는 호헌파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야가사키는 군부에 대항해서 국제 협조외교를 추진했으나 군부 독주로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전쟁포기론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시데하라 수상과 전쟁에서 무수한 죽음과 마주해 온 맥 아더가 합작하여 이 조항을 만들어냈다고 본다.⁴

헌법 안은 1945년 11월 공산당이 제1회 전국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을 필두로 일본자유당, 진보당, 사회당 등 각 당과 민간에서 여러 가지 초안이 만들어져 제출되었다. 공산당 안의 골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 피선거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 ‘인민의 생활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6년 10월 7일 일본국헌법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어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국헌법을 통과시킨 중의원은 일본 최초로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였다.

3. 개헌 논의와 헌법9조의 해석

2007년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이 중의원에서 표결 처리되고,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개헌 준비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개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의 집권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개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개헌이 없을 것으로

4 야가사키 히데노리(2003), 「일본국헌법 제정 경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5), 237쪽.

예상되지만, 일본의 경제 침체 속에서 나타나는 보수적인 흐름이 개헌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은 있다.

일본에서 개헌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이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인으로 독립하게 되자 보수 정치세력이 중심이 되어 개헌 논의를 전개해 갔다. 개헌파의 입장은 신헌법이 부당한 강요로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전쟁포기 조항인 헌법9조가 있었다.

1954~55년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 때 여당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헌법 개정의 기치를 정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호헌파는 ‘헌법 옹호 국민연합’ 등을 결성하여 맞섰다. 1955년 중의원 선거에서 호헌파가 호헌에 필요한 의석을 획득하여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일본 국민은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때 헌법 개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9조가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위대가 존재하고 있다. 개헌파들은 자위대의 위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제9조 1항의 평화주의 이념을 지키면서 2항을 개정하여 전력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정부는 ‘국가는 부정한 침해로부터 자국을 지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 자위권은 헌법9조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빌미로 헌법9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위대를 창설했다. 방어적인 의미의 ‘자위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는 엄연한 군대이다.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해 다국적군이 구성될 때 일본은 헌법9조를

이유로 내세워 군사행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원조를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국제공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92년에는 ‘PKO 협력법’을 제정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여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PKO 활동을 합헌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전체적인 보수화 움직임 속에서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때 일본인 납치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타국에 의해 일본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2004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전투 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견됐다. 당시 이라크가 전쟁 중이고, 이 전쟁은 미국 등에 의한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자위대 파병은 위헌이라는 비난이 속출했다.

2004년 「자유민주당 헌법조사회 헌법 개정 프로젝트팀 논의의 정리」에는 헌법 개정 전반에 관한 논의들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9조에 관한 내용은 ‘자위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하여 군대 필요’, ‘자위권 중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 ‘자위대를 군대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국민의 인식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자위대를 합헌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 감정에 맞다’, ‘현행 헌법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잘못 해석되어 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건전한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등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1946년 새로운 헌법안이 마련된 이후에 헌법 수정에 참가했던 아시다 수상은 헌법9조와 관련해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헌법을 제정한 당

초부터의 취지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밝혀, 자위대 창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1995년 헌법 수정 과정을 기록한 당시의 서류가 공개된 결과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과 제도는 조항 자체와 마찬가지로 해석과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4. 9조회의 활동

2008년 10월에 반전 작가로 잘 알려진 일본의 문호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개최한 기획특별강연회에서 「평화헌법과 시민사회 : '9조회(九條の會)'의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이노우에는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식인의 모임인 '9조회'의 발기인이다. 이 강연 내용은 『일본비평』 창간호에 정리되어 실려 있다.⁵ 이에 따르면 그는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으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자손으로서 한국과 중국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노우에는 이 강연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9조회는 이노우에 히사시,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우쿠다이라 야스히로[奥平康弘], 오다 미노루[小田實],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사와지 히사에[澤地久枝],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미키 무쓰코[三木睦子] 등 9명의 주도로 2004년 6월에 결성되었다. 이

⁵ 이노우에 히사시(2009), 「새로운 평화운동으로서의 '9조회」, 『일본비평』 창간호, 225~238쪽.

들은 자신들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 국민에게 “헌법9조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호소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 더욱 노골화된 헌법 개정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9조회는 첫째, ‘회칙을 만들지 마라. 회칙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된다’, 둘째, ‘회비를 걷지 마라. 개헌세력은 반드시 자금 수집 방법이나 회계 방법에 시비를 걸어 올 것이다’, 셋째, ‘회장을 두지 마라. 회장은 저격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회칙 없이, 회비 없이, 회장 없이’ 기치를 내걸고 전국을 돌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다.

9조회는 중앙에 9인의 발기인을 비롯한 강사진을 두고 일본 전역에서 강연활동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전국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9조회 발기호소문’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9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것이다. ‘9조회 오사카’, ‘9조회 아시카가’ 등 일본 국내의 지역 기반 9조회가 있고 ‘한국 9조회’, ‘미국 9조회’ 등 외국에도 9조회 관련 단체가 있다. 또 ‘영화인 9조회’, ‘도서관 9조회’, ‘과학자 9조회’, ‘음악 9조회’, ‘대학원 9조회’ 등 직업군, 동호회, 개인 네트워크 등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9조회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2009년까지 전국에 7000개가 넘는 9조회가 결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변국과 일본 국민에게 끼친 심대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헌파건 개헌파건 과거 전쟁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 영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일본에서 조사를 할 때 전쟁에 대한 기억이 현실의 삶을 크게

규정하는 일본 노인들을 만났다. 그 중 특히 인상에 남는 사람은 마에다 할머니와 스즈키 할아버지이다.

마에다는 전쟁 말기 여학교 시절에 정신대로 동원되어 군수품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 공장 생활 중 휴가를 얻을 욕심으로 대학 입시에 응시하여 사범학교에 합격을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결혼을 했다.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일본 경제가 활황일 때 은퇴를 했다. 그리고 모아둔 돈으로 해외 여행에도 나섰는데, 출발할 때는 배만 이용했다. 해외로 가려면 과거의 전장을 지나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머리 위를 넘는 것이 불경으로 여겨져서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서는 비행기로 여행을 했다. 이들 지역은 일본인이 참전한 전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한다.

스즈키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40대 중반에 니시의학[西醫學]과 한의학을 공부하여 70세까지 침구사로 활동하고 은퇴했다. 올해 86세인 그는 20대 초에 군대에 소집되어 일본 내에서 근무하다가 패전을 맞았고, 같은 부대에 있던 조선인들과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쟁터였던 대만, 중국, 몽골, 한국 등지를 다니면서 전쟁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적으로라도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니시의학과 한의학에 관한 지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활동을 해 왔다. 한국에서는 서울, 대전, 청주, 부산 등지에서 잠깐씩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운동법과 목욕법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2002년부터는 부산에 아파트를 얻어 놓고 이즈의 본가와 부산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규슈로 가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교토나 나라에 들러 유적을 살피고 이
즈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그는 목숨이 붙
어 있는 한 한국과 일본을 오가다가 어디에서 죽음을 맞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마무리

2010년 3월 26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에
서는 수시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론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군은 북한군이 어뢰
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쟁 불
사를 격렬하게 주장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사건으
로 꽃다운 나이의 군인 4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휴전 상태’의 한국
에서 즉시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평시에는 분열 양상이
심한 사회라도 구체적인 외부의 적이 등장하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이 이론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
치가들에게 이용돼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자국의 군인 수십 명을
죽인 적’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모두가 전쟁 불사를 외치지도 않았고,
통합을 이루어내지도 못했다. 오히려 전쟁 불사를 외치는 세력과 이에
대한 비판 세력의 대립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
가 전쟁에 대해 무감각해진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지구상에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현재도 전쟁
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
고 죽음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세기 이후 발

생한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⁶

제1차 세계대전 : 군인 95%, 민간인 5%

제2차 세계대전 : 군인 52%, 민간인 48%

한국전쟁 : 군인 16%, 민간인 84%

베트남전쟁 : 군인 5%, 민간인 95%

이라크전쟁 : 미군 4000명, 이라크인 15만 명 혹은 70만 명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 통계는 정확히 낼 수가 없다. 군인 피해자의 통계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인 피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마어마한 가격의 정밀한 첨단무기가 동원된 이라크전쟁에서도 민간인 피해자의 비율은 이전의 전쟁보다 높아진 것 같다. 피해자 신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그 중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자들과 한국전쟁 경험자들도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의 경험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노인들을 주위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속에 전쟁은 생존게임과는 다른 인간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할 때 자신 혹은 주변에서 있었던 인간성 매몰의 기억은 배제되는 것 같다.

⁶ 이노우에 히사시(2009), 「새로운 평화운동으로서의 '9조회」, 『일본비평』에서 정리 인용.

전쟁은 노획한 정치가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하여 청춘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 의례이다. 아즈텍의 인신공희보다 더욱 야만스러운 것이 전쟁이다. 더욱이 현대전은 피와 살이 튀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참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인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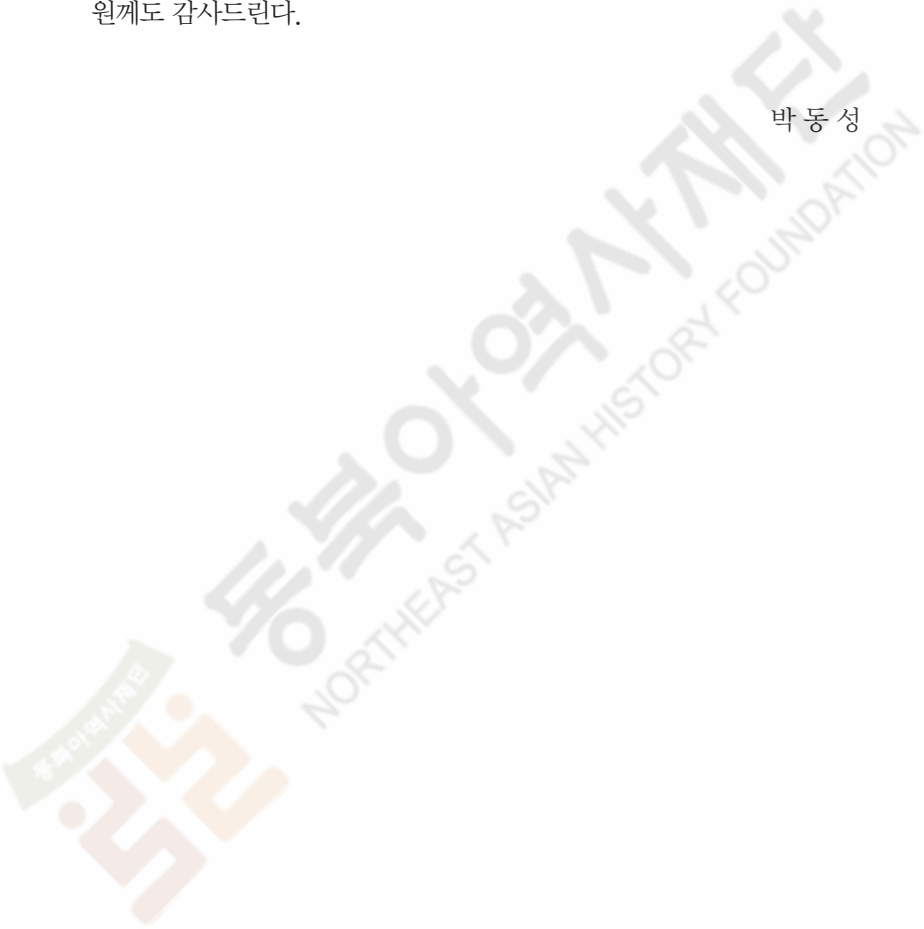
인류 역사상 정의를 위한 전쟁은 없었다. 대체로 권력자는 안전한 후방에 있으면서 자식을 전쟁터에서 빼돌리거나 안전한 부대에서 근무하게 한다.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이 선봉에 서는 확신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파괴 본능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전쟁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최악의 환경파괴 행위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반복했던 인간집단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수백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의 인간성도 파괴하고 자신의 인간성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부터 전쟁의 명분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전쟁이 무가치하다는 반성이 없다는 것은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염치가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속적으로 전쟁을 외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사꾼이나 정치꾼일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은 200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서현주 연구위원의 제의를 받아서였다. 훌륭한 책이라 욕심이 났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무리 없이 번역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여

러 가지 배려로 용기를 주셔서 감히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몇 번이나 출판 일정에 맞추어 원고를 넘기지 못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고 여러 도움을 주신 서현주 박사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한 상담에 항상 흔쾌히 응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원우 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박동성



[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국민들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바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다함께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결코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 책은 山室信一, 2009[초판 2007], 『憲法9條の思想水脈』, 朝日新聞出版을 완역한 것이다.
- 외국어 표기는 맞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표기 규칙에 따랐다.
- 저자 주 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 주를 달았다. 주석은 모두 각주로 처리했으며 역자 주와 저자 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차례

- 서문 · 4
- 한국어판 서문 · 7
- 역자 해제 · 19
- 일본국헌법 · 36
- 일러두기 · 38

제1장 헌법9조의 구성과 평화주의 헌법의 기축 · 43

헌법9조를 둘러싼 현상 · 45

1. 헌법9조의 구성과 해석 · 48

자위전쟁의 해석 | 헌법9조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2. 헌법9조가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기축 · 57

제1의 기축 - 전쟁포기·군비철폐 | 제2의 기축 - 국제협조 | 제3의 기축

- 국민주권 | 제4의 기축 - 평화적 생존권 | 제5의 기축 - 반전

제2장 헌법9조의 원류 탐색 · 73

- 국가와 전쟁, 법과 평화

평화론의 전제 · 75

1. 전쟁과 주권국가체계 그리고 국제법 · 77

유럽의 궤적을 찾아가다 | 정전론 | 주권국가와 전쟁합위무차별론 | 세력균형 정책

2. 국민국가와 징병제 · 85

루소의 인민주권론 | 국민군과 내셔널리즘 | 일본의 징병제 | 국민국가와 전쟁

3. 헌법에서의 전쟁포기 조항 · 94

최초는 프랑스 헌법

4. 영구평화 구상의 사상 원류 · 98

평화 구상의 출현 | 생 피에르의 『유럽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 | 루소의 영구평화론 |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 | 상비군 전폐를 향하여 | 칸트가 구상하는 국가연합 | 칸트가 추구한 세계시민법과 국제협조

제3장 막말·페이지 전기의 헌법9조의 사상 수원 · 121

일본의 사상 수원을 찾아서 · 123

1. 요코이 쇼난의 전쟁폐지론 · 124

‘세계의 도우미(世話やき)’로서의 국제협조

2. 오노 아즈사의 세계대합중정부론 · 129

식민지 중국에서 얻은 발상

3.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세계평화론 · 133

합동·협화·우애·공평으로서의 평화

4. 우에키 에모리의 무상정법론 · 138

일본국헌법에도 영향 | 만국공의정부와 국헌의 호위

5. 니시 아마네의 징병론과 영구평화론 · 151

영구 평화로의 도상에서

6. 나카에 초민의 군비철폐론과 ‘사상의 씨앗’ · 156

비무장의 ‘바람이 되어라’

제4장 청일·러일전쟁과 반전론의 격류 · 167

전쟁의 시대와 반전론의 분출 · 169

1. 반전론의 저류 – 청일전쟁으로 · 170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동과 일본평화회 | 톨스토이의 반전사상 | 일본평화회의의 행방

2. 청일전쟁 후의 군비철폐론 · 178

승전에 대한 회의와 사회 문제의 발생 | 사회민주당의 군비전폐 강령 | 마루야마 간의 무장적 평화부정론 | 이상단과 다나카 쇼조의 무전주의

3. 반전론의 격류 - 세기의 전환기 속에서 · 187

평민사의 군비철폐·전쟁폐지론 | 아베 이소오의 반전론과 소국주의 | 우
치무라 간조의 전쟁 절대 폐지론 | 반전론의 잠복

제5장 국제평화의 모색 · 203

- 반전의 제도화를 향하여

전쟁의 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 205

1. 국제평화 조직화의 태동 · 206

국제교류의 진전 속에서 | 헤이그 평화회의 | 일본에서의 중재제도와 평
화회의에 대한 관심

2. 국제연맹-국제기구에 의한 평화를 향하여 · 216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동향 | 국제연맹 규약과 전쟁의 금지 | 전쟁책임과
전쟁범죄

3. 전쟁 위법화와 부전조약 · 223

전쟁 전폐를 위한 노력 | 부전조약 | 미국의 전쟁 위법화 운동 | 각자 인
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함

4. 전쟁 위법화와 자위권 · 233

부전조약의 '전쟁' | 일본의 '자위권' 행사 | 유엔헌장과 자위권

제6장 전쟁폐지를 추구하며 · 245

- 헌법9조에 이르는 반전사상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3의 전후' · 247

1. 국제연맹에 대한 일본의 입장 · 248

제1차 세계대전의 영아로서 | 일본국제연맹협회

2. 반전사상과 평화운동의 연쇄 · 256

바르뷔스와 클라르테운동 | 『씨 뿌리는 사람』과 『클라르테』 | 부인평화
운동의 국제적 연계 | 일본부인평화협회의 군비철폐론

3. 군비철폐·전쟁폐지론의 모습 · 269

침묵이 강요된 반전사상 | 미즈노 히로노리의 군비철폐론 | 헌법 개정에
의한 군비전폐 | 세 번의 승전 끝에

제7장 헌법9조의 등장 · 277

– 응축하는 반전사상의 수맥

일본국헌법을 향한 발진 · 279

1. 헌법 개정의 전제 281

포츠담선언과 헤이그조약 | 일본 점령의 관리기구 | 천황 범죄 소추와 헌
법 개정 문제 | 마쓰모토 위원회의 헌법 개정 요강

2. 전쟁포기 조항의 기초 과정 · 289

맥아더 노트 | 허시와 케이디스에 의한 조문화 | 연합국총사령부 안 헌법
8조

3. 헌법9조의 확정을 향하여 · 298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 ‘헌법 개정 초안’으로 | 히라가나 구어문 헌법 |
제국의회에서의 자위 논의 | 아시다 수정의 진실 | 문민조항의 추가

4. 헌법9조의 반전사상 · 312

9조의 발안자 문제 | 패전 후의 전쟁포기 사상 | 시데하라 기주로의 반전
사상

맺음말 ·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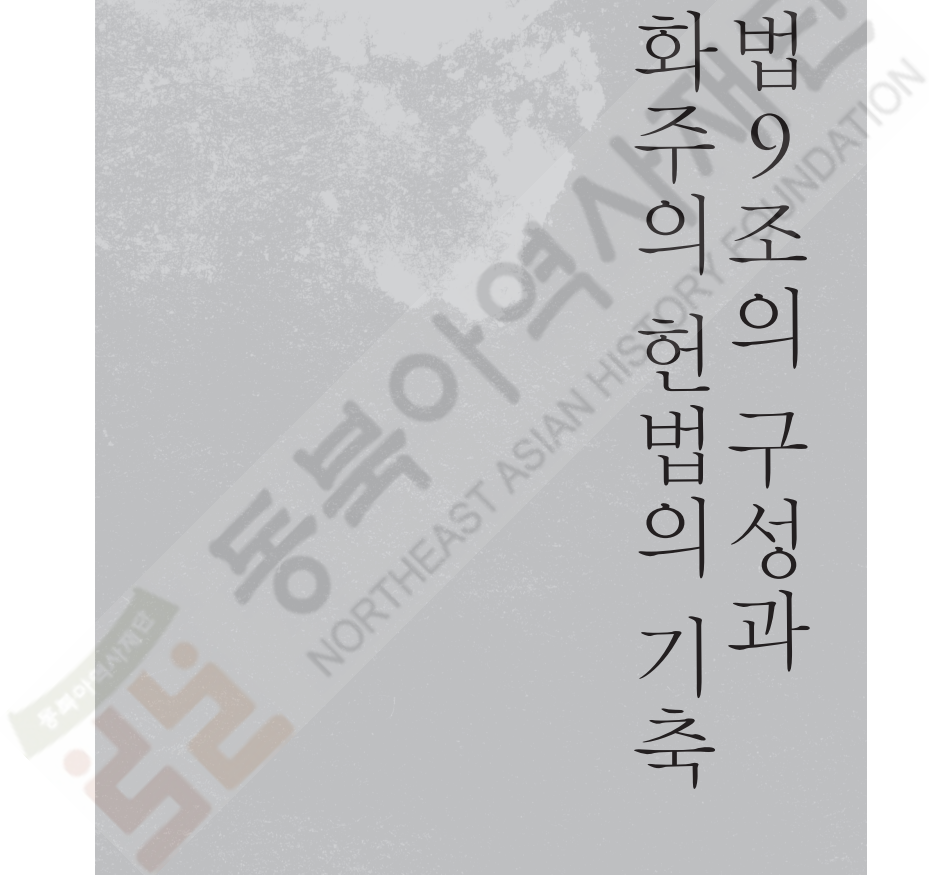
참고문헌 · 324

저자와 역자 소개 · 328

찾아보기 · 329

제 1 장

헌법 9 조의 구성과
평화주의의 헌법의 기축



헌법9조를 둘러싼 현상

인간은 투쟁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이상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하며,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길고, 인류의 역사와 같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투쟁 본능으로 개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적대나 살해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습득된 공격성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사회악을 인간의 본능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새로운 원죄주의를 만들고 정당화할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확실히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은 거의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요구하는 절실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더욱이 근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나 사회심리를 해명하여 평화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학지(學知)나 사상이 인간 사회를 위해 수행해야 할 중대한 책무라고 여겨져 왔다.

이 책에서 밝혀 가겠지만 헌법9조도 이러한 인류의 지적 활동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동시에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정치역학의 경합 속에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단지 점령기의 우발적 조건에 의해 태어난 돌연변이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지속과 신생, 주어진 면과 자주적으로 선택한 면 등 양면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밀려서’ 만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9조가 ‘밀려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이 계속 주장해온 사상의 ‘자주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누워서 침 뱉는 행위이다.

입법과정이 어떻든 헌법9조를 둘러싸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고방식, 인간의 본성이나 국제정치 상황을 어떻게 포착하는가라는 논점을

비롯하여 군수산업이나 기지경제 등의 이해 문제, 애국심이나 국제협조주의 등 심성 수준에서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립이 증폭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붙이든 헌법 '개정'의 초점이 항상 헌법9조였다는 것도 평화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다. 전쟁포기·군비철폐를 규정한 헌법9조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비무장 중립이나 세계연방에 의한 안전보장에서부터 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지역적·개별적인 집단자위 방식까지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먼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평화헌법, 평화주의헌법이라고도 하는 일본국헌법의 가장 큰 특징인 '평화'주의 규정이 시행 이래 계속 정당이나 국민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분쟁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인간, 나아가 인류의 존재 양상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생사에 관한 것인 만큼 논의가 격렬하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논쟁이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국민투표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9조에 초점을 맞춘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적 대립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논하든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의의 대상을 가급적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무엇을 논정(論定)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저서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

(1875년) 첫머리에 ‘논의의 본위를 정하는 것’을 둔 것도 무엇을 논하고 논하지 않을 것인가를 구별하고 논점 속에서의 우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의가 서로 뒤섞이고 엉켜져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혼란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논의에 적용될 것이다. 특히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아감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와 장래에 대한 전망의 양식이 될 것을 과제로 하는 이 책에서는 역사라는 무한의 옥토에서 어떤 사상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혼란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떠한 이념이나 개념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헌법9조는 그 하나의 조문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초하는 과정에서는 전쟁포기 조문의 일부였던 것이 전문으로 옮겨져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9조는 전문과 긴밀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라 조문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또 헌법9조가 의회 심의 중 수정되지 않도록 헌법9조의 의의를 확실하게 하는 문민(文民)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일본국헌법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헌법 제10장 ‘최고법규’도 전문을 포함한 헌법 전체의 실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인이다.

이렇게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는 헌법9조를 포함하는 전문과 기타 조항을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그 체계성 속에서 헌법9조는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헌법9조가 헌법 체계 속에서 고립된 조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아가는 데도 전쟁포기나 군비철폐에 그치지

않고, 헌법9조를 포괄하여 성립되는 평화주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헌법9조가 어떠한 조문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확정해 두지 않으면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아간다는 시도 자체가 신기루나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헌법9조의 조문 구성과 해석,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개관한 후, 헌법9조를 중핵으로 하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어떠한 이념과 규칙으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헌법9조의 구성과 해석

자위전쟁의 해석

헌법9조는 전문에 보이는 평화에 대한 지향을 구체화한 법규범으로,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모든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이다. 국정의 희망적 방침을 보여주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제1항에서는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는 주권자로서의 ‘일본 국민’이 ‘국권의 발동인 전쟁’, 즉 국제법상의 모든 전쟁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전쟁행위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전투행위인 ‘무력의 행사’, 그리고 전쟁 또는 전투행위를 암시하여 자국의 주장이나 요구를 상대국에 강요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의 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무조건 ‘영구히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거기에는 조문으로 성립되는 과정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맥아더 초안

에서는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은 폐지(abolish)한다”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 및 무력의 위협은 포기(renounce)한다”의 두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원문→290쪽 각주). 그 때문에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위협 등 일체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오해를 낳을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라는 유보는 어디까지나 ‘무력의 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안으로 종합할 때 ‘폐지하다’와 ‘포기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중복된다는 것을 이유로 조문을 정리했는지, 깊은 정치적 배려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 문장이 하나가 되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정리되었다. 이로써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유보가 문리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뿐 아니라 「국권의 발동인 전쟁」에도 걸리는 문장 구성이 되었다.

제1항의 해석은 크게 이분된다. 하나는 전쟁이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든 그것이 대외적인 것인 이상 국제분쟁과 관련되지 않는 게 없으므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유보는 의미가 없으며, 일체의 전쟁 등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란 종래의 국제법의 용법을 중시한다면 침략전쟁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제1항에서 포기한 것은 침략전쟁만이라는 해석이다. 즉 후자에 의하면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은 제1항에서 포기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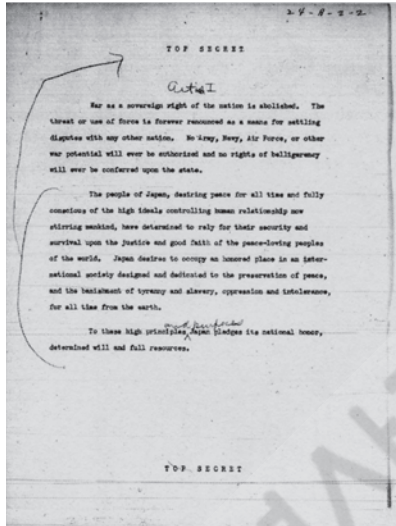


그림 1 GHQ 민정국장 휘트니가 보낸 '전문'에 대한 이행안(The Hussey Papers/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원자료는 미시간대학 아시아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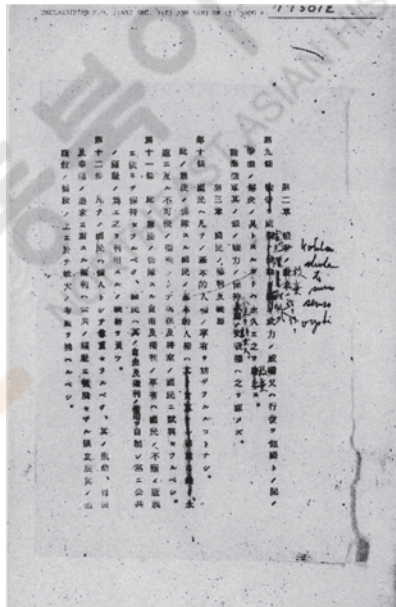


그림 2 GHQ와 협의해 만든 일본안(3월 2일안)의 9조(GHQ/SCAP Records, Government Section/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원자료는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러나 제1항의 전쟁 등에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을 취한다고 해도 제2항은 ‘전력(戰力)’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전권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9조 전체로 볼 때 침략전쟁뿐 아니라 자위권 행사도 포함하는 전쟁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다.

제1항이 ‘침략전쟁’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아시다 수정[芦田修正]에 의해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한이 더해진(→305쪽) 것을 함께 고려하면 제2항은 ‘침략전쟁을 포기한다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한정하여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것이며 ‘자위전쟁을 위해서는 전력을 가질 수도 있고, 교전권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하게 된다.

요컨대, 포기한 전쟁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장은 제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와 제2항의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의 어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개로 나뉜다.

첫째, 제1항 전쟁 전면 포기설이다. 침략전쟁만이 아니라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 등 모든 전쟁은 국제분쟁을 전제로 하므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침략전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앞항의 목적’이란 제1항이 지향하는 전쟁포기라는 정신 자체이며, 제1항에서 포기한 전쟁에는 자위전쟁과 제재전쟁 등 모든 전쟁이 포함된다.

둘째, 제2항 전쟁 전면 포기설이다. 제1항에서는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을 포기하지 않지만 제2항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전력 보유와 교전권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위전쟁이나 제재전

쟁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자위전쟁 비포기설이다. 제2항의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침략전쟁만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키고,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도 침략전쟁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며 자위전쟁을 위한 전력을 가질 수 있고 교전권도 부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일본국헌법에는 자위권 유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주권국가가가 가진다고 되어 있는 자위권¹이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헌법에도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한 설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위권이란 자국 또는 자국민이 급박 부정한 위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행사하는 긴급권이며 독립국가로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설이다.

둘째, 자위권은 국제법상의 권리로 인정된 것이며 국내법인 헌법에 의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다.

셋째, 자위권도 전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9조 제2항에 의해 자위권은 실질적으로 포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1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주권국가 이후 자명한 것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서술하듯이 전쟁합위무차별론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위권이라는 개념으로 전쟁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위권을 내세워 전쟁을 합법화할 필요가 생긴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위법화론(→제5장)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유럽연합(EU) 등에서 보듯 국가주권의 공유나 제한에 의한 국제협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위권 자체를 부정하는 설이 나타나고 있다.

판례에서는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위권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무력에 의한 자위권을 긍정하는 것,² 비군사적인 자위저항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자위전쟁을 인정하면서 왜 교전권을 부정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또 만약 자위전쟁이 헌법상으로 용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관한 규정은 헌법9조만이 아니라 제73조 ‘내각의 직무’ 등에도 일절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위를 위한 전쟁까지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가긴급권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의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위권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는 인정된다고 하는 설을 취한다고 해도 자위를 위한 무력과 침해를 위한 전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력 보유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설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는 물론 해석자의 자유이며, 정부(내각 법제국)의 해석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결코 올바른 해석으로서 공권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헌법의 기초나 심의를 담당한 사람들, 이른바 입법자의 의사도 후세의 해석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헌법학계에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며, 판례도 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최고재판소 등 각각

² 단, 자위권 발동에는 ① 외국으로부터 가해진 침해가 급박 부정이라는 위법성, ② 그에 대한 방위 행동으로 무력 이외에 수단이 없고, 무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는 필요성, ③ 자위권 발동으로서 무력행사가 외국으로부터 가해진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정도의 대응이라는, 균형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른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헌법9조 해석이나 판례를 둘러싼 대립과 60년에 걸쳐 이뤄진 논의들을 다룬 책들은 방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 오히려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헌법9조가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독자가 헌법9조를 읽고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만을 적절히 기술하는 데 그치기로 하겠다.

헌법9조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먼저 제1항의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국가행위로서 전쟁’과 같은 뜻으로, ‘국권’이란 대외적 국가주의를 가리키고, 그 ‘발동인 전쟁’이란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을 하는 등 전의를 표명해서 시작되며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전쟁을 말한다. “무력의 행사”란 선전포고 등도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의미로 실패는 전쟁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나누어 규정한 것은 일본국헌법을 기초할 때 참고한 국제헌장의 용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국제헌장은 과거의 전쟁을 언급한 전문을 제외하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전쟁에 상당하는 사태를 정당화하는 길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만주사변이나 상해사변, 일화(日華)·일지사변(日支事變) 등으로 칭하여 전의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전시국제법 적용이나 반전조약(反戰條約) 위반의 비난을 피하고, 이들 사변이 실질적인 전쟁 확대로 연결된 사실 등(→237쪽)에 대한 반성을 거친 것이라고 한다. 또 ‘무력에 의한 위협’이란 청일전쟁 이후 독일·프랑스·러

시아가 일본에 대한 삼국간섭과 같이 무력을 배경으로 자기의 주장을 상대국에 강요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국제분쟁”의 경우 맥아더 초안에는 “타국과의 분쟁(disputes with any other nation)”이라고 되어 있었다. ‘타국과의 분쟁’은 어디까지나 일본과 타국 사이에 생기는 분쟁에 한정된다. 하지만 ‘국제분쟁(international disputes)’으로 바뀌었다. 이는 글자의 의미상 일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의 “전력”은 맥아더 초안의 ‘전쟁력(war potential)’을 번역한 것인데 영어 용법으로도 관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를 직역하면 ‘전쟁의 가능성을 가진 군사력’ 내지 ‘전쟁수행 능력’이 된다. 이것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군수로 바꿀 수 있는 공업시설이나 항만·공항시설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래서는 전력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적에 대한 전투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과 실력을 가진 인적·물적 조직체라고 규정한다. 그래야 국내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력과 구별된다.

단, 1952년에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편되고 해상경비대가 신설(같은 해 보안청의 경비대로 개편)됨으로써 경찰력과 전력의 차이가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전력이란 단독으로 외국의 전력과 교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장비를 가리키며 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은 보유가 금지된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일견해를 나타냈다. 그후 1954년에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자위대법이 제정되었고, 보안대와 경비대가 자위대로 개편되었다. 자위대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것”(제3조)을 자위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위권과 전력의 관계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력의 보유를 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헌법9조 제2항이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전력이란 “자국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며, 그것에 그치는 한 자위력으로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1972년 통일견해)고 설명했다.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런 가운데 전투력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제2항의 “교전권”도 논쟁이 되어 왔다. 이것은 맥아더 초안의 “rights of belligerency”를 번역한 말로 헌법 제정 당시 ‘교전권’이라는 일본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 ‘rights of belligerency’라는 영어는 맥아더 초안의 특유한 개념이며 기초를 담당한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외무성의 초벌 번역에 “교전상태의 권리”로 되어 있던 것이 축약되어 ‘교전권’이 된 것이다. ‘belligerency’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교전상태인 나라에 인정되는 법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교전권을 교전국에 인정된 적국의 병사·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점령지 행정권, 중립국 선박의 임검(臨檢)과 적성 선박의 나포 등의 권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포기나 전력 불보유라는 규정을 중시하면 원래 교전상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해석도 있다.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위전쟁이 가능하다는 설을 취해도 국제법상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조문 해석 문제 외에도 헌법9조와 관련해서는 개별적 자위

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미·일 안보조약에 의한 기지 전력(戰力)의 존재 문제,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무력행사 활동에 대한 참가 가능성과 범위 등 해석이나 실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는 전제로 삼기 위하여, 더 나아가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기 위한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일본국헌법이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기축(基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헌법9조가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기축

제1의 기축 - 전쟁포기 · 군비철폐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다른 헌법보다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은 전쟁포기와 군비철폐,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9조이다. 이것이 제1의 기축이다.

이러한 전쟁포기와 군비철폐라는 방식의 선택은, 대항하는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세력균형 정책이 결국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해 군사적 위기가 높아진 사실에 비추어, 자위를 명목으로 하는 군비 강화가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철폐할 수밖에 없다는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일절 군비를 가지지 않고도 평화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은 군비를 가지면서 타국에는 군비축소나 군비철폐를 요구하면 새로운 전쟁의 길이 열릴 뿐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먼저 군비를 철폐하고 전쟁포기를 실천해 갈 수밖에 없다.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 상호의 협조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의 달성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과의 연계’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국경에 의해 사람들이 국민으로 구분되는 한 ‘인민들’(원문에서는 peoples이며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민들’이라고 쓴다) 간의 협조로 나타나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근대의 전쟁은 국가라는 단위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국경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만듦으로써 타국과 자국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런 전쟁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해서 ‘인민들(peoples)’이 연계하고 유화(宥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민들’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 폐절이란 무엇보다도 사람이 병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 헌법은 양심적 징병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은 무엇보다도 병역을 폐지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불보유 규정으로 군인이나 병사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제 66조 제2항에 “내국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피하기 위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중시한 것이다.

제2의 기축 - 국제협조

그런데 근대에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주권국가였다. 국가에 의한 결정은 타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성을 가졌으며, 국제사회에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겹쳐서 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주권국가의 자유로 인정되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전쟁 결정 권한을 직접 인민투표에 부친 1793년

프랑스 헌법 등이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개시에 대한 주권국가의 판단을 구속하는 준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전 이유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않는 전쟁합위무차별론(戰爭合違無差別論, 무차별전쟁론)이 용인되었다(→80쪽).

이 때문에 근대의 평화구상에서는 국가들로 연맹 등을 설립해서 전쟁에 호소하는 주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나아가 군비축소나 군비철폐를 도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없애는 길은 국가 주권을 배제하여 세계정부나 세계국가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제한하고 국제협조에 의해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국제기구 설립 제안뿐 아니라 자유무역체제 등에 의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촉진이나 문화나 사람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촉진 등 다양한 구상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등 국제협조기관이 군비축소나 전쟁 위법화를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 국제협조주의에서 이탈하고, 국제연맹 등에서 탈퇴하며 고립화의 길을 걸었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힘로에 스스로를 빠뜨린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근거로 해서 전쟁포기·군비철폐를 정한 일본 국헌법은 국제협조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평화주의를 지칭하는 국제협조이며, 헌법의 제2의 기축이다. 그리고 다시 국제협조주의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98조 제2항에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조에 의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고 해도 ‘인민들’이 국경을 넘고 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먼저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정부들이 서로 협조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국헌법을 제정할 때 1945년 6월에 헌장이 채택되어 활동을 시작한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통한 방위가 선택된 것이다.

국제연합은 “우리의 일생 중 두 차례나 말할 수 없는 비애를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국제연합 헌장 전문)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일본국헌법 제정 당시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일본국헌법 전문)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협조 시스템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일본국헌법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려 하는 국제사회에 일본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창출해 가기 위해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며 주체적인 선도자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국제협조주의를 채택하고 유엔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창출해 가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은, 2005년 8월 2일 중의원이 ‘유엔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국제평화 구축에 더욱 공헌하기를 서약하는 결의’³에서 “국

3 이 결의는 “우리는 여기서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고, 우리나라의 과거 한 시기의 행위가 아시아를 비롯한 타국민에게 끼친 다대한 고난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모든 희생자를 추도하는 바이다”라는 1995년 6월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에 대한 결의

제평화의 실현은 세계 인류의 비원임에도 지구상에 전쟁 등에 의한 참화가 끊이지 않는다.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본원은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해 발휘한 예지와 노력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표명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 결의에서 국제연합을 거쳐 한층 발전된 단계에 이르는 게 국제협조주의의 과제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특히 주목할 점이다. 결의에서 “정부는 일본국헌법이 드는 항구 평화의 이념 하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핵병기 등의 폐절, 모든 전쟁의 회피, 세계연방 실현 탐구 등 지속가능한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인민들’의 협조에 의한 세계연방 실현이 하나의 탐구 과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세계연방 구상이 현재의 국회 의결에도 항구평화 이념의 사상수맥으로서 흘러들며 장래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를 새롭게 하는 결의’, 이른바 ‘전후 50년 결의’=‘반전 결의’를 계승한 것이다. 당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部晋三] 간사장대리나 히라누마[平沼越夫] 납치의련회장 등 자민, 민주 양당의 10명 정도는 채택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나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후 50년 결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원은 전후 50년에 즈음하여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중에 희생된 사람에 대하여 추도의 염을 올린다. 또 세계 근대 역사상 수많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나 타국민, 특히 아시아의 국민들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염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차이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해 가야 한다. 본원은 일본국헌법이 들고 있는 항구 평화의 이념 하에 세계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인류 공생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한다”.

‘사람과 사람의 연계’에 의해 최종적으로 담보되는 국제협조주의를 달성하는 방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규제하거나 위법이라고 간주하는 국제조약 외에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정 기구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사법기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통상·금융 관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국제협정이나 국제기관의 설립 등이 시도되고 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사람과 사람의 연계에 의한 상호이해야말로 평화의 초석이 된다는 생각에서 인적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제5·6장). 이것들은 일본국헌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국헌법의 국제협조주의가 이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인민들’과의 연계에 의해 비로소 안전과 생존이 유지된다는 국제협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반드시 국가 간 연합으로서 국제연합이라는 조직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NGO나 NPO 등이 평화 창조·평화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제협조주의를 추진하는 주체가 정부 이외의 기구로 확대되고 있다. 평화 형성의 주체로서 개개인이 가진 의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평화 창출의 경우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국제’보다 민간 사람들의 연계인 ‘민제(民際)’의 비중이 금후 더욱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전쟁포기와 군비철폐, 교전권 부인에 박차를 가하고 각국의 군비철폐를 촉진하면서 가능한 한 구성국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국제평화조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협조주의가 일본국헌법에서 평화주의의 제2의 기축으로 자리해 왔다. 그것은 핵병기의 잔혹함과 섬멸 전쟁의 가능성이 큰 현대 전쟁의 무참함을 깨닫고, 평화란 목적을 평화란 수단으로 관철해 가야 한다는 평화주의를 요청

하고 있다.

한편 동서 냉전이 끝난 이후 일본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국제분쟁 해결에 협력하는 것도 헌법9조가 요청하는 국제협조라며 ‘국제협력’을 명목으로 군사력의 증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정당화되고 있다. 과연 ‘어떤 나라의 어떠한 군사 행동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협조주의를 구체화한 ‘국제협력’인가는 헌법9조와 관련해 실태에 맞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질문이다.

제3의 기축 - 국민주권

이와 같이 일본국헌법에는 전쟁포기와 군비절폐를 완수해 가는 것과 국제협조로 안전보장을 도모해 가는 것이 불가분한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는 전문에 있는 것처럼 일본 국민이다. 따라서 헌법9조의 제3의 기축으로서 전쟁폐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전제로 국민주권의 확립이 요구된다. 그것을 헌법 전문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국민들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로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즉 일본국헌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정부이며 전쟁이란 정부의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뿐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헌법이 전쟁폐절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전쟁포기에 의한 평화추구라는 목적원리와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의사의 결정원리가 내용과

형식을 상호 규정하는 관계로 파악된다. 국민과 전쟁의 관계를 생각하면 총력전이었던 20세기 전반의 전쟁에서 국민은 확실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전쟁에 열광하고 전쟁의 수행을 정부에 압박하기까지 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절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일본제국헌법은 제20조에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군사(軍事)에 관해서는 국민에 의한 법적 컨트롤 기능을 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 육·해군의 편제와 상비병역(兵員의 수·군사 예산)의 결정(제12조)이나 선전·강화(제13조)에 대해서는 천황대권으로 의회의 협조와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천황이 대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솔·지휘하는 최고권한인 통수권(제11조)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도 배제되며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은 천황이나 군부의 전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⁴

이러한 사실(史實)에 근거를 두고 국민에게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전쟁의 참화를 스스로 부를 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의 사고방식이 전쟁폐절을 정한 헌법에 불가분한 것으로

⁴ 군사(軍事)에 관한 국무에 대해서는 육·해군 대신이, 군대의 지휘·명령권인 군령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해군군령부부장(후에 군령부총장)이 천황을 보필한다는 해석이 점차 유력해져 갔다. 이 때문에 1930년 런던에서 체결된 해군 군축조약에서 하마구치[浜口雄幸] 내각이 해군군령부의 승인 없이 병력 규모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통수권 간섭 문제’가 발생했다. 천황 및 군의 통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하마구치 수상 습격사건을 초래했다.

담긴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이상 국민은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한 것이다.⁵ 그러나 국가의 최고 의사인 정치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감시 권한은 선거 등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포퓰리즘의 침투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많음에도 일상화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제4의 기축 - 평화적 생존권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국내적으로는 군사력의 발동을 의회나 국민이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평화롭게’ 살

⁵ 이것은 헌법 시행과 함께 문부성이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로 만든 『새로운 헌법 이야기』에 “옛날 헌법에서는 천황을 도와서 나라의 일을 한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서술된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이 교과서는 일국 내의 국민주권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하며, “자신의 나라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계의 나라들이 사이 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국제평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국제평화주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 국제평화주의로 나아가고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민주주의에 의해 비로소 국제평화주의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다시 군비경쟁이 시작된 1950년 부독본(副讀本)이 되고, 일본안전보장조약이 발효한 1952년에 폐지되었다.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국헌법의 특징이다.

그러면 단지 전쟁이 없다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평화’란 어떠한 것일까.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라고 밝힌 전문에 비추어 보면, 일본국헌법은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이 제거된 사회가 평화롭게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에서 풀려나는 것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국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제13조)나 “예속적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제18조)를 비롯한 사상, 양심, 신앙, 집회·결사·표현, 거주·이전·직업선택, 외국 이주·국적이탈 등의 자유나 체포·억류·구금 등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며 무엇보다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위치였다.

일본국헌법은 이러한 자유권과 함께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마르헌법에 준거한 이 조항은 맥아더 초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다카노 이와사부로[高野岩三朗] 등의 헌법 사안(私案)에서 제안된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헌법 심의 중에 추가된 것이다.

또 헌법 전문에는 “전 세계의 국민이 동일하게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전쟁이나 전제정치 등의 공포 또는 경제나 자유의 권리 등의 결핍을 면하는 것이 평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생각은 1941년 8월 영국 수상 처

칠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서명한 대서양헌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서양헌장은 나치의 폭압을 완전히 추방한 후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그 삶이 정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화가 확립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제창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넘어 제정된 일본국헌법은 대서양헌장이 ‘희망한다’에 그쳤던 것을 ‘권리’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국헌법의 고유한 인류사적 의미가 있다.

‘공포와 결핍을 면하는 권리’를 인권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을 세계사에서 찾아 보면, 먼저 19세기에 국가권력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로 요구된 자유권이 헌법에서 실현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한 권리가 사회권으로 인권선언이나 헌법들에 실정화(實定化)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평화롭게 산다는 조건이 권리로 확정되지 않으면 ‘공포와 결핍’을 면할 수도 없고 인권으로서도 확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 영향으로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 속에서 생존하는 권리’라는 평화적 생존권이 일본국헌법 전문에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전문에서는 일본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도 ‘인민들’을 주체로 하는 국제협조주의의 정신이 살아 있다.

물론 일본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것은 과제이지, 제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국민’(원문은 all peoples)에게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했다는 것은 전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해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살해하지 않을 권리, 가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시

에도 평온하게 사는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평화관의 전환을 가져온 일본국헌법의 획기적인 성격이다. 평화의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이상 그 보장도 국경을 넘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국헌법이 출현하기까지 그러한 평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평화란 집단 간의 전쟁상태가 계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통상 생각하지만 일본국헌법에서는 독재체제나 억압적 사회 그리고 인권·민족 차별 등의 공포에 노출된 상태, 나아가 빈곤이나 기아로 고통받는 사회상황에 놓이는 것도 “평화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사회적 폭력을 면하는 것이 평화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평화를 전투상태가 아니라는 등의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파악하는 시점을 새롭게 제공한 것이었다.⁶ 헌법 전문에 의해도입된 평화적 생존권은 다른 조문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에 반하는 고역”을 금지하는 18조가 그것으로, 징병제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들 자유권을 보장하는 조문도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9조와의 밀접한 연결이다. 헌법9조는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 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을

6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사는 것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78년의 유엔총회 결의인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의 준비에 관한 선언’에서 ‘평화 속에 생존하는 고유의 권리’로 제기되고 1984년의 유엔총회 결의인 ‘인민의 평화로울 권리에 대한 선언’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전쟁을 평화 유지를 위한 제도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장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헌법은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 등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9조는 평화적 생존권을 제도 면에서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헌법9조를 위반하는 사태는 세트 관계에 있는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로,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의 근간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9조이며, 헌법9조에 의해 생존할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위권을 중시하는 논자는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군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의 전쟁을 보면 전쟁에 의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방위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원보다 비전투원(일반시민)의 사망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위권 중시론에 반론할 수 있다.⁷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면서 안전보장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얻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보장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편 『인간개발보고서』 1994년도 판은 인간의 생존이나 존엄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개인의 자립 및 사회 만들기를 촉진하는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가나 군사에 기반을 둔 ‘국가의 안전보장’으로부터의 탈각을 지향한다. 이렇게 안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

⁷ 비전투원의 사망자 수는 정확한 수치를 얻기 어렵지만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6 등에 따르면 전투원에 대한 비전투원의 사망 비율은 1960년대 52%, 1970년대 73%, 1980년대 85%, 1990년대 96% 이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간의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일본국헌법은 평화적 생존권을 21세기에 실현할 개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본국헌법은 제97조에서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은 인류의 장기간에 걸친 자유 획득 노력의 성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는 전쟁포기와 군비철폐,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제9조를 가진 일본국헌법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일본국헌법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주권이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한 국민에게 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을 함께 생각하면 일본국헌법이 국민주권을 ‘평화와 인권’과 더불어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국헌법의 3대 원칙으로 불리는 평화주의, 국민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5의 기축 - 반전

이렇게 일본국헌법에 흐르는 여러 가지 평화를 희구하는 사상이나 이념의 수맥을 따라가기 위한 기축으로는 첫째로 전쟁포기·군비철폐, 둘째로 국제협조, 셋째로 국민주권, 넷째로 평화적 생존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근저에서 평화주의의 기축이 되는 이런 이념이나 사상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구동력이 되어 온 것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신조와 운동이었다. 평화를 희구하는 신조나 운동에 거는 정열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계승되어 제9조 등을 포함하는 일본국헌법을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찾아가기 위한 제5의 기축으로 전쟁이나 군비의 축소·폐절과 그에 따른 평화의 실현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반전⁸의 신조나 운동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헌법의 전문이나 제9조의 조문 자체에 ‘반전’이라는 문자가 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인용한 전문의 정신이나 헌법9조 제1항의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선언이 반전의 표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쟁포기·군비철폐, 국제협조, 국민주권,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네 가지 기축을 관통하여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저에 있는 관통축이며 사상수맥의 저류이다.

이러한 반전이라는 기축에 흘러드는 사상수맥으로는 영구평화 구상 등 전쟁폐절을 향한 사회론이나 법체제론을 비롯해 반전운동으로서의 연대사상도 있고, 국가연합이나 중재재판소 등 국제평화기구 설립을 지향하는 제창도 있으며, 군비축소나 병기폐절이나 출병금지 등을 주장하고 보급·실현하려는 자발적 결사의 활동도 있었다. 또 잔학병기의 사용 금지나 침략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위법화하기 위한 평화회의나 국제법 연구자의 활동도 들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벌이는 전쟁을 폐절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주권이나 자위권을 포기하고 세계연방 정부나 세계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신조로 무기를 일절 쥐지 않으며 징병을 거부하는 두호보르파 교도나 퀘이커 교도, 바하이나 메노나이트 등의 종파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정치

⁸ 역사 주-원문은 非戰. 일본에서는 반전의 의미로 비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하 비전은 모두 반전으로 번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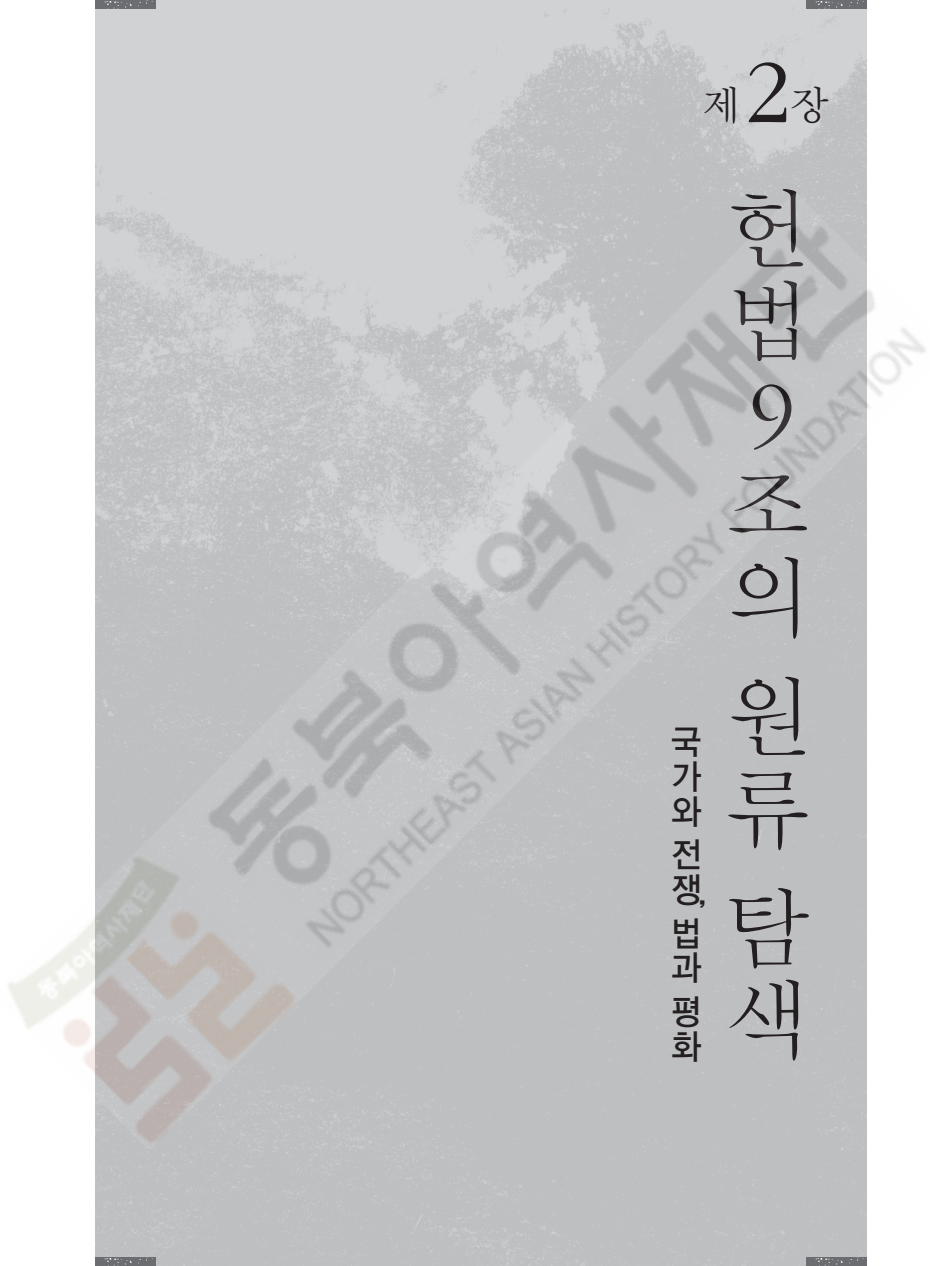
가나 의원으로서 헌법9조의 기초나 심의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포기라는 조항이 생겨난 배경에는 전쟁을 위법으로 간주하는 전쟁 위법화 운동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군비의 축소·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도 자리해 왔다. 그리고 헌법9조의 기초나 심의와 관련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상이나 운동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니 맥아더 초안의 기초를 담당한 GHQ 민정국(GS)의 케이디스(Charles L. Kades)가 적절하게 “제9조의 원형으로는 몇 가지나 되는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조합된 것이기도 하다”(大森實, 『戦後秘史・5 マッカーサーの憲法』)고 했듯이, 헌법9조는 초안 작성자조차 명확히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요소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게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헌법9조를 많은 일본인이 환영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명백한 사실로 만든 것은 반전의 사상수맥이 국경이나 세기를 초월하여 흘러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 2장

헌법 9조의 원류 탐색

국가와 전쟁, 법과 평화



평화론의 전제

헌법9조 제1항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전문은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전쟁이 국가주권의 발현이며 정부의 결단으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그러나 인류사를 보면 전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근세 유럽에 나타난 국가나 국제법과 관련된 정치과정이나 논의 속에서 생겨난 역사적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 정부의 행위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장에서 싸우는 것은 병사들이다. 이 때문에 병사 조달 방법도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여기에는 근대에서의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지키는가라는 문제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 일본도 유럽에 기원을 둔 국가 시스템이나 국제법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요건인 헌법을 비롯하여 징병제 등의 군제나 국제법상의 전쟁법규 등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대외전쟁을 반복해 갔다.

그러나 제5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국가주권의 절대성과 그것에 기초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방법을 의문시하고 주권의 발현인 전쟁을 제한하는 집단안전보장 체제로 이행하고, 조약에 의해 전쟁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국가의 주권이나 자위권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헌법9조가 국가주의를 부정하므로 부당한 것이라는 논의가 헌법 제정이

래 끊긴 적이 없으며, 오늘날 그 기세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전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이 장에서는 먼저 국제사회 전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나 권한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왔는지, 전쟁이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어떠한 구상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밝혀 두고자 한다.

전쟁에서 국가나 정부 그리고 국민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법과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헌법9조와 헌법 전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헌법9조와 직접 관련되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나 전쟁포기의 움직임은 결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상을 원류로 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조직 설립 등의 평화 구상이 각국에 받아들여져 온 배경에는 주권국가를 행위 주체로 하는 국제법 체계가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전쟁이 국가주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군비나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 구상이나 반전론 등의 영향이 있었다.

근대 일본에서도 이러한 국제법 체계에 참가함으로써 처음으로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화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문제도 먼저 구미의 평화 사상 수용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청일전쟁 이후 몇 번에 걸친 대외전쟁에서 겪은 절실한 체험에 기초한 사상으로 신체화¹되어 갔다.

수세기 전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시대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현 시점에서 쓸모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과 국가, 국가 간의 관련 방식 등을 평화와 전쟁과 관련해 고찰하려 했던 사람들의 발상 방식이나 논리 구성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결코 무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에 성립한 국제법 체계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구상된 유럽의 평화론 속에서 헌법9조와 연결된 사상수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전쟁과 주권국가체계 그리고 국제법

유럽의 궤적을 찾아가다

전쟁이란 부족·민족·국가 등 정치적 단위집단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집단과 무력행사를 위한 조직적 병력, 즉 기반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군대가 있어야 비로소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정치적 단위 사이의 무력행사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쟁과 다른 국제협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반 집단이 되는 국가를 해

1 역자 주 - 원문은 血肉化

체하고 세계국가 등을 설립하거나,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에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도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는 이 중 국제협조에 의한 이해 대립의 방지와 분쟁 해결, 군대폐절이라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전쟁 내지 무력행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이나 규제를 부과하는지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 중 일본을 포함한 근대 세계에서 주요한 기준이 되어 온 유럽의 국제법을 살펴보면, 그 전환은 근대 주권국가가 등장하면서 시작되고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변환하게 된다.

정전론

근대 이전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에서 보듯 도덕적 법률의 침범자를 제재한다는 정당한 목적 이외의 전쟁을 법적으로 배척하려는 사고가 강했다. 이러한 사고에서 전쟁을 정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로 구별하고, 그 원인이 신의 의사에 기초한 정의의 집행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전쟁만을 정당한 전쟁으로 용인한다는 ‘정전론(正戰論, bellum justum)’이 생겨났다.

정전론은 신이나 기독교 공동체 등 왕조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상위의 권위가 존재하고 정당한 전쟁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며 적용 범위는 기독교권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교도와의 전쟁에서는 역지 효과가 없었다. 또 다른 종파나 종교의 신도를 섬멸하거나 개종시킬 때까지 정전=성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전쟁을 제한한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역으로 십자군에서 보듯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세우는 기능까지 했다. 같은 이유에서 기독교 국가 간의 종교전쟁

도 막을 수 없었다.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가 『전쟁과 평화의 법』(1625년)을 저술한 것도 실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을 휩싸고 번진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유럽대전’인 30년전쟁(1618~1648)의 소용돌이 속에서였다.

그로티우스는 정전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국가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의나 신의 의사 대신에 만인이 가지는 이성과 사회성에 기초해서 이민족 간에도 통하는 인류 공통의 법으로서 국제법을 구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피하려 했다. 그의 정전론은 자기방어나 침탈된 자의 탈환, 부정에 대한 제재 등이 인정되는데 원인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제적인 교섭이나 중재 절차에 의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설득하고, 국제 중재 제도로 연결하려 했다. 그는 자연법에 기초한 개인의 인권 존중의 입장에서 종교적 불관용 속에서 싸우던 전쟁에서의 잔혹한 전쟁 수단이나 방법을 억제할 것을 제창하여 전시국제법의 길을 열었다.

정전론이나 자연법으로 전쟁을 억지하자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정의롭지 않은 전쟁의 수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로티우스가 최고 권력자에 의한 전쟁을 ‘정식 전쟁(bellum solenne)’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전사했다는 30년전쟁으로 종교적 권위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30년전쟁의 강화조약으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국가에 영토 통치 외에 전쟁을 일으키는 외교결정권 등 독립 주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제질서 유지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법왕이나 신성로마 황제 등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국가가 군사 조직을 독점적으로 파악해 가면 국가를 초월한 상위의 권위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권의식이 강해져 갔다.

주권국가와 전쟁합위무차별론

주권 자체는 프랑스의 법학자 보댕(Jean Bodin)이 정의한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 시민과 피치자에 대한 최고, 절대의 영구적 권력'으로서 중앙집권적인 국가 형성을 막는 봉건적인 교회나 왕조 귀족 등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일종의 항의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에서의 지고·유일·절대·영원한 권력을 국가에 인정하면 주권자인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교나 내정 문제를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권국가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지고의 절대성이 있다면 그 국가가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전쟁 당사자인 국가의 대등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국가주권평등의 원칙(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하의 전쟁에 정전론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또 주권국가는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만 국제법에 구속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국제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리하여 국제사회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당사자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정전론 대신에 전쟁 개시 이유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무차별전쟁론=전쟁합

위무차별론(戰爭合違無差別論)²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 전쟁합위무차별론 하에서는 전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의 전쟁이 침략 등의 이유로 법적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전쟁합위무차별론에는 전쟁이 때로는 분쟁 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군사 장치를 독점적으로 가진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든 언제나 전쟁을 개시할 수 있고, 무력으로 타국을 공격하고 승전의 결과로 권익이나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에도 자국의 권익이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자위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의 전의 고양이나 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 속에서 주권국가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주권국가가 전쟁을 낳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자유이며 합법으로 간주되자, 전쟁에 국제법이 관여하는 것은 교전 중에 지켜야 할 실정법을 제정해서 전투 행위의 잔학성을 감소시키고 전쟁에 참가하는 국가를 제한해서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이 전시국제법(전쟁법)에는 교전국과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중립국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하기 위한 중립법규, 교전국 간의 비인도적 전쟁

² 일본에서만 무차별전쟁론으로 불린다. 따라서 오해를 부르기 쉽다는 점과 전쟁위법화론과의 대비를 위해 이 책에서는 전쟁합위무차별론으로 쓴다. 단지 전쟁 개시 이유가 합법으로 간주되어도 전쟁 중에는 전시국제법이나 중립법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정전론의 사상은 국제연맹에 의해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며 침략전쟁에 대한 제재가 국제평화 유지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모습을 바꾸어 부활하게 된다(→218쪽).

수단을 규제하는 교전법규가 있었다. 하지만 전시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키는 정도였던 것이다.

세력균형 정책

이렇게 국가주권평등의 원칙 하에서는 전쟁합위무차별론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이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권리가 대등한 주권국가 간에도 항상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하고, 군사력 등 국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각각의 국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소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국력에 차이가 있는 국가들이 병존하는 유럽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안전보장의 기본 지침이 된 것은 각 국가가 군사력 외에 경제력이나 정치력 등 국력의 균형을 잡아서 국가 간 혹은 동맹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세력균형 정책이었다. 이것은 주권국가 체계 내부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력을 가진 국가가 대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권평등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나 동맹이 갑자기 큰 세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주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또 국가 간, 동맹 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전투가 장기화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더욱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공포로 전쟁을 회피하게

하는 전쟁억지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이 채택되던 시대에는 설령 다른 나라가 부당한 침략을 했다고 해도 침략국의 군사력이 약소하다면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 결정적 침해가 되지 않았다. 역으로 우월한 국가가 나타나면 혼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대등하게 하거나 능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된다. 또 동맹 국가가 교전 상태에 들어가면 지원을 하거나 중립국이 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동맹과 중립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각국의 국력이나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 문제이다. 따라서 세력균형 정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국제정세를 적확히 판단하고 자국에 유리한 진영을 만들어내는 교섭능력 등 외교력도 국력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갔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중기의 ‘영국의 평화(*fax britannica*)’와 같이 패권국가에 의한 안정이 유지되던 시기를 포함하여 유럽에서는 세력균형 정책에 의해 주권국가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군사력이 강대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세력균형 정책은 전쟁이 국제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상비군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만의 군비 축소는 현실적이지 않았고, 강대한 군사력으로 타국을 위압하고 패전의 가능성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정책이 선택되었다. 그 결과 상비군은 부단히 확충되어 갔다.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은 재정 부담과 패전의 가능성을 고려하

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력과 재정력이 신장되어 감에 따라 일국의 군비 증강이 타국의 군비 증강을 촉진하고 그것이 반작용이 되어 서로 군비를 증강하는 경쟁이 지속되면서, 더욱 많은 국가와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을 잡는 동맹 정책이 채택되어 갔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세력균형의 파탄을 식민지의 획득으로 보전하는 등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균형을 도모해 나갔다.

이러한 세력균형 정책에 의한 군사력의 증대와 동맹관계의 교차점이 식민지를 포함해서 극대화해 가자, 타국의 전력이나 개진 의도에 대한 오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균형에 의한 평화를 일거에 붕괴시켰다. 세력균형 정책에 의한 균형은 마치 트럼프로 만든 집이 미약한 바람에도 한꺼번에 붕괴하듯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건함경쟁(建艦競争)으로 격화된 영국과 독일의 대립, 식민지 모로코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 발칸반도에서 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의 각축이 첨예화하던 1914년 6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세르비아라는 약소국과 오스트리아제국의 충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삼국동맹과 삼국협상³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세력균형에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몇 개월 만에 끝날 듯 보이던 이 전쟁은 세계 각국을 끌어들이며 4년에 걸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세력균형 정책은 이렇게 군대를 영속화시키는 온상으로 존재했을

3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가 군사원조 동맹인 삼국동맹을 맺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프랑스·러시아가 각각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이것들은 현재의 용어로 말하면 집단적 자위권이다. 집단적 자위권 진영 형성으로 세력균형 정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취하는 집단안전보장과 질적으로 다른 외교정책이다.

뿐 아니라 군사력으로 평화를 만들려 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2. 국민국가와 징병제

루소의 인민주권론

그런데 세력균형 정책을 취하던 주권국가도 국내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군주주권, 국회주권 그리고 국민주권 등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주권 개념이 원래 유일·분리불가의 것인 이상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인격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권론은 절대주의국가의 정통성 논거로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짊어지는 시민층이 대두하고 납세자로서 국가의 결정권에 대한 참가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계약론 등을 매개로 하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 전체의 집합체가 주권의 소유자라는 루소(J. J. Rousseau)의 인민주권설 등이 힘을 얻었다. 루소는 또 인민의 복지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폐절할 필요가 있고, 국제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향수자인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혁명이 필요하다며 인민주권에 의한 정부 수립과 국제평화 확립의 관련성이 높다고 파악했다(→102쪽).

이러한 피치자인 인민이야말로 국가의 주권자여야 한다는 논의는 프랑스혁명 이후 그 국가의 국적을 갖거나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주권의 담당자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이며 그 주권은 국민 대표가 행사한다는 국민주권론으로 보급되어 갔다. 일본국헌법 전문이 “일본 국민

은 정당하게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하고, ……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론⁴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국가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공유물(republic=rés<사물>+publica<공공의>)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성립된다. 그리고 국가의 공유자인 국민을 주권자로 삼아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대신에 스스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병사로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국민주권론을 낳은 프랑스혁명은 그 쌍생아로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강제적으로 국민을 징집해서 병역에 복무시키는 의무병역으로서의 징병제=국민개병제를 낳았다. 국민이 자기결정권으로 전쟁 등의 국가행위를 선택한 이상 그것을 수행할 의무도 진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귀족 등이 특권적으로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고 병사는 용병이거나 국왕·귀족의 수하 친병이었다.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하여 영국·오스트리아 등 혁명에 대한 외국의 간섭군과 전투를 벌이며 혁명의 성과를 사수한 것은 호국병(護國兵, Gard Nationale)이었다. 이 호국병을 구성하는 의용병사가 부른 노래인 ‘라 마르세즈’가 프랑스의 국가가 되고, 군기였던 삼색기가 프랑스 국기가 된 것으로

4 국민주권에 대한 주장은 원래 주권의 유일·분리불가성·양도불가성 등 국민주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표를 통해서 행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표권자 총체로서의 국민이 국가 의사의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설, 특정의 행위권한이나 대통령·수상·의원 등 개인에게 최종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에 있다는 설이다. 루소는 양도불가성으로 보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으며 인민이 직접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직접민주제에 의한 인민주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상징되듯이 정치권력을 수중에 넣고 국토를 침략전쟁에서 지키는 것은 국민 자신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1792년 2월에는 모든 프랑스 국민이 호국병으로 편입됨으로써 국민군이 탄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1792년 입법회의가 “조국은 위기에 처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듬해 3월 30만 명의 징병을 지시했지만 징병을 꺼리는 반란이 일어나는 등 징병제로의 이행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월 국민공회가 “자유와 헌법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국토를 해방하기 위해 프랑스 인민은 생명을 바친다”며 국민총동원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의무적인 국민개병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798년 “정부가 항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징병법이 제정되어 20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남자는 평등하게 평시에는 5년, 전시에는 무기한의 의무병역을 지게 되었다. 단, 프랑스의 국민개병제는 징집 면제 규정 등 시대에 따라 그 내실에 큰 차이가 있으며, 1872년에야 완전한 국민개병제⁵가 되었다고 한다.

국민군과 내셔널리ज

징병제는 그후 나폴레옹 1세 때 확충되었으며, 1800~1813년 261만 명에 이르는 징병을 통해 국민군의 충실을 기했다. 그리고 혁명 옹호·조국방위 의식을 바탕으로 강해진 애국심으로 정강해진 국민군이 봉건제 왕국의 소수 정예 직업군대를 격파함으로써 국민 무장의 대병

⁵ 국민개병제란 모든 국민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제도이다. 징집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개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강제적 병역의무의 시행 방법에는 평시에 일정 기간 부대에 편입·훈련하여 전시에 대비하는 징병제, 비상시에만 국군을 편제하는 민병제가 있다.

력군의 우위가 인식되고, 징병제가 대륙 국가들에 채용되어 갔다. 특히 프랑스 국민군의 승리는 구체제를 파괴해 국민국가 형성을 촉진하고 민족들의 저항운동 속에서 내셔널리즘을 탄생시키는 각성제로 큰 작용을 하게 되었다. 1807~1808년 프랑스군 점령 하의 베를린에서 피히테가 행한 강연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 “모든 교육은 국민교육이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교육은 독일인에게 공통인 독일어로 해야 한다”고 내셔널리즘을 고취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은 그러한 사조의 반영이었다.

1792년 9월, 발미(Valmy)에서 프랑스군에 패한 프로이센군의 병영에 있던 문호 괴테는 “이날 이 장소에서 세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알베르 마티에, 『프랑스 혁명사』)라고 예감했다고 한다. 이때 괴테가 무엇을 예견했는지는 불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806년의 이어나 전투에서 프랑스 국민군이 프로이센 용병군에 승리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이 세계에 보급되게 되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전쟁 최대의 성과는 국민국가 체제와 징병제,⁶ 그리고 내셔널리즘을 유럽에 전파하고, 나아가 세계 각지로 내셔널리즘을 마치 인류에게 보편적인 원칙인 것처럼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일본도 1832년 프랑스 징병령 등을 참고해 징병제를 채용해 갔다.

⁶ 유럽 대륙 국가들과 바다로 떨어져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비군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민병제도에 기초를 둔 지원병 제도를 유지했다. 영국과 미국이 징병제를 채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일본의 징병제

일본에서 나폴레옹전쟁에 대해 주목한 것은 막말부터이지만 유신 후의 메이지 정부도 1870년 육군을 프랑스식으로 하기로 하고 국민개병제를 채용했다.

그리고 1872년 11월의 「징병고유(徵兵告諭)」는 “사민이 이제야 권리를 얻고자 한다. 이것은 상하를 평균하고 인권을 제일로 하는 길, 즉 병농을 합일하는 기초이다. …… 똑같이 황국 일반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보답하는 길도 예부터 다르지 않다”고,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병역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⁷ 「징병고유」는 또 “국가에 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피해의 일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심력을 다하고 국가의 재해를 막는 것이 자기의 재해를 막는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의 담당자라는 국민국가의 원리에 의해 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⁷ 일본의 징병제는 언뜻 보면 시민평등을 선언하고, 국민의 권리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징병제를 부역이나 징세를 대신하는 의무 = 병역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징병고유」에 “무릇 천지 사이에 일사일물(一事一物)로서 세 없는 것은 없다. 이로써 국용에 충당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예부터 심력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 서양인은 이것을 칭하여 혈세라고 한다. 그 생혈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것에서 분명하다. 이에 대해 징병령 반대 분규[一揆]가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오카야마[岡山]에서는 거의 2만7000명이, 가가와[香川]에서는 2만 명, 돗토리[鳥取]에서는 1만2000명이 처벌되었다. 그후에도 징병 기피가 다발한 것은 권리는 없고 고역만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징병 기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병령은 때때로 개정되었다. 1889년의 헌법 제정과 함께 개정되어 평시징집유예가 폐지되는 등 국민개병제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만 17세에서 만 40세까지의 남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시에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추천이나 지원병을 우선으로 하고 전원이 징집된 것은 아니었다.

이 「징병고유」는 국민의 공유물인 국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에서 프랑스혁명의 국민국가론이 징병제를 연결시킨 논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징병고유」 발표 이후 20년이 지나 시행된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국민에게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지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1947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에 의해 처음으로 주권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보면 주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77년 전에 ‘천황의 병사=고굉의 신(股肱の臣)’이라는 지위가 부여되면서이다.

이렇게 국민주권의 실체가 없는 채 비교적 적은 재정 부담으로 소요 병력을 강제적으로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징병 기피나 기피감(忌避感)을 제거하여 군대에 심복시켜 갈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을 군대에 바치는 ‘진충봉공의 지성(盡忠奉公の至誠)’이나 배외적 애국심을 주입해야 했다. 병영 내의 생활 단위인 내무반에서 ‘사랑의 채찍’이라 불리는 사적 제재로 명령에 대한 복종이 강제되고, 현역 복무 기간 이외에도 소학교에서 시작하여 청년단이나 재향군인회에 의해 ‘충량한 병사’로서의 규율화가 일상화해 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편 무력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획득한 메이지 신정부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고 정부군만이 군비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폐도령(廢刀令)과 징병령의 강제가 병행해서 시행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물론 군비의 충실은 불평사족(不平士族)의 반란이나 국민의 저항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국대치(萬國對峙)’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처럼 인접한 청나라나 구미 열강 등 모든 국가와 적대할 가능성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면 징병된 병사는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를 가진 채 군대에 들어가 군사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경계해야 할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군대는 외적 침입 방지보다도 먼저 천황에 대한 충성을 서약시키고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국민을 위압하는 것으로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1878년 천황을 지켜야 할 근위병들이 반란(竹橋事件)⁸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황거에 불을 지르고 대신들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가 그후 군인훈계(軍人訓戒)나 군인칙유(軍人勅諭) 등을 발령하는 등 군율의 강화에 혈안이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일본제국헌법 시행 이후에도 육·해군 대신이 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정치적 관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위정자는 군대를 통해 반정부세력을 억압해서 국내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유민권운동 등 국민의 참정권 요구에 격렬한 적개심을 가졌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천황 폐하가 사랑하고 믿는 고굉(股肱)으로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중임을 맡는 육·해군 및 경찰의 위세를 좌우에 올리고 능름하게 아래로 임하여 민심을 진을시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府縣會中止意見」, 1882년)고 한 것

⁸ 역자 주 - 다케바시[竹橋] 사건은 1878년 8월 23일에 일어난 병사의 반란으로 당시에는 ‘도당폭동’ 또는 ‘근위병 폭동’으로 불렸다. 1878년 8월 23일 밤, 도쿄의 근위포병대대 병영에서 병졸 300여 명이 봉기하여 제지하는 대대장과 간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천황에게 직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2시쯤에 전원 체포되었다. 체포된 259명에게 10월 13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중 사형 판결을 받은 53명은 10월 15일 총살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출신의 징병 군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은 ‘천황의 군대=황군’으로서 일본의 군대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군대관에 대응하듯이 1884년 자유민권파가 정부 타도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이다사건(飯田事件)의 격문은, “정부가 병비(兵備)를 왕성하게 하고 외환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그 결실은 단지 하나로 자신의 번벌과 관료와 전제정치를 지키고 오래도록 그 지위를 지키는 한 요소로 사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증강되어 가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史實)을 고려할 때 일본국헌법에서 평화주의의 기축이 되는 평화적 생존권은 국내의 ‘전력’으로부터 위해를 받았을 때의 저항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설령 국내 방위라는 자위가 최대 목적이어도 교전 상태가 되면 작전 수행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은 군대의 숙명적인 과업이며 그것은 개개 병사의 선의와는 완전히 무관한 차원의 문제이다. 그것은 종전 직전에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 현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사실, 만주국에서 관동군이 주민 보호를 포기하여 155만 명의 만주 거주자 중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 등을 생각하면 단순히 가상적 사태만은 아니다.

국민국가와 전쟁

그런데 본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민이 주권자로서 공적 부담을 평등하게 진다는 것은 국민국가의 원리이며,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자로서의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프랑스의 호

국명과 같이 조국 방위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천황의 것이었다. 당초 교과서에서도 충군과 애국은 다른 것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애국심의 결여가 명백해진 러일전쟁 후에는 눈에 보이는 충성의 대상으로서 천황에 대한 충군이 곧 애국이라며 충군애국을 하나의 덕목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하게 되었다. 충군애국은 천황의 병사로서 윤리였다.

원래 국민국가의 전쟁은 나폴레옹전쟁이 그랬듯이 명백한 타국의 영토 침입이어도 조국 방위를 위한 성전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불리며, 언제나 국민의 사명감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근대 일본의 전쟁 개전 조서(詔書)를 보아도 전쟁의 목적은 “동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청일전쟁 개전 조서, 1894년 8월), “평화를 항구히 유지하기 위하여”(러일전쟁 개전 조서, 1904년 2월), “동양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미·영 양국에 대한 선전의 조서, 1941년 12월) 등 평화 추구였다.

이렇게 전쟁 목적이 평화 희구이고 국민 전원의 사명이 될 때 전쟁 반대는 ‘비국민’이라고 비난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기에도 노출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국경에 의해 출입국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주권국가에서는 면종복배(面從腹背)라도 전쟁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파급되어 간 국민국가는 국민을 통합하고, 적국을 비난하고, 자국을 찬미하는 애국심이나 내셔널리즘을 양식으로 하여 싼 값에 대량의 국민을 병사로 동원할 수 있게 되고, 전쟁을 낳는 장치로 유효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국가에 의한 국민군 구성이 중요한 정치 과제가 되었다.

이리하여 국민국가에서는 전쟁이 하나의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되고, 정치 지도자와 국민도 내셔널리즘으로 서로 선동하여 국가로서의 위신이 상처를 받고 떨어지는 것에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역으로 국민 통합이 흔들리면 일체성의 유인책으로 일부러 ‘적’을 만드는 전쟁이 때때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는 전쟁이야말로 타국의 민족을 굴복시킴으로써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여겨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국민정신의 고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인하게 된다.

국민국가는 그것이 국민주권에 의한 자기 통치라는 실태와 함께하지 않을 때, 주권자 스스로에 의한 이성적인 자기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은 채 전쟁을 부추기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3. 헌법에서의 전쟁포기 조항

최초는 프랑스 헌법

헌법9조 제1항의 전쟁포기 조항은 직접적으로는 나중에 서술하듯이(→224쪽), 1928년의 부전조약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전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 위법화 운동 속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헌법에 전쟁포기 조항을 두는 것은 20세기가 되고 난 후부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쟁포기’가 최초로 규정된 것은 처음 국민주권을 정한 프랑스 헌법에서였다.

프랑스혁명의 성과를 법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민의회는 1790년 5월 신헌법의 골자로 ‘헌법 조항’ 9개조를 정했는데, 제4조가 1791

년 9월 헌법의 제6편에서 “프랑스 국민은 정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전쟁을 행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 무력은 어떠한 인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조문화한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1790년 5월에 제정된 「평화 및 전쟁을 행하는 권리에 관한 법령」에 개전과 강화의 권리는 국민에게 속하며 입법부의 법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고 “개시된 적대행위가 대신(大臣) 또는 집행권을 가진 어떤 관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침략이라고 입법부가 판단할 경우 침략 행위자는 국가 위태범으로서 소추된다”고 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쟁범죄라는 법개념도 제1차 세계대전 후 빌헬름 2세의 소추가 최초의 사례라고 간주되고 있지만(→221쪽), 국내법에서는 이미 전쟁포기와 관련해서 전쟁범죄를 소추하는 조항이 1791년에 나타났다. 즉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쟁범죄에 재판을 통해 형사제재를 부과해 정복전쟁 포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군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이러한 처벌 규정이 설정된다면 위정자는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될까. 또 일본에서 헌법9조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가진 부대의 해외 파견을 기안한 관료와 그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자제(그 범위와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는 그 전선 병사로 징집된다고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1791년 프랑스 헌법이 포기한 전쟁은 어디까지나 정복전쟁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헌법은 군사력이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이와쿠라 도모미의 의견서에 비추어 보아도 주목되는 점이다. 또 전쟁을 일으키는 행정부의 대신이나 관리의 과오를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부가 처벌한

다는 규정은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결의했다고 명시한 일본국헌법 전문의 정신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프랑스 헌법에 두어진 것은 대외전쟁이든 내전이든,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타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타국민에 대한 압제를 용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자국민에게 되돌아오므로 '무력의 행사'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담겨 있었다. 거기에서는 또 전쟁 개시 등 대외적인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며, 국민은 국제협조에 의한 평화 속에서 복리를 향수할 수 있다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 중 제2·제3의 기축과 통하는 사고가 발견된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평화를 낳고, 평화가 자유와 인권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에 의해 제정되었음에도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쟁 포기 조항은 당초에는 국민의회의 외교 지침이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전쟁합위 무차별론이 지배할 때는 침략전쟁을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자위를 명목으로 하는 나폴레옹전쟁에 의해 국민이 내셔널리즘에 도취하여 프랑스 스스로가 사문화시켰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침략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입법부가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 때문에 유산자들이 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대표가 아니었고, 입법부 자체가 호전적이어서 위법한 전쟁을 억제하는 권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포기를 희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48년 프랑스 헌법에 “프랑스공화국은 정복의 목적으로 어떠한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결코 병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시 생겼다.

이와 같은 전쟁포기 조항은 프랑스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891년의 브라질 헌법이 “브라질 연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또는 타국과의 연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략적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며, 1934년 브라질 헌법도 거의 같은 문장의 규정을 두었다.⁹

그리고 주의를 환기해 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프랑스 헌법을 비롯한 전쟁포기 조항을 가진 헌법의 선례가 「일본국헌법 개정 초안」이 추밀원의 자문에 부쳐진 1946년 4월, 내각 법제국이 답변용 상정 문답의 작성을 위해 정리한 자료 「헌법 개정안의 규정들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1집」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전쟁포기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온 인류의 역사를 검토하고 침략·정복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획기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이 국회의 심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헌법9조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잊혀져서는 안 된다.

⁹ 1934년 브라질 헌법은 1928년 부전조약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부전조약 이후의 전쟁포기 규정에 대해서는 225쪽 참조.

4. 영구평화 구상의 사상 원류

평화 구상의 출현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의 『평화의 호소』(1517년) 등 기독교적 휴머니즘에 기초하여 전쟁합위무차별론에 대한 비판과 전쟁폐지를 위한 평화론이 나타났다. 17세기에 프랑스 앙리 4세(집필자는 재상 슈리라고 한다)의 기독교 공화국 조직화를 위한 『대계획』(1640, 1662년)이나, 퀴이커 교도 윌리엄 펜의 『현재 및 장래의 유럽 평화를 위한 논설』(1693년) 등에 의해 공동의회 설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책이나 체제론을 포함한 평화 구상이 제창되었다.

더욱이 ‘계몽의 세기’로 불리는 18세기가 되면 주권국가는 자기 생존과 국익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청하고 있으며 전쟁이야말로 바로 그 국가이성의 발현으로서 윤리나 법을 초월하여 정당화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에게 재해와 파멸만을 제공하는 전쟁을 인간의 이성이 허용할 리가 없다. 이에 반하여 평화는 많은 복리나 평온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성은 반드시 평화를 추구한다는 사고가 솔직히 표명되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의 존재방식을 알고 전쟁의 원인을 해명할 수 있다면 인류의 진보를 막고 인간성을 파멸하는 전쟁 자체를 폐절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반전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다.

근대 평화 구상의 특질은 신국의 이념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의 통합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그때까지의 생각과 달리, 주권국가에 의한 국제체계의 형성을 기반으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중재조직이나 공동의회의 설립, 국가주권의 제한 등에 의한 국제동맹이

나 국가연합의 결성 등을 통해 전쟁폐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 구미의 국제법 체계를 수용하고 주권국가 간의 분쟁에 직면하게 된 근대 일본에도 같은 사상 과제가 대두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군비 증강 등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구미의 이론에 준거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직접적으로는 구미의 논의에 의거하지 않는데도 같은 국가 체제나 사회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내용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로 나타나기도 했다.

생 피에르의 『유럽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

이와 같이 이성이야말로 유익한 것이며 더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악의 근원인 전쟁의 폐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초로 제기한 것은 프랑스 생 피에르¹⁰의 『유럽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¹¹이다.

¹⁰ 역자 주 - 아베 드 생 피에르(Abbé de Saint-Pierre, 1658~1743). 프랑스의 성직자이며 정치사상가. 1695년 티룬의 수도원장이 되고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천되었다. 1712년 폴리냐크 추기경과 위트레흐트강화회의에 참석했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영구평화론』(1713)에서 자연법뿐 아니라 실정법인 국제법에 따라 각국 원수들에 의한 국제평화기구의 설립, 국제재판소의 설치, 국제군의 설립, 전쟁포기 등을 주장했다. 저서 『다원제 합의론』(1718)에서는 국무회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루이 14세의 전제정치를 비판하여 아카데미에서 제명당했다. 일찍부터 대의정치제의 실현을 예언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¹¹ 생 피에르의 『유럽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Projet pour rendre la paix perpétuelle en Europe)』에는 몇 가지 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713년과 1717년에 간행된 것을 합쳐서 가리킨다. 만년의 생 피에르와 면식이 있었던



그림 1 생 피에르

생 피에르는 전쟁의 원인을 인간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 정복욕과 복수심, 소유욕 등에서 찾았지만, 이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전쟁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7개, 스위스는 13개의 연방으로 각각 일체가 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연방 간에 전쟁이 없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모든 국가를 멤버로 한 연합(Union)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리가 없었다.¹²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거쳐 생 피에르는 조약을 맺어 국가간 연합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당 한 사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유럽 상설의회를 설립하고, 분쟁은 상설의회의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상설의회의 중재 등을 거부하거나 연합 자체를 파괴하는 위반국에 대해서는 중재의 수용이나 손해배상을 연합군의 경제적·군사적 제재로 강제한다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으로 연결되는 발상이다.

게다가 이 평화 구상이 세계연합 구상은 아니었지만 생 피에르는 최

루소가 소개와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알려졌다. 그리고 칸트는 생 피에르의 논의를 루소의 저작을 통해 알고 자신의 『영구평화를 위하여』를 저술했다고 한다. 이런 관계로 세 사람은 연결된다.

¹² 이 이론은 세계연방론이나 세계정부론과도 통한다. 일본 주창자 중 한 사람인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이것을 폐번치현(廢藩置縣)에 빗대고 폐국치주(廢國置州)에 의한 군비절폐를 호소했다.

종적으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와의 연합도 상정했다. 특히 그는 인도가 가맹하면 유럽이 식민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 자신도 상업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화의 적 이외에 대해서 서로가 적대하고 정복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인 평화는 기독교권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생 피에르의 평화 구상은 정복에 의한 식민지 획득을 부정하는 계기를 포함한 것이며, 이외에도 전 유럽 공통의 통화와 도량형을 채용하는 제안 등 현재의 EU(유럽연합) 등에서 실현되어 가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 구상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주권국가 체계에서 주권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세력균형에 기초한 권력 정치의 추구에 의해 전쟁으로 이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군주들이 조약을 맺어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어내자는 것으로, 전쟁이라는 유해한 수단을 포기시키는 것을 주요 조항으로 삼고 있다. 또 전쟁포기를 위하여 연합국에 가맹한 국가는 연합군에 평등하게 병력을 거출하고,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평시의 병력을 60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생 피에르는 군사력에 의거하지 않고 각국 전권위원의 투표로 각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가진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군비철폐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군비축소나 군비철폐를 각국이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칸트도 영구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요시했다. 이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서 제1의 기축인 전쟁포기·군비철폐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 피에르가 상정한 많은 주권국가는 당시 군주국가였기 때문에 국

가연합도 실질적으로 군주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만드는 것이었다. 또 군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군주가 지위와 영토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고, 국내의 반란에 대해서는 국가연합이 진압을 원조하는 등 군주 통치의 이점을 들었다. 그것은 주권의 획득을 지향하고자 하는 ‘신민’들의 반란에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연합으로, 군주주권을 보전하는 것을 국제평화라고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의 평화 구상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

거기에 생 피에르의 평화 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 하나하나의 자유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국가 간의 평화를 생각하고자 한 루소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루소의 영구평화론

루소¹³의 평화론은 루소가 『아베 드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안 발췌』(1761년)와 『영구평화안 비판』(1782년) 등을 통해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론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형성의

13 역자 주 -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정치사상가, 교육사상가, 소설가, 작곡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요 저서는 『인간불평등기원론』(1755년), 『사회계약론』(1762년), 『에밀』(1762년), 『고백록』(1766년) 등이다.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프랑스혁명 때 혁명 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고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평생동안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저서들을 남겼으며 일관되게 인간본성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회계약론에서 보듯 능동적 인 인민주권의 개념을 주창하고 종래의 가치관이나 전통 등의 관습에서 해방된 개인을 이상으로 삼았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논의로 전개된 것이었다.

루소에 따르면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론의 근본적인 결함은 인민이 아니라 군주의 이성
에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점
이다. 루소는 이 전제 자체를 오류라고 보았
다. 왜냐하면 군주는 국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과 국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절대
화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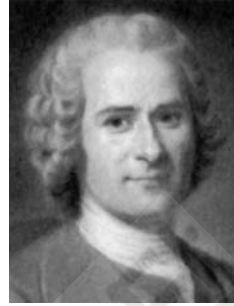


그림 2 루소

는 자신의 지위 보전과 권력 확대를 위해 평화보다 전쟁에서 이익을 찾
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군주제를 전제로 한 구상은 국가주권의 이기적
행동을 피할 수 없고, 군주 동맹은 국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결
과만을 초래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주들의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평화란 또 군주의 권리와 무력 강화로 국민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제도일 뿐이다. 군주가 전쟁 목적으로 ‘국민의 번영’이나 ‘공공의 행복’
등을 굳이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번영’과 ‘공공의 행복’을 아무도 당연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쟁이 ‘국민의 번영’이
나 ‘공공의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데 지나지 않
는다.

그러면 군주라는 입장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라는 관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루소는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원래 일부의 사람들만 결합해서 국가
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그 이외 나라 사람들과 이해를 달리하는 상황에 빠지지만 사
실은 특정 나라에만 속해야 하는 필연성은 없다. 또 군주와 달리 국민

에게는 영토의 소속을 다투는 것에도 당연히 이해관계가 없다. 국민은 전쟁에서 얻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군주주권 국가에서는 군주가 정의나 영광을 내걸고 ‘도박’이나 게임과 같이 전쟁을 하고 싶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국민은 운명을 희롱당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주제 하에서 국경으로 분리되고 적대하는 것을 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법 아래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군주제 하에서도 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이 쾌적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루소에게 군주제에 의한 평화는 무의미하다.

루소에 따르면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인민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사회는 우선 인민주권에 기초해서 개인을 결합시킨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개인을 결합한 것과 같은 조건에 따라 국가들을 ‘모든 사람을 동등한 법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국가연합 형식(confédération)’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요컨대 사람들이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스스로의 안전을 공통의 법에 따름으로써 지키는 것이 인민주권론이라고 한다면, 국가연합이란 같은 논리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소국도 주권이 제한되지 않는 가운데 국제계약을 통해 하나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또 군주에 의한 대외적인 전쟁과 정복이 대내적인 전제정치를 강행해 온 역사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며 법에 의해 평화와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개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전쟁은 당연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국애나 애

국심 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간의 전쟁은 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광신성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때문만으로 싸우는 군주국 간의 전쟁보다 한층 잔혹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주권자는 전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거의 언제나 결국 자신의 자유를 잃고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합에서도 구성국의 사람들에 의한 결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단, 루소에게는 형성된 국가연합에서 대국과 소국이 각각의 주권과 힘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주권을 제한받지 않고 연합에 의한 권리와 복리를 얼마나 확장시켜 가는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루소는 인민의 주권적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소국을 이상적 국가형태로 보았다. 따라서 소국과 원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대국이 연합한 국가연합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루소에게는 군주제가 전제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전쟁을 필요로 하는 이상 군주제를 타도해서 공화제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평화를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군주가 자신의 국가 주권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국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루소는 『영구평화안 비판』에서 “혁명 이외의 방법으로는 결코 국가연합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혁명도 일종의 전쟁

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혁명이라는 전쟁이 국가연합이라는 불멸의 평화를 준비한다고 해도 영구평화를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모순에 직면한다. 또 혁명이라는 전쟁으로밖에 형성될 수 없는 국민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국가연합이 ‘인간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여러 가지 수단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경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중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라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루소가 직면한 문제는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결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평화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구성국을 강제하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문제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서 국가주권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국제기구에 주권 행사의 일부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EU에서는 그러한 주권의 공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소는 국가연합에 의한 평화의 달성이라는 과제 속에서 생겨난 ‘주권을 제한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연합에 의한 권리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구체적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분쟁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상 국가연합에 의한 영구평화의 실현이라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주권이나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는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자기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였다. 이 어려운 문제에 철학적 체계성을 가지고 대답하려 한 사람은 칸트¹⁴였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

생 피에르가 ‘영구평화’를 제언했을 때 사람들은 묘지 입구에 새겨진 ‘영원한 평안’이라는 명문을 상기시킨다고 조소했다고 한다. 그것은 ‘죽음에서만 사람은 싸움을 그친다’는 것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이 끊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니힐리즘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⁵



그림 3 칸트

71세의 칸트가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년)를 저술할 때 떠오른 생각도 그러한 냉소였을 것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라는 자기가 네덜란드의 여관 간판에 쓰여 있고, 그 위에 묘지가 그려져 있는 점을 풍자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구평화를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상하고, 영구평화가 실현 가능하며 논증할 수 있다는 확신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칸

¹⁴ 역자 주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독일의 철학자로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쾰니히스베르크에서 출생했다. 근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여겨진다. 서유럽의 철학적 전통을 집대성하고 비판철학을 탄생시켰다. 주요 저서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등이다. 그의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으며 근세 철학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칸트의 저작인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년)는 난해한 문장으로 유명한 그의 저작 중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쉬워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사상서로 분류된다.

¹⁵ 생 피에르는 영구평화를 *paix perpétuelle*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면’을 의미하는 *Pax perpetua*를 연상했다고 한다. 더욱이 칸트는 생 피에르를 의식해 자신의 저서의 프랑스어 제목을 *Pour la paix perpétuelle*로 했다.

트도 생 피에르나 루소의 영구평화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영구평화가 너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처럼 논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권국가가 전쟁합위무차별론이라는 ‘야만적인 자유’를 버리고 법에 따른 국가들의 연결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한 공감을 표하고 있다.

칸트는 생 피에르를 ‘이성의 공상가’라고 부르면서도 평화 구상을 전개하는 데는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으로 나누어 일종의 평화조약 형식에 의한 제안을 하는 등 서술 방식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또 루소의 저작에 대해서는 평생 경의를 가졌고, 그를 정신계의 뉴턴에 비유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영구평화 구상을 탁상공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몽상이라고 배척당하지 않을 논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현실화의 길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칸트에게 인간이 타자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설령 현실로 전투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쟁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상태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예비조항 6개 항, 실현하기 위한 확정조항 3개 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칸트는 예비조항으로는 영구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또다른 전쟁을 염두에 둔 악의있는 평화조약 체결의 금지, 대외 분쟁 처리를 위한 전쟁 국채의 금지, 무력에 의한 타국의 정치체제 간섭 금지 등 6개 항목을 들고 있다.

상비군 전폐를 향하여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비군은 시간이 지나면 전폐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전쟁합위무차별론이 지배적이었던 주권 국가 체계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국가는 주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다고 간주되었으며, 상비군¹⁶을 갖춘 주권국가는 언제나 전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상비군은 언제라도 무장하고 출격할 준비를 함으로써 일상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위협을 받은 국가에 군비 확장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상비군이 자극이 되어 상호 군비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군비확장 경쟁이 일어나면, 군사적 재정 부담이 증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쪽이 단기의 전쟁보다도 한층 무거운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짐을 벗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상비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반드시 제한 없는 군비 확장으로 이어지고 전쟁을 낳는다는 칸트의 지적은 많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이 점은 군비철폐를 선택한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서 제1의 기축인 전쟁포기·군비철폐와 사상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상비군은 그와 같이 대외 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내에 중요한 윤리 문제도 낳는다. 왜냐하면 상비군으로 징용·고용됨으로써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되기 위한 도구로 국가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

¹⁶ 칸트가 말하는 상비군이 용병제와 징병제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논의가 나뉜다. 그러나 프로이센에서는 이미 1732년 이후 징병제를 채용하고 있었고, 칸트의 시대는 이행기였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거기에서의 초점은 상비군의 대외적 위협이라는 문제, 어떠한 징집형태든 상비군 병사 개인의 ‘도구적 사용’이라는 문제에 두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다. 인간을 살인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비군의 본질인 이상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권리와 일치시킬 수가 없다’, 즉 사람은 생존의 의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사람은 다른 누구의 도구로도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가장 반하는 것이 상비군이라고 칸트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원제를 취하는 군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 군대가 자위전쟁이라는 형태로 전투 상태에 들어갈 때 병사 이외의 국민은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는 대신에 병사에게 살상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강요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평화적 생존권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쟁 자체를 포기하든지, 만일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는 국민 전원이 전투원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에 설 때 인간으로서 동포의 존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원병이나 용병은 직업 선택의 자유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도 당연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당했을 때 헌법9조의 전쟁포기·전력 불보유의 의미는 한층 명백해질 것이다.

물론 칸트는 국가 주체의 상비군을 전폐하는 것을 권하는 한편, “하지만 국가 시민이 자신이나 조국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쥐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며 국민 주체의 자위 훈련에 관해 ‘자발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위 훈련의 목적으로 국방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을 국내에서의 폭력이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부

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무장의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칸트 자신은 무력에 의한 국가 저항권을 반드시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일본 등의 징병제가 국민의 ‘무장의 권리’를 부정하고 병역의무를 강제하며, 그에 따라 국가만 무력을 독점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던 것을 성찰한다면 칸트의 논의에는 ‘무장의 권리’란 누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더욱이 예비조항의 제6에서 설령 얼마동안 전쟁의 결과로밖에 정·부정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전국이 장래의 평화 시 신뢰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암살이나 독살, 적국 내에서의 폭동 선동 등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징벌 전쟁도 생각할 수 없다’며 제재전쟁을 부정했다. 왜냐하면 주권으로서 대등한 국가 사이에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국력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에도 다른 국가를 제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칸트에게는 상비군도 폐절되고, 최종적으로는 자위전쟁이든 제재전쟁이든 모든 전쟁이 부정된다. 칸트에게는 상비군 전폐가 전쟁 폐지와 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칸트가 구상하는 국가연합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법적 상태로서의 영구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을까. 칸트는 그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문제로 ①국가 내의 법적 상태, ②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 ③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시민법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평화를 확장해 가기 위한 조건인

데, 세 가지 조항을 관찰하고 있는 기축은 확정조항 제1의 ‘각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적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국민이 대의제와 삼권분립이라는 법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내정뿐 아니라 외교에 대해서도 공화적 결정을 하는 체제¹⁷를 의미한다.

당연히 그 결정의 결과는 공동책임으로 국민 전부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실제로는 개전을 결정하는 것이 소수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 결정이 실질화될 때 비로소 국민 전체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전인지 아닌지의 자주적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국민 자신이 전쟁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의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 재해를 수용해야 하는 국민이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칸트에게 공화적인 체제가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전쟁을 제지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권자를 국민으로 한 일본 국헌법의 평화주의 기축과 통한다.

루소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17 칸트에 의하면 ‘공화적(republikanisch)’이란 민주주의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자에 의한 전체가 때때로 나타나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억압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적’이란 다수자는 자신이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소수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등’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는 것이다. 동시에 거기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엄밀히 구별되고 상호 규제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전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칸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나타나는 전제를 거절하고 주권이 실패로서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수립해 가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본질상 침략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의 체제’로서 공화적인 시민적 체제의 양상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이로부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제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제2의 확정조항이 유도된다.

여기에서의 국가연합 제도는 하나로 통합된 세계국가와 다르다. 확실히 장래에는 하나의 세계공화국이 되는 것이 적극적 이념으로 권장된다고 해도 현실에는 다른 국가의 민족들이 있다. 국력의 차이를 남긴 채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세계를 통합해 간다고 하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공화적인 것도 자유도 아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공화적이고 자유로운 세계공화국(Weltrepublik)을 만들어낸다는 적극적 이념을 향해 인류는 나아가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공화적이며 자유로운 세계시민이 되고 영구평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칸트도 상정한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서로가 자유를 보장하는 평화연합(Friedensbund)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호전적인 국가나 사람들을 줄여 ‘국가들의 연합제도’에 도달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의 국가연합에서도 국내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황적인 동일성에 의한 연합은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개인 간에 존재하는 이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에 의해 얼마든지 비대화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국가 확대의 수단이 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평화연합

을 만들고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¹⁸

평화국가연합은 ‘모든 전쟁이 영구히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가맹을 강제받지 않아야 하며 탈퇴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를 존중하는 공화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국가연합은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일의 목적에 따라 합의에 의해 국가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적 상태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제력이 없는 평화국가연합을 어떻게 확대해 갈 수 있을까. 칸트는 그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본성상 필연적으로 평화를 선호하여 공화적인 국가를 만들어낸 ‘어떤 강력하고 계몽된 민족’에게 기대한다. ‘어떤 강력하고 계몽된 민족’에 의한 국가가 스스로 달성한 성과로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되어야 국가들의 자유로운 결합으로서의 법적 상태가 국제법으로서 보급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칸트가 상정한 평화국가연합과 국제법 형성의 관련이라는 문제를 국제협조라는 평화주의의 기축을 일본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주의의 기축으로서 국제협조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단지 다른 국가에 수동적으로 동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의해서 공화적인 국가를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계몽된 민족’으로서 ‘인민들’에게 활동하는 역할을 시키고

18 국가연합에 의한 평화의 확보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제도에 기초를 둔’ 국제법의 제정이라는 칸트의 방식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의 사상적 선구가 되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존재하는 국제연합 방식은 칸트가 비판한 연합 내의 우열 관계를 내포한 것이고 공화적인 동일성을 조직 원리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60쪽).

그것이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칸트가 말하는 국제법은 확실히 국가 연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 등이 아니라 국민들 상호간의 계약이다. 칸트는 “이성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단호히 금지하고 그에 대해서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하지만, 이 평화 상태는 국민들 상호의 계약 없이는 수립되지 않으며 보장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여기에서도 ‘국가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9조와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한다는 헌법 전문에 있는 국제협조 이념과의 유사성을 읽을 수 있다.

칸트가 추구한 세계시민법과 국제협조

이렇게 국제법의 담당자를 인민들로 설정할 때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가져오는 조건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3의 확정조항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 상태로서의 평화는 국내법으로부터 국제법으로, 그리고 세계시민법으로 공간적으로 확대되지만,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에 둔 공화적인 것을 일관시키는 것에 두어져 있다. 이것도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인의 권리에서 착안한 것이면서도 그것을 ‘전 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라고 규정한 일본국헌법 전문의 논리 구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물론 세계시민이라고 해도 추상적인 세계주의자(코스모폴리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세계시민이란 어디까지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세계시민법이란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교제하기

위한 법과 권리를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도 지상의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타인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는 인류에게 공통으로 속하며 사람들에게는 서로 방문하고 예의를 가지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우호’를 가져오는 조건들을 방해하는 것은 ‘문명국가들의 법’으로서 당시의 국제법이고, 그 문명법에 의해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의 산물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전쟁이 결코 문명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식민지를 가짐으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식민지를 해방해야 현지 사람들과도 우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영유가 전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인간의 평등하고 우호적인 교제도 저해한다는 것은 유럽뿐 아니라 일본도 역사적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대일본제국헌법 시대에도, 일본국헌법 하에서도 일본에서는 국적 조항¹⁹에 의해 구 식민지 사람들에게 동등의 권리가 보장된 적은 없다. 무엇보다도 칸트의 세계시민법에 있는 ‘지표를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 등이 존중되었다면 ‘재일’이라는 단어가 일본국헌법 하에서 60년이나 살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¹⁹ 조선·대만 등 구 식민지 출신자에게는 당초 GHQ 지령에 의해 ‘해방민족’으로서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국헌법 하에서 인정되던 참정권이 정지되었다. 더욱이 GHQ 헌법 초안에 있었던 ‘외국인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문이 삭제되고 헌법상의 권리 보장이 인정되는 사람은 일본 국적 보유자에 한한다는 해석이 생겨나 제외되었다. 또 58쪽에서도 말했듯이 GHQ 초안에 있었던 people이 ‘국민’으로 번역된 것도 문제를 낳았다.

어쨌든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이렇게 식민주주의를 엄격하게 단죄하는 현실 비판으로 획득된 것이며, 멀리 떨어진 대륙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인류를 공화적인 세계시민 체제로 점차 만들어 가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 각 개인과 각 국가가 상호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사회 공민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될 때 비로소 영구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죽어서만 인간은 싸움을 그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법적 상태밖에 없으며,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 상태를 바꾸어 가는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평화를 세울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작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성을 응시하고 그것을 바꾸어 간다고 하는 진정한 리얼리즘에 뒷받침된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현실에 맞추어 간다는 ‘체제순응주의로서의 현실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평화를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법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상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평등과 법의 지배가 보장된 공화적인 국가의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공화적인 국가의 국민들이 연합해서 결정하는 국제법에 의해 평화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포괄하는 세계시민법으로 영구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비군의 폐지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법의 지배라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국가로부터 국제사회, 그리고 지구시민으로 공화적인 원리를 공간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칸트의 사고방식은

헌법9조의 평화주의의 기축인 전쟁포기·군비철폐, 국민주권, 국제협조, 평화적 생존권, 반전과의 연결을 생각하는 데 귀중한 사상 원류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는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해서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사람이 오히려 많았듯, 조소의 눈길이 헌법9조에도 향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칸트도 영구평화가 금방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평화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부과된 과제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칸트가 추구하는 평화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한편 칸트뿐 아니라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면 금방 도덕적인 요청이며 정신론적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도외시켰다. 그러나 이제까지 본 것처럼 적어도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인류가 총체로서 어떤 세계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먼저 묻고,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긍정하면서 법이나 기구로 전쟁을 폐절해 가자고 하는 현실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법적인 규제는 도덕적 의무와 다르다. 예를 들어 상업 거래 등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기적 동기를 인정하고 계약이나 상습관이라는 법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기적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은 반드시 영구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국가나 개인이 이기적 동기만으로 행동한다면 이기적 동기가 법이나 국제기구로 영구평화를 촉진하는 것에도 틀림없이 작용한다고 보고 칸트는 법에 의한 평화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영구평화론, 특히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전쟁폐절이라는 사상은 몽상이 아니다. 물론 현재는 생 피에르나 루소나 칸트가 살았던 시대와 사람들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2세기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평화란 어떤 상태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가면 좋을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자 할 때, 칸트 등의 평화론이 참조의 기준으로 마르지 않는 사상원류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대 일본에서도 전쟁과 평화라는 사상 과제에 직면했을 때 생 피에르나 루소나 칸트의 사상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반복해서 숙고되어 왔다. 그것은 다음 장 이하에서 밝힐 것이다.

또 생 피에르나 칸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구평화를 생각하는 데는 원래 국가와 국민, 전쟁과 무력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일본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세계평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정세·국제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나아가 인접한 아시아와 어떤 관계에 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런 문제에 한 사람의 개인이 모두 답을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거기에는 현재의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정세도 시대상황도 다른 이상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등질의 문제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내놓은 답 속에는 우리의 생각에 양식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막말에서 메이지 전기의 사상 속에서 헌법9조와 연결되는 사상 수원을 찾아보겠다.

제 3장

막말·메이지 전기의
헌법 9조의 사상수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사상 수원을 찾아서

반전을 주창하는 사상은 서구 세계뿐 아니라 잇따른 전란 속에서 그 참화를 직시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타났다. 중국 고대에도 “백성을 가난하게 하고 재물을 깨뜨리는 것은 병사보다 큰 것이 없다”(『管子』), “병은 흉기이고 다툼은 말사(末事)이다”(『國語』), “병은 흉기이고 다툼은 위사(危事)이다”(『漢書』), “싸움은 역덕(逆德)이다”(『史記』) 등의 사상이 등장했다. 이런 말에 보이는 무기나 병사 등 군비가 사람의 운명을 해치는 것이며 무력에 의해 타자를 압도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도나 덕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사상은 일본에서도 공명을 얻어 받아들여졌다. 또 ‘병(兵)은 불상(不祥)의 그릇이지 군자의 그릇이 아니다’라는 노자의 지적은 반전 사상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자(管子)』에 “병을 마땅히 폐해야 하나 폐하지 않는 것은 고금의 의혹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군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불길한 장비라고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폐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무사에 의한 지배가 계속된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8)에는 병을 폐하는 것은 자기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비 폐지가 정권에는 정통 사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무(武)’가 지배한 시대에도 무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문(文)’에 의한 지배가 통치의 정통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덕치(德治)’나 ‘인정(仁政)’을 표방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국과 열강과의 대치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막말(幕末)에서 메이지시대¹ 초기에는 긴박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으로서의

‘만국공법’을 유교에 의한 ‘만국공도(萬國公道)’ 사상의 틀에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세계평화를 구상하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1. 요코이 쇼난의 전쟁폐지론

‘세계의 도우미(世話やき)’로서의 국제협조



그림 1 요코이 쇼난

구미에 의해 개국의 압박을 받은 막말에는 신국관(神國觀)에 기초하여 개국을 요구하는 나라들을 ‘오랑캐’, 즉 문명을 모르는 야만국을 무력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양이사상이 활발하게 제창되었다. 그런 사조 속에서 중국에서 간행된 위원(魏源)의 『만국도지(萬國圖志)』나 중국에 체재하던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한 한문 번역 저작물 등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적확하게 파악한 요코이 쇼난²은 국제분쟁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이나 도의에 기초해서 해결하고 군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1 역자 주 - 1868~1912년.

2 역자 주 -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 에도시대 말기에서 근대 초기의 사상가이며 정치가이다. 구마모토 번사(藩士) 출신의 유학자이다. 쇼난은 그가 사용한 호 중 하나이다. 폐리가 내항했을 때는 양이론을 주창했지만 후에 서양의 지식을 접하면서 개국 통상에 의한 부국강병론을 주장했다. 사숙(私塾) 시지켄[四時軒]을 열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사카모토 료마나 이노우에 가쓰라 등 메이지 유신의 중요 인물들도 쇼난의 사숙을 방문했다. 1868년에 교토에서 ‘개국을 하여 일본을 기독교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쇼난은 1862년에 정치종재직에 오른 에치젠 후쿠이[越前福井] 번주(藩主)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의 정치고문으로서 시국 문제에 대처한 히고 구마모토번[肥後熊本藩]의 유학자였는데 서양정치에서 모범을 삼을 만한 것이 있으면 섭취하고 국내정치에서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인정(仁政)의 실현을 지향하는 이채로운 발언을 하는 정론가(政論家)였다. 가쓰 가이슈[勝海舟]³는 『영천청화(永川淸話)』에서 “나는 지금까지 천하에서 무서운 자를 두 명 보았다. 그것은 요코이 쇼난과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⁴이다. 그의(쇼난의) 훌륭한 사상은 나 같은 사람은 사다리를 놓아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다”고 쇼난의 사상을 평가했다. 쇼난은 당시 사람의 의표를 찌르는 듯한, 시

3 역자 주 - 가쓰 가이슈[勝海舟, 1823~1899]. 에도시대 말기 막부의 신하. 가이슈[海舟]는 호. 본명은 요시쿠니[義邦]이나 메이지 유신 후에 안호[安房]로 개명했다. 서양의 병학을 알기 위해 네덜란드의 서적들을 입수하여 지식을 습득하면서 1850년부터 자택에서 난학(蘭學)숙을 열었다. 1855년에는 번서(蕃書) 번역소에서 근무하게 되고, 나가사키의 해군 전습소(傳習所)에 부임하여 네덜란드 사관으로부터 항해술 훈련을 받았다. 1860년에는 일·미수호통상조약 비준 사절을 수행하여 일본인만으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막부의 신하이면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기도 다카요시나 사이고 다카모리 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유신 후에는 신정부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은둔했으나 1869년부터 신군대 조직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4 역자 주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7~1877]. 에도시대 말기와 메이지 시대 초기의 무사, 군인, 정치가. 사쓰마번[薩摩藩] 하급무사의 장자로 태어나 당시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번주인 시마즈를 곁에서 보좌하면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막부시대를 종결시키는 왕정복고에 성공하고 보신전쟁[戊辰戰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메이지 유신의 개혁을 주도했다. 조선의 개국을 권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절로 갈 것을 제안하여 대사에 임명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은퇴하여 귀향했다가 1877년에 세이난전쟁[西南戰爭]의 지도자가 되어 정부와 대립하지만 패하여 시로야마[城山]에서 자살했다.

대를 앞서가는 논의를 전개했다. 메이지 신정부에 산요[參與]로서 등용되었을 때는 정치의 요체를 “전쟁의 참담, 만민의 피폐,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욱 견문을 구하면 자연히 양심을 발해야 한다”(『中興立志七條』, 1868년)라고 단언했는데 이것은 근대 일본의 벽두에서 발한 반전론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반전론에 기초한 외교정책론의 핵심은 세계가 열강의 자기중심적인 확장주의 때문에 위기적 상황에 빠졌다고 관찰하고, 일본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사적 이해를 초월한 보편적 조리(條理)인 ‘천지의 대도’에 따라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만국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에 부과된 사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스스로가 편협한 이기심을 버리고 ‘천지의 대도’로 돌아가서 인정(仁政)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일본의 선택에 대해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강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 이 길을 명백히 하여 세계의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일만도 이만도 전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치게 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일본은 인도가 될 것인가, 세계 제일의 인의의 나라가 될 것인가, 딱 이 둘 중에 하나뿐, 이 밖에는 더 없다”(村田氏壽, 『橫井氏說話』, 1858년)고 설파했다. 마치 대량파괴 병기를 예견하듯 반전을 주장한 것이다.

쇼난[小楠]에 따르면 일본이 인도처럼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강국이 될 것이 아니라 ‘세계 제일등 인의의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교도덕의 보편성에 따라 인민의 생활을 풍요

롭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 ‘인풍(仁風)’을 발현하기 위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영국·러시아 등도 강제하지 않고 ‘인풍’에 동조하게 되어 마침내 평화공존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쇼난은 세계 모든 인간은 인종·민족·국적을 불문하고 친구·동료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해동맹주의를 주장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안온과 복지를 평등하게 향수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 평화관은 유교적인 인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치가 윤리적 이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발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협조 하에서 세계의 사람들이 향수하는 평화의 내실은 칸트가 세계시민법에서 논하던 성격이나 헌법9조의 평화적 생존권론 그리고 ‘인간의 안전보장’론과 통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쇼난이 당시 세계에서 유교가 지향하는 ‘인풍’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것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래 미국이 첫째로 ‘천지 간의 혹독한 고통 중 살육 이상의 것은 없기 때문에 천의에 따라 세계의 전쟁을 없애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로 ‘지식을 세계 만방에서 취하여 정치나 교육을 보조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로 ‘대통령의 권력을 현명한 인물에게 양도하여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군신에 의한 질서를 폐하고 오로지 공공화평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國是三論」, 1860년)을 장려해 온 것을 증시했기 때문이다.

쇼난이 워싱턴을 높이 평가한 것은 독립전쟁인 대영전쟁을 종결시

킨 데 있었다. 유학자인 쇼난에게 통치자는 백성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뛰어난 지식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나’를 초월한 ‘공공화평의 정치’, 즉 공평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통치자의 지위는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의 요(堯)·순(舜)·우(禹) 삼대의 치세와 같이 현명하고 유덕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제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에도막부가 ‘도쿠가와 일가의 편리에 따른 사적 경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며, 이 주장은 메이지시대가 되면 혈통에 의한 천황제를 비판하고 공화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쇼난이 암살당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쇼난의 전쟁폐지론은 구체적인 법이나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교사상에 기초하여 통치자가 전쟁의 참화를 항상 상기하는 ‘심덕(心德)’으로 전쟁을 피하고, 인의에 의한 교제를 각국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량살육을 초래하는 전쟁 폐지를 일본이 ‘세계의 도우미’가 되어 솔선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도 세계의 우수한 것을 도입하여 국민생활을 확충하고 국내 평화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설파한 점에서 국제협조라는 기축에 의한 평화론의 전례였던 것은 틀림없다.

쇼난의 가르침을 받은 유리 고세이[由利公正]가 5개조 서문(誓文)의 초안에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널리 황기(皇基)를 떨쳐 일으켜야 한다”, “공사(貢土)는 임기를 가지고 현명한 인재에게 양도해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안건은 공론으로 결정하고 사사로이 논하지 말라”는 조항을 기록한 것은 쇼난의 「국시삼론(國是三論)」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한편 쇼난은 부국과 강병을 장려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세계에 평화를 호소하기 위한 전제로서이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에 유학하는 두 조카에게 보낸 “요순 공자의 도를 밝히고 서양 기계의 기술 습득에 진력한다. 어떠한 부국에 그치고, 어떠한 강병에 그치지 않는다. 대의를 사해에 펼칠 뿐”이라는 편지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 국가에서는 ‘부국강병’, 그것도 ‘강병을 위한 부국’만을 국가 목표로 수렴해 가 ‘강병’은 실현했어도 그것이 국민의 풍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쇼난은 또 제자인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에게 “우리는 사명을 받들어 먼저 미국을 설득하여 일화협동하고, 그리고 나서 각국을 설득해 마침내 사해의 전쟁을 그치게 한다”(横井時雄 편, 『小楠遺稿』 발문)며, “지금 각국 전쟁의 참담함은 실로 듣기에도 참을 수 없는 백성(生民)의 불행이다.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여 전쟁의 해약을 제거해야 한다”(元田, 『還曆之記』, 1871년)고 호소했다. 헌법9조가 요구하는 것은 실로 이러한 ‘세계의 도우미’로서 평화 구축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2. 오노 아즈사의 세계대합중정부론

식민지 중국에서 얻은 발상

요코이 쇼난의 논의는 국내에서 유학의 인정(仁政) 논리를 세계로 확장하는 문맥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한 후 법학자로서 『국헌법론(國憲汎論)』 등의 포괄적인 저작을 간행하면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과 도쿄전문학교(후에 와세다대학)의 창설에 참가, 직접 동양관(후에 富山房)을 연 오노 아즈



그림 2 오노 아즈사

사[小野粹]⁵는 자신의 중국 견문을 기본으로 세계대합중정부론(世界大合重政府論)을 주창했다.

오노는 1870년 상하이 등 중국 각지를 걸어서 열강 진출의 실태를 눈으로 보고 교통의 발달에 의해 세계가 긴밀하게 교섭하게 된 시대에 강국이 약소국을 반복적으로 침략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지의 사람들이 나날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 현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책으로서 「구민론(救民論)」(1871년)을 저술했다.

오노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주·자유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각각의 토지에서 상대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복록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역으로 강국이 약국을 능멸하고 대국이 소국을 침범하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식민지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 불가능

5 역자 주 - 오노 아즈사[小野粹, 1852~1886]. 메이지시대 전기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이다. 1869년에 도쿄로 나가서 창평학교(昌平學校)에서 공부하고 1871년부터 3년간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 동지와 함께 문화계몽 단체인 '공존동중(共存同衆)'을 결성하고 『공존잡지(共存雜誌)』를 발행했다. 또한 로마법을 연구하여 '로마율요(羅馬律要)'를 찬역했다. 1876년에 사법소승(司法少丞)을 맡은 이래 사법성과 태정관의 서기관을 역임했다. 1880년 회계감사원의 검사관으로 취임하여 오쿠마 시게노부와 인연을 맺고 이후 오쿠마와 입헌개진당을 결성하고, 도쿄전문학교(후의 와세다대학)의 설립에 진력했다. 『국헌법론(國憲汎論)』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저작 활동을 전개했다.

하게 되었다. 이것은 칸트가 유럽의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피해를 세계시민법에 의해 시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 문제를 식민지 지배를 받는 쪽의 시점에서 고발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에서 식민지 지배의 현실을 오노가 관찰한 것 이상으로 일본도 그러한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의 표명이기도 했다.

세계의 일체화는 상호 교역이나 교류에 의해 서로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국이어야 할 인도나 중국을 식민지화해서 백성을 멸망시키고 있다. 그 위기가 일본에도 닥치고 있을 때 일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오노가 제안한 것은 세계의 현철(賢哲)이 모여서 ‘일대합중정부(一大合衆政府)’를 수립하여 강국의 부정의를 징계하고 약소국을 구제하자는 것이었다. ‘일대합중정부’에는 각지의 인재를 모은 입법기관으로 ‘대의사원(大義士院)’을 설치하여 세계에 시행할 ‘공법(公法)’을 확정하며, 그 외에 세계의 정무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선정을 권장하여 악정을 멈추게 하고 ‘백성’ 교육을 진흥하면 세계 사람들이 서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주·자유를 신장할 수 있다. 이 합중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지의 정부가 이기적 판단을 버리고 세계 공공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노의 제안이었다.

여기에 나타난 세계정부론은 세계연방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소박한 기본적 인권론이며 의회정치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의회정치론이나 천부인권론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출발점이 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⁶와 고토 쇼

6 역자 주 -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 도사번[土佐藩]의 무사

지로[後藤象二郎] 등의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選議員設立建白書)」 제출은 「구민론(救民論)」 집필 3년 후였다. 이때 오노가 18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의 문제 제기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노도 이 구상을 널리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한문으로 집필한 후에 프랑스문과 영문으로 번역해서 유럽 신문에 게재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듬해인 1872년에 미국에 유학할 때 「어떻게 지배받을 것인가(How We Ought to be Governed?)」라는 제목으로 시카고와 뉴욕의 신문에 게재했다고 한다.

당시의 오노는 주권국가 평등의 원칙을 국제공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강국도 약소국도 평등하게 ‘일대합중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된 ‘공법’으로 각국의 정부에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은 아직 불평등조약 하에 있었고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노의 구상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주권국가 평등의 원칙을 들면서 그것을 자기 사정에 따라 비트는 것이 문제이며 오히려 원칙을 준수할 것을 구미 각국에 요구하고 모든 국가가 동등 동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에도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다.

이자 메이지시대의 정치가. 자유민권운동의 주도자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막부 타도운동에 참가하여 무력 타도를 주장했고 보신전쟁[戊辰戰爭]에서 도사번의 군지령(軍指命)으로 종군했다. 1869년에 번제 개혁을 실시하고, 1971년에는 신정부의 참의에 임명되었다. 1873년 3월 정한론 논쟁에서 패배하여 참의를 물러나고 1874년 1월에 고토 쇼지로 등과 애국 공당을 조직하여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자유민권운동을 이끌었고 1881년에 결성된 자유당의 총리로 추대되었다.

만약 국제사회가 약육강식 세계이며 주권국가 평등의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그 실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몽상이라는 ‘현실주의’만이 논의의 도마에 오른다면 ‘현실’ 자체도 결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국제법을 따름으로써 대외 진출이 정당화될 뿐이었다. 그에 대해 몽상이라고 조롱당하고 경멸받았던 논의가 ‘현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현실’이 서 있는 기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몽상이라고 배척해 온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계를 구상하기 위한 사상적 밑거름이 될 지도 모른다. 단지 ‘현실’만을 추종하는 논의는 그 ‘현실’과 함께 사라져 갔다.

오노와 마찬가지로 당시 만국공법이라고 불리던 국제법의 현실을 시정하고 세계평화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찾아내고자 한 인물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였다.

3.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세계평화론

합동·협화·우애·공평으로서의 평화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⁷는 에도막부의 쇼헤이코[昌平黻]⁸에서

⁷ 역자 주 -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 유학자이자 계몽사상가. 에도에서 고케닌[御家人]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에도막부 직할 학교인 쇼헤이코[昌平黻]에서 주자학을 수학하고 1866년에 영국에서 유학했다. 런던의 안정적인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근처에 있는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68년에 귀국하여 시즈오카에서 새뮤얼 스마일즈의 『셀프헬프』를 번역하여 『서구입지편(西歐立志編)』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1872년 대장성의 번역국에서 근무했다. 1873년에 메이로쿠샤[明六社] 설립에 참가하고, 도



그림 3 나카무라 마사사노

유학(儒學)을 가르치고 영국에 유학한 후 ‘메이지의 성서’로 불리는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과 『자유지리(自由之理)』⁹ 등의 번역서를 펴내 자주독립의 정신 함양이나 자유민권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국입지편』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함(學問のすすめ)』,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輿地誌略)』과 함께 메이지 시기의 3대 베스트셀러였다. 그 제1편의 서문에 나카무라의 세계평화론이 서술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사[同人社]를 설립하여 교육에 힘썼다. 도쿄대학 교수, 원로원 의관, 여자고등사범학교 교장, 귀족원 의원 등을 역임했다.

8 역자 주 - 쇼헤이코[昌平黌]는 쇼헤이자가 학문소[昌平坂學問所]의 별칭으로, 1790년 간다[神田] 유시마[湯島]에 설립된 에도 막부 직할의 교육과 학문 기관이다. 기원은 163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사한 우에노의 저택지에서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운영하던 유학의 사숙(私塾)이다. 라잔은 여기에 공자묘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1690년 공자묘를 간다 유시마로 이축하면서 공자의 고향 창평(昌平)에서 이름을 따서 쇼헤이자가[昌平坂]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제도상의 정비를 진행시켜 1797년 막부의 직할 기관으로 전환하여 막부 교육과 학문 기관으로서의 쇼헤이자가 학문소가 성립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잠시 폐쇄되었다가 1869년 8월 17일에 관립 쇼헤이학교[昌平學校]로 재출발하여 고등교육과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대학교의 중추가 되었다. 그러나 유학파와 국학파 간의 분쟁으로 1870년에 휴교했다가 그대로 폐지되었다.

9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1870~1871년)은 영국의 스마일스의 『자조론(自助論)』(Self Help, 1859년)의 번역이며, 『자유지리(自由之理)』(1872년)는 영국 밀의 『자유론』(On Liberty, 1859년)의 번역이다.

국가가 강하다는 것은 인민이 천도를 굳게 믿고 인민에게 자주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란 사람이 서로 모여서 만들어진 이상 인민의 품행이 바르다면 풍속도 아름답게 되고, 일국으로서 협화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나라를 강하게 한다는 목적 그 자체가 쓸모없다. 품행이 바르지 않을 때 단지 병을 강하게 하면 반드시 싸움을 좋아하고 살육을 즐기는 풍속이 생긴다. 또 강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의 대칭으로 말하지만 원래 인간이 삶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안락하게 도덕을 수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서로 강약우월의 차이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만국이 학문 문예를 가지고 서로 사귀고 이용후생의 길을 서로 돕고 유익하게 하며 함께 안강과 복지를 향수하면 좋을 따름인데, 왜 강약우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량한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한 사람이 행하고 일가가 행하고 일국이 행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래로 병은 흉기이며 싸움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인에 적은 없으며, 한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무거워서 지구보다 무겁다. 그 인명을 단지 타자의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지극히 참담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전쟁 정책은 천의나 목숨을 낳은 자연에 등을 돌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근년 형벌을 대폭 완화해 왔는데 오히려 아직 전쟁전폐에 이르지 않은 것은 교화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에 예교(禮敎)가 성해지면 군비나 형벌이 폐지되는 날이 반드시 오겠지만 자신들은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할 따름이다.

이러한 나카무라의 전쟁전폐, 군비폐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평등하게 태어난 세계 모든 개인이 스스로 수양을 거듭해서 교류해 가면 상호의 복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참상을 일부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평화적 생존권과 통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 발상은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고 그것이 점차 세계의 질서 형성과 연결되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유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학자이며 기독교도이기도 한 나카무라에게 평화란 단지 생활의 풍요함이나 편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덕성을 연마하고 지성을 향상시켜 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견해와 함께 나카무라는 국제법 쪽에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나카무라에 따르면 “만국공법은 공적인 시비를 가지고 사적인 시비를 바로잡는 도구”(『萬國公法蠡管序』, 1875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국공법은 구미 국가들이 함께 서로 준수하고 각각 평화를 지키고는 있지만, 한탄스러운 것은 국가들이 아직도 사적인 전쟁을 멈추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즉 만국공법이란 강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등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것을 멈추기 위한 의회조차 열리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아도 결함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호걸이 나와서 사적인 전쟁을 그만두자고 제창하고 이에 여러 국가의 왕이 계약을 해서 무분별하게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국제법에 의해 그 죄를 징치하자고 나카무라는 제안했다. 이것은 후에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취하게 되는 집단안전보장 방식과 연결되었다.

물론 나카무라도 이 제재를 포함하는 방식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더욱 정밀해져서 ‘완전 구비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천국처럼 된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 것이다.

나카무라는 나아가 오노와 마찬가지로 세계연방 구상도 제창했다. 그것은 미국의 연방제도와 일본의 폐번치현(廢藩置縣)·판적봉환(版籍奉還) 등의 선례에서 배운 것이었다.

즉 나카무라는 1873년에 쓴 『메리켄시 서[米利堅志序]』에서 세계에 영구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가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계에서 국명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법 하에서 편안히 생명 복리를 향유하고, 서로 동향인을 보는 것처럼 되면 싸움을 영구히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연방제도의 성과가 실례이며, 일본에서도 이전에 번(藩)으로 나뉘어 항쟁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유추해 보면 각국의 원수가 의회와 협동하여 판적봉환과 같이 각각의 토지와 인민을 하나의 공법 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영국·프랑스·스위스 등의 국명은 일절 폐지하여 하나의 국회를 세우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원래 출신국과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종래의 원한이나 시기, 의심 등도 없어지고, 합동·협화·우애·공평의 선한 면들이 생길 것이며,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을 희망한다고 서술했다. 나카무라는 세계평화란 ‘합동·협화·우애·공평’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향유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카무라의 논의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몽상의 영역에 속하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평화의회를 열어

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에는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문학자 빅토르 위고나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등이 설립한 평화·자유 동맹(Ligue de la Paix et Liberté)에 의한 만국평화회가 제네바에서 1867년부터 1876년까지 13회 열렸으며, 『메리켄시 서』 집필 26년 후인 1899년에는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로 실현되었다. 또 다수의 국가가 하나의 공법 하에 들어가 스스로의 출신지를 초월하여 관리로서 근무하는 것도 EU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실현되어 있다. 나카무라 자신은 세계연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직 수백년 후의 일’이라고 예측했지만 과연 나카무라의 예상은 맞아떨어질까.

어떻든 오노나 나카무라 이후에도 세계정부 등의 설립에 의한 전쟁 폐지 논의가 나왔다. 그 가운데 서양 법정이론이나 각국의 역사 등에 기초한 세계헌법 구상을 만들고, 나아가 현재의 일본국헌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 헌법안을 기초한 우에키 에모리의 논의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4. 우에키 에모리의 무상정법론

일본국헌법에도 영향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브레인으로서 국회기정동맹과 자유당의 창설을 진행하고, 자유민권운동을 이론적으로 이끈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¹⁰는 국민의 권리 확장을 주장해서 메이지 정부의 전제정치를

¹⁰ 역자 주 -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 메이지시대 전기의 사상가이자 자유민권론자이다. 도사번[土佐藩]의 중등 번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비판하고 일관되게 전쟁폐지의 길을 찾은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는 전쟁포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론을 16세 때 쓴 ‘싸움은 하늘에 대한 대죄를 짓는 것, 쉬이거나 만국통일의 회소(會所) 없지 않을 것’이라는 논책에서 이미 제기했다. 그 논책에 따르면 ‘싸움은 반드시 천지간의 귀하고 신령한 인명을 해친다’는 의미로 하늘에 대한 대죄라고 하여 전쟁을 부정했다. 그것은 인도주의에 의한 전쟁 부정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인간은 서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자국이거나 타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이 몇대로 경계선을 그은 것뿐이지 하늘이 구별한 것이 아니다. 즉 국제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가와 국가의 대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불합리하며 만국을 일국처럼 처리하는 기관인 회소를 통해 각국이 서로 다투고 증오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만국통일의 회소’라는 구상이 후의 ‘만국공의정부(萬國共議政府)’로 연결되는데



그림 4 우에키 에모리

1875년에 상경하여 서양 근대사상을 독학하면서 1876년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에 「원숭이 정부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는 정부(猿人政府ひとをさるにするせいふ)」를 투고했다가 2개월간 투옥되었다. 이때 민권운동의 뜻을 굳히고 출옥 후 『호남신보(湖南新報)』에 투고한 글 「자유는 선혈로 얻어야 한다는 논리(自由は鮮血を以て買はざる可らざるの論)」에서 인민의 혁명권을 주장했다. 1877년에 릿시사[立志社]에 들어가서 이타카키 다이스케를 보좌하면서 민권이론 연구와 민권운동에 생애를 바치게 된다. 『민권자유론(民權自由論)』, 『천부인권변(天賦人權弁)』 등 다수의 저작과 논설을 남겼다.

토지 자체가 국가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고 본래 인류 공유로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칸트의 ‘인류에게 공통으로 속해 있는 지표의 권리’라는 개념을 상기시킨다(→115쪽).

에모리는 그후 전쟁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심화시켜 갔다. 그 나름대로 세계사를 분석해 얻은 결론은 대외 전쟁이 많은 경우 정부가 스스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 특히 국가권력의 대외 확장을 우선하는 국권적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 책략을 사용하는 데 그 중에서도 “외전을 사건으로 하여 내국 인민이 본국의 정치를 혐오하는 사상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은 특히 미워해야 한다”(『無天雜錄』, 1883년 3월 29일)고 했다.

국민은 왕왕 정부의 책략에 농락당해 왔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외 전쟁이 내정의 실패로 인한 궁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엔 상식에 속한다. 일본국헌법의 전문이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요청한 의미도 이런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에모리가 호소했던 것은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과 국권 확장을 도모하는 정부가 존속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 전쟁을 폐지하고 세계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국권적인 정부를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주권의 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국민 권리의 확장 요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관으로부터 도출된다. 에모리에 따르면 ‘국가란 본래 민이 모여서 된 것이며, 먼저 민의 권리를 확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국권은 확장되지 않으며, 민의 독립

이 없으면 국가도 유지되기 어렵다’(『민권자유론』, 1879년)는 것이다. 국민의 집합체가 국가, 즉 ‘공공물로서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독립도, 국가의 발전도 국민의 권리 확립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이 주장은 국가의 부강이 대외 전쟁에 의해 달성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대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정책과도 대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권리를 요구하여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국력을 약화시켜 외국의 간섭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부에 맹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외국도 막기 어려운 사리와 형세 때문에 외국의 침탈·제어·모만(侮慢)·압박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國政要訣』)고 반론한다. 국민이 정부에 저항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타국의 간섭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방어력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군대가 국가를 강하게 한다는 당시의 통념과는 달리 “작은 적에 대해서는 군대에 의지할 수 있다. 큰 우환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결합력에 의지해야 한다”(『無天雜錄』, 1880년 1월 19일)고 한 것처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은 유효하지 않으며 단지 국민 전체의 결합만이 외적에 대한 최대의 저항력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존재하는 군대에는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까. 에모리에 의하면 병사는 극악이며 사용방법을 잘못 쓰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 나폴레옹 1세 등의 군대도 압제가의 공명심에 희생되어 건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정을 보조하는 기체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고래로 상비병과 인민 자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무릇 정부의 병사라고 하면 대체로 인민 자유의 적과 같이 생각한다”(『兵の本意を論ず』,

1884년 5월)고 하여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상비군이 부정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이 평시의 상비군을 고래로부터의 권리인 자유에 반한다며 부정한 것 등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1791년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 ‘인민의 무장권’은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국가의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또 휴대할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무력 독점을 부정하고 국민의 자위를 위한 무장을 권리로서 추구하는 것이었다. 에모리도 “특히 상비병과 같은 것은 정부의 기계가 되기 가장 쉽고, 그 전제를 도와 학정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고, 그 폐해가 실로 심대하다”(「兵の大旨は國憲を護衛するに在り」, 1881년 2월)며 상비병이 정비됨으로써 국민이 정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거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곤란해진 것을 비판했다.

에모리는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인민에게 유해무익한 육군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陸軍八百萬円は果して費さざる可からざる乎」, 1881년 9월). 단지 에모리는 해양국가인 일본이 외적을 막는 데는 해군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전제는 장래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군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가 타국의 침공을 막고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국왕이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국왕이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고 타국으로 출병이나 살상을 명할 경우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출병은 거의 국왕이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람들이 ‘무명(명분이 없음)의 군을 일으키고, 무고

(죄가 없음)한 나라를 정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싫어하는 곳의 인민을 토벌한다」(「兵の大旨は國憲を護衛するに在り」, 1881년 2월)고 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에모리에게 있어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집합체로서의 국민이며, 국가의 모습을 결정하는 헌법=국헌은 여론이나 위정자의 정책이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데 반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요컨대 “헌법이 국가를 위하여 가장 무겁고 국가에서 그 위치가 가장 높은 것이라면, 병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당연할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병사의 본분이며 병사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와 그 하위에 있는 군대의 양상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모리는 나아가 이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유럽의 사례에서 배워서 법에 의해 ‘병사로 하여금 국헌을 호위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이 희망해야 할 바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일본국헌법의 제 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상당한다. 헌법 존중이란 국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정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인 것이다. 환언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실행하면서 위정자에게 부과한 의무는 헌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에서 군대와 국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논의가 강했다. 입헌 정체는 “일을 급속히 할 수 없다”(演說要綱覺書, 「立憲政體極底の理」), 즉 긴급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외전을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정체’이며, 헌법에 의하지 않은 전제 정체 쪽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에모리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요구되는 성질은 승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중의 행복을 희망하는 정이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평을 바라는 뜻이다”라며, 정부가 편협한 국권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헌법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의 본질이란 ‘정부가 흔쾌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외 전쟁 등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정부에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 되는 입헌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이나 국제평화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헌법이란 위정자를 규제하고 속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위정자의 사정에 맞추어 정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헌주의의 근본원리에 대한 에모리의 이해가 나타나 있다.

에모리는 입헌적 통제의 문제를 국가 간 전쟁에 대해서도 추측한다. 그것은 인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가 생명을 빼앗고 신체에 해를 끼치고 재화를 소비하는 최대의 행위인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을 법에 의해 어떻게 폐지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기도 했다. 인명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가가 인명이나 재산을 용서 없이 빼앗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모순이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계에 헌법을 세워서 만국공의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오늘날 최대 임무”(『無天雜錄』, 1881년 1월 12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국공의정부와 국헌의 호위

만국협의정부에 대한 구상을 전개한 것이 1883년에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명의로 간행한 『무상정법론(無上政法論)』이다. 이 구상의 전제가 된 것은 1880년에 쓴 「세계 대야만론(世界大野蠻論)」이라는 세계론

이었다. 에모리는 종래엔 일국 내나 한 지방 내에만 있었던 침략이나 병합, 살육 등이 교통이나 군사력의 발달에 따라 ‘세계 전체에 걸친 장소의 야만’(『세계 대야만론』, 1880년 9월)이 되어 퍼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 ‘세계는 지금 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일국민인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람으로서’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시정해 가는 것이 ‘전 세계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역으로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행복을 키우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 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그 권리를 향유하고자 한 일본국헌법 전문의 정신과 통한다는 것은 알기 쉽다.

에모리는 그 대야만세계를 극복하는 방책으로 세계를 하나의 세계 공화국이나 세계군주국에 의한 국제법의 재편을 도모하거나, 세계를 관장하는 사법재판소를 설치하거나, 세력균형을 철저히 하거나, 아시아연합 등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등의 문제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에모리는 검토결과 각각 일시를 넘기든지, 일부의 해결밖에 되지 않아 ‘전 세계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경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모리가 가장 가능하고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무상정법론’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따르는 헌법으로서의 ‘세계무상헌법(宇內無上憲法)’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민국공의정부’로 구성된다.

‘세계무상헌법’은 침략전쟁을 억제하고 각국을 보호하고 각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각국의 상위에서 각국을 규제하는

것으로 당시의 국제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국제법은 구미 열강이 타국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이며 각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서밖에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법(死法)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란 다른 방책에 의해 약소국의 입장을 중시한 새로운 세계법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세계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더 나아가 일대 결합’을 만들어 협의하고 ‘세계의 대헌법을 세워서 각국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대 결합이 상설 ‘만국공의정부’이며 세계의 대헌법이 ‘세계무상헌법’이 된다는 것이었다.

‘만국공의정부’는 각국이 정체를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으며, 각국은 동수의 의원을 내고 헌법에 따라서 규칙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며, 경비도 각국이 부담하며, 미개 국가는 보호하여 독립시키며, 불복하면 탈퇴할 수 있지만 내정간섭은 할 수 없으며, 공의정부의 결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징벌을 받지만 국토를 몰수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대강이 37년 후에 창설된 국제연맹의 규약과 공통점이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만국공의정부’는 국가의 결합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국가로 결합되는 세계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는 풍속이나 습관, 국력 등이 다른 국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세계국가가 되는 것은 약소국가에는 실질적으로 병합되는 것과 다름없다. 세계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각의 국가 안에서 모든 국가, 나아가 개인이 독립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것보다 에모리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장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평화도 그림의 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세계무상헌법’과 ‘만국공의정부’가 실현되었을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이것을 통해 각국은 대외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도 ‘만국공의정부’가 처리하기 때문에 소국의 자율이 가능하게 되며, 각각의 국가가 자유롭게 그 나라를 작게 나누어 국민이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직여정체(直與政體)’, 즉 직접민주정치가 가능해진다. 에모리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까이서 접하고 직접 자기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행복을 실감하고 상호 이해나 책임감도 생긴다. 대의제라는 것은 대표하지 않은 것까지 대표를 강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자기책임 포기가 된다.

직접민주정치에 의해 국민주권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발상은 루소와 비슷하지만 이 ‘국토의 소분(小分)’, 즉 ‘세계의 지방분권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미래에 ‘국가의 해체’에 이르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었다. 에모리는 ‘국토의 소분’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을 규제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정치는 정치부재를 기한다’는 정치관이다.

어떻든 공의정부 하에서 ‘국토의 소분’이 진행되면 ‘마침내 나라를 해체하는 데 이르는 진보를 얻고, 오늘날 악착같은 정치법률 같은 것은 생을 마치며, 인간은 진정한 자유자주를 얻고, 지극히 온전한 아름다운 세계에서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에 이른다. 이것을 최대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물론 ‘오늘날의 추세는 아직 한꺼번에 돌연히 국가를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적 시대에서 최선의 형태로서 ‘만국공의정부’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반드시 옮겨가는 것이며 인류나 문명의 진보는 반드시 그곳에 이를 것이

라고 보았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무상정법론’이 지향한 것이 세계 대야만의 극복이었던 이상, 각국은 모든 군비를 축소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비 등으로 다소의 군대가 국가에 따라서는 남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소한 준비도 필요없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것을 폐지하는 데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에모리는 전망했다. 군비축소에서 군비철폐로 진행해 가면 각국의 사람들이 부담하던 군사비가 절약되어 비용이 방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일이 결코 의심’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복지의 증진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벌한 기풍을 제거하고 화합의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품격을 상승시키기에 이른다’고 상정했다. 이것이 에모리에게 전쟁폐지와 군비철폐가 가져다주는 평화적 공존의 당연한 모습이며, 개인의 측면에서 말하면 이러한 사회에서 보장되는 것이 개인이 모든 자유나 결핍에서 벗어난 상태=평화적 생존권으로 보였다. 그 세계는 세계평화가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충실함은 세계평화를 확실히 굳혀 가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같이 우에키 에모리의 사상은 전쟁포기·군비철폐, 국민주권, 국제협조, 평화적 생존권 등 헌법9조의 평화주의의 기축으로 연결되는 수원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모리가 기초한 사의헌법안(私擬憲法案)은 1880년대의 자유민권운동 속에서 태어난 65개가 넘는 사의헌법¹¹ 초안 중에서도 가장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것을 연구 대

¹¹ 역자 주 - 사의헌법(私擬憲法)이란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이 반포되기 전에 민간에서 검토된 헌법 초안을 말한다.

상으로 삼은 스즈키 야스조[鈴木安藏]를 통해서 현 일본국헌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¹²

에모리가 사의헌법 초안으로 「일본국국헌안(日本國國憲案)」(「동양대 일본국국헌안(東洋大日本國國憲案)」은 표지 제목)을 집필한 1881년에는 전쟁포기나 군비철폐라는 사태를 상정하여 그것을 헌법 조항으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천황의 군대’ 나아가 천황제의 부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인지 조항으로는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국국헌안」은 군대에 관해서 앞서 본 에모리의 발상을 비롯해 일본을 연방제국가 구상 속에서 군사에 관해서 천황을 대원수로 하고 연방정부와 각 주에 상비군을 두고, 동시에 각 주에 호향병(護郷兵)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상비군의 병사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징병제를 부정했다. 동시에 “일본 인민은 병사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었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사상을 반영하며 “군병은 국헌을 호위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원칙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¹² GHQ가 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일본 측의 초안 중에서 주목한 것이 다카노 이와사부로[高野岩三朗], 모리토 다쓰오[森戸辰男] 등의 헌법연구회가 작성한 「憲法草案要綱」이며, 그 집필 담당자가 스즈키였다. 스즈키는 그 초안 작업 과정에 대해 “공통의 참고 자료로 한 것은 별로 없고 오로지 동인(同人)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술적인 마무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특별한 자료라고 하면 1882년에 나온 우에키 에모리의 『東洋大日本國國憲案』이나 도사 잇시사[土佐立志社]의 『日本憲法見込案』 등 일본 최초의 민주주의적 결사 자유당의 모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쓴 것을 비롯하여 사의(私擬)헌법 시대로 불리는 메이지 초기 실로 대탄압에 항거하여 정열을 기울여 쓴 20여 개의 초안을 참고했다”(『毎日新聞』, 1945년 12월 29일)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의 규정을 유린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부를 교정하고 배제하여 헌법을 보호하는 사명을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군대에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국국헌안」의 특질은 “일본 인민은 무릇 무법에 저항할 수 있다”, “정부가 국헌에 위배될 때는 일본 인민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리가 압제할 때는 일본 인민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부가 위력으로 함부로 폭압을 드러낼 때는 일본 인민은 병기를 가지고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정부가 멋대로 국헌을 배반하고 멋대로 인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하고, 건국의 취지를 막을 때 일본 인민은 이를 복멸하여 신정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일련의 저항권이나 혁명권을 명기하고, 그 수단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무장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 외에 1793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33조 “포학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다른 권리들의 귀결이다”, 제35조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범할 때, 반란은 인민에게 또 인민의 각 부분에 있어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의무 중 가장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등에 준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군대에 헌법 옹호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국민의 저항권과 무장권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압제를 방지한다는 규정은 거의 모든 인권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대일본제국헌법에는 당연히 도입될 리가 없었다.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신민의 권리로는 “전시 또는 국가 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제31조)는 제한을 받으며,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군인에게 준행(準行)한

다”(제32조)고 하여 군대 내에서는 인권 자체가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에모리가 상정한 조항과는 전혀 이질적인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도수령(刀狩令)’ 이래, 그리고 메이지 유신 시기의 ‘폐도령(廢刀令)’에 의해 시민 무장이나 민병의 전통을 가지지 못한 일본 사회에서 에모리가 생각한 것 같은 저항권이나 혁명권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에모리의 「일본국헌안」은 군비가 위정자에게만 전속된다는 일본의 모습이 가진 문제와, 무장권과 민주주의의 기원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일본인의 사고가 가진 공백 영역을 비추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평화와 군비의 주체를 둘러싼 문제를 다룰 때 근대 일본에서도 생피에르, 루소, 칸트 등의 논의가 하나의 참조 기준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니시 아마네의 징병론과 영구평화론

영구 평화로의 도상에서

칸트의 철학에 일본에서 가장 일찍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니시 아마네 [西周]¹³이다. 니시 아마네는 ‘철학’, ‘연역’, ‘귀납’을 비롯하여 많은 학

¹³ 역자 주 -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 시마네현[島根縣] 출신의 계몽사상가. 번의 의가(醫家)에서 유학자로 신분을 바꾸고, 1853년 개항 상황 속에서 서양학으로 전환하여 난학(蘭學)을 수학하고 영학(英學)을 목표로 했다. 1863년 군함 구입을 위하여 네덜란드로 가는 막부의 사절의 일행이 되어 네덜란드에 유학하여 법률, 경제, 철학 등을 공부했다. 1865년에 귀국하여 유학중의 강의 노트 「만국공법」 등의 번역에 종사했다. 1870년 병부성(兵部省)에서 근무, 야마가타 아리토모 밑에서 근대적인 군사제도의 창설을 담당했다. 공무와 함



그림 5 니시 아마네

술용어를 번역하고 스스로도 학문의 체계화를 지향하여 『백학연환(百學連環)』을 강술하는 등 일본 근대철학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피세링(S. Vissering)의 국제법 강의록 『만국공법』이나 밀(J. S. Mill)의 『이학』 등을 역술해서 서구법정사상을 소개하고 메이로쿠사[明六社]에서 계몽활동에 종사했으며, 병부성(후의 육군성)에서 아마다 아리토모[山形有朋]의 브레인으로서 육군 군제의 정비에 힘써 「군인 훈계(軍人訓誡)」(1876년)를 기초하기도 했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¹⁴는 1861년,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인문·사회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네덜란드의 라이덴대학에 유학했다. 니시는 법률·정치·통계·외교의 학문뿐 아니라 데카르트, 로크, 헤겔, 칸트의 철학도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했다.

칸트나 생 피에르 등의 영구평화론이 니시나 나카무라 마사나오 등

께 자택에 육영사(育英社)를 개설하여 제자를 가르쳤다.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으며 밀의 저작을 번역한 『致知啓蒙(원제 *A System of Logic*)』(1875), 『利學(원제 *Utilitarianism*)』(1977) 등을 간행했다.

¹⁴ 역자 주 - 쓰다 마미치[津田真道, 1829~1903].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으로 메이지시대의 관료이자 계몽사상가. 1862년 니시 아마네와 네덜란드에 유학하여 라이덴대학에서 피세링 교수에게서 국법학을 배웠다. 1865년에 귀국하여 피세링의 강의 『국법론』을 번역하여 막부에 제출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법성(司法省)의 관료로서 「신율강령(新律綱領)」의 편찬에 참가하고, 고등법원 재판관,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1873년 메이로쿠사[明六社]의 결성에 참가하여 왕성한 평론 활동을 전개했다. 1900년 국회 개설 때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부의장을 지냈다.

에 의해 메이로쿠샤 등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메이로쿠샤 동인이었던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가 “유럽의 현철들 사이에 전투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일찍이 들었다. 이것은 전례 없이 아름다운 일이며 만국의 지극한 인(仁)이다. 그렇지만 각국이 진정으로 개명하고 나의 자주·자유 일점도 없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마도 쓸모없는 담론이 될 것이다”(「質疑一則」, 『明六雜誌』 제10호, 1874년 6월)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침 근대 일본 최초의 외정인 대만 출병이 문제가 된 당시로서는 각 국가가 자기의 이해밖에 생각하지 않던 단계로 영구평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 니시 아마네가 병부(兵賦), 즉 징병을 논하는 중에 영구평화론을 언급했다. 니시의 『병부론(兵賦論)』은 1878년 9월에서 191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내외병사신문(内外兵事新聞)』에 게재된 것으로, 세이난전쟁[西南戰爭]으로 징병이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무사계급 이상의 위력을 가지는 것이 증명된 직후의 시기, 실로 일본의 징병제가 기초를 굳혀 가는 과정에서 집필된 것이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처럼 니시의 논의는 영구평화의 양상 자체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 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 세계는 결국 이른바 영원한 평화(eternal peace)라는 무강치휴(無疆治休)로 귀결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무강치휴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리와 형세가 유도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라도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사해공화(四海共和)라는 것이다. 고로 이 사해공화·무강치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달성해야 할 결과로서 반드시 여기서 길을 들여야 할 것은 이것을 과거의 사승(史乘, 즉 史記), 세계의 과거에 비추어 줄기차게 관찰하

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영구평화가 세계 각국에 의한 평화라는 조건 하에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것은 틀림없다. 단지 문제는 사해공화가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징병제의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니시가 볼 때 인류는 약육강식에 의한 국가의 이합집산이라는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역사를 걸어왔으며 그 역사로부터 미래를 도모한다고 하면 사회공화도 당연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서력동참(西力東漸)하고, 서구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병합을 진행해 가는 단계였다. 그 속에서 주권국가 평등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은 기능하지 않았다. 약한 나라는 힘을 합쳐서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니시가 제안한 것은 일본이 중국을 돕거나 중국의 멸망을 틈타 ‘우리는 우리 아시아 동방을 합일해서 백인(白種人)으로 하여금 침을 흘리는 정세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을 중핵으로 성립하는 동아시아합일국가만이 서구에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에 따라 영구평화가 찾아오는 시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니시의 논지였다. 이러한 동서문명대결론은 그후에도 하나의 흐름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에게서 보듯이 동양문명의 챔피언인 일본과 서양문명의 챔피언인 미국과의 대결이라는 일·미전쟁론으로 연결되었다.

니시는 사해공화에 인간이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개화로 진행하면 마침내 전란에 접근한다’고 하면서 최종단계에 근접하면 할수록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쟁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격렬함을 더해 간다고 보았다. 그러나 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물

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니 니시는 ‘인간은 전쟁을 하기 위해 조직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의 본성은 전쟁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 전쟁이 없으면 생기도 없고 활기도 없어 세계상의 인류는 적멸(寂滅)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활기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국가도 전쟁을 해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를 미끄러뜨려서 국가 간 전쟁과 인간의 경쟁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끝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단지 조용한 세계 이상으로 생기가 없는 죽음의 세계=적멸이라고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구평화를 니시가 무강치휴로 번역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즉 무강이란 국가나 민족 등의 모든 경계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치휴로서 정치 기능이 멈춘 상태 이상의 내용으로는 파고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니시 자신이 영구평화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니시는 결국 칸트의 상비군 폐지론이나 세계시민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병비(兵備)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병비가 있으면 병비의 결실이 반드시 있다’, ‘병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은 병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보통의 나라는 병비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징병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을 뿐 어떻게 영구평화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육군성의 관료로서 징병제를 부정할 수는 없고, 기성의 사실을 어떻게 정당화해 갈 것인가가 니시에게 부과된 임무였던 것의 제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니시가 자신들의 운명으로 “우리 1만 년 후의 자손

을 위하여 무강치휴의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저 30리의 도중에서 한 자 정도의 생애를 저 병합·탄병(吞併)이라는 재미없는 사업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임무여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 반드시 여기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업무이다”라고 말한 것은 병합·탄병이라는, 아무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도 불응하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는 체념의 표명이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분명한 고찰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전쟁은 필연이며 그 숙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에 의한 군비확장론밖에 생겨나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병합 등 약국·소국을 희생시키는 것도 피할 수 없다는 자기 정당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생 피에르나 칸트 등의 영구평화론에 의지하면서, 영구평화론의 실현이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해 간 사람은 나카에 초민이었다.

6. 나카에 초민의 군비철폐론과 ‘사상의 씨앗’

비무장의 ‘바람이 되어라’

나카에 초민[中江兆民]¹⁵도 우에키 에모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민권운

¹⁵ 역자 주 -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 메이지시대의 자유민권 사상가. 도사번[土佐藩]의 하층무사 집안에서 태어나 번의 유학생으로 나가사키, 에도에서 프랑스학을 공부했다. 1871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1874년에 귀국하여 불학숙(佛學塾)을 열었다. 1881년 『동양자유신문(東洋自由新聞)』 창간

동에서 자유당계의 이론가였다. 그는 프랑스 루소의 『사회계약론(Du Dontrat Social)』을 한문으로 번역한 『민약역해(民約譯解)』로 중국에 ‘동양의 루소’로 알려졌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학의 연구와 함께 한학의 습득에 의해 육성된 것이다. 그는 민권사상의 보급과 전제정부 공격에 건필을 휘두른 정론가임과 동시에 “민권, 이것은 지극한 이치이며 자유평등, 이것은 대의이다. …… 이 이치는 중국에 있어서 맹자, 유종원(柳宗元)¹⁶은 일찍 이것을 간파했으니, 서구의 전유가 아닌 것이다”(『一年有半』, 1901년)라는 주장에 보이듯이 사상의 보편성과 고유성이란 무엇인



그림 6 나카에 초민

에 참가하고 1882년 불학숙에서 『정리총담(政理叢談)』 간행하여 루소의 사회계약, 인민주권을 소개하고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전달하면서 자유민권운동에 이론적 영향을 미쳤다. 1888년 이후에는 오사카의 『시노노메신문(東雲新聞)』의 주필로서 보통선거론, 부락해방론, 메이지 헌법 비판 등 철저한 민주주의 사상을 전개했다. 1890년 제1회 총선거에서 중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의회 내에서의 타협에 분개하여 사직했다. 저서로 『국회론(國會論)』, 『선거인 자각(選舉人目さまし)』 등이 있다.

¹⁶ 역자 주 - 유종원(柳宗元, 773~819). 중국에서는 류중위안, 일본에서는 류소겐으로 불린다. 중국 당나라 때의 문인으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출신지가 산시성의 하동(河東)인 데서 유하동, 하동선생 등으로 불리고, 마지막 임지와 연결지어서 유유주(柳柳州)로도 불렸다. 정계의 쇄신을 표방하고 왕숙문이 이끄는 개혁파에 참가했으나 실패하여 변경으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좌절이 그를 문학자와 사상가로서 대성하게 했다. 약 160수의 시를 남겼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어옹(漁翁)』, 『강설(江雪)』 등을 들 수 있다. 중요 저작으로는 정치를 풍자한 『종수곽탁타(種樹郭橐駝)』, 무신론적인 『비국어(非國語)』, 역사적 정치론인 『봉건론(封建論)』 등이 꼽힌다.

가를 일생을 통해서 되묻는 사색가이기도 했다.

루소를 비롯한 프랑스 사상에 통달했던 초민은 “정권을 전국 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오로지 관리가 사물화하지 않을 때는 모두 공유물이 되며, 모두 공화정치가 된다”(『君民共治之說』, 1881년)고 논하고 있듯이 천황제를 취하는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국민의 공유물로서 국가의 내실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최대의 사상과제로 삼았다. 그것은 또 평화론이나 군비론에서도 국민의 공유물인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초민이 1887년에 공간한 『삼취인경론문답(三醉人經論問答)』에서 생 피에르나 칸트 등 유럽의 평화사상사의 계보 소개에 열정을 바친 것도 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물론 『삼취인경론문답』이라는 저작 자체가 다른 입장·사상에 설정된 3자가 토론함으로써 상호 논의의 모순을 추궁하면서 일본이 취해야 할 외교 경로나 정책 원리를 복수의 시각에서 인도하려는 시도로 거기에 기술된 논의가 모두 초민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러 자신의 반대자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양학신사(洋學紳士)’의 평화론이나 군비론이 가장 빈번하게 초민 자신의 사상을 나누고 있는 것은 뒤에 보듯이 초민 본인의 논책에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양학신사’는 어떠한 평화 구상을 담고 있을까.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약간 장문이 되었지만 그 유지를 따라가 보자.

유럽 국가들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민주제가 아닌 나라가 많을까요. 왜 극히 도덕에 반하고 경제의 도리에 등을 돌리고 국가 재정을 파먹는 수 만·수백만 명의 상비군

을 축적하고, 껌데기일 뿐 알맹이가 없는 공명을 경쟁하는 목적만으로
죄없는 국민끼리 서로 죽일까요. 이러한 문명국에 대하여 문명의 진보
에서는 뒤쳐진 한 소국인 일본이 아시아의 구석에서 자신을 가지고 일
어서서, 일거에 자유와 우애의 경지에 뛰어들어 요새를 파괴하고, 대포
를 녹이고, 군함을 상선으로 만들고, 병사를 양민으로 만들고, 오로지
도덕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업기술을 연구하고, 단지 순수하게 철학을
공부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문명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 국가 사람들은
과연 부끄럼이 없을까요. 만약 그들이 사리가 없고 흉악해서 부끄러움
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이 군비를 철폐한 것을 틈타서 난폭하게 침
공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칼도 손에 들지 않고, 한 발의 총알도 없이, 예
의를 다해서 영접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검을 휘둘러 바람
을 자르고자 해도, 검이 아무리 예리해도 가벼워서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어떻게도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바람이 됩시다. ……

소국인 우리들은 우리가 내심으로는 동경하면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무형의 도의라는 것을 가지고 왜 군비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유
를 군대로 하고, 군함으로 하고, 평등을 요새로 하고, 우애를 검이나 총
포로 할 때, 여기에 적대하는 것이 세계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전쟁포기·군비철폐를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실행하고 나
라 전체가 도덕과 학술·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전후 일
본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을 가지고 맞이한 ‘문화국가’론과 완전히 같
은 국가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¹⁷ 그것이 헌법9조의 이념과 곧바로

17 전전의 ‘군사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패전 후 민주주의의 철저와 그에 따른 세
계 공헌을 지향하는 ‘문화국가’론이 제창되었는데 명확한 국가상은 제시되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포기·군비철폐라는 주장은 헌법9조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60여 년 전에 일본인 자신에 의해 이미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타국이 소망하면서도 실행할 수 없었던 전쟁포기·군비철폐로 일본이 술선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그 의의를 설득하는 문장은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는 헌법 전문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었다.

이 비무장·비폭력에 의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발상은 생 피에르, 루소, 칸트 등이 제창한 영구평화론과는 다르며, 그 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창도(唱導)하게 되는 사티아 그라하(사티아는 진리, 그라하는 파악·견지(堅持). 비폭력적 저항을 의미한다) 운동이나 아힘사(불살생·비폭력)에 의한 불복종이라는 행동과 서로 닮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민은 유럽의 영구평화론 중에서도 생 피에르나 칸트 등에게 시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설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설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하고 나서, 전쟁 폐지에 의한 영구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민주제도를 만들고 그후에 세계 각국을 합쳐서 일대 연방을 조

않았다. 『삼취인경론문답』에는 ‘양학신사’의 의견으로서 군비철폐에 의해 타국을 침범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나라 전체를 도덕의 정원으로 만들고 학문의 밭으로 만든다’, ‘시험적으로 이 아시아의 소국을 민주·평등·도덕·학문의 실험실로 만들고 싶다. 어찌면 우리는 세계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천하태평, 만민행복이라는 화합물을 증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등의 국가상이 제시되어 있다.

직해야 한다고 하는 ‘유럽 학자들’의 설에 깊이 찬동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의 논의를 부연하면서 전쟁을 하여 재해를 입히고, 군비를 지출하고, 전후에 국채 상황을 맡는 것은 국민인 이상 국민이 주권자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전쟁포기와 국민주권 및 민주제와의 밀접한 관련에 강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초민이 일관해서 추구한 ‘국민의 공유물로서의 국가’의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또 인류에게 토지는 공유물이며 ‘세계 만국이 모두 우리의 택지이다’라고 말하는 등 칸트의 세계시민법에 있어서의 ‘인류에게 공통으로 속한 지표의 권리’와 같은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도 공공물로서의 국가를 ‘인류의 공유물로서의 지구’로 확장시키는 발상이겠지만 당시의 독자에게는 의표를 지르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양학신사’ 논의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무리 기피해야 하는 것이라도 인간이 투쟁 본능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전쟁이 있는 이상 유럽 국가들에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군비를 증강해서 가까이 있는 중국을 병합하고 그에 따라 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호걸군(豪傑君)’의 의견이 대치되어 있다. 이것 또한 실제로 근대 일본이 걸어가게 될 길이었지만 그 파탄의 결과로 일본국헌법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 초민의 ‘양학신사’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평화론에서는 상비군 철폐나 전쟁포기는 다루고 있지만 칸트가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유보했던, 국민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자신과 국가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비한다는 민병론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 이 ‘국민의 무장권’과 관련된 문제는 초민이 ‘양학신사’의 비무장론의 저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초민이 『삼취인경론문답』에서는 만일 타국이 공격해 와도 국민 각자가 스스로 저항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학신사’에게는 철저한 비폭력·무저항주의에 의해 도의적으로 탄핵한다는 방법을 말하게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에 쓴 「토저병론(土著兵論)」¹⁸에서는 유럽이 식민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상에서 군비철폐에 의해 도덕과 경제에 전념하는 것은 정의이기는 하지만 곧바로 군비철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있다. 금전 지불에 의한 징병 면제 등에 의해 징병제의 부담이 하급계층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불평등을 배제하고 상비군 유지를 위한 쓸데없는 재화를 절약하기 위한 ‘평민 평등과 조세부담 배제’의 관점에서 상비군을 폐절하여 토착 민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논책의 초점이었다. 즉 상비군 폐지 수단으로 토착 민병이 제안된 것이며 이 논책에서도 생 피에르나 칸트의 ‘만국평화설’이 평민 평등과 군사비 폐지에 의해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삼취인경론문답』에는 국가와 전쟁과 기본적 인권의 관계나 아시아정책론 등 여러 가지로 그 후 일본의 행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또 칸트가 공화제와 민주제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에 대한 초민의 이해 문제 등 논점이 많지만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첫째, 유럽의 국제법학자가 ‘진격(정복)은 불의이지만 방어(자위)는 정의이다’라고 주장하는 설에 대한 ‘양학신사’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이

18 역자 주 - 土著는 토착민, 원주민을 뜻한다. 토저병은 토착병을 말한다.

것은 국가의 자위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화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이 정당방위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도 정당방위의 권리로서 자위권을 가진다는 것처럼 국가에 그대로 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양학신사’는 이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국가가 자위라고 칭하고 싸울 때는 이미 진격의 요소가 포함되며, 실제로도 상대국에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자위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국가자위권에는 ‘상대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나쁜 짓을 한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것이 비폭력·무저항에 의해 적에게 살해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의해 ‘전 국민을 살아있는 도덕이라고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장래의 사회에 모범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양학신사’의 논리로 연결되어 간다. 이 국가의 자위권을 부인하는 논의와 국민의 저항권과 자위권의 관련이라는 논점도 헌법9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삼취인경론문답』에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양학신사’ 논의에 대해서 초민의 다른 한 분신인 ‘남해선생(南海先生)’은 세계평화의 사상이 바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당시에도 ‘완력주의(腕力主義)’에서 ‘도덕주의’의 세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인정하면서, 사상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제2의 논점이 되는 ‘남해선생’에 의하면 ‘사상은 씨앗이며 뇌수는 논밭이다’. 그리고 사상은 사람들의 뇌수에 저축되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사업이 되어 나타난다.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사상이 사업을 낳고 사업이 또 사상을 낳는다는 역동성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람이 그 사상을 실현하고자 생각하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책에 써서 그 씨앗을 뿌려 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

이 수백년 후에는 나라 전체에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파하는 것이다. 초민 자신도 군비 증강이 국론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군비철폐가 즉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상의 씨앗을 뿌려서 그 실현을 후대로 연결시켜 두는 것을 일부러 또 다른 자신에게 설득하고 권고함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들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가공 정담(鼎談)의 형식을 취한 『삼취인경론문답』으로는 초민 자신의 생각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후두암으로 여명 1년 반이 선고되고 병상에서 기록한 『일년유반(一年有半)』에는 ‘생전의 유고’로서 육성이 담겨 있다. 거기에서는 “인민인 자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않으면 또한 정치가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을, 정치가가 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쓸데없는 것이며 결국 자신이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초민은 후사를 맡기듯이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나 제자인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이 결성한 이상단(理想團)과 접촉하여 말하고 있다.

이미 이상이라고 한다. 설령 그 세력이 오늘날 행하지 못하는 것, 즉 전적으로 도리와 정의가 올바른 것도, 이것을 말을 하고 글로 쓰고, 몇 날 몇 년이라도 반드시 이것을 실행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 즉 자유, 평등, 박애 그 외 만국과 격리하는 곳의 경계를 철거하고 전쟁을 멈추고, 화폐를 하나로 하고, 만국 공통의 관청·정치를 만들고, 토지소유권 및 재산세습권을 폐지하는 등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지(大地)이다.

여기에는 토지소유권과 재산세습권의 폐지라는 사회주의적 요구가

들어와 있으며 고토쿠 슈스이로 이어지는 사상의 수맥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눈을 끄는 것은 만국의 경계를 폐지하고 공통의 정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폐지한다는 주장을 대지(大志)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초민이 생 피에르나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고 나아가 차세대로 넘겨주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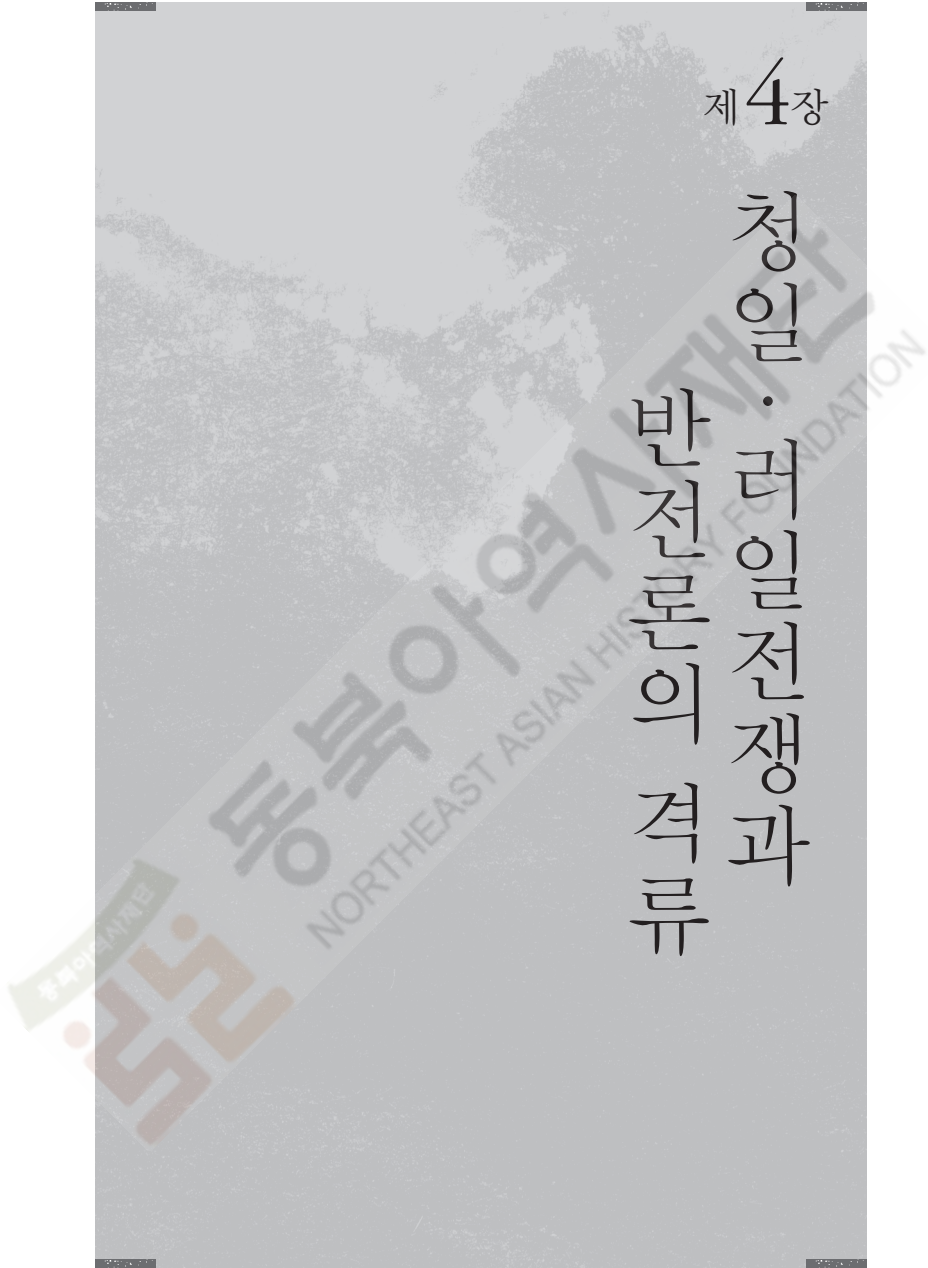
초민은 이어서 말한다.

이 대지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옥중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며, 도리와 정의를 모르는 미친놈의 칼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속의 영예나 지위의 유혹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면서 건투를 바랍니다. 나도 '또 석비 뒤에서 훗날 손을 들어 이것을 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민이 글을 남기고 죽은 1901년 5월, 마치 그 격려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것처럼 고토쿠 슈스이와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등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군비철폐'를 강령으로 삼는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 같은 해 고토쿠 슈스이는 애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이루어진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二十世紀の怪物 帝國主義)』를 간행했다. 초민가 기대를 걸었던 고토쿠나 우치무라 간조 등 이상단 출신자가 '전쟁을 폐지한다'라는 뜻을 이어 그것을 반전론으로서 본격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은 2년 후인 1903년의 일이었다.

제 4 장

청일 · 러일 전쟁과
반전론의 격류



전쟁의 시대와 반전론의 분출

주권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국민군에 의한 전쟁은 적국을 굴복시켜 자국의 영광을 고양시킨다는 내셔널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적에 대한 감정적인 증오를 격화시켜 가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국민군에 의한 전쟁으로 이행하는 전기가 된 나폴레옹전쟁에서, 특별히 높은 살상 능력을 가진 신병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약 24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민이 스스로 결사를 조직하여 정부에 평화유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1815년 나폴레옹전쟁 종료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816년에는 런던에서 퀘이커 교도인 알렌(W. Allen) 등에 의해 유럽 최초의 평화협회(Peace Society)가 설립된 후 유럽 각지에 평화협회가 생겨났다. 또 미국에서는 1815년에 퀘이커 교도 도지(D. L. Dodge)가 뉴욕에서 평화협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동종의 협회들이 생겼으며, 1828년에는 이들 단체가 미국평화협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1848년 처음으로 국제적 규모의 만국평화회의(헤이그 평화회의와는 다른 것)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이후 거의 매년 열렸다. 이들 평화단체와 국제회의는 평화사상의 보급을 도모하면서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조약의 체결과 중재기관의 설치 운동을 진행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희구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당시는 국제법상 전쟁합위무차별론의 시대로 전쟁 자체가 위법이 아니었고, 단지 교전 규칙을 지키는 것만 요구되었다. 그리고 불평등조약 하에 있던 일본은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

해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외교문제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주권국가는 자유롭게 전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승전국은 배상금이나 영토 등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쟁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국운을 걸고 싸우는 국민전쟁을 반대하거나 전쟁 자체의 폐지를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저항과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적이었던 전쟁관을 뒤집는 사상적 노력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어, 사회의 흐름을 바꾸어 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시대는 일본에서 반전론이 물밑에서 표면으로 분출된 시대이기도 하다.

1. 반전론의 저류 - 청일전쟁으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동과 일본평화회

외부로부터 주권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근대 일본에 국제분쟁의 중재제도와 국제조직이라는, 평화를 향한 움직임도 해외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평화와 중재’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권유원이 파견됐다. 일본에는 1889년 8월 런던평화협회의 윌리엄 존스(W. Jones)가 방문하여 일본 최초의 평화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 찬동하여 일본에서도 선교사인 브레스웨이트(G. Braithwaite) 등의 후원으로 1889년 평화협회(후에 일본평화회)가 결성됐으며 잡지 『평화』도 1892년에 창간되었다.

이 잡지의 주필과 편집인은 문학자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¹와 가토 가즈하루[加藤萬治]였으며, 잡지에는 구미의 평화운동·의회 활동과 1866년 설립 이래 ‘설령 방위전쟁이라도 모든 전쟁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해온 만국평화연맹(Universal Peace Union) 등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간행된 보고서를 2개월 후에 보도한 것으로, 평화운동이 이미 국제적인 연동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기타무라 도코쿠

물론 1889년 당시 일본에서는 평화운동이 신기한 것이었으며 이 운동을 기독교적인 정신운동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강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도코쿠도 『평화』의 발행사에서 “평화라는 문자가 매우 새롭고, 기독교 세계 밖에서는 더욱 참신하다. …… 사람의 의식 세계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평화’로운 것은 반드시 원대한 문제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적어도 기독교의 가르침 하에서는 사해가 형제라는 진리를 받

¹ 역자 주 -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 1868~189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오다와라[小田原]의 몰락 사족 가문 출신이며 문예 평론가, 시인, 평화주의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1883년에 도쿄전문학교(현재의 와세다대학) 정치과에 입학했다. 자유민권운동에 참가했으나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를 계획하는 등 현실에 절망하고 운동을 그만두었다. 결혼 다음해인 1889년에 서사시집 『소슈노시[楚囚之詩]』를 자비로 출판했다가 출판 직후 후회하고 이를 회수했다. 1891년에 『호라이쿄쿠[蓬萊曲]』를 자비 출판했다. 그는 근대적인 연애관 등 낭만주의와 평화주의 사상을 담은 글들을 『문학계(文學界)』, 『평화(平和)』 등에 기고했다. 1894년 25세에 자살했다.

들며, 이 천리를 깨는 나라들이 서로 해침으로써 인류의 치욕에 이보다 깊은 것은 없다고 믿는다. …… 전쟁은 정치가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흐려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밝히고 있듯이, 평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독교의 평화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발생사는 전쟁의 원인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평화사상은 일본의 전통과 관계 없는 외래 사상이라고 배척할 때의 근거가 되고 전쟁이 개인의 내면성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만방의 사상은 서로 인접할 때가 되고, 동서남북의 구별은 정치 지도 위에서나 보이며, 내부 문명에는 이와 같은 지도가 없다” (『일종의 양이사상』, 『평화』 제3호, 1892년 6월)고 서술한 것처럼, 도쿄쿠에게는 평화사상이나 평화운동을 세계 각국의 문명이 국경을 넘어 긴밀하게 일체화해 가는 데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그것은 단지 사상으로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학자 칸트가 처음으로 만국중재를 주창하고부터 얼마간 유럽의 사상이·종교가·정치가 등이 실제로 평화의 중재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평화는 국제 중재제도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세계가 그러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해도 일본이 대외전쟁에 직면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화사상이나 평화협회 등은 일본에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도쿄쿠가 “사람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만약 실재가 가짜와 거짓인 경우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나는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 괴로울 것이다. 이상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설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평화』는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 등을 소개하고, 국제중재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각국 평화협회나 만국평화회의의 연혁 등을 실었다. 또 “이제 복수의 시대는 지났고, 그리하여 전쟁도 드디어 줄어든다. 종교에 거는 희망은 개인의 복수를 그치고 국민 간의 전쟁을 단절시키는 것이다”(『復讐と戦争』, 『平和』 제12호, 1893년 5월)라며 전쟁폐지를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를 재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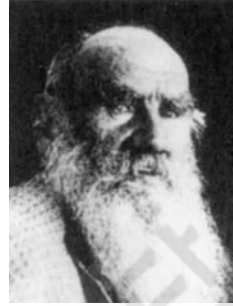


그림 2 톨스토이

확실히 평화는 국가 간 전쟁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에게 어떠한 심신 상태가 되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물어야 한다. 도쿄쿠는 평화가 개인에게 ‘원만한 종극(終極)의 천지(天地)’라는 정신성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에 동조하고 「톨스토이 백작」(제2호) 등의 논설을 씌으로써 반전사상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되었다. 도쿄쿠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번역해 『평화』에 게재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1894년 5월 자살하고 말았다.

톨스토이의 반전사상

『전쟁과 평화』의 번역은 환상으로 끝났다. 하지만 2004년 7월 사망한 기타미카도 지로(北御門二郎)(톨스토이의 우수한 번역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짐)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반전사상에 기여한 톨스토이²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³

톨스토이에서 보이는 반전사상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심

리적인 저항으로서의 휴머니즘에 기초한 것으로, ‘악으로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전쟁이라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악의 수단을 취하면 스스로가 악에 빠지고, 그 악의 반항을 불러일으켜 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영원히 반복된다. 즉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악을 절대로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톨스토이는 악 중 악인 전쟁을 막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폭력의 도구인 군대나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조세를 납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에 대해 틀림없이 탄압할 것이라면서, 그때는 모든 국민이 감옥에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모두를 감옥에 보낼 수 없으며,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때는 군대도, 군대를 만들고 유지하는 재정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처럼 톨스토이는 극단적이고 기경할 논리를 즐기는 슬라브 민족이라고 비판하고 ‘양식 있는 일본 민족’은 톨스토이에게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충기를 불태우고 병역을 거부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결코 사람을 살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관철한 사람들이 실재했다. 이들은 톨스토이가 필사적으로 감싸고 캐나다로의 이주

-
- 2 역자 주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 1828~1910).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사상가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바보 이반』 등의 작품이 잘 알려져 있다.
 - 3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이 근대일본에 끼친 충격의 모습들과 평민사(平民社)나 아베 이소오 등의 교류에 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日露戦争の世紀-連鎖視点からみる日本と世界』, 岩波新書, 958쪽 참조.

를 계속 원조했던 두호보르파 교도들이다.

이들이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연하게 객관화된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그 이론이나 사상을 생성시키는 원천인 윤리관, 행동을 지지하는 신조, 타자를 포함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감각일 것이다.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을 낳는 사회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그에 따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확실히 전쟁은 국가가 시작하는 것이며, 그 국가를 움직이는 경제제도 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전쟁폐지는 영원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 전쟁이 끝난 후에도 증오와 원한이라는 심리적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심리의 연쇄가 새로운 전쟁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반전사상의 근원으로서 신조의 문제와 전쟁을 낳는 메커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일본평화회에서도, 평민사에서도, 나아가 일본 근대를 관통해서 심각한 대립점이 되었다. 일본평화회에서는 당초 평화를 개인의 문제로 추구했지만, 점차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 등이 아니라 ‘노역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대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견해가 강해졌다. 이는 영국 평화협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가 등 지배계급이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고 병역에 징집되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인식이 표명된 것이다.⁴

⁴ 1892년 3월 일본평화회의 잡지 『평화』와는 별도로 뱍티스트청년회가 잡지 『平和(おだやか)』를 창간했다. 뱍티스트청년회는 ‘개인주의적 평화’를 추구하

일본평화회의의 행방

도코쿠 사망 3개월 후,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신앙을 기초로 국가 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회원, 전쟁을 낳는 사회제도 자체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회원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다. 결국 일본 평화회는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분열했다. 하지만 브레스 웨이트와 일본인 유지 몇 명은 ‘대일본평화협회(Japan Peace Society)’를 설립하여 「전쟁의 참상」, 「사람은 모두 형제이며, 형제는 전쟁을 해서 는 안 된다」, 「조정은 논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등을 번역 하여 실은 『평화문제답안평화잡지(平和問題答案平和雜誌)』를 일본 각지의 교회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등 반전운동을 계속했다.

국운을 도박처럼 전쟁에 걸어서는 안된다고 절규하던 기독교도들도 대응이 엇갈렸다.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 등은 “교회원은 어찌 주인공이 되어 이 운동을 주도하지 않는가. 기독교의 명사들, 왜 스스로 일어나 이 운동을 주도하지 않는가. 이것은 황금의 기회가 아닌가”(「何ぞ廣島へ行かざる」, 『福音新報』, 1894년 11월)라고 주전론을 고조시키는 운동을 폈다. 우에무라의 입장에서 보면 “퀘이커 교회의 사람들, 평화회의 회원은 전쟁의 기운이 하늘에 닿는 오늘날에 공공연하게 그 주의를 선언하고 그 회칙의 제재를 엄격하게 해서 회원을 도태하고 반전론을 위한 기업을 토한다. 우리는 원래 그 주의를 반대한다. ……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설에 반대하고자 한다”(「平和會」, 『福音新報』, 1894년 10월)

고 일본평화회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중재제도 등으로 국가 간 전쟁을 폐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평화’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 비판한 것처럼 평화회 등이 설파하는 반전론은 강한 반대를 부를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독교 회파들의 비판뿐 아니라 잡지 등의 간행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심하자 일본평화회는 청일전쟁 중 활동을 정지했다. 참고로 일본평화회의의 가토 가즈하루[加藤萬治] 등은 러일전쟁 후인 1906년 4월에 다시 대일본평화협회를 결성했다. 에바라 소로쿠[江原素六]가 초대 회장을, 1910년부터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제2대 회장을 맡은 대일본평화협회는 “평온 수단으로 국제 쟁의의 해결을 촉진하고, 이로써 세계의 영구보편적 평화를 확보 증진한다”(「大日本平和協會憲法」)는 운동을 추진했다. 가토는 그후에도 평화사상 보급에 진력하다가 193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계 항구평화의 확립’의 실현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다.

통상 일본에 반전론이 등장하는 계기는 러일전쟁이지만 우에무라의 문장에 밝혀져 있듯이 평화회의 사상이나 운동은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청일전쟁 때에 이미 ‘반전론[非戰論]’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 평화협회와의 사상적 연계 속에서 생긴 일본평화회가 중시하던 중재기구 설립 구상은 청일전쟁 종결 4년 후인 1899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열린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조약’에 의해 상설 중재재판소 설립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 청일전쟁 후의 군비철폐론

승전에 대한 회의와 사회 문제의 발생

1894년 8월 ‘조선의 독립을 완성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적과 ‘평화를 위한 전쟁’을 명분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됐다. 목적에서 보듯 이미 반전론은 주창되었다. 그러나 근대 일본 최초의 대외전쟁인 청일전쟁에 대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⁵가 “청일전쟁은 문명과 야만과의 전쟁이다”라며, “우리의 목적은 단지 전쟁에 이기는 데 있을 뿐, 전쟁에 승리를 하여 우리의 국권을 신장시켜 우리의 동포인 일본 국민이 세계에 어깨를 펼 수 있는 유쾌함이 있다면 국내에서 어떠한 불평부조리가 있더라도 이를 논할 여유가 없다”(『日本臣民の覺悟』, 『時事新報』, 1894년 8월)고 고무한 바와 같이 언론계에는 주전론이 대세를 이루어 갔다.

그러나 승전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에 의하여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패전 이상의 굴욕감을 안게 됐다. 이것은 ‘와신상담’을 구호로 하는 새로운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편 조선에 독립을 가져오고 동양에 평화를 가져 와야 할 청일전쟁에서 일본

⁵ 역자 주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메이지시대 초기의 계몽 사상가, 교육자이다. 부젠[豊前]의 나카즈번[中津藩]의 번사(藩士)로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오사카의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에게서 난학을 배워 에도에 난학숙(蘭學塾, 나중의 慶應義塾)을 개설했다. 세 번에 걸쳐 막부의 사절을 수행하여 구미를 시찰했다. 유신 후에는 신정부의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고 교육과 계몽 활동에 전념했다. 메이로쿠샤[明六社]를 설립하고 『시사신보(時事新報)』도 창간했다. 저서로는 『서양사정(西洋事情)』, 『학문을 권함(學問のすすめ)』,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 『후쿠옹 자전(福翁自傳)』 등 다수가 있다.

이 영토 확대를 노리는 제국주의적 행동을 취한 것은 국가에 의한 전쟁에 대한 의심과 군비확장에 의한 ‘무장적 평화론’에 대한 반성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적으로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전후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전장과 공장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군비확장을 위한 조세 징수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였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난 뒤 사회운동의 무대가 열렸다. 기업열의 발흥, 대공업의 신건설, 임금노동자의 급증, 군비확장, 조세 증징, 물가등귀, 영세노동자의 곤궁. 노동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고, 식자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石川三四郎 編, 『日本社會主義史』, 1907년)고 지적되고 있듯이 사회 문제의 분출은 그에 대응하는 조직의 구성을 촉진했다. 청일전쟁 이후 구와다 구마조(桑田熊藏) 등에 의한 사회정책학회(1897년 4월)와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⁶ 등에 의한 사회문제연구소(1897년 4월), 일본 최초이자 본격적인 노동조합인 철공조합(1897년7월) 등이 잇달아 생겼으며 보통선거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아베 이소오[安部磯雄]·가타야마 센[片山潛]·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의 주도로 사회주의연구회가 설립(1898년 10

⁶ 역자 주 -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 1850~1922]. 나라현[奈良縣] 출신으로 급진적 민권사상가, 대아시아주의자이다. 서남전쟁 때는 사이고 다카모리 쪽에서 활동했으며, 1882년 나가사키현[長崎縣] 시마바라[島原]에서 동양사회당을 결성했지만 금지당하고, 이듬해 동 당의 규칙 초안을 배포한 죄로 금고형을 받았다. 1884년 청나라로 건너가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 나가에 초민[中江兆民] 등과 함께 상하이에 동양학관을 설립했으며, 조선독립당의 김옥균을 돕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을 통해 한·일 양국은 합방하여 대동국(大東國)을 만들고, 청나라와 연합하여 서양 열강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월)되어 사회주의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1901년 5월에는 아베·가타야마·고토쿠를 비롯해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가와카미 기요시[川上清]·니시카와 미쓰지로[西川光二郎] 등이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

사회민주당의 군비전폐 강령

사회민주당은 ‘순연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의해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전 세계에 평화주의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사회민주당은 ‘이상강령(理想綱領)’에서 ‘만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군비를 전폐할 것’을 중요 과제로 제기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의 지침인 ‘행동강령’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쟁은 원래 야만의 유풍이어서 명백히 문명주의와 반대되는 일이다. 만약 군비를 확장하여 하루아침에 외국과 충돌한다면 그 결과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다행히 승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그 공을 믿고서 전횡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무단정치를 행할 것이다. 이는 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명백한 일이다. 만약 불행히 우리나라가 패전국이 된다면 그 참상이 어찌할지는 불문가지다. 옛 사람들은 군대를 흥기라고 지적했다. 오늘날과 같이 만국이 이해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군비를 축소하여 점차 전폐하는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이는 군비전폐·전쟁폐지를 처음으로 호소한 정당 강령이다. 청일·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결말을 알고 있는 현재에서 본다면 이 전망은 정확한 것이었다.

일본 사회민주당의 강령은 ‘최대한 강령’과 ‘최소한 강령’으로 구성된 독일 사회민주당의 1891년 제정 에르프루트 강령을 본떠 ‘이상강령’과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사회민주당의 ‘행동강령’의 주요 사항은 ‘일반인민의 직접투표’를 비롯해 보통선거법의 실시, 사형의 전폐, 치안경찰법의 폐지, 귀족원의 폐지 등 28개였다. 천황제 부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이 같은 강령이 『요로즈초호[萬朝報]』, 『호치신문[報知新聞]』, 『마이니치신문』 등 신문과 『노동세계』 등 잡지에 게재되자,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서 번개소리를 듣는 것처럼 놀란 눈을 뜨고서 이를 받아들였다”(石川三四郎 編, 『日本社會主義史』, 1907년)고 한다.

이 강령이 인쇄되기 전에 관할 경찰서의 서장이 아베를 방문하여 강령 중 군비철폐 축소, 일반인민투표제, 귀족원 폐지의 세 항목을 삭제한다면 당을 조직하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내부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베는 “어디까지나 이상주의로 나아갈 결심이었기 때문에 이들 3개조를 삭제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라고 생각하여 단연코 이를 거절”(安部, 『明治三十四年の社會民主黨』, 『社會科學』 제4권 1호, 1928년 2월)했다고 한다. 사회민주당은 이 때문에 예고된 대로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즉시 결사 금지처분을 받았다.

이리하여 군비철폐를 명확하게 강령에 제시한 사회민주당은 결당과 동시에 해산을 명령받았다. 이 때문에 사회민주당을 창당하지 못한 아베 이소오 등은 사회주의협회를 재결성하고 반전 강연회 등에서 군비전폐를 설파해 나갔다.

마루야마 간지의 무장적 평화부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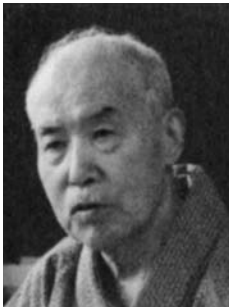


그림 3 마루야마 간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아니 그 승리 때문에 정부는 더욱 더 군비를 증강해 통치지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은 압살되었지만, 억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반대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아버지인 마루야마 간지[丸山幹治]⁷(1880~1955)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충실한 군비가 불가결하다고 하는, 어느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평화를 위한 무장’, ‘무장적 평화(armed peace)’론을 강력 비판했다.

전쟁이라든가 무장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 인민을 끌어 모아 비생산적인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국민의 생산력으로 이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생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武装的平和の弊を論じて戦争に及ぶ〕, 『日本人』 제417~419호, 1901년 9월~10월)

그는 또 “무릇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죄악이다. 국가는

7 역자 주 - 마루야마 간지[丸山幹治, 1880~1955]. 나가노현 출신의 신문기자이며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아버지다. 도쿄전문학교(현 와세다대학) 졸업 후 『일본』의 신문기자가 되었다. 이후 『경성일보』 편집장을 거쳐 1909년 오사카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했다. 1918년 필화사건으로 퇴사한 후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에 참가했다가 파탄난 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으로 옮겼다. 1928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으로 옮겼으며 칼럼 「여록(余録)」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어떠한 정당한 권리가 있기에 그와 같은 살인의 폭거를 감히 하는가. 군대는 국가의 살인죄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며 조직적 살인을 확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마루야마는 ‘상비군은 항상 일국의 부패 발원지라는 것에 의심할 나위가 없다’며, 군대가 국가의 존립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예로 들어 논했다. 이어 무장적 평화론이 국가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마루야마는 칸트가 『영구평화에 대해서』를 집필한 이후 ‘역사는 인간이 차츰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희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적십자를 비롯하여 만국우편동맹이나 국제위생위원회 등 국제행정기구의 정비 사례, 19세기에 중재 재판으로 50건에 육박하는 국제분쟁이 해결된 점, 헤이그 평화회의 등의 예를 들었다. 그는 세계가 이렇게 하여 점진적이지만 세계평화의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칸트의 논의도 유토피아인 게 아닌 시점에 일본이 군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사회가 영구히 아수라장에 머물도록 하여 세계를 망집(妄執)으로 모는 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권 확장을 기조로 하는 잡지 『일본인』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러일전쟁 개전을 향한 군비확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군비확장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1903년 8월 『일본인』에 고토쿠 슈스이도 「반전론」을 게재할 수 있었다.

이상단과 다나카 쇼조의 무전주의

이러한 군비철폐론이 등장한 1901년 7월, 나카에 초민이 기대를 걸었던 고토쿠 슈스이,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그림 4 다나카 쇼조

등이 결성한 이상단(理想團)의 ‘평화의 격문’이 『요르즈초호』에 게재되었다. 같은 달 12일에는 “이상적인 일본,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상관없다. 지금은 역신(逆臣)이라고 불려도 국적(國賊)이라고 불려도 좋다”(「我が日本の理想」)고 단언하는 우치무라 간조의 호소문이 게재되었고,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성원이 이상단에 답지했다. 이상단은 ‘최후의 이상은 평화’라고 주창하면서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을 소개하고, 그 이상의 실현수단인 보통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갔다.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의욕을 보이며 아시오광독사건[足尾鑛毒事件]⁸에 대한 여론 환기와 광독지 시찰 지원 등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아시오광독사건 해결에 분골쇄신하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⁹가 제출한 천황직소문의 원문을 고토쿠가 집필하는 등 양측은 밀접

8 역자 주 - 아시오동산[足尾銅山]에서 유출된 광독(鑛毒) 피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와타라세[渡良瀬]강 유역의 농민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청원·반대운동이 전개되어 1880년대 후반부터 40년에 걸쳐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중의원 의원이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가 국회에서 정부를 추궁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의원직을 사직하고 천황에게 직소를 했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이 운동은 탄압을 받고 퇴조했지만 일본에서 공해운동의 원점이 되었다.

9 역자 주 -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 도치기현[栃木縣] 출신 중의원 6선 의원인 메이지시대의 정치가로 아시오동산[足尾銅山] 광독(鑛毒) 사건의 고발자로 유명하다. 1879년 자신이 창간한 『도치기신문[栃木新聞]』을 통해 국회 개설이 시급하다고 설파했다. 1880년 민권결사를 조직하여 국회 개설 건의서를 원로원에 제출하는 등 민권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1891년 제2의회에서 아시오동산의 광독 피해에 대한 질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이래 이 문제를 일

한 교류를 이어갔다.

다나카 쇼조는 중의원 의원으로서 아시오광독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1900년 2월 피해농민들이 청원을 하던 중 흉도소취죄(凶徒嘯聚罪)로 51명이 체포·기소된 가와마타[川俣]사건¹⁰ 등에 대한 조치에 항의하여 의원직을 사임한 뒤, 1901년 12월 다른 방도가 없어 천황 직소(直訴)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다나카가 고토쿠에 대해 사상적으로 전면 동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비철폐나 전쟁포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토쿠보다 앞서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고토쿠가 반전론을 명확하게 표방한 것은 1903년 8월부터이다. 쇼조는 “세계 육·해군 전폐론은 내가 신의 섭리에 따라 지난 1902년에 투옥되어 41일째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즈음 성서를 통독하며 군비가 불가하다는 확신을 하고부터 시즈오카·도쿄·도치기의 1부 2회에서 5회에 걸쳐 이러한 확신을 강연했다”(「陸海軍全廢」, 1913년 3월 31일)고 말하고 있듯이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1902년쯤부터 세계 육·해군전폐론을 폈다고 한다.

쇼조는 러일전쟁 개전 전에도 “광독 문제는 대러 문제의 선결 문제

관되게 추궁했다.

¹⁰ 역자 주 - 가와마타[川俣]사건은 1900년 2월 13일 아시오광산에서 유출된 광독으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광산의 영업정지를 직접 중앙정부에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수천명 규모로 수차례 청원운동을 일으켰는데, 약 2500명 규모의 제4회 청원에 대해서도 당시의 야마가타 정부는 경관대와 헌병대를 동원하여 탄압했다. 흉도소취사건(凶徒嘯聚事件)이라고도 한다.

이다. …… 이상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1903년 10월 26일, 일기)라며 개전에 반대했다. 또 러일전쟁 개전 후인 1904년 4월 6일 하라다 사다스케(原田定助)에게 보낸 서간에 “나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반전론자이다. 점점 더 반전론자로서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해외로 폭주하고 있는 현재, 국법상의 출병이 있어 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적고 있다. 나아가 “필경 소생의 주의를 무전론(無戰論)으로 세계 각국의 육·해군 전폐를 희망하고 또한 기원하는 바이다. 단지 인류는 평화의 전쟁이야말로 항상 분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거나 방심한다면 살벌한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로 유감스럽다”(1904년 9월 9일, 사토 료타로[佐藤良太郎] 장녀에게 보낸 편지)며, 자신의 입장을 ‘무전주의(無戰主義)’로 규정하고 군비 전폐를 향한 전투에 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무전주의’와 ‘인류 평화의 전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쇼조는 1911년 6월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립, 싸워야만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정부와 싸워야 한다. 적국이 침략해 온다면 싸워야 한다. 타인이 침해한다면 싸워야 한다. 그 싸움에는 도가 있다. 살벌한 완력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과 천리에 따라 널리 가르쳐서 이기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이 천리에 따라 싸우는 자로서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의 길이다. …… 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살벌함으로 하는 것은 야수의 싸움이고, 천리로 하는 것은 인류의 싸움이다. 인류는 천리로 싸우는 존재이다. 야수는 언어가 적다. 의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완력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말을 하는 인류가 왜 완력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마치 야수의 싸움과도 같다. 사람과 야수의 구별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의 행위를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짐승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살벌한 짓을 한다. 세상에 반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항상 잡아먹히기만 한다.

평화를 위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쇼조의 ‘무전주의’는 시즈오카현 가케가와[掛川]에서 100여 명에게 “세계의 육·해군을 전폐해야 한다. 그 외는 아무 말 않겠다”라고 한 1912년 2월 15일의 일기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쇼조는 광독사건에서 군대가 출동하고 농민에게 헌병과 경찰이 총검을 들이던 것을 1905년 제1차 러시아혁명 때의 ‘피의 일요일 사건’과 오버랩시켜 파악했다. 그리고 “훈장(勳章)도 군도(사벨=sabel)도 조만간에 반드시 일어날 천지의 대전복과 함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荒畑寒村, 『야나카촌[谷中村] 멸망사』, 1907년)라며 군대와 군비가 폐기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3. 반전론의 격류 - 세기의 전환기 속에서

평민사의 군비철폐·전쟁폐지론

청일전쟁은 인의의 스승이라든가, 응징의 군이라든가 꽤나 훌륭한 명분이었다. 게다가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얼마만큼의 이익을 받았을까. 수천의 선량한 농민의 자식, 노동자의 자식은 적군의 무기에 목숨을 잃었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많이 생겼다. 그 결

과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대훈위후작(大勳位侯爵), 육군 장교의 부패, 어용상인의 치부이다(『日本人』 제192호, 1903년 8월 5일).

고토쿠 슈스이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반전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눈부신 승전이라고 치켜세웠던 청일전쟁의 영광이 식음과 동시에 전쟁의 대의명분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의 큰 괴리에 관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해 반전론이 받아들여지는 기반이 생겨났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청일전쟁의 비참함보다는 삼국간섭에 의해 전리품이 약탈당한 굴욕감을 씻기 위해서는 군비확장을 위한 증세부담을 견뎌야 한다는 의식이 주입되고 있었던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칸트가 『영구평화에 대하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부담은 ‘도박’일지라도 직접적인 교전으로 결말을 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심리를 유도해 가게 된다.

아베 이소오는 러일전쟁 개전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1903년 9월, 개전론은 일본의 여론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수 국민은 반드시 열심히 반전론을 주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은 소수이며 다수의 사람은 반드시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吾人は露國と戰ふべきか」, 『六合雜誌』)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 다수가 점차 주전론을 주장하는 『국민신문』 등 주요한 미디어에 동조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논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북청사변 후 만주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이 철병을 하지 않아 나날이 높아져 가는 위기감이었다. 삼국간

섭을 주도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어 군비확장론이 득세해갔다. 6월에는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등 도쿄대학 박사 7명이 “오늘날 만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의 방위는 쉽게 바랄 수 없을 것이다. …… 최후의 대결심을 하여 극동의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는 대계획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의서¹¹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주전론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갔다. 이 때문에 “나는 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입을 모아 전쟁이 옳지 않음을 주장하고 만국에 군비의 철폐를 주창하는 것이다”(『戰爭人種』, 『毎日新聞』, 1903년 5월 11일)라는 기노시타 나오에의 논설을 게재했던 『마이니치신문』도 11월 개전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치무라 간조, 사카이 도시히코, 고토쿠 슈스이 등이 러일전쟁 개전 반대 논객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요르즈초호』도 10월 개전론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 때문에 우치무라 등은 『요르즈초호』를 퇴사하고 사카이와 고토쿠 등은 자신들이 주도한 일본 최초의 성서연구 월간지 『성서의 연구』(1900년 창간) 등을 활용하여 반전론을 전개해 갔다.

그리고 고토쿠나 사카이는 『평민신문』 창간호에 평민사의 선언을 게재했다. 선언은 평민주의, 사회주의와 더불어 평화주의를 3대 요소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나는 인류가 박애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주의를 창도한다. 때문에 인종의 구별, 정체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를 철폐하고 전쟁을 금절하기를 바란

¹¹ 역자 주 -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3년 6월 10일부로 도쿄제국대학의 교수 6명과 학습원대학 교수 1명 등 7명이 당시 내각총리대신 게이 타로[桂太郎],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시치하쿠시 의견서[七博士意見書]라고 부른다.

다’며 준비철페·전쟁금절을 달성할 것을 호소했다. 또 평민사와 공동보조를 취한 아베 이소오 등은 사회민주협회에서 반전론 대연설회, 반전부인 연설회 등을 개최했다. 그러나 1904년 11월 사회주의협회에 결사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종종 발행금지 처분을 당했던 『평민신문』도 1905년 1월 폐간으로 물리게 되었다.¹²

그 사이 『평민신문』은 『런던타임스』 1904년 6월 27일자에 게재된, 톨스토이의 「반전론」에 있는 「그대 회개하라(Bethink Thyself)」를 번역해 8월 7일 발행의 제39호에 「톨스토이 옹의 러일전쟁론」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동조하지 않고 다음호에 “회개하려고 부르짖는 일이 수천만 년이 될지언정 만약에 그 생활 상태를 바꾸어 의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여전히

12 『평민신문』은 발행부수가 3000부 정도였으며, 자신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간친회나 간담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특징이다. 고베, 고치, 교토, 단고 미네야마[丹後峰山]나 치바 시모소[下總] 등에는 평민클럽이 결성되어 『평민신문』의 연설회를 중심으로 담화회, 연설회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요코하마에는 평민결사 차화회(茶話會), 오사카시, 후쿠오카시, 나가노현 가미카와촌, 히다 다카야마, 미토, 도치기현 아시카가 등에는 『평민신문』 독자회, 오카야마에는 이로하클럽, 시즈오카 가케가와에는 원양동지낙담회(遠陽同志樂談話), 나고야에는 애독자 차화회,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오타루·삿포로·무로란 등에는 평민신문독자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수시로 경찰관의 감시를 받았으며 한국의 인천에도 독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훗날 대역사건에 연좌되어 사형을 당한 조도슈[曹洞宗] 선승 우치야마 구도[內山愚童]는 하코네 오히라다이의 거택을 하기 평민사클럽으로 개방했다. 또 『오타루신문[小樽新聞]』에는 사회부장 미도리가와 기쿠오[碧川金救男]에 의해서 『평민신문』으로부터 받아 「톨스토이백작의 반전론」 등이 전제되었다. 미도리가와도 전쟁 중 일관되게 러일전쟁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활동으로 반전론은 일부 사회주의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오늘날과 같은 뿐이다”(『トルストイ翁の非戰論を評す』, 8월 14일)라며 ‘현재의 자본가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적 제도로 이를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신의 반전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토쿠는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二十世紀之怪物 帝國主義)』(1901년)와 『사회주의 진수(社會主義神髓)』(1903년)를 간행했다. 그는 여기에서 근대의 대외전쟁에 대해 생산수단의 사유나 시장의 확대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나 그 대변자로서의 정부가 군국주의 정책을 선택하여 노동자 계급을 희생시켜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로 착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국주의를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주의 생산의 특징인 과잉생산이 시장의 쟁탈과 군비확장으로 이어져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 필연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시켜 부의 평등한 분배를 이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전쟁을 혁명으로 전화(轉化)시키려고 한 레닌 등의 혁명 전략이 연상되지만, 이때 고토쿠는 혁명의 담당자로서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지 않고 “일어서라, 세계 인류의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중시하고 진보를 바라는 지사, 의인은 일어서라”(『社會主義神髓』)는 것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전쟁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는 확장함으로써 이익을 발견하므로 제국주의적인 전쟁에 의한 마찰이나 비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진 것이며, 세계적으로 자유스러운 자본주의 활동이 보장된다면 오히려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한 경제학자 슈페터 등의 반론을 상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의의 대립은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고 반전론은 톨스토이 정신에 따르는 형태로 제기되어 쇼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반(反)반전론’자에게 반전론의 종교성과 관념성을 공격하는 논거가 되기도 했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불교, 기독교 두 종교의 급소를 찌르다」(『太陽』, 1899년)에서 국민이 종교적인 ‘애적(愛敵)의 정신’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젖으면 나라를 지키는 병사는 없게 되고 국가는 스스로 멸망해버린다고 톨스토이 사상이나 퀘이커 교도의 반전론을 배격했다. 또 아마지 아이잔(山路愛山)은 “나는 그렇게 있는 것과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톨스토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무장을 풀지 않는다”(『余が所謂愛國主義』, 『獨立評論』, 1903년)며 사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상가로서는 자기부정으로 이어지는 담론으로서 반전론을 비난했다.

아베 이소오의 반전론과 소국주의

이러한 반전론과 반반전론이 충돌해가는 가운데 어떤 의미로서는 도발적인 반전론을 제기한 사람은 기독교사회주의자인 아베 이소오[安部磯雄]¹³였다. 아베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던 10월, 회장을 맡고 있던 사회주의협의회 주최의 반전론 연설회에서 「세계평

13 역자 주 -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1865~1949].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의 정치가이자 기독교 사회주의자. 1819년에서 95년까지 성서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에 유학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주의를 발견했다. 귀국 후 목사와 교수로 활동했으며 1899년 『리쿠고잡지[六合雜誌]』의 주필이 되어 기독교사회주의를 논하면서 사회주의연구회와 사회민주당의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일전쟁 중에는 반전론을 전개했다.

화의 영역 스위스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만약 평화가 인도적인 것이라면 평화를 세계적으로 선언해서 그것을 위해 일국이 멸망하더라도 조금도 후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호소했다. 아베의 반전론은 절대 무저항주의로 고토쿠 슈스이 등이 주장한 사회주의적 개혁에 의해서만 전쟁폐지가 가능하다고 본 반전론과는 다르다.



그림 5 아베 이소오

아베는 러일전쟁 중인 1904년 5월 ‘우리 국민이 러일전쟁에 열중함에 있어서 특히 이 소책자를 공개해서 나의 친애하는 동포에게 바친다’며 『지상의 이상국 스위스』를 평민사 평민문고의 한 권으로 간행했다. 아베는 ‘4대국(四大國)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일본은 군신(軍神)이 아니라 천사로서 동양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외적으로는 중립·평화주의를 내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자치제를 강화해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는 ‘동양의 스위스’가 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대국에 둘러싸인 국제적 환경이 유사한 소국 스위스야 말로 일본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국가이며, 군사대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과 죽음을 강제하는 것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전론에는 어떻게 국방이 가능한가라는 반론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아베는 스위스의 국방이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인정하는 국제의 협조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헌법에 상비군을 폐지하고 민병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외국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교나 병사가 외국으로부터 훈장이나 사례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외국군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의 중요성 등을 지적했다.¹⁴

이처럼 군비를 철폐하는 것은 군사력을 국력으로 보는 한 당연히 소국·약국이 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일본이 국시로 삼았던 부국강병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군비철폐를 표방하는 평민사가 소국인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해 온 것도 필연적이었다. 『평민신문』이 「소일본이 된다」라는 논설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군대를 폐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군비를 철폐해서 국경이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고, 한편에서는 교육기관, 교통기관 및 오락기관 등은 이를 세계 공용으로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지방마다 단결해서 진정한 자치제를 행하게 하는 것을 바란다”(『平民新聞』 제10호, 1904년 1월 17일)며 군사대국이 아닌 스위스나 덴마크와 같이 소국을 목표로 하자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진정한 자치제’를 요구한 것은 군사력으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도덕을 기둥으로 하는 정치를 행하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권력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대도 없고 국경도 없어 국가 자체가 세계의 공유물이 되면 일본은 ‘다른 소국과 협의해서 평화를 주창하는 자’로서 ‘우리의 이상이 전적으로 세계에 실현되는 날이 도래할 것을 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국주의·약국주의가 군비철폐론과 함께 주장된 것이 러

- 14 1949년 3월 맥아더가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 논설주간인 프라이스에게 ‘일본은 태평양의 스위스가 되어라’라고 권한 것이 보도된 뒤 일본을 영세중립국인 ‘동양의 스위스’로 만들자는 논의가 한때 유행했다. 이것은 동서 냉전 속에서 일본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상비군을 가지지 않는 국가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해 한국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맥아더는 태도를 바꾸어 경찰예비대의 설치 등 재군비화를 지령하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동양의 스위스’가 주창되는 역전된 구도가 되었다.

일전쟁 당시의 특징이기도 했다. 이 같은 논의는 1934년 사망하기까지 『상모(上毛) 교육월보』를 거점으로 반전론을 계속 주장해온 가시와기 기엔[柏木義円]에게서도 볼 수 있다. 가시와기는 1903년 13개 사단과 25만 톤의 군함 등 ‘비생산적인 대 도구’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또 뉴질랜드나 스위스와 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야말로 약한 나라일지라도 바람직한 국가라면, 일본도 ‘자유도 행복도 없는 강대국이나, 자유와 행복이 있는 약소국이나’의 선택을 해야 하며 국가백년의 장계(長計)로 ‘철두철미한 약국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치무라 간조도 소국주의·약국주의의 주창자였다. 국가의 위대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덴마크국의 이야기』(1913년)에서 덴마크를 일본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우치무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패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국가는 전쟁에 패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로 전쟁에 이기고도 망한 나라가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은 전쟁의 승패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의 평소에 수양에 의합니다. 좋은 종교, 좋은 도덕, 좋은 정신이 있어서 국가는 전쟁에 패하더라도 쇠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와 정반대입니다. 견고한 정신이 있으면 패전이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어 불행한 국민을 흥하게 합니다. 덴마크는 실로 그 좋은 사례입니다.

우치무라가 “전쟁에 이기고도 망한 나라는 역사상 결코 적지 않다”

는 것을 굳이 말한 배경에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한국을 병합하고 대국이 되어 가던 일본의 모습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 청일·러일 전쟁에 승리한 것에 취해서 여전히 군비증강을 도모하던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은 “승전국의 전후 경영은 아무리 형편없는 정치가도 가능합니다. 국위선양에 수반되는 사업의 발전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업가에게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은 패전국의 전후 경영입니다. 국운이 쇠퇴할 때의 사업 발전입니다. 전쟁에 패했으나 정신적으로는 패하지 않는 국민이 진정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라고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승전이 언젠가는 반드시 패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치무라의 눈에는 전쟁에 이기고 도 정신에 패한 국민의 국가로 일본이 비쳤을 것이다.

우치무라 간조의 전쟁 절대 폐지론

오늘날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¹⁵는 대표적인 반전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인 그가 처음부터 반전론자였던 것은 아니다. 우치무라는 “청일전쟁은 나에게 실로 의로운 전쟁이다”, “나는

¹⁵ 역자 주 -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이다. 1877년 삿포로 농업학교에 제2기생으로 입학하여 1881년에 졸업했다. 1884년 11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1888년 5월에 귀국했다. 1891년 1월 촉탁교원으로 제1고등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이른바 ‘불경사건’을 일으키고 사직했다. 1897년부터 『요르즈초호』의 영문란 주필로 일했고, 다음해 『도쿄독립잡지』를 창간하고 기독교에 입각하여 통렬한 사회비판, 문명비평을 했다. 1900년 9월 잡지 『성서의 연구』를 창간한 이후 이 잡지 간행과 성서 강의를 그의 일생의 일이 되었다. 1903년 러일전쟁에 대한 반전론을 주장했다.

영구한 평화를 목적으로서 싸운다”(『日清戰爭の義 (Justification of the Corean War)』, 『國民之友』, 1894년 9월)고 말하는 등 문명을 위한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청일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의 열기를 선동한 사람이었다.



그림 6 우치무라 간조

청일전쟁에 건 정열이 강렬했던 만큼 승전의 결과가 초래한 현실에 대한 환멸과 분격은 더욱 격렬하게 우치무라를 내면으로부터 움직이게 했다. 청일전쟁의 실태가 약탈전쟁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전쟁에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담론을 뺏어냈던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우치무라는 “전쟁의 목적이었던 조선의 독립은 이 전쟁 덕에 강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약화되고, 중국 분할의 단서가 열리게 되어 일본 국민의 부담은 매우 증가되고 그 도덕은 대단히 추락하여 동양 전체를 위태로운 지경으로까지 끌고 오지 않았는가”(『戰爭廢止論』, 『萬朝報』, 1903년 6월 30일)라며 사실을 직시하고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태도를 바꾸어 갔다.

우치무라는 이렇게 해서 러일전쟁 개전 8개월 전에 “나는 러일전쟁 비개전론자일 뿐 아니라 전쟁 절대적 폐지론자이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죄악이다. 그래서 대죄악을 범하면 개인도 국가도 영구히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며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 절대적 폐지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우치무라도 직면한 현실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 정권을 잡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나의 전쟁폐지론이 즉시 시행되리라고는 나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폐지론은 지금 문명국

식자들의 여론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쟁폐지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는 나라는 미개국이다. 그렇다, 야만국이다. …… 세상의 정의와 인도와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와서 대담하게 이 주의에 찬성하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치무라의 반전론에 대해서는 러일전쟁을 지지하는 기독교계가 격렬하게 비판했다. 유력한 지도자였던 에비나 단조[海老名彈正]도 “지금이야말로 군국다난의 시기이다. 온 나라가 총력으로 전쟁에 열중하는 시기에 즈음해서 대담하게도 일파의 논자는 당당하게 반전주의를 주창하고, 이끌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가관이다. …… 가장 공평한 시야를 가지고 구약성서를 보면 누구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전쟁을 시인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聖書の戰爭主義』, 『新人』, 1904년 4월)라며 성서를 근거로 들어 전쟁을 시인하고, 우치무라를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배교자처럼 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우치무라도 성서의 말을 인용하여 전쟁을 고무하는 교회를 ‘저주받은 교회’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지만 그의 고립 정도는 점점 깊어만 갔다.

기독교인들의 지지 속에 치른 러일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우치무라가 기대한 것과 같은 군비철폐의 목소리가 높아가지는 않았다. 전쟁 승리로 획득한 신영토인 조선이나 중국의 관동주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더욱 강대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우치무라는 새삼스럽게 전쟁이 새로운 전쟁을 낳는다는 진실을 확신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치러진 전쟁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던가. 우치무라는 청일·러일 전쟁의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말한다.

전쟁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 그러나 전쟁으로 실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쟁은 전쟁을 만듭니다. …… 전쟁에 의해서 군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이 끝날 때마다 군비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 전쟁은 전쟁을 위해 치러지는 것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 따위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일전쟁의 명분은 동양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더욱 더 큰 러일전쟁을 초래했습니다. 러일전쟁도 명분은 동양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더욱 더 큰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만족할 줄 모르는 야수입니다.(『러일전쟁으로부터 내가 얻은 이익』, 1905년 11월)

우치무라가 예언한 대로 9년 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동맹의 정의(情誼)’를 이유로 참전하게 된다.

우치무라는 또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을 보고, “칼집에서 칼을 빼기 위한 기회가 또 새로이 우리나라에 제공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체가 만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平和來る』, 1905년)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39년 후 그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인도 침공을 도모한 임팔작전¹⁶에서는 작전 참가자 약 10만 명 중 사망자 3만 명, 전상병자 4만 5000명뿐 아니라 다수의 아사자도 발생했다.

¹⁶ 역사 주 - 1944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일본군이 북버마(현 미얀마)에서 인도 북동부의 임팔(Imphal)로 진공하려 한 작전. 무모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대패했으며 과달카날 이상의 참상을 빚었다.

우치무라의 예언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기를 넘어 다시 현실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반전론의 잠복

그런데 러일전쟁의 승리가 그 전쟁에 반대했던 반전론에 대한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평민신문』의 뒤를 이어 나온 『직언(直言)』은 포츠머스조약 반대 운동에 대한 계엄령 시행에 항의하는 논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발행 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러일전쟁 중 투옥되어 있던 평민사 사원은 석방되었으나 계속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1905년 10월 평민사가 해산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1910년의 대역사건으로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해 각지의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체포되어 비밀재판을 받았으며, 고토쿠 등 1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대역사건 이후는 사회주의의 ‘겨울’로 사회주의자는 비국민, 국적(國賊)이라는 오명이 붙어 언론의 자유는커녕 생활의 기반마저 위협을 받았다. 사회주의 운동의 기수였던 가타야마 센은 1914년 여름 일본에서는 경찰의 감시나 고용주에 대한 협박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절망적이어서 미국으로 도피했다. 고토쿠 슈스이 등과 함께 평민사에서 날카로운 논지를 펼던 이시카와 산시로[石川三四郎]는 프랑스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경 속에서도 고토쿠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 사상을 담당한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 등은 평민사의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한 지 2개월 후인 1914년 10월 월간 『평민신문』을 간행했다. 그러나 「평민계급의 흡혈귀인 군비

확장!』 등을 게재한 평민신문은 ‘질서문란’ 혐의로 제4호를 제외한 매호가 발행 금지처분에 처해지고 제6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반전론자는 국민 중 극히 소수이며, 정부로부터는 갖가지 학대와 박해를 받고, 다른 대부분의 국민으로부터는 비국민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所謂政府的思想』, 『近代思想』, 191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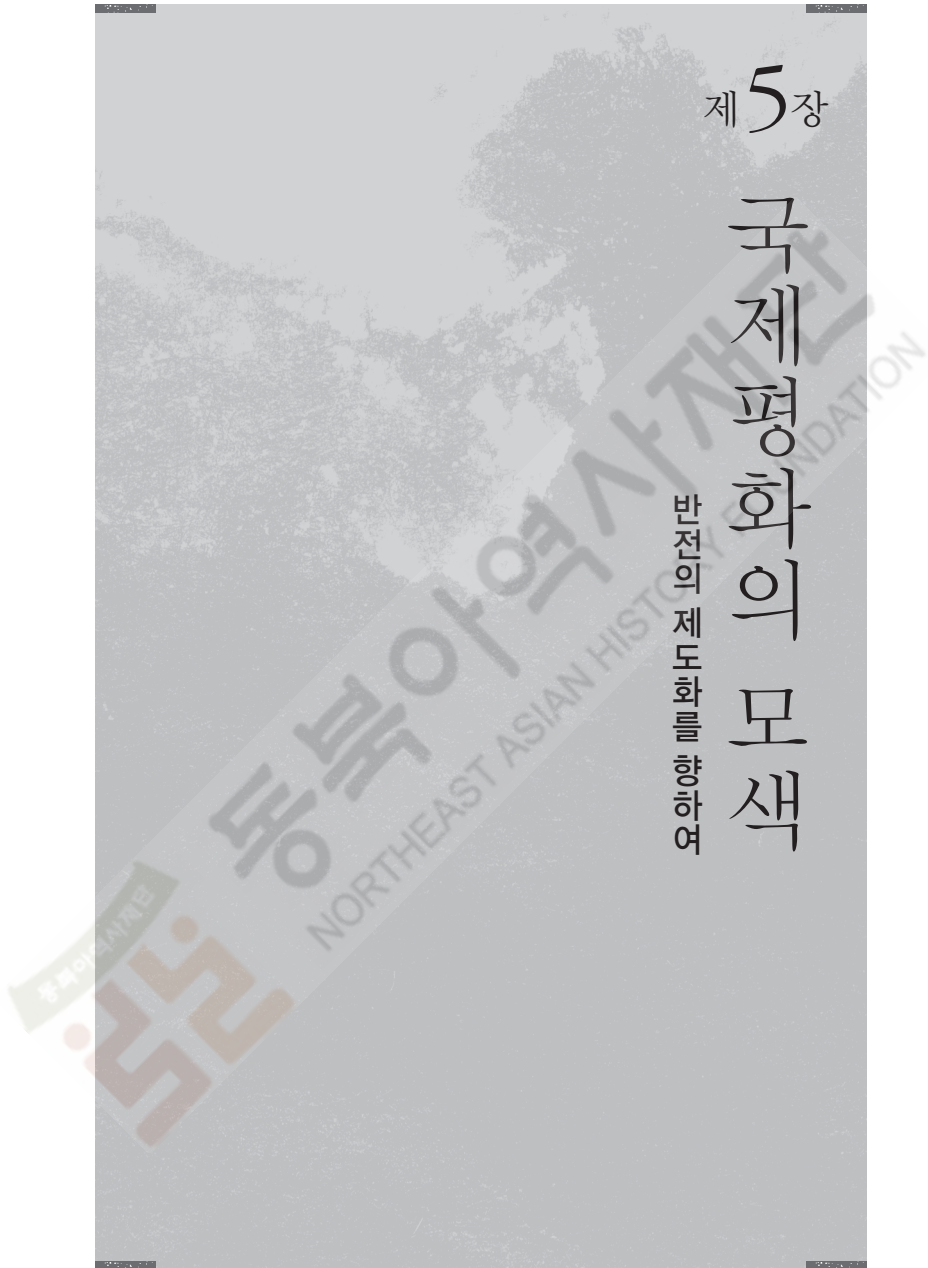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대역사건 이래 우리들의 정치상 및 경제상의 주장은 완전히 언론의 자유를 빼앗겨 버렸다”(大杉榮, 「最近思想界の動向」, 『文明批評』, 1918년 1월)고 오스기가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반전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기회는 사라지고 반전사상도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사조로 눈을 돌려 보면 일본과는 반대로 국제연대로 평화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반전사상이 ‘무장적 평화’에 의한 세력균형 체제라는, 그때까지 확고부동하다고 생각되던 기반을 무너뜨리고 출현하려 하고 있었다.

제 5장

국제평화의 모색

반전의 제도를 화를 향하여



전쟁의 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19세기 동안에 이른바 문명국가들이 전쟁으로 희생시킨 인명은 약 4000만 명, 소비한 금액은 3000억 엔이 된다고 한다. 이 돈으로는 대학교 3만 개를 세워서 넉넉히 유지할 수 있다. 가장 난공사로 꼽히는 철도도 30만 마일이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新希望』 제66호)

이것은 러일전쟁의 종결을 목전에 둔 1905년 8월 우치무라가 「평화생(平和生)」이라는 이름으로 쓴 논설의 일부이다. 우치무라는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이 전쟁 때문에 상실되었는지 돌아보았다. 8만 1000명의 전사자와 38만 1000명의 전상자를 낸 러일전쟁을 목격한 우치무라는 “가장 나쁜 평화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도 좋습니다”(『平和成る』, 1905년)라고 탄식하면서 20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쟁인 러일전쟁 후에는 세계가 평화의 세기를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전사자 중 90% 이상이 20세기에 희생되었다. 20세기는 인류사에 ‘전쟁의 세기’로 남게 되었다.

20세기는 비참한 세기였던 만큼 평화에 대한 희구 또한 간절했기 때문에 반전을 지향하는 ‘평화 모색의 세기’로도 특징지을 수 있다.

평화를 모색하게 된 전환점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각국이 세력균형 정책에 따라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막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국제정세가 늘 불안정한 긴장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각국은 우선 국제분쟁을 중재나 평화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전쟁합위무차별론과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동맹정책을 전쟁 유발 요인으로 꼽고 다른 면에서 해결수단을 찾게 되었다.

즉, 첫 번째로 주권국가에 전쟁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전쟁합위무차별론을 부정하고 전쟁 그 자체를 법으로써 금지하고, 두 번째로 복수의 주권국가 간 집단적 자위 동맹정책을 배제하고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상호간에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쟁 위법화’로 국제연맹 규약이나 부전조약에서 추구한 바였고, 두 번째 방법은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종류의 합류점에서 탄생한 것이 전쟁포기·군비철폐와 국제협조를 축으로 하는 헌법9조이다.

1. 국제평화 조직화의 태동

국제교류의 진전 속에서

20세기 들어 반전사상은 ‘전쟁의 위법화’와 ‘평화의 국제기구화’ 등 ‘반전의 제도화’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저류에서 소용돌이가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 피에르 등의 영구평화론 등에 보이는 전쟁중재제도를 추구하는 국제적 움직임은 이미 나폴레옹전쟁 종결과 함께 시작되었다. 각국의 평화협회는 미국의 레드(W. Ladd)가 창도(唱導)한 ‘여러 국민의 의회’에서 분쟁을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1828년 이후 국제활동을 전개했다. 영국에서는 밀(J. S. Mill)을 비롯해서 고브덴이나 브라이트 등 자유무역론자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그 실현을 향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1848년부터는 브리트(E. Burrit)나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등이 만국평화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타무라 도코쿠 등이 발행한 잡지 『평화』 등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되었다.¹

1873년에는 각국의 이해대립 때문에 용이하게 법전화(法典化)가 진전되지 않던 국제법을 정비하고 보급하기 위해 최초의 국제적 민간법률가단체인 ‘국제법의 개혁 및 법전화를 위한 협회’가 브뤼셀에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895년에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국제이해와 국제법의 존중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같은 시기인 1873년에는 벨기에의 법학자 롤랭 제크맹(Rolin-Jaequemyns)이 앞장서 문명사회의 법적 양심을 표현하기 위해 각국의 법학자를 모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를 결성했다. 국제법학회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 원칙의 정식화 등을 추진해 190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국제법학회에서 작성, 채택한 결의는 공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국제연맹 및 국제연합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국제적 평화를 추구한 이러한 운동이나 법학자의 조직화는 각국의

¹ 이처럼 국제적인 분쟁중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하려는 구상은 고대 그리스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가운데 근대의 것으로는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는 의회 창설을 논한 퀘이커 교도 윌리엄 펜의 『유럽평화론』(*An Essay towards the present and future peace of Europe*, 1693)이나 국제재판소 설립과 군비제한·비밀외교 금지 등을 호소한 영국 제러미 벤담의 『항구 평화안』(*A Plan for an Universal and Perpetual Peace*, 1789) 등을 들 수 있다. 도코쿠 등이 일본평화회의를 설립한 것은 이 퀘이커교에 의한 중재운동의 일환이었다.

입법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889년 영국의 크리머(W. R. Cremer)나 프랑스의 파시(F. Passy) 등의 제창으로 세계 최초의 다국 간 정치교섭 무대인 열국의회동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평화와 여러 국민 간의 협력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국가 국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발족한 열국의회동맹은 현재 주권국가 의회의 국제조직으로 150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문화나 경제의 일상적인 교류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민들 간의 통신이나 교통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186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874년 만국우편연합(UPU)이 조직되면서 차례차례 분야마다 전문기관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에는 국제법이나 국제행정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구나 국제조직의 설립이 활발했다.

헤이그 평화회의

헤이그 평화회의가 1899년 러시아 니콜라이2세의 제창으로 개최되었다. 니콜라이2세가 이 회의를 구상한 것은 블로흐(Johann Bloch)가 『장래의 전쟁』(1897년)에서 내놓은 전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주트너(Bertha von Suttner)의 반전소설 『무기를 버려라!』를 보고 나서였다고 한다.² 블로흐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력의 확대와 함께 전쟁에 사용되는

2 블로흐의 논의는 평민사의 반전론 논거로도 인용되었던 것으로, 『평민신문』 제10호에 「블로흐씨의 전쟁론」이 게재되고 제29호의 아베 이소오의 「스위스와 일본」에도 언급되어 있다. 한편 주트너의 호소에 응해서 1891년 오스트리아 평화회가 설립되고 이후 독일과 헝가리 등에서도 평화회가 구성되었다. 또 주트너는 그가 주재한 잡지 『무기를 버려라!』로 국제적 영향을 끼쳐 1905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주트너의 반전소설은 기타무라 도코쿠 등의 『평화』지에도 소개되었다.

무기와 물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지구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전을 위한 군비 확장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문명국 간의 전쟁은 불가능하게 되어 간다. 즉, '무장적 평화'가 평화를 약속하기는커녕 국가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블로흐는 이를 수량적으로 보여 주었다.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는 1899년 5월 18일³부터 열렸다. 이 회의에 대해서 특필할 점은 당시 불평등조약 하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일본, 중국을 비롯해 태국이나 멕시코 등도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법'으로 발전해 온 국제법과 그것에 의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국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그 틀 속에 참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과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외에 유독가스나 비인도적 총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선언, 그리고 '세계 전 인민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군사비 부담의 제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중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은 국가 간 분쟁의 중재재판이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분쟁에 관한 국제심사위원회나 상설 중재재판소

³ 5월 18일은 헤이그 데일로, 세계적으로 이날을 경축하고 있다. 앞 장에서 말한 대일본평화협회도 1906년 이날을 기해서 발족했다. 1999년에는 백주년을 기념해서 세계의 NGO 등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헤이그 세계 시민 평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21세기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제'가 채택되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한 기본 10원칙'이 확인됐다. 제1항목은 일본의 헌법9조를 예로 들면서 '각국 의회는 일본의 헌법9조와 같이 자국 정부가 전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림 1 니콜라스 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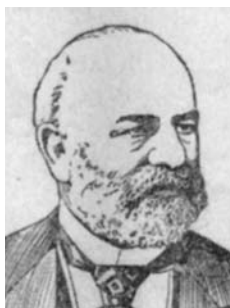


그림 2 요한 블로흐



그림 3 노먼 에인절

를 설치하도록 했다.⁴ 이것들은 실제로 분쟁 해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후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서 분쟁해결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제2회 회의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서 1907년 6월부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러일전쟁 때 사후 선전포고를 한 것이 의제에 올라 전쟁절차를 정한 ‘개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때 체결된 ‘계약상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병력 사용 제한에 관한 조약’은 중남미 국가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었

4 이렇게 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우선 중재 기타의 평화적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여졌다. 국제분쟁의 해결에 중재 등을 요구한다는 헌법조항을 가진 국가는 적지 않다. 우선 국제분쟁을 중재재판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베네수엘라의 1864년, 1893년, 1904년, 1909년, 1931년의 헌법, 도미니카의 1880년, 1896년, 1908년, 1920년의 헌법, 우루과이의 1917년 헌법, 브라질의 1891년 헌법 등이 있다. 유럽에도 포르투갈의 1911년 및 1933년의 헌법에 중재에 의한 해결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개전을 집행기관에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22년의 네덜란드 헌법, 1930년의 스페인 헌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조약은 채권국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국을 상대로 한 무력행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다국 간 조약으로서 처음으로 전쟁을 제한함으로써 전쟁 위법화의 단서가 되었다.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정비된 '전시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은 무기 사용의 제한을 비롯해 무방비 도시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등 전쟁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점령기의 연합국을 규제했던 것으로 일본국헌법의 제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81쪽)

두 번에 걸친 평화회의 가운데 제2회 회의에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참가하는 등 당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44개국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세계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약 채택에 성공함에 따라 국제법의 법전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평화회의를 통한 국제협조는 당초 군비축소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주권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무장적 평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평화회의를 제창한 니콜라이 2세 자신이 러일전쟁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평화회의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특히 교전국이 된 일본에서 평화회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불충분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의 획기성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주목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본에서의 중재제도와 평화회의에 대한 관심

일본에서는 반전사상에 대해 기독교나 사회주의에 의한 관념적 주

장이라는 비판이 러일전쟁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일본평화회와 국제 중재제도 등 반전의 실현수단에 대해서 기타무라 도코쿠 등이 논급하기는 했다.

우치무라 간조는 자신이 주장하는 반전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협회와 국제중재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즉 문명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평화협회가 일본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평화협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주장하기 위한 협회가 아니다. 이는 군비철폐, 전쟁 절대적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사, 의인의 모임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몽상이라고 믿는 자는 아직 평화회의가 오늘날까지 이루어 온 사업의 범위를 모르는 자이다. …… 열강을 재촉하여 헤이그 평화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을 설파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설파되지 않은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은 없다”(「平和協會の設立を望む」, 『萬朝報』, 1903년 9월)며 헤이그 평화회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군비철폐, 전쟁 절대적 폐지를 목적으로 해온 운동의 성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치무라는 국제중재재판에 대해서도 “평화주의, 일명 반전주의는 군이 오늘날 즉시 병력을 거부하고 군사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평화주의는 전쟁의 비리와 손해를 직시하여 만국이 공동으로 전쟁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중재재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유식자의 여론을 환기하고 각각 정부에 호소하여 전쟁에 의지하는 일 없이 모든 국제적 분쟁과 소요를 해결해야 한다”(「平和主義の意義」, 1905년 8월 10일)며, 반전사상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가는 수단이 중재재판에 의한 전쟁 폐지에 있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그 기원을 네덜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에게서 구하고 있다.

다나카 쇼조는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즈음해 이때야말로 군비전폐의 호기라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상경하여 현재의 최고재판소 장관에 해당하는 대심원 원장과 귀족원 의원 등을 역임한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藏]를 방문했다. 다나카는 “러일전쟁의 대승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이 세계 앞에 별거벗은 몸이 된다. 육·해군을 전부 폐지한다. 이러한 말이 약소국의 입에서 나와서는 모처럼의 군비철폐론도 힘이 없지만 대승리를 한 일본은 군비철폐를 주창할 책임이 있다. 아니 권리가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田中談, 「陸海軍全廢」, 1908년 4월 5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헤이그 평화회의는 군비 폐기를 위한 회의로서의 의의는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의 안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이 술선수범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거절하여 군비철폐를 부결한다고 하면 일본은 자신만으로 육·해군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서 투구끈을 졸라매라’고 하는 것을 대개가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이며, 군비전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이기고 나서 투구끈을 졸라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일본이 군비 전폐를 실행해야 한다는 다나카의 이 주장이야말로 승전을 호기로 해서가 아니라 패전이라는 기회이기는 하였으나 헌법9조에 의해서 실현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제중재제도나 평화회의를 ‘번거로

은 율법학자주의(mullah-crazy)'(레닌)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협회나 평민사 등에 참가해서 고토쿠 슈스이 등과 함께 일본의 초기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리드한 다조에 데쓰지[田添鉄二, 1875~1908]가 「세계평화의 진화」⁵라고 하는 연재논문에서 '만국평화주의자의 단결운동에 이르러서는 또한 유력한 세계평화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국제평화의 진전을 전망하려한 일도 놓칠 수가 없다.

다조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체제 전환에 의한 반전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세계평화 실현의 주체를 노동자로 보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평화회의도 전쟁을 값싸고 인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쟁당(戰爭黨)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를 취하면서, 모든 평화 실현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후의 역사를 세밀하게 탐구해 보면 나는 이 사이에 세계 문명국가들이 국제상의 정의 및 평화의 관념이 마침내 절실하게 되어 가능한 한 전쟁의 대참화를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터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1856년의 파리회의를 '유럽합중국 실현의 씨앗', '세계 협조의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나아가 1889년 이후 개최된 전 미국회의를 범 미국 공화제의 선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의한 중재재판의 성과에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다조에의 「세계평화의 진화」는 평민사의 『직언(直言)』 후속지에 해당하는 『신기원(新紀元)』의 제3호(1906년 1월)부터 10개의 테마로 연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기원』의 폐간에 따라 제8 테마 '평화의 경제적 발전'을 게재한 시점에서 미완의 논고로 끝났다. 하지만 세계평화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에 관한 고찰로 예리한 분석을 보여준 것이었다.

다조에의 이러한 ‘세계평화의 진화관’은 19세기 국제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상세하게 추적하는 가운데 구상되었다. 그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평화회나 평화회의가 증가했을뿐더러 과학이나 문화를 포함한 경제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긴밀화되고 인류의 생활이 ‘절단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하나의 큰 개체’로 변해 갔다. 그리고 경제력의 발전이 무기의 진화와 증산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사회생활상 경제적으로 전쟁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기에 이르렀다. 다조에는 ‘20세기 인류의 한쪽 발은 이미 전쟁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블로흐의 『장래의 전쟁』에서 힌트를 얻어 무장적 평화를 위한 과중한 재정 부담이 초래하는 부조리를 각 국가가 회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간다는 경제분석에서 도출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경제가 발전하면 전쟁이 불가능해진다는 논의는 그 후 영국의 정치·경제 평론가 노먼 에인절(N. Angell)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1910년)에서 전개되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도 아베 이소오가 번역해 『현대전쟁론-병력과 국가이익의 관계』(1912년)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그 요지는 경제적 신용제도와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서로가 연계되어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령 전쟁을 하여 승리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괴멸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이 승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거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전쟁불가능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1914년, 제1차 세

계대전(一戰)이 발발하여 4년 여의 총력전이 벌어졌다. 병사가 총 6504만 명이 동원되고, 전사자 853만 명, 부상자 2119만 명, 포로·행방불명자 775만 명이 발생했으며, 비전투원의 사상자 수가 추정치로 1200만 명에 달하는 등 엄청난 참화를 남겼다. 이같은 비극은 세력균형정책 하에서 군비증강을 계속하면서도 유지되고 있었던 ‘무장적 평화’의 균형이 얼마나 위험한 기반 위에 성립되어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노먼 에인절이 호소했던 것처럼, 승전국에도 패전국에도 괴멸적인 타격을 가해 승리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예측이 한갓 ‘거대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혹하리만큼 잘 입증했다.

가시와기 기엔(柏木義円)이 「유럽의 대전란에 대하여」(『상모(上毛) 교육월보』 제191호, 1914년 9월)라는 논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계의 군비확장론자는 ‘군비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해 왔지만 이 전쟁은 ‘군비확장론의 가면을 벗겨 그들의 본심을 토로하게’ 했다. 이 자기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새로운 국제평화를 보장해 줄 시스템에 대한 갈망으로 커져 갔다.

2. 국제연맹 -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를 향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동향

헤이그 평화회의는 분명히 국제적 분쟁 중재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쟁의 잔학성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 그 피해나 비참함을 어떻게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래 목적인 군비 축소에는 각국의 합의를

언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평화를 위한 전쟁’,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쟁(the war to end wars)’으로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최후의 전쟁’으로 삼을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다음해인 1915년 미국과 영국에서는 국제 평화기구 형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국제사법재판이나 조정이사회를 통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위반국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기구로 평화강제동맹회가 논의되었다, 영국에서도 중재재판과 조정이사회를 통해 국제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연맹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독일 등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연맹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합쳐져 국제연맹연합회가 성립했다.

또 영국 외무부 내에는 국제연맹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제법학자 등이 평화기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외무부에 국제연맹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에 착수했다. 이러한 전후의 평화기구 설립 움직임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더 나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있었다. 민간인들도 많은 평화동맹안을 만들었다. 일본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이 영국이나 미국의 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 한 예이다(『世界平和同盟私案』, 『東洋經濟新報』, 1915년 9~10월).

이러한 각국의 평화구상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한 지도원칙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에 제시한 「평화를 위한 14개조」였다. 이 14개조에는 비밀외교의 금지, 경제장벽의 철폐, 군비축소, 유럽 국민들의 민족자결, 그리고 국제평화기구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9년 1월부터 시작된 파리강화회의에서는 국제연맹위원회가 설치되어 규약안 토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프랑스가 주장한 침략권을 제압하기 위한 국제참모본부 설치안이나 영국·미국

이 제기한 징병제도 철폐안이 함께 부결되었기 때문에 침략전쟁에 대한 제재 조치나 군축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연맹 규약과 전쟁의 금지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정된 베르사유조약은 독일에 대한 강화조약을 포함해 전체 440조의 규정과 많은 부속 문서로 구성되었다. 제1편의 국제연맹 규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설치를 규정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상설 기관들을 갖춘 국제평화 유지 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1919년 6월에 채택된 국제연맹규약은 전문에서 “체약국은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의무를 승낙한다”는 것을 가맹조건으로 명기하고, 군비축소·분쟁의 평화적 해결(중재재판)·집단안전보장을 삼위일체로 지향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국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지장이 없는 최저한도까지 군비를 축소하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연맹 국가 간의 영토 보존과 독립을 존중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위를 위한 전쟁만을 정당화했다. 또 제11조에서는 집단안전보장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의 조항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연맹국 간의 국교 단절에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연맹이사회의 심사에 회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즉시 전쟁에 호소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중재·사법판결이나 이사회 보고가 있는 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것으로 전쟁의 전면적 확대를 우선 억제한다

고 하는 방식, 즉 전쟁의 모라토리엄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서 즉시 개전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나 보고를 받은 당사국은 일체의 판결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판결과 권고에 따르는 연맹국에 대해서는 전쟁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연맹 규약은 이러한 전쟁 금지조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의 행사나 금융·경제상의 제재조치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해결안이나 권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쟁에 호소하는 것도 자유였고, 채택되더라도 분쟁 당사국이 이것에 복종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하면 규약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전쟁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또 전쟁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 권한이 연맹 가맹국에만 위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맹하지 않거나 연맹을 탈퇴해 버리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맹 규약에 의해서 전쟁이 일반적인 범위에서 금지된 것은 중요한 전환을 의미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 그 피해나 비참함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일지가 전쟁법의 과제였다. 그에 대해서 국제연맹에서는 전쟁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전쟁의 발생을 막는 방안을 추구하는 등 전쟁 위법화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전쟁의 개전권한이 주권국가에 위임되어 그것을 제약하



그림 4 윌슨 대통령

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전을 억제한 것은 군사동맹에 의한 세력균형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채택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는 가맹 국가가 상호 분쟁 해결을 전쟁에 호소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위반해 전쟁을 택한 국가는 상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맹국과도 교전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국제연맹에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하면 어떠한 군사대국도 단독으로 모든 국가와 적대할 수 없으므로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전쟁의 법적 금지=위법화와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제재조치는 표리일체로 상정되어,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 유지에서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 형성으로의 전환을 도모한 것이다. 그것은 전쟁을 국가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로 여겨온 ‘힘의 지배’로부터, 전쟁은 범죄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는 시도의 시작이기도 했다.⁶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국제연맹이란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유지라면서도 역시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을 유지하고 양국의 이익 확보를 중심으

6 이러한 국제연맹 규약을 활용해서 개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헌법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1931년의 스페인 헌법은 제77조에서 “대통령은 국제연맹 규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호전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모든 방어방법 및 스페인에 의해서 승낙되고 또한 국제연맹에 등록된 국제협약에 정해진 모든 사법절차 또는 조정 및 중재절차가 다 취해진 후가 아니면 선전포고에 서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제연맹 규약에 따라 모든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서 해결의 노력을 다한 후가 아니면 개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국의 1932년 헌법도 “선전은 국제연맹 규약에 반하지 않을 때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로 운영된 ‘승전국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연맹에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이나 독일도 얼마 동안 가맹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감퇴하고 군사적 강국이 국제연맹의 외부에서 자유롭게 개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버렸다. 또 미국이나 소련에 필적하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연맹에서 제재조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할 영국이 연맹 규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유화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각국의 보소가 혼란해져서 제재조치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제재조치는 경제봉쇄가 주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던 것도 국제연맹이 전쟁 금지를 실현할 수 없었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뒤에 기술하는 것과 같이 부전조약이나 군비축소를 주도하고 전쟁제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전쟁책임과 전쟁범죄

이처럼 베르사유조약은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쟁 위법화의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전쟁 발발의 책임이 오로지 독일에 있다고 명기하고, 나아가 그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형태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즉 제231조는 독일 및 그 동맹국에 대해 침략(aggression)으로 유발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종래에도 있었던 강화조약의 배상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침략’에 대한 배상이었다. 그것은 침략전쟁이 처벌할 만큼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 즉 침략전쟁이 위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태를 가리켜 침략이라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때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무력공격에 의한 ‘침략’을 의미하는 ‘invasion’이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광의의 침공을 가리키는 ‘aggression’으로 바뀌게 된 것도 영국이 해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용어의 변경도 전쟁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는 전쟁관이 침투해 가는 가운데 침략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화되어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부전조약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각국 간의 합의는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1974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서였다.⁷

한편,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제227조의 ‘국제도덕과 조약의 신성함을 범한 중대한 죄’라고 하여 독일 황제의 형사책임은 문제로 삼았는데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정에서 재판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대일본제국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무답책론(無答責論)을 지지했지만 월슨 대통령의 연설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황제를 재판하는 주요 당사국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황제가 망명한 중립국 네덜란드가 소추를 법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양심에 근거한 고도의 국제 정치행위’라며 정치범 보호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

⁷ 이 결의에서는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국제연합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무력의 행사’라는 일반적 정의 외에 주요한 구체적 예가 열거되었다.

았다. 더욱이 제228조에서는 전쟁을 지도한 독일의 힌덴부르크 참모총장과 루덴돌프 참모차장을 비롯하여 890명을 전쟁법규 위반 범죄자로 소추했지만 이것도 독일 정부가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교전법규 위반에 머무르지 않고 개전 책임이나 전쟁지도 책임이 개인적으로 추궁된 것은 사실이며 이것도 전쟁 위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전쟁지도자 책임론은 그후 정치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국제법학자에 의해서 이론적인 검토가 진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과 연결되었다.

3. 전쟁 위법화와 부전조약

전쟁 전폐를 위한 노력

국제연맹은 무력함만으로 일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간기(戰間期)에 전쟁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맹 규약을 보완하는 시도도 거듭되었다.

1924년의 연맹 제5회 총회에서 프랑스가 제안하여 채택한 ‘국제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장협정(제네바 평화의정서)’은 그때까지의 규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전쟁조항을 개정하여 전쟁 전폐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 보장협정은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 처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라고 선언하고 침략에 대항하는 것 이외에는 전쟁에 호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기했다.

아울러 어떠한 국제분쟁도 모두 중재제도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연맹이사회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의무적 중재제도에 따

라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 또 당사국은 군사·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해 군축을 실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 즉각적으로 18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모든 국제분쟁을 이사회나 중재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위임한다는 방식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사국 이외의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일본도 대중(對中) 외교를 크게 규제할지도 모르는 의무적 중재제도에 반대해 비준하지 않았고, 영국도 정권교체에 따라 방침을 변경하여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쟁 전폐를 향한 협정은 결국 발효되지 않은 채로 끝났다. 그러나 이 평화의정서의 기초가 되었던 전쟁 전폐를 목표로 하는 사상이 다른 형태로 등장했는데 그것은 1928년에 서명된 부전조약이었다.

부전조약

이미 기술하였듯이 국제연맹 규약으로는 연맹 이사국에 위탁된 분쟁에 대해서 당사국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전쟁에 호소하는 자유가 인정되는 등 전쟁을 철저히 금지할 수 없었다. 부전조약은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부정하고 또한 그 상호관계에서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자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언한다”(제1조)고 전쟁포기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전쟁 위법화를 심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을 포기한 다음 “체약국은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분쟁 또는 분의(紛議)는 그 성질 또는 기인(起因)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처리 또는 해결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2조)고 하여 국제적 분쟁 해결을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평화적 수단으로만 도모하도록 한정하는 것이다.

부전조약은 주창자인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 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의 이름을 따서 켈로그·브리앙조약이라고도 하고, 서명지의 이름을 따서 파리조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이 정식 명칭이며, 영역은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이다. 그 제1조에 있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일본국헌법 9조 제1항과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국헌법 제2장 제목의 영역이 ‘Renunciation of War’인 것도 양자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전조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을 헌법에 도입한 것은 일본국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1931년 스페인 헌법 제6조가 ‘스페인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했고, 1935년 필리핀 헌법 2장 제3조도 ‘필리핀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탁된 국제법의 원칙들을 국내법의 일부로 채용한다’고 규정했다. 맥아더가 주둔했던 곳이 필리핀이었다는 것은 일본국헌법과의 연관성을 상기시킬 것이다.

미국의 전쟁 위법화 운동

부전조약은 프랑스의 브리앙 외무장관이 미국·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의한 분쟁 해결을 금지하는 조약 체결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의 켈로그 국무장관이 이국간(二國間) 조약의 효과를 의문시하여 다국간 조약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⁸

⁸ 더욱이 브리앙 등의 주도에 의해 부전조약에 앞서 1925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7개국은 상호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국에는 국제연맹 이사국

그 요청에 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15개 국가가 찬성을 표시했다. 이어 1928년에 서명되고, 다음해인 1929년 7월부터 발효되어 1938년까지 64개국에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기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전조약이 오늘날에도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당시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를 포함한 6개국은 이 조약과 별도로 부전조약과 동등한 규정을 포함한 ‘불침략과 조정에 관한 조약’(라틴아메리카 부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전조약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국제법으로서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부전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0주년을 기념해서 브리앙 외무장관이 미국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가 계기가 된 것이었는데 원래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브리앙 외무장관에게 설득한 사람은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의 버틀러 회장과 쇼트웰(J.T.Shotwell) 위원장이었다. 쇼트웰은 조약의 조문 기초에도 관여했다. 그리고 브리앙의 메시지에도 인용되고 있는 것이 ‘전쟁 비합법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널리 퍼진 운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부전조약의 성립을 재촉한 미국의 전쟁 위법화 운동은 두 개의 다른 사조가 합류하여 하나의 국민운동이 된 것이다. 그 하나는 쇼트웰 등이 주장한 ‘국책수단으로서 전쟁’만을 포기하고 자위·제재전쟁을 인정하여 집단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레빈슨(Salmon Levinson)이 주창한 모든 전쟁의 비합법화를

의 협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단적 행동을 취한다는 로카르노조약을 체결했다.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양자는 전쟁의 위법화라고 하는 방향성에서는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많았지만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의 인정과 부정을 둘러싸고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했다.

레빈슨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 3월 미국의 『뉴 리퍼블릭』지에 「전쟁의 법적지위」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전쟁의 비합법화(Outlawry of war)’를 주장했다. 그 내용은 침략전쟁이든 자위전쟁이든 제재전쟁이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비합법화하여 최종적으로 전쟁의 폐절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었다. 레빈슨이 주장한 전쟁의 비합법화는 전쟁이 분쟁 해결의 수단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그 자체가 대량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을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승인된 ‘제도로서 전쟁’ 자체를 국내법과 국제법 체계로부터 배제하자는 것이었다.⁹

레빈슨은 1921년에 ‘전쟁 비합법화 미국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이 위원회의 멤버, 즉 위법화론자(Outlawrist)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기구에 의한 제재조치라 일체의 전쟁을 비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민의 여론과 서약으로 전쟁의 전패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이 주장은 볼라 상원의원의 찬성을 얻어 모든 전쟁을 비합법화하는 상원 결의안으로 4번이나 상정되는 등 의회 관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철학자인 존

⁹ ‘Outlawry of war’라는 전쟁을 법의 영역에서 구축하는 혹은 법의 테두리 밖에 둔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전쟁을 법의 영역에 둔 다음에 그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는 ‘위법화론’과는 엄격히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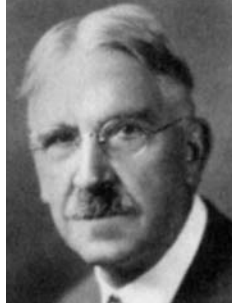


그림 5 존 듀이



그림 6 케이디스

듀이(John Dewey)였다. 듀이 또한 전쟁을 전제로 하는 체제가 전쟁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므로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체험으로 통감하고 있었다. 집단안전보장정책을 채택한 국제연맹도 그것이 아무리 전쟁의 위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제재전쟁을 인정함으로써 전쟁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유지해가는 체제로 존재했다. 전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제연맹 규약 등에서 제재전쟁이 법으로 인정됨으로써 각국 정부가 군비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전쟁에 한없이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제도를 합법적 전제로 해서 성립하고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제를 폐절해 가지 않는 한 전쟁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수행을 자기 권한의 골격으로 존립시키고 있는 국가나 정부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또 전쟁을 진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라는 제도를 폐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국민 하나하나가 스스로 추구하고, 국민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의 결과로 전쟁을 폐절하여 가지 않는 한 전쟁은 폐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듀이 등의 전쟁비합법화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칸트가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1 확정조항으로 ‘각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한 사상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것이다.(→111쪽)

그리고 실제 부전조약을 실현시킨 것은 위법화론자나 듀이 등과 같은 정치적 지식인에 의한 언론 이상으로 힘을 가진 여론의 압력이었다. 조약을 심의하고 있을 때 비준을 요구하는 편지가 백악관에는 하루에 200통, 국무부에는 600통꼴로 배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평화자유연맹, 부인유권자국민동맹, 부인클럽국민연합, 미국여자대학교협회 등 다수의 여성단체를 포함한 평화단체나 재향군인회 등의 조약 무수정 비준 요구 결의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가결되기 전날에는 200만 명의 서명이 상원에 배달되었고 연방교회회의도 즉시 비준을 요구하는 18만 명의 서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나아가 미국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진 평화단체들의 데모가 반복되고 상원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 등의 덕으로 부전조약은 비준되었다.

연합국총사령부(GHQ) 민정국(GS)의 차장인 케이디스는 헌법9조를 직접 담당하면서 학생시절에 감명을 받았던 부전조약을 참조했다고 자주 증언한다. 케이디스뿐만 아니라 일본국헌법의 기초에 관계한 미국인들이 이러한 국민운동의 열기 속에서 부전조약이 비준된 시점에 학

생활을 했거나 법률관이나 행정관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헌법9조의 사상적 흐름을 생각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다.

전통적 먼로주의에 회귀하여 있던 미국 국민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외교정책의 결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외교차원에서 여론의 의의를 재인식시키는 것이었다. 부전조약의 비준에 즈음해서 일본은 부전조약 제1조 중 ‘그 각자의 인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천황대권인 조약체결권을 침범한다며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 선언을 표방했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그것이 부전조약 문제의 초점으로 받아들여졌다.

각자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함

전쟁비합법화운동이 전쟁폐절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본 것은 듀이의 논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실로 ‘각자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인민이 부전이나 반전을 선언하고 그것을 정부에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근원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구동력이 될 것이며 정부 선언에서 위법화되는 전쟁은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부전조약도 그렇게 처리되어 갔다. 일본국헌법이 전문에서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로 신뢰’한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전쟁비합법화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헌법구조에서 전쟁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에 부과된 책무

이상으로 국민 자신의 책무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전조약을 낳은 원동력은 다름아닌 국민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당시의 일본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추밀고문관 이시이 기쿠지로[石井菊次郎, 1866~1945]는 부전조약이 레빈슨이나 『전쟁의 비합법화』의 저자인 찰스 모리슨, 그리고 전쟁의 비합법화 결의를 계속 제출한 볼라 상원의원 등의 운동에 의해서 환기되어 그 결과 여론의 압력에 눌러 미국 정부가 각국에 제의한 것이라고 한 다음, 부전조약의 ‘인민의 이름으로’에는 ‘인민의 친정(親政)’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일본에 파급되어 ‘국민외교’ 요구로 연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즉 전쟁비합법화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전쟁이 소수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수백만~수천만 명의 민중 생사가 좌우되어 온 것에 대해, 20세기에는 진정한 세계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전쟁 결정권한을 갖는 주체가 인민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부전조약은 인민의 친정에 속해야 하는 인류 최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에게 위탁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도 공히 이 경우 적당한 용어는 아니다. 즉 인민이라는 용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不戰條約論』, 『外交時報』, 1928년 10월 15일호)며 부전조약의 사상적 배경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사상을 반영한 조약을 ‘인민의 이름으로’라는 구절 그대로 비준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28년 8월, 15개국에 의한 조인식에 일본 대표로서 출석한 추밀고문관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1865~1936]도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미국의 국민적 운동과 여론의 힘을 알고 강한 인상을 받아

귀국길의 선상에서 「전쟁포기조약에 관한 연설초고」를 집필했다. 우치다는 여기에서 이시이와 마찬가지로 쇼트웰이나 레빈슨, 모리슨, 볼라 상원의원 등의 활약을 예로 든 다음 부전조약이 대국 간의 외교교섭 성과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운동에 의해서 얻은 성과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치다는 이시이와 반대로 “여러분 중에는 본 조약이 성립했지만 강대국 중에는 점점 더 군비를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려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의 변태적인 현상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한 조약이 여론의 지지에 의해 성립한 이상 여론은 마침내 개방되고 강력해져 시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조약의 정신이 충분히 널리 이해되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추구해 마지않았던 진정한 세계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그리 먼 장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평화구축에서 여론의 의미를 호소하려 했다.

1932년 만주국의 승인을 둘러싸고 외무대신으로서 국가가 초토화되더라도 승인할 것이라는 ‘초토연설(焦土演說)’을 행하게 되는 우치다도 부전조약 체결 당시에는 평화를 향한 세계여론이 갖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만주사변 등이 부전조약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며 ‘평화에 대한 죄’를 물었던 것을 함께 생각할 때, 부전조약 체결 이후 행로의 우여곡절은 우치다만의 일이 아니라 일본 자체가 걸어온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침략전쟁이며 자위전쟁인가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전조약의 비준과정 속에서 배태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위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제법에서 중요한 논쟁 개념으로 부각시킨 것도 부전조약이었다.

4. 전쟁 위법화와 자위권

부전조약의 '전쟁'

전쟁이 주권국가의 자유라고 간주되어 전쟁합위무차별론(戰爭合違無差別論)이 인정되던 시대에는 그 전쟁이 자위인지 아닌지는 도의론(道義論)이나 국내에서의 정책지도 차원의 문제이지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쟁 자체가 원래부터 위법이 아닌 이상 자위도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연맹 규약과 부전조약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부정되자, 타국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등에 어떠한 수단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부전조약에는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전쟁 위법화는 정신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강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국제법상 어떠한 전쟁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거기에 자위권이라고 하는 법 개념이 국제적으로 중시되기에 이른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10년 전까지는 모든 전쟁이 자유였지만 부전조약에 따라 전쟁에 호소할 경우 그것이 왜 위법적인 전쟁이 아닌지를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전조약이 지니는 국제법상 역사적 획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단, 후세에서 보면 어떠한 법도 운용에 따라 그 의의가 달라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부전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공문서나 의회

의 성명 등을 통해 자위권은 모든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고, 어떠한 조약에도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각국은 어떠한 때에도 조약 조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영토를 외부의 공격 또는 침입으로부터 지킬 자유를 가지며, 자위를 위해 전쟁을 벌일지 말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견해는 체약국 사이에 양해가 되어 있었다. 단, 어디까지나 ‘자국의 영토’가 공격이나 침략에 노출된 경우라는 전제가 있었음에도 미국은 해당지역까지 미친다는 먼로주의의 견해를 표명했고, 자치령이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영국은 자국 영토뿐 아니라 이집트 등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세계의 어떤 지역’에 대한 공격을 방위하는 것도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아 비준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영국의 유보 조건을 안 일본도 자국민의 거주지역이 공격에 노출되었다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자위권에 해당한다면서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시켜 갔다. 1928년 당시 일본 정부는 5월의 제남사건(濟南事件)¹⁰에 따른 중국 출병을 결정했다. 또 만주의 장작림(張作霖)¹¹이나 국민당 정부에 ‘만주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적당하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고 통고하고, 중국에 출병하는 것을 용인하는 유

¹⁰ 역자 주 - 1928년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재개하여 제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일본군이 재류일본인 보호 명목으로 출병하여 제남을 점령한 사건. 다음해 일본군은 철병했지만 중국의 대일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¹¹ 역자 주 - 장작림(張作霖, 1875~1928). 중국의 군인이며 정치가로 봉천군벌의 총수. 마적 출신으로 동북3성을 지배하에 두고 북경 정계에 진출했다. 1926년 동삼성 보안총사령에 취임했으며, 다음해에 대원수를 칭하고 북경 정부를 장악했다. 1928년 국민당의 북벌군에 대패한 후 일본의 관동군이 획책한 열차폭파로 사망했다.

보 조건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국의 특수지역과 마찬가지로의 유보 조건을 만주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각국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 방법을 피하고 오히려 자위권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자위권이란 개념은 국제법상 명확성이 결여되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 점 때문에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장래에 일본의 대중 행동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는 이점이 있다”(외무성, 「不戰條約二關スル對米解答案」)며, 명확한 유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만몽지역에서 확대해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자위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해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은 부전조약을 비준했는데, 그 점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부전조약의 조인에 즈음해서 많은 국가가 자위권에 대한 유보 조건을 두었다는 점 때문에 이 조약에서는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는 포기하는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양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수의 국가가 부전조약을 비준한 것도 독자적인 자위권 해석이 유보되었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유보에 의하여 부전조약은 자위전쟁이 아닌 전쟁, 즉 ‘침략전쟁의 위법화’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 양해를 각 국가가 하게 되었다. 물론 자국에 대한 ‘공격’과 ‘침략’이 있을 경우에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해가 거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 ‘자위를 위해 전쟁’에 호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 분쟁 해결을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한정된 부전조약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야말로 전쟁 비합법화 운동이 우려하던 것이었으며 ‘제도로서의 전쟁’ 그 자체를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체계에서 추방하려는 시도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9조로 다시금 분명한 형태로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부전조약을 사문화(空文化)시켜 간 것은 다름아닌 일본이었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

부전조약과 자위권 발동 사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부전조약에 대한 추밀원 심의에서 외무성의 훗다 마사아키[堀田正昭] 구미국장이 말한 것처럼 “자위권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고려를 거듭한 결과 광의로 해석하기로 하고 자국의 영토만을 방위해야 한다는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外務省文書, 『戦争抛棄ニ關スル國際會議及條約關係一件』 제5권)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는 자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광범위의 자기 해석권이 있다며, 일본의 영토 밖에서도 군사행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해 부전조약을 비준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관동군의 행동을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주권 침해라면서 반대했고, 미국 국무장관 스티븐슨은 부전조약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여하한 사태나 조약 등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스티븐슨 독트린(불승인주의)¹²

¹² 이것은 처음에는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았지만, 1932년 3월의 국제연맹 총회 결의를 거쳐 국제관행으로 승인되었다. 1970년의 국제연합

으로 일본에 경고했다.

국제연맹은 리튼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유조호(柳條湖)에 대한 조사를 수행토록 했으며 조사단은 “일본군의 군사행동은 정당한 자위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국제연맹은 1933년 2월의 총회에서 “일본 장교가 자위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밤 봉천 및 그 외의 만주 각지에서 취해진 일본의 군사행동을 자위 조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리튼보고서에 대해서 일본군의 행동은 ‘자위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는 그 행동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외부인이 논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자위권의 인정은 일본 정부의 권한이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며 권고를 거절하고 국제연맹 탈퇴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유조호사건 이후, 일본은 자위권을 주장하며 선전포고 없이 무력을 발동해 나갔으며 만주사변이나 상해사변, 지나사변 등 ‘사변(incident)’이라고 명명하여 국제법상 전쟁이 아닌 것처럼 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부전조약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은 정규의 선전포고를 하면 부전조약에 위반된다고 보았다(外務省條約局第二課, 『支那事變關係國際法律問題』).

일본으로서는 중국에서의 이권 추구를 영국·미국에 용인시키기 위해 부전조약에 명백하게 반하는 일은 피할 필요가 있었다. 선전포고를 할 경우 영국·미국 등에 중립제도가 적용되어 석유나 강철 등의 중요 군수물자나 광물자원의 수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우호관계원칙 선언은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전조약에 반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국제연맹의 스웨덴 대표 등은 “타국의 영토에 군대를 진주시켜서 군사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연맹 규약이나 부전조약을 명확히 위반하는 것이며, 일본과 같이 자위권을 확장 해석한다면 국제법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수 이해지역에서 자위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던 영국이나 미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 영국·미국과의 협조가 불가능하게 된 단계에서는 자위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중경(重京) 등 중국의 무차별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포로의 취급에 있어서 교전규칙에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사행동은 ‘사변’으로 처리되었다. 물론 교전법규는 사실상의 전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전쟁터에서는 교전법규 위반행위나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¹³

이와 같이 일본이 실질적으로는 전면전쟁인 ‘지나사변’을 형식상으로는 전쟁이 아닌 사건으로서 처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훗날 일본국 헌법의 심의과정에서 9조에 대한 아시다[芦田] 수정에 대해서 중국 등

¹³ 1937년 8월, 불확대 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던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육군차관은 “제국은 대지(對支) 전면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육전의 범규관례에 관한 조약, 그 외 교전법규에 관한 조약들의 구체적 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행동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陸支密=육군지나기밀 198호)고 지나 현지 파견군에 지시를 내렸다. 또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육군성 군무국장이었던 무토 아키라[武藤章]는 “1939년 중국의 전쟁은 공적으로는 사변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포로들은 포로로서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1947년 8월 8일 법정)고 증언했다.

이 ‘자위권의 발동’이 실질적인 전쟁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하는 선례가 되었던 것이다(→310쪽).

부전조약이 사문화되어 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유엔헌장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전쟁에 해당하는 사태에 대해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라고 하는 신개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헌법9조 제1항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군사행동이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어떤지가 쟁점이 되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1948년 11월 8일, 만주사변에 관해서 “자위권은 공격을 당할 처지인 나라가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어떤지를 제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켈로그·브리앙조약을 가장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행동이 정당한지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極東國際軍事裁判速記録』 제10권)라고 판시했다. 즉 자위권을 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공격을 당할 처지인 나라’와 ‘전쟁에 호소하는 나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자기해석권에 맡겨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것은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제사회의 판단에 속한다는 뉘른베르크재판의 법리와 같은 것으로, 현재 국제법의 선례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9조는 이와 같이 자위권이 자기해석에 의한다고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부전조약이 사문화된 것을 반성하고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부전조약의 규정을 준거로 삼아 전력 불보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⁴

유엔헌장과 자위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6월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은 “모든 가맹국은 그들의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 그리고 정의가 위태롭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제2조 3항)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과하여 부전조약보다 더 철저한 전쟁위법관을 표명했다. 부전조약 체결 후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은 채로 군사행동이 취해진 사실에 비추어 전쟁의 실태를 갖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이 헌법9조에 도입된 것이다.

또 부전조약 이래 문제가 되어 온 자위권은 전쟁개시의 원인과 조건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자위권의 발동으로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은 통상의 전쟁으로 취급되며, 자위의 한도를 넘어서 교전국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유엔헌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시켜 이제까지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던 자위권의 양상을 바꾸었다. 그러나 자위권 자체는 부정된 것이 아니다. 단지 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위권¹⁵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긴급

14 일본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했던 다나카 히데오[田中英夫]에 따르면, 케이디스는 전쟁포기 규정에 대해 “내가 학생시절에 배운 켈로그·브리앙 부전조약의 취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전력의 불보유 선언은 부전조약이 결국은 무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田中英夫(1979), 『憲法制定過程覺え書』, 有斐閣).

15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다음과 같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해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자위권 행사에

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 한도로 공격의 정도와 균형이 취해진 범위에서 허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지금까지 국가가 행사해온 자위권을 개별적 자위권으로 규정하고 새로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같은 복수국가 간의 조약에 의한 자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가맹국 전체의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자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국제연합은 공동의 이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을 위반하여 가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되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회복을 권고하고 가맹국을 대신해서 비군사적 조치 또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 사이에 침략국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반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침략행동이 완수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따라서 유엔헌장 제51조는 이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무력공격을 받은 가맹국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침략국에 대항할 수 있다며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권의 행사에 즈음해서 가맹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의 자위행동이

즈음하여 가맹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현장에 근거한 권능 및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판단하여 자위행동이라고 하는 무력행동이 한도를 넘거나 자위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력행동의 정지를 명하게 된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공격을 행한 국가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개별적 자위권에 입각한 행동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은 종래의 국제법에서 논의되어 온 자위권과 달리 매우 제한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맹 가맹국에 의한 집단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충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연합은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따라 국제연맹 규약으로는 저지할 수 없었던 침략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안전보장이사회에 큰 권한을 부여했다. 나아가 그 권한의 원천으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견해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공격이나 침략을 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나 제재조치에 가담한다고 하는 점에서 ‘타국을 방위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집단화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침략을 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침략국 이상의 군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국제연맹의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에서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대규모로 새로운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로 모습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국 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발족 시는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대국의 의향을 다른 가맹국

이상으로 가중하여 반영시키는 시스템이어서 가맹국 다수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진 일도 적지 않다.¹⁶

그리고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침략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쟁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차림을 한 정전론(正戰論)의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쟁을 위법화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인 ‘제도로서의 전쟁’ 자체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합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듀이가 국제연맹을 비판한 것도 바로 그 점에서였다. 그런데도 부전조약은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을 인정한다고 하는 쇼트웰 등의 집단안전보장 구상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해되어 갔다.

그러나 레빈슨이나 듀이 등의 전쟁 비합법화 사상은 자위전쟁과 침략전쟁의 구별 없이 모든 전쟁을 폐지해야 하고, 제재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전쟁이 된다면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의미에서 ‘제도로서의 전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전력불보유에 의해서 실효성을 갖게 하려고 한 헌법9조는 바로 전쟁 비합법화 사상의 수맥을 계승한 것이다.

게다가 전쟁 비합법화 운동에서 듀이 등이 주장한 것처럼 평화는 국가주권의 확보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적·인종적·지리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실현되는 인간의 교류에 따른 공존으로 가져올

¹⁶ 단, 국제연합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에 관한 주요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회가 일정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평화를 위한 결집결의(結集決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야말로 국민주권·국제협조·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반전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란 사고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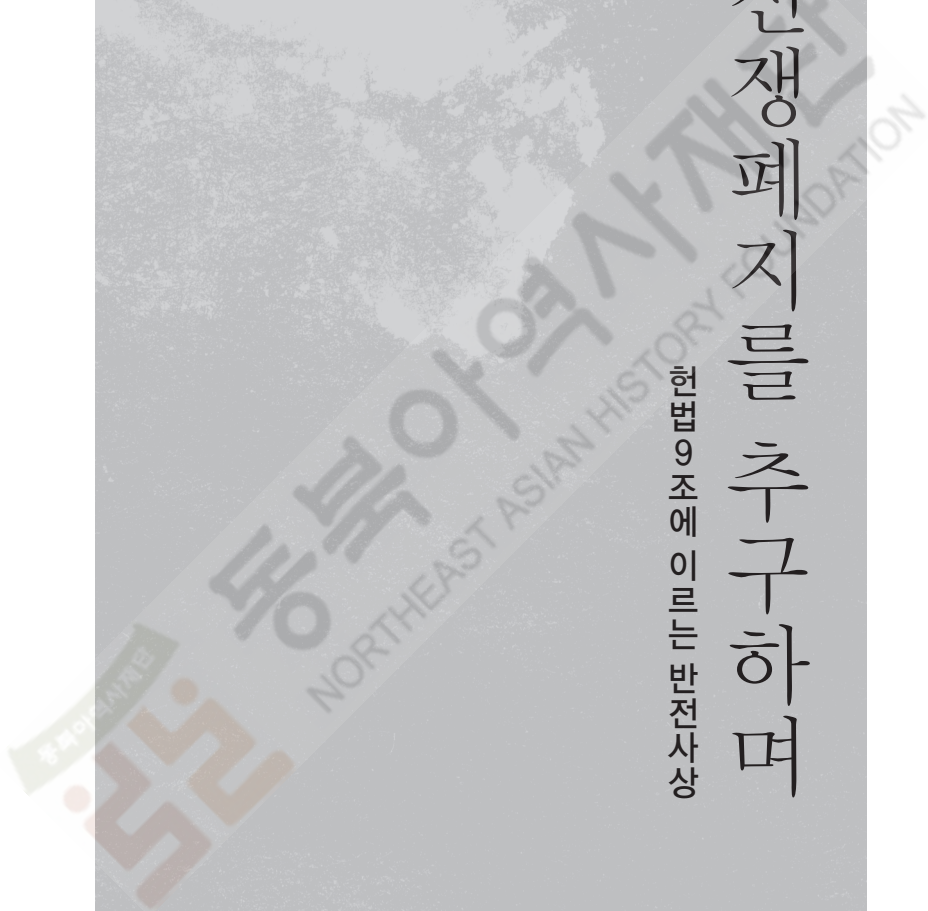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점을 감안할 때 국제연맹이나 부전조약, 그리고 국제연합의 전쟁 위법화를 통한 전쟁의 폐절이라는 과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연합에도 '제도로서의 전쟁'의 전면적 배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쟁포기·군비철폐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헌법9조가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그런데 '제도로서의 전쟁'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전쟁폐절이라고 할 수 없다.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군사력을 국제연합에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과제의 해결에 역행할 수도 있다.

전쟁에 의한 문제 해결을 합법화하는 세계는 항상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결코 전쟁 자체를 폐절할 수 없는 것이다.

제 6 장

전쟁 폐지를 추구하고

헌법 9조에 이르는 반전사상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3의 전후'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증유의 참화를 초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은 원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의미심장하게 말한 것처럼 “유럽의 대화란(大禍亂)은 일본이 국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다이쇼 시대의 천운”(『世外井上公傳』 제5권)이라며 수년 동안 매달렸던 중국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았다. 일본이 영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영일동맹의 정의(情誼)’를 빌미로 참전한 것은, 영국·프랑스·러시아와 협조해 ‘동양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일본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구미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일소’하여,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대전 중인 1915년에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이 중국에 대해 들이댄 ‘대 중국 21개조 요구’는 바로 그러한 일본의 세력 확장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확장을 자제하려는 국제적인 사조, 나아가서는 중국의 주권존중·영토보전·문화개발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사조는 일본에도 파급되어 헌정옹호운동과 서로 자극을 주면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시대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안으로는 민주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라고 일컬어지듯이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군사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사상의 힘과 같은 종합적인 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바야흐로 총력전 시대로 옮겨가면서 군비철폐·전쟁 폐지를 추구하는 전쟁 위법화 운동이 일어나고 정반대의 군비강화론도 드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청일·러일전쟁 후를 이어 승전으로서 맞이한 ‘제3의 전후’는 다양한 군비철폐·전쟁폐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4의 전후’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 위법화를 향한 1919년부터의 움직임은 1939년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20년간의 휴전’을 유지한 것만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45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도 군비철폐나 전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나 사상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헌법9조가 탄생되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일본의 반전을 둘러싼 운동과 사상 상황의 국제적 연계라고 하는 새로운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지막으로 헌법9조로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1. 국제연맹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제1차 세계대전의 영아로서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전권단(全權團)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에게는 윌슨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14개조」에 대해서 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세에 순응하라는 훈령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일본 정부는 마키노에게 “본권의 구체적 성안(成案)의 선정은 가능한 한 연기시키도록 노력하

고, 단순히 희망안과 같은 것으로 정리하고 제도의 실행방법은 각국의 숙제로 하며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성안에 대한 토의를 장래의 상당한 시기까지 각 국가의 숙고에 맡길 수 있다”는 훈령을 내렸다.



그림 1 고노에 후미마로

국제연맹 설립에 관한 의사의 연기를 피하여 각 국가가 그 의사를 본국에 가져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연맹설립안의 알맹이를 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연맹이 구미의 ‘가진 나라’의 세력을 현상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일본 등과 같은 ‘가지지 못한 나라’의 발전을 억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대 대국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미 일본의 전시 중 권리확대 행동에 대해 ‘불난 집에 도둑놈’, ‘침략적 군국주의의 권화(權化)’, ‘제2의 독일’이라는 비난이 구미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구독일령이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상설되는 것을 극력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권단을 수행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파리로 출발

1 역자 주 -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도쿄 출생. 부친은 메이지시대의 국권주의자로 귀족원 의장, 추밀고문관 등을 역임한 아쓰마로[篤麿]. 교토제국대학 졸업 후 내무성에 들어가서 1919년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전권을 수행하여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참석했다. 1916년 25세에 귀족원 의원이 되었고 1933년에는 의장에 취임했다. 1939년 추밀원의장에 취임하고, 1940년에 대정익찬회를 결성하여 파시즘 중심의 조직을 만들었다. 패전을 예상하고 국체보존을 절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전후에는 국무상

하기 전에 발표한 「영미 본위의 평화주의를 배격한다」(『日本及日本人』 제746호, 1918년 12월 15일)는 논문에도 나타나는데, 그는 강화회의의 기본이 영국·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고노에는 동시에 강화회의의 의미에 대해 ‘인류가 정의, 인도에 근거한 세계 개조 사업에 건딜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일대 시련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쟁터를 직접 목격한 고노에는 “전율할 만큼 유혈과 희생의, 그와 같은 참화는 단지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영아를 출산하기 위한 산고로서만 비로소 용인된다”(『前後歐美見聞錄』, 1920)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고노에도 군사기술훈을 모두 동원해서 파괴한 전쟁터를 직접 보고, 인류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기구를 창출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심대한 참화를 보상할 수 없다며 국제연맹의 존재 의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국제연맹협회

1920년 4월, 세계적 기구인 국제연맹의 일본 조직으로 일본국제연맹협회²가 결성된 것은 세계평화 건설이란 국제연맹의 존재 의의를 무

으로 입각했다. 하지만 전범으로 지명되자 1945년 12월에 음독자살했다.

- 2 국제연맹협회세계연합은 각국의 민간단체·국제연맹협회의 연합체로 조직되었다. 국제연맹 발족 전인 1919년에 제1회 세계연합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군비제한 문제 등을 논의해 갈 것을 결의했다. 일본국제연맹협회는 그 후 오쿠마 시게노부를 회장, 에바라 소로쿠(江原素六), 사카타니 요시오[阪谷芳郎]를 부회장으로 1906년에 설립된 대일본평화협회(→176쪽)를 1925년 5월에 합치고 그 사업을 인수했다. 또 국제연맹 탈퇴 후에는 일본국제협회로 개칭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일본외정협회로 바뀌었다.

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또 1921년 8월 이후 국제연맹 일본대표를 맡은 이시이 기쿠지로[石井菊次郎]³가 “20세기 이후에는 이미 침략적 행동은 유행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배척되는 상태를 노정해 왔다”



그림 2 이시이 기쿠지로

(『世界平和の光輝ある機關』, 『國際知識』 제3권 1호, 1923년 1월)고 지적한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여론이 국제문제 처리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었다. 민간단체여야 할 국제연맹협회에서 중국 대표의 일본 비판이 외교기관인 국제연맹의 논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면 외교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일본국제연맹협회의 중심이 된 사람은 그러한 국민여론이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신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외무성 관계자와 유럽주재 일본인 그리고 국제법 연구자들이었다.

국제연맹협회는 연맹의 정신을 철저하게 주지시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여 군축 촉진운동과 평화사상 보급의 담당자로서 활동하도록 했으며, 1933년에는 세계에서 3000개의 지부를 갖기에 이

3 역자 주 - 이시이 기쿠지로[石井菊次郎, 1866~1945]. 지바현[千葉縣] 출신으로 1891년 외무성에 들어가서 통상국장, 차관, 주불대사를 역임한 후 1915년 외상에 취임하여 일러협약 체결에 진력했다. 1920년에 주불대사가 되어 베르사유 체제하의 국제회의에서 평화조약 실시위원장, 제네바 군축회의의 일본대표로 활동했다.

르렀다. 일본국제연맹협회는 외무성의 주관으로 각 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사가 지부장이 되었던 관민 단체였다. 협회 내에 부인부와 학생부를 두고 대학 내의 국제연맹연구회 등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48개의 대학에 지부가 조직되면서 국제조직과 연계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연맹협회는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과 평화사상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에 평화 기념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순회강연회와 라디오 국제강좌 방송 등을 했다. 또 기관지 『국제연맹(國際聯盟)』(후일 『國際知識』)과 일반인용 책자 『세계와 우리들』 등의 간행물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정세 변화에 수반한 평화달성 방법과 국제법 전환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비축소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예를 들면 영국 유학 후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 국민주권을 주창한 이례적인 정치가였던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⁴는 “지금까지 세계평화는 각국의 세력균형, 즉 권력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國際聯盟の價值』, 『國際聯盟』 제1권 6호, 1921년 7월)면서,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종래의 권력균형에 의해서 세계평

4 역자 주 -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1877~1962]. 나가노현[長野縣] 출신의 정치학자이자 정치가. 1899년에 도미하여 1907년에 워싱턴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에 런던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19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11년에 귀국하여 메이지대학, 릿쿄대학 등에서 정치학, 비교헌법론 등의 강사를 역임하면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했다. 대정익찬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반익찬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1946년 요시다 내각에 국무대신으로 입각했고 조각 후에는 내무대신을 맡았다. 헌법9조에 대해서는 독립국이 군대를 두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명쾌한 견해를 내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력균형 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이것을 대신하여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평화유지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국제연맹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우에하라는 그 전환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의 태도는 정말로 동정 없이 냉담’하고 인식마저 결여돼 있어 국제연맹 규약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국제평화에 대한 사상의 보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다.

법학자인 호즈미 시게토[穂積重遠]⁵는 “국제연맹이 세계의 장래에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법률학적으로 국제연맹 규약은 정말로 신기원이다. 19세기의 법률학은 프랑스 민법전으로 출발했다. 20세기의 법률학은 국제연맹 규약을 계기로 일신되어야 한다”(『法律の國際化』, 『國際聯盟』 제1권 3호, 1921년 4월)며 국제연맹 규약이 갖는 획기성을 높게 평가했다.

호즈미는 “세계대전은 물론 인류의 큰 불행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 3 우에하라 에스지로



그림 4 호즈미 시게토

⁵ 역자 주 - 호즈미 시게토[穂積重遠, 1883~1951]. 도쿄 출신의 민법학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유학한 후 도쿄대학의 교수가 되어 민법과 법리학 강좌를 담당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천부인권설을 비판하고 일본 전통의 풍습을 연구하여 생물진화나 사회진화처럼 법률도 진화한다는 설을 전개했다.

인류가 하나의 단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전쟁을 하더라도 세계 전체가 아니면 안 되었다. 평화를 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 전체가 아니면 안 되게 되었다. 전쟁의 이 뼈아프고도 값비싼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않고, 세계 전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화하려는 기도가 바로 국제연맹이며 국제법의 사실상의 근거는 여기에서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호즈미는 국제연맹이 세계 각국 공통의 통일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세계법운동(Weltrechtbewegung)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국제법이 준수 이행되어 국제연맹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신상의 기초가 확실해야 한다. 그것은 각국 각인의 국제적 마음(International mind)이며 세계적 양심(World conscience)이다”라고 강조하고 “이 국제법의 원동력을 함양하는 것이 각국 국제연맹협회의 사업으로 인류에게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라고 설파했다.

협회의 기관지 『국제연맹』에는 국제법의 동향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수시로 게재되었다. 그 중에는 부전조약이 체결되기 5년 전인 1923년에 미국 볼라 의원의 전쟁 비합법화 운동을 소개하면서 전쟁이 세계 최대의 범죄인 이상 모든 국민은 전쟁을 국제분쟁의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범죄라고 명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해적과 노예매매가 법적인 범죄로 규정된 것이 최근의 일임에 비추어 보면 범죄 중에서도 최대의 부정(不正),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을 인류가 언제까지나 용인해도 좋은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필자명 없음, 「戰爭を犯罪とすべし」, 『國際知識』 제3권 7호, 1923년 7월)도 실렸다.

협회는 또 국제연맹의 1932년 제네바 군축회의를 앞두고 군비축소

론 보급을 위해 부인부(婦人部)를 동원해서 홍보와 서명활동을 전개했다. 강대한 군비는 전쟁의 원인이며 전쟁의 유혹이 되는 군비를 철저히 축소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론의 확산을 꾀한 것이다.

국제연맹협회는 이와 같이 평화 구축을 위한 지식보급 활동을 전개해 갔지만 우에하라 에쓰지로가 염려했듯이 국제연맹과 전쟁 위법화 체제에 대한 국민의 냉담과 무관심을 바꿀 수 없었다. 영국의 국제연맹 협회가 1930년 10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지고 의회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일본국제연맹협회는 회원이 최대 1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일본의 발전을 억누르기만 하는 기관이라는 선전이 많아져 만주사변 이후에는 어떻게 국제연맹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처하면서 국제협조를 추진해 갈 것인지 제언하는 것이 협회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 돌입한 뒤에는 협조 노선을 주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하여 국제연맹협회는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한 국제법의 전환, 그리고 전쟁 위법화라고 하는 반전의 제도화 조류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제연맹의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 형성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도 거의 변함없는 상황이며, 그것은 당연히 헌법9조의 역사적 의미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게다가 외부기관으로서의 연맹협회 외에 국제연맹 조직 내에 프랑스의 정치가로 국제연맹 설립에 진력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레옹 부르주아가 제2회 총회에서 한 제언을 받아들여 1922년 1월에 발족한

국제지적협력위원회(國際知的協力委員會)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상호이해야말로 국제평화를 가져오는 최대의 기반이라며 상호이해와 국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각국에서 위원을 선발했다. 위원은 철학 부문의 앙리 베르그송, 물리학·화학의 마리 퀴리(퀴리부인), 이론물리학의 아인슈타인 등이었다. 일본에서도 다나가 다테아이키쓰(田中館愛橘)와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 등이 참가했다. 또 교육기관으로서 파리에 지적협력국제학원이 설립되어 192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나아가 각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조직되어 일본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알렸다. 다키 세이치(瀧精一)의 영문 『일본 미술연감』과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 등에 의한 일본민법과 상법의 영역 간행을 비롯해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후일 국제문화진흥회에 인계되었다. 또 국제지적협력위원회는 국제연합에서 유네스코로 발전했다.

2. 반전사상과 평화운동의 연쇄

바르뷔스와 클라르테운동

헤이그평화회의의 등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운이 세력균형 정책으로 파탄나면서 일거에 사라지고 세계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상가와 지식인이 전쟁 저지에 힘쓰지 않고 전의양양에 가담한 것을 전시 중 반성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전쟁 발발과 함께 거국일치를 요구하는 유니온 사크레(신성동맹)가 결성되고 문화인들이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부채질했다. 문학자인 앙리 바르뷔스(Henri Barbusse, 1873~1935)는 제1차 세계



그림 5 앙리 바르뷔스



그림 6 로맹 롤랑



그림 7 고마키 오우미

대전 전부터 ‘여러 국가 간의 중재를 위한 프랑스협회’ 이사로서 중재 제도에 의한 전쟁 방지를 주창해왔다. 그런데도 독일이 승리를 하면 군국주의의 승리가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조국 프랑스가 파멸된다고 생각한 그는 41세 때 지원하여 전쟁터로 향했다. 그러나 실제로 참호의 진흙탕 속에서 바르뷔스가 본 것은 신성한 국민의 사명이라고 설파 되던 숭고함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다. 전쟁터에는 한 조각의 애국의 영광도 없고 산산이 부서진 육체가 눈앞에 널려 있었으며, 독가스가 가득한 공간에는 비참함밖에 없었다. 바르뷔스는 그 비참함과 파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정신적 위기에 빠뜨린 근원이 무엇인지 천착하여, 독일의 패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체제 그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영구히 이 무간지옥으로부터 사람들은 해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전쟁 중에 간행되어 콩쿠르상을 수상한 소설 『포화(砲火)』와 『클라르테(빛이라는 뜻)』에는 “지도자들은 극비 중에 만들어 낸 기성사실을 갑자기 인민의 앞에 들이대고, ‘지금부터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갈 길은 단 하나, 살해당하고 싶지 않으면 죽일 뿐이다’”라는 명령을 받고는 전

장에 버려진 병사들이 본 전쟁의 실태가 폭로되어 있다. 바르뷔스는 그 전쟁체험에서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전쟁이 폐지될 수 있다며 ‘구 출전군인공화국연맹(ARAC)’을 조직하고 반전과 러시아 혁명 옹호 운동을 지도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폐절을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서 지식인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클라르테(Clarté)운동에 착수했다. 클라르테운동은 지구의 인류는 하나이며 전 지구적인 연대에 의해서 만인평등의 세계공화국 건설을 도모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클라르테운동은 아나톨 프랑스, 스테판 츠바이크, H. G. 웨일스, 고리키, 타고르 등 문학자의 찬동을 얻어 유럽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남·북 아메리카에 지부를 두는 등 국제적인 반전운동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때 바르뷔스의 운동을 당파적이며 폭력적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 크리스토프』 등의 소설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로맹 롤랑(Romain Rolland, 1866~1944)이었다. 프랑스 국민이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으로 광분해 갈 때 로맹 롤랑은 스위스에서 갖가지 비난을 견디면서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다. 그는 힘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믿고 일체의 폭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혁명주의를 취하는 바르뷔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이 대두하자 바르뷔스와 협력하여 파시즘에 맞서 싸웠다. 1932년 8월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반전세계대회를 개최하고, 1933년에는 ‘반전·반파시즘투쟁 세계위원회’(통칭 암스테르담 플레이엘 위원회)를 설립시켰다.

정치적인 사상과 신조를 초월해서 광범위한 사람들의 결집을 목표로 한 이 운동은 바르뷔스의 사후인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에 인민전

선정부가 조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씨 뿌리는 사람』과 『클라르테』

고마키 오우미[小牧近江, 본명 近江谷嗣, 1984~1978]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파리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로맹 롤랑에 심취하고, 그 후 프랑스 문학자인 요시에 다카마쓰[吉江喬松]와 함께 바르뷔스를 만나 그의 사상과 사회적 행동에 공명하여 클라르테운동에 참가했다. 고마키가 본 바르뷔스의 클라르테운동은 만국의 사상가·문학자·예술가 등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결합과 구체적 행동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어도 국제적인 정신의 소유자라면 단결하여 예술가의 이상에 부여된 권한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예술가는 또다시 자본주의 도구가 되는 전쟁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정신주의 평화론자가 아니라 전쟁과 전쟁을 하기 위한 완전한 혁명적 반전론자가 되어야 한다”(『アンリ・バルビュスの藝術と思想』, 1922)는 것이었다. 클라르테운동은 종래의 반전론자가 개인의 사상으로 반전을 주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을 저지할 수 없었다고 반성하면서 반전사상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연대의 끈으로 삼고, 나아가 ‘길거리로 나서서 사상의 행상인’이 되어 전쟁 폐절이라는 목표를 위해 벌이는 것이었다.

고마키는 이 운동을 일본에 보급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1921년에 아키타현의 쓰치자키 항[土崎港]에서 가네코 요분[金子洋文] 등과 함께 잡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을 간행했다. 하지만 고마키는 제3호로 발행을 중지하고, 도쿄에서 사사키 다카마루[佐々木孝丸] 등과 함께 다시 이 잡지를 간행했다. 도쿄판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는

아오노 스에키치[靑野季吉]와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平林初之輔] 등도 참가했다. 이들은 반전·반군국·반특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비군국주의와 수평사(水平社)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에 노동자 10명이 가메이도[龜戸] 경찰서에서 학살된 가메이도 사건에 항의하여 「씨 뿌리는 잡기(糞記)」를 게재한 것 때문에 폐간처분을 당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폐간된 후 『문예전선(文藝戰線)』을 창간한 고마키는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 탄생에 즈음해서 문자 그대로 씨를 뿌린 것이다. 전후에는 법정대학교수와 중앙노동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만년에는 가마쿠라에서 평화운동에 진력하는 등 ‘평화적 반전론자’의 삶을 살았다.

바르뷔스의 평화운동은 홋카이도 개척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고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고바야시는 시마다 쇼사쿠[島田正策], 히라사와 테쓰오[平澤哲夫] 등과 함께 홋카이도의 오타루[小樽]에서 동인잡지 『클라르테』를 간행했다. 이 잡지는 1924년부터 3년간 겨우 5호의 단명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후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 작가로 성장한 고바야시의 문학적 출발점이었다. 고마키의 클라르테운동은 교토의 경제학자이며 저널리스트였던 스미야 에쓰지[住谷悅治, 전후 同志社대학 총장]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스미야도 1925년 잡지 『클라르테』를 발행했다. 이 잡지에는 프랑스에서의 클라르테운동에 대한 고마키의 견문담 등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클라르테운동은 『씨 뿌리는 사람』과 바르뷔스의 『클라르테』에 대한 고마키 등의 번역 등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김기진(金基鎭)과 김희명(金熙明)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김기진은 귀국 후 바르뷔스의 클라르테운동과 로맹 롤랑을 소개함과 동시에 민족 독자적인 씨를 뿌리기 위해 1925년 조선프롤레타리아동맹(카프·KAPF)을 조직했다. 하지만 검열과 검거를 거듭 당하다가 1935년 강제 해산되었다.

반전사상과 관련된 문학작품으로는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에 공명한 무샤노코지 사네야쓰[武者小路實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고발하기 위해 쓴 레제드라마(읽는 희곡) 『어느 청년의 꿈』(1917)이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의 동생인 주작인(周作人)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본 루쉰이 ‘신일본의 반전론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며 처음으로 일본문학의 번역에 착수해 1921년에 『일개 청년의 꿈』으로 간행했다. 루쉰은 역자 서문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인류의 입장에서 사물을 봄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평화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부터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무샤노코지의 말에 감명을 받아 장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공감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독일의 아인슈타인과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의 평화운동 등도 일본에 소개되었다. 이들은 함께 일본을 방문해서 양심적 징병거부 등의 운동을 일본인에게 전했다. 이러한 반전사상의 국제적인 연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1920년대의 특징이다. 기독교 사회운동가인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1960]가 1925년 아인슈타인, 로맹 롤랑, 인도의 타고르, 간디 등과 함께 ‘징병제 철폐의 맹세’에 서명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한 것이 한 예이다.

부인평화운동의 국제적 연계



그림 8 제인 애덤스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베의 슬럼가인 신가와[新川]에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거주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살면서 무료순회진료 등을 했다. 가가와와 활동은 1889년 시카고 슬럼가에 미국 최초의 빈곤자·이민 구제센터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하고 어린이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여성의 참정권 획득운동을 지도한 제인 애덤스(Jane Addams, 1860~1935)를 본받은 것이었다. 애덤스는 톨스토이주의의 입장을 관철하여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제창한 반전론자로서 일본의 부인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가와도 헐 하우스를 방문하여 애덤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애덤스는 또 제1차 세계대전 개전과 함께 영국과 헝가리 등의 여성 참정권론자의 요청에 따라 윌슨 대통령에게 정전 알선을 하기 위하여 1915년에 여성평화당(Women's Peace Party)을 결성하고 당수로서 반전운동을 지도했다.

이미 구미 국가들에서는 19세기부터 부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전을 요구하는 운동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것은 총력전이 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출정한 남성을 대신해서 무기생산 등에 여성이 동원되고 민생물자보다 군수물자를 우선 생산함으로써 식량과 의료 등과 같은 일상생활물자가 결핍되어 어린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궁핍한 상황에 대해 여성이 본래 임무로서 해온 일은 인류생존

을 위한 식량 확보라면서 ‘평화와 빵’의 획득을 부인평화운동의 목표로 표방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애덤스 등은 대전 중인 1915년 중립국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제1회 국제부인회를 개최하고 전쟁의 즉시 정지를 각 국가 수뇌에게 호소할 것, 부인 참정권의 실현을 목표로 할 것, 전후에 다시 여성회의를 개최하여 항구적 평화 확립을 위한 국제부인운동을 계속할 것 등을 결의하고 사무국을 설치했다. 그리고 종전 후인 1919년 헤이그회의에 모였던 여성들은 스위스에서 제2회 회의를 열고 전후의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직으로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단순히 전쟁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 발생의 조건을 배제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22개국의 지부를 가지는 국제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애덤스는 이 모임의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당시 심의 중인 국제연맹 기구 문제와 관련해 항구평화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요망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부인평화운동의 활발한 국제적 연계활동 결과 영국·캐나다에서는 1918년에, 미국에서는 1920년에 부인 참정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09년에 공포된 치안경찰법 제5조에 의해서 여성의 정치적 결사 가입, 정치집회의 출석과 발기인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화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 참가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1920년 미국·영국 등 3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최된 만국부인참정권협회의 대회에 참석한 간트레트 쓰네코[ガントレット 恒子]⁶는 “우리가 4년 전에 참정권을



그림 9 간트레트 쓰네코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전쟁이야말로 가정의 파괴다. 부인들은 절대적으로 전쟁을 배격한다. 세계 각국의 부인이 참정권을 얻어서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할 것을 바란다”(『七十七年の思ひ出』, 1949)는 독일인 스트리츠 박사의 말을 듣고 부인 참정권과 평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신은 막연한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여기에 부인 참정권의 획득과 평화의 달성이라고 하는 과제가 일본에서도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귀국 후 쓰네코가 부인교풍회(婦風會)⁷의 구부시로 오치미[久布白落實] 등에게 이를 전하고 1920년 일본 부인참정권협회를 결성하면서 이후 만국부인참정권협회와 연락을 도

6 역자 주 - 간트레트 쓰네코[ガントレット恒子, 1873~1953]. 아이치현[愛知県] 출신의 사회운동가. 1898년 영국인 에드워드 간트레트와 결혼하여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7 부인교풍회(정식 명칭은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는 1893년에 기독교 부인단체로 결성되어 부인 보호사업과 주해(酒害) 방지 등의 사회활동을 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부인참정권운동을 한 것은 히라쓰카 라이초,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에 의해 1919년에 결성된 신부인협회이다. 이들의 청원활동에 힘입어 1922년 치안경찰법 제5조가 개정되었다. 이후 구부시로와 이치카와 등은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회 등을 개설하여 운동을 계속했는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1945년 10월 맥아더의 5대 개혁 지령에 부인 참정권 부여가 적시되었다. 그 해 12월의 선거법 개정으로 남녀 공히 20세 이상의 선거권과 25세 이상의 피선거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46년 4월의 선거에서 3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하여 일본국헌법 초안의 심의에 참가했다.

모하게 되었다. 부인교풍회의 기관지 『부인신보』의 첫 장에는 ‘우리의 목표’의 하나로 ‘세계의 평화’가 열거되었다. 또 1921년 회장인 야시마 가지코[矢島栞子]가 18개의 부인단체로부터 1만 명의 서명을 모은 평화 청원서를 워싱턴 군축회의에 제출했다. 1928년 11월에는 『부인신보』에 평화특집을 실었으며, 1930년의 제9회 대회에서는 부인교풍회에 평화부를 설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편 일본부인참정권협회가 구성된 다음 1921년 5월 일본 최초의 여성평화단체로 일본부인평화협회가 결성되었다. 이노우에 히데[井上秀, 후일 일본여자대학교 교장]가 회장, 간트레트 쓰네코와 가와이 미치[河井道, 후일 혜천(惠泉)여학원 창설] 등이 이사를 맡은 이 협회는 부인들의 입회를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인류 상애(相愛)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오늘날의 급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희망(希願)이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에 대한 동경을 절실하게 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실천하기 쉽고 견고하고 유력한 평화촉진의 기초적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婦人平和協會趣意書』, 1921)

협회가 조직되는 데는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의 권유가 힘이 되었다고 한다. 1923년에 ‘평화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애덤스가 일본에 오자 일본부인평화협회의 명칭 그대로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의 일본지부로 승인되어 세계적인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게 되었다.

일본부인평화협회는 회보 간행뿐 아니라 각지의 여학교 등에서 국제정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회 등도 개최했다. 이 활동의 중심과제는 군축을 위한 여론 형성이었다. 국제적으로도 1922년에 워싱턴 군축 회의와 병행해서 개최된 미국 여성군축회의에 회장인 이노우에 히데가 참가했으며, 1924년의 ‘전쟁의 원인 해명과 해결책을 위한 회의’에는 간트레트 쓰네코가 초대되었다. 또 일본국제연맹협회 부인부와 일본부인평화협회는 멤버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함께하고, 1932년의 국제연맹군축회의 때는 18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서 회의에 제출했다.

군비를 철폐하고 전쟁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가진 여성들이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반전의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움직였던 시대가 확실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일본부인평화협회의 군비철폐론

일본부인평화협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 구축을 도모하려 했던 것일까.

만주사변 발발 후인 1931년에 협회 이사였던 노미야마 후지코(野見山不二子)는 “국제주의를 확립해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필연적 충돌을 피하고 각 국가가 상호부조의 세계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神業も尙及ばず一世界平和の確立」, 『家庭週報』 제1102호, 1931년 11월)는 관점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의 충돌을 상호부조를 추진하는 국제주의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노미야마는 중·일의 충돌이 일본군이 파견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일본 국민이 솔선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일본

제국으로부터 무단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명실 공히 일등국으로 만들려는 국민 일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일본의 무력이 아니라 일본인이 정의를 사랑하고 국제문화 향상에 공헌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라며, 무력행사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분쟁해결과 국제교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전후에 주창된 문화국가론을 선취하는 것이기도 했다. 노미야마의 주장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부인평화운동이 목표로 해야 하는 세계의 모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미야마는 “세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주의가 되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 자유 활동이 보장되며, 세계의 인구문제가 해결되어 군비축소가 더욱 진전돼 철폐가 실현되고, 세계의 군비가 철폐된 상태에서 부의 힘과 군비의 힘 이상으로 인간의 인격력·창조력이 존중될 때 일본과 중국의 문제도 한 점의 흐림도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제적인 경제적 자유가 제시됨과 동시에 군비축소, 나아가 군비철폐가 과제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만주사변을 자위행동이라고 정당화하고 그 전과에 흥분하여 만주를 영유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노미야마의 주장은 일본의 여론과 전혀 방향이 다른 의견이었다.

그러나 만주국 수립 이후 이러한 논의의 자유는 박탈되었다. 특히 국제적 연계,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연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태평양 전쟁 직후 부인평화협회에도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게다가 해산 후에도 회원에게는 엄격한 감시가 계속되었으며 일본부인평화협회 외에 일본부인참정권협회, 기독교평화협회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간트레트

쓰네코[ガントレット恒子]⁸는 국제결혼을 한 적도 있어 스파이 혐의를 받아 전쟁 중에 가족이 투옥되고 헌병, 특고(特高) 등의 감시와 악의에 찬 투서 속에서 생활의 자유 일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쓰네코는 “나의 마음속을 오간 통한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이 25년 가까이 세계평화를 외쳐온 내 자신이 마침내 한마디도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스스로의 무력함을 신에게 사죄할 뿐이었다”(『七十七年の思ひ出』)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1951년 12월에 히라쓰카 라이초, 가미오 다나, 히치카와 후사에 등과 ‘재군비 반대 부인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국의 상원의원에게 ‘우리는 두 번 다시 우리의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호소문을 보낸 것은 그러한 전쟁 속으로 일본이 회귀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제부인 평화운동의 발자취는 반전사상이 숨쉬기 위해서는 국제협조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축이 일체가 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⁸ 간트레트 쓰네코는 19세 때 부인교풍회에 입회했다. 남편은 도쿄상과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은 영국인 에드워드 간트레트이다. 더욱이 1928년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태평양협회의 부인부는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의 연대를 목표로 하여 범태평양부인회의를 개최했는데 애덤스가 의장으로 초대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연대를 추진했다. 일본에서는 부인평화협회 회장인 이노우에 히데를 단장으로 간트레트 쓰네코, 이치카와 후사에, 요시카와 야요이[吉岡彌生, 후일 도쿄여자의대 학장], 후지타 다키[藤田たき, 후일 쓰다주쿠대학 학장], 쇼다 요시코[正田淑子], 저널리스트인 기타무라 가네코[北村兼子] 등이 참가했다. 쓰네코는 1934년 범태평양 부인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합에서 범태평양·동양아시아 여성협회가 탄생했다.

3. 군비철폐 · 전쟁폐지론의 모습

침묵이 강요된 반전사상

전쟁 전의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군비철폐나 전쟁폐지를 주창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1930년대가 되면 반전사상을 게재한 월간지는 물론 아사미 센사쿠[淺見仙作]의 『기쁨의 소리』, 가나자와 쓰네오[金澤常雄]의 『신망애(信望愛)』, 이토 스케유키[伊藤祐之]의 『신(新) 시온』, 스미야 텐라이[住谷天來]의 『성화(聖火)』 등 개인지도 차례차례 발행 금지처분이나 폐간을 강요당했고, 발행금지를 면하더라도 검열로 삭제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 7월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전쟁목적에 반하는 기사와 관련해 각 부·현 특고 과장에게 ‘각 주요 일간신문, 통신사 및 주요 잡지 발행소의 책임자와 간담해야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 ‘간담’을 통한 ‘자발적 협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 검열이었다. 또 그 해 12월에는 내무성 경보국이 잡지사에 도사카 준[戸坂潤], 스즈키 야스조[鈴木安藏],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의 원고 게재를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게재 금지자의 지정은 ‘간담’ 등을 통해서 점차 내밀히 행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집필에 머물지 않고 마사히케 메구무[政池仁]는 반전평화론을 주창했다고 해서 1933년 3월에 시즈오카 고등학교를 사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도 『중앙공론』 1937년 9월호에 게재한 「국가의 이상」이 반전사상을 선동한 것이라는 군부 등의 공격 때문에 그 해 12월에 도쿄제국대학을 사직했다. 국제평화단체 등은 차례로 해산명령을 받아 활동을 정지했고 그 지도자는 특고 경찰이나 헌병대 등의 감시 아래 들어갔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고조되었던 국제적 연계에 의한 평화운동과 반전사상이 억압되고 침묵을 강요당한 것은 전의양양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그러한 사상 상황이 십수 년 계속되는 동안 반전이라는 생각이 매몰되고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져 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전후의 헌법구상 중 전쟁포기·군비철폐라고 하는 규정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일본인 중에 전쟁포기·군비철폐라고 하는 반전사상은 있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것으로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헌법9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핵심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미즈노 히로노리의 군비철폐론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廣徳, 1978~1945]는 해군으로서 러일전쟁에 참전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해군사(海軍史)인 『이 일전(此一戰)』(1911)을 집필하여 문명을 얻은 사람이다. 미즈노는 해군으로서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이 주창하는 해상권력으로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비증강론에 동조하고 있었다. 미즈노는 군비의 증강이 역지력이 되어서 강대국 간의 전쟁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무장평화론’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시찰에서 강대한 군비를 가진 국가 간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며 패전국은 물론 승전국에도 깊은 상흔을 남긴다는 것을 통감하고 ‘애국적 견지’에서 군비철폐 전쟁절멸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19년 8월에는 베를린에서 정치가·군인 등 재류일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테이블 연설을 했다.

무릇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회피하는 길은 하나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즉시 실효를 거두는 방법은 각 국민의 양식과 용단에 의한 군비의 철폐뿐이다. 국제연맹이 주장하는 군비축소와 같은 오십보백보의 논리는 전쟁의 발생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는 있더라도 결코 전쟁을 절멸하는 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인류는 지금 평화에 눈을 뜨지 않으면 또다시 공포스러운 전화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열국에 솔선해서 세계를 향해서 군비철폐를 제창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이 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後編 劍を解くまで』, 『反骨の軍人・水野廣徳』, 1978)

이 연설이 언제 행해졌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1946년 이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이 군비철폐 전쟁폐절 논의는 헌법9조의 정신과 합치되고 있다. 물론 미즈노는 즉시 군비철폐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미즈노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식에 근거하여 생각을 계속하여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등의 군비운동과 영국의 파비앙 협회⁹의 평화사상 등에 공명하면서 군국주의·제국주의적 침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채택하고 있던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비증강책에 강하게 반대하여 1932년에 『타개나 파멸이나 흥망의 이 일전(打開か破滅か 興亡の此の一戦)』이라는 제목으로 일·미 미래전쟁 소설을 공간(共刊)했으나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개정하고 제목을 바꾸어 『일본 흥망의 일전』

⁹ 역자 주 - 파비앙협회(Fabian Society)는 1884년에 구성되었다.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자 단체로 버나드 쇼, 웹 부처(夫妻) 등이 주도했다. 고대 로마의 집정관 파비우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했다. 거기에는 미·일이 실현해 가게 되는 전쟁의 과정과 전시하의 결핍생활 그리고 공습에 도망 다니는 국민들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미즈노의 미·일 반전론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았고, 불행하게도 미즈노의 예견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더 불행하게도 미즈노는 자식의 전사를 모른 채 패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 사망했다. 만약 일 년 정도 더 연명했더라면 미즈노가 4만세기 전에 베를린에서 구상했던 것처럼 일본이 열국에 출선해서 세계를 향하여 군비전폐를 제창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더욱 불행한 사람은 일본 국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늘이 미즈노에게 지론을 자유롭게 전개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부여했더라면 우리는 헌법9조를 일본인 스스로의 반전사상의 오랜 수맥의 성과로서 세계를 향하여 발신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 의한 군비전폐

한편 미즈노 히로노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군비전폐를 주창한 사람은 1920년대에 외교문제와 군비문제로 논전을 펼친 시오즈 세이사쿠 [鹽津誠作, 1876~1932]였다. 시오즈는 호놀룰루의 일본어 신문 『일포시사(日布時事)』 등에 기사를 송신하거나 『무솔리니』(1931) 등 일본역서 등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알리던 저널리스트로 부전조약에 의한 전쟁위법화보다 군비전폐를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시오즈는 1928년 단계에서 신속하게 군비전폐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세계대전으로 이 지구상의 인류와 문명은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다”(「軍備縮小より全廢へ」, 『外交時報』 제561호, 1928년 4월 15일)라고

제2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군비를 보유·확장하면서 부전조약에 기대 전쟁폐지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군비철폐의 반전사상이 중국의 목자, 독일의 칸트 외에 동시대 영국의 파비아 협회나 인도의 간디 등 국민회의파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정치가 내지 정치 관련자들 중 실행할 수 없는 논의는 한 줄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경제가라든지 사상가의 의견이나 이상은 백년은커녕 천만 년 후에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살아 있는 동안만이 반드시 일생은 아니다. 사상과 도의는 한 사람의 생애만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군비철폐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동의한다면 스스로도 군비전폐를 하는 것은 타인이 권총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도 갖지 않는다, 타인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다른 나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군비를 전폐하는 용기와 확신이 세상의 정치가의 가슴속에 있었으면 한다”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시오즈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부전조약의 형식을 고집해서 충분히 효력이 있도록 하려면 주권에 관한 문제라도 무엇이든 전쟁 이외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도량과 용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에 모순된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라면 열국과 함께 헌법을 수정해도 상관없다. 아니 이것이 최선의 길인 것이 명백하다면 단연코 각 국가의 헌법을 개정하는 기운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정해야만 하는 헌법 가운데 대일본제국헌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당연히 천황의 군사대권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시오즈는 아깝게도 1932년에 사망해 전후에 헌법 개정을 논할 기회를 맞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본국헌법에 전쟁포기와 군비전폐를 규정하게 되는 시점보다 18년이나 앞서 군비전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세계에 호소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추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세 번의 승전 끝에

이렇게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제4의 전후’에 헌법9조가 등장했지만 승전으로 끝난 ‘제3의 전후’에 일본인에 의한 반전사상이 이미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전이었기 때문인지 많은 일본인은 다음의 전쟁 또한 승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기대를 가져 전쟁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반전사상을 유약하고 비겁한 ‘비국민’의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탄압하기조차 했다. 이러한 관점은 ‘제4의 전후’ 60년을 넘어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일본인이 새겨온 근대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치무라 간조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6년 청일·러일전쟁,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썼다(“A New Civilization”,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 1926년 4월 5일).

일본이 최초로 유럽전쟁에서 배운 것이 육군과 해군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러운 점이다. 그렇다. 일본은 서양식 전투방법을 채용함으로써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세계 열강의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던가. 40년 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라였다. ……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 번이나 연이은 승전으로 일본은 대만과 조선과 남양군도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전 세계는 일본을 향해서 문을 닫고 일본 국민은 여기저기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군비축소가 군비철폐로 직결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군비철폐는 누군가가 ‘혈육과 궁리하지 않고’(갈라디아서 제1장 16절), 즉 스스로의 생존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실행하지 않는 한 실현될 리가 없다고 설파하고 군비철폐론에 대한 비판을 상정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비현실적·환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무장한 문명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었는가. 스스로 비현실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었는가. 오히려 무장하지 않는 평화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평화가 아닌가. 과거 일본의 무사는 칙령에 의해서 칼을 빼앗겼을 때 대단히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한번 이 공격과 방어 무기들을 빼앗겨 보자 오히려 이전보다도 안전을 느꼈던 것이다. ……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은 그 젊고 경험 없는 메이지시대 정치가의 지도 하에서, 문명이라고 할 수 없는 서양 문명을 완전히 그대로 수용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치무라는 일본이 군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문명에서 떠나 일본이 군비 없는 신문명의 담당자가 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다. 막대한 군사예산을 수반하는 이 서양문명은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새로운 문명, 진정한 문명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문명이며, …… 우리 일본이 국가적 선언을 발표해서 50년 전 무사의 무장해제를 한 것처럼 국가의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문명을 이끌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치무라가 이렇게 쓴 지 거의 20년 후에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우치무라의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전쟁포기·전력불보유의 무장해제를 헌법9조라고 하는 국민적 선언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전장이 되었던 아시아에서만 200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이 무참히 스러졌다.

제 7장

헌법 9조의 등장

유출하느라 반전사상의 수맥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국헌법을 향한 발진

1945년 8월 14일 일본 정부는 의전회의에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15일 정오부터 종전조서를 방송했다. 이후 일본은 포츠담선언 제10항의 “일본 정부는 일본국 국민 사이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언론, 종교 및 사상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화에 의해서 제12항에서 말하는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가지고 또한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점령 하에 있게 되었다.

한편 연합국, 특히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구상에서 선례가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험이었다. 독일에 10만 명의 육군과 1만 5000명의 해군 보유를 인정한 것이 나치 독일군의 대두를 가져왔다는 인식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전국을 완전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퍼져 있었다. 그것은 1945년 1월과 3월 실시된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독일과 일본의 영구적 비무장화를 지지하는 자가 약 90%에 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험으로 본다면 독일이 과대한 배상과 경제적 봉쇄조치 때문에 승전국에 대해 반감을 품고 보복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과 같이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어리석은 정책이었다.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위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군사국가 체제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이 아시아에서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나아가 냉전으로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던 소련에 대해서 태평양에서의 방어벽이 될 일본을 자유주의 체제의 일원으로서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보더라도 중요했다.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주의화라고 하는 미국의 점령방침을 일본 측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점령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그것에 따른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의 확립이 필요했다. 그러나 내각 법제국의 일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일본 정부로서는 포츠담선언 수락 후에도 그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11일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수상이 연합국총사령관 맥아더와의 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시사받은 뒤 13일에 마쓰모토 조지[松本烝治]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각의에서 승인했다. 이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라고 명명되어 있듯이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부의 의도를 뛰어넘어 일본국헌법의 출현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속에서 헌법9조가 용출하는 수로가 열리게 되었다. 헌법9조의 사상수맥을 더듬어 온 발걸음의 마지막 장인 여기에서는 그 출현과정을 간단하게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헌법 개정의 전제

포츠담선언과 헤이그조약

피점령 하에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자유재량으로 이루어졌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연합국 총사령부와 맥아더¹는 결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점령은 법령적으로 두 가지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림 1 맥아더

첫째는 헤이그 ‘육전의 범규관례에 관한 규칙’이다. 그 제43조에는 “국가의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에 넘어 간 다음 점령자는 절대적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 및 생활을 회복, 확보하기 위해 베풀어야 할 일체의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반하는 일은 연합국총사령부도 피하고 있었다. 둘째는 포츠담선언 제12항의 “일본국 국민의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것에 적합한지 어떤지가 중요한 판단

¹ 역자 주 -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미군의 장군이며 GHQ의 최고사령관을 지냈다. 1899년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1930년에 최연소로 미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1937년 12월에 퇴역했다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해 현역으로 복귀했다.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8월 30일에 일본으로 가서 1951년 4월 11일까지 연합국총사령부의 총사령관으로서 일본 점령을 수행했다.

기준이 되었다.

더욱이 그 판단은 연합국총사령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본점령의 최종책임을 지는 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헌법 개정에 관한 공식 견해인 총사령부 민정국(GS)의 「일본의 정치적 재편성(Political Reorientation of Japan)」에도 “연합국이 일본 국민 스스로가 개혁을 행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포츠담선언에 처음부터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 명백한 선언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합국총사령관으로서 일본 점령 중인 맥아더 원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초기 전후정책 지령을 작성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도 제한 없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 점령에 관해서 각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 점령의 관리기구

일본 점령은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행해졌던 것일까.

우선 1945년 10월에 극동자문위원회(FEAC)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소련이 불참한 데다 점령행정에 대한 권고권밖에 없어 GHQ를 사실상 구속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에서의 미국·영국·소련의 외상회의에서 대일관리기관인 극동위원회(FEC)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영국·소련·중화민국(이상 4개국이 거부권을 갖는다)과 프랑스·캐나다·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필리핀·인도 등 11개 국가가 참여했다. 극동위원회는 연합국총사령관에 대해서 지령을 발하고 그 행동의 가부를 검토해 갔다. 그 출장 기관으로도 교에 설치한 것이 대일이사회(ACJ)였다. 이후 일본의 헌법과 정부기구

의 근본적 개혁은 극동위원회의 결정과 지령에 따라 맥아더가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법제 개혁을 담당한 제3위원회는 1946년 3월 이후 일본국헌법 제정에 관한 회의를 38회에 걸쳐 개최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²

이러한 국제적인 점령관리기구와 함께 맥아더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또 하나의 규제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대외정책기관인 삼성조정위원회(SWNCC)의 지시였다. 이 위원회가 1946년 1월 11일 맥아더에게 송부한 문서가 「일본의 통지체제에 관한 개혁」(SWNCC 228)인데 GHQ는 이 문서를 헌법 기초를 추진하는 데 커다란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했다. 이 문서는 포츠담선언을 감안해서 ‘일본 국민이 그 자유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또는 헌법을 기초하고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천황제를 폐지 내지 개혁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천황대권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일본제국헌법 규정 중 ‘군사에 관한 권능을 모두 박탈’하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군부 지배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정치적 개혁의 효과는 이 개혁 전체를 일본 국민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일본 정부에 명령하는 것은 최후의 수

² 극동위원회에는 ‘항복 조항의 완수를 위하여 준거로 삼아야 할 정책 원칙 및 기준을 작성’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의 헌법기구 또는 점령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된 지령은 극동위원회에서 사전협의 및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만 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헌법 제정 문제에 관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나 연합국총사령부는 특별히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단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개혁이 연합국에 의해서 강요되었다는 것을 일본 국민이 알면 일본 국민이 장래에 걸쳐 그것을 수용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여 연합국 총사령관에 의한 일본 정부 개혁 강요를 경계했다. 맥아더도 이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강요당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황 범죄 소추와 헌법 개정 문제

그러나 삼성조정위원회의 의향과는 달리 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천황제 유지의 방침을 채택하기로 한 맥아더로서는 천황제 폐지의 방침을 취하는 삼성조정위원회와 결정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재군사화를 회피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 나아가 천황을 전범으로 소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소련·중화민국·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이 참가하는 극동위원회가 1946년 2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헌법 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천황제 유지를 확정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1월 25일 맥아더는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에게 과거 10년간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천황과 연결시켜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하고, 여기서 전범으로서 천황의 불소추를 결정했다. 맥아더는 천황 불소추의 의의에 대해서 '천황을 소추하면 틀림없이 일본인 사이에 격렬한 동요가 발생하고 그 반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점령군을 대량으로 증원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최소한 100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군대를 무기한 주류시켜

야 하는 사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점령 수행을 위해 천황의 불소추가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천황을 전범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소련과 중화민국 등 연합국 내의 일부에서 반드시 반발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림 2 휘트니

게다가 거의 같은 때에 방일하고 있던 극동위원회의 대표단과 연합국총사령부의 회담에서 헌법 문제가 거론되었다. 맥아더와 민정국장 휘트니(Courtney Whitney)³는 극동위원회가 헌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이 아니면 연합국총사령부가 헌법 개정에 관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극동위원회 방일단이 일본을 떠난 2월 1일 『마이니치신문』이 ‘헌법 문제 조사회 시안’을 특종으로 다루었다.

이 안 자체는 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도쿄제국대학 헌법학 교수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의 개인적 시안에 가까운 것이고, 조사위원회의 마쓰모토 위원장이 정리한 ‘헌법 개정 요강 안(마쓰모토 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특종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미 민간 초안과 정부 안의 골자를 검토하고 있던 휘트니 등은 연합국총사령부 주도로 헌법 초안

3 역자 주 - 코트니 휘트니(Courtney Whitney, 1897~1969). 미국의 변호사이며 법학박사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육군의 장관을 지냈다. 1917년에 미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27년에 제대한 후 1940년까지 마닐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전후 일본의 GHQ 민정국 국장으로 있을 때 헌법 초안 제정 회의의 책임자로서 헌법 초안 작성을 지휘했다.

을 기초하기 위하여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안이 내각의 결정을 거쳐서 제출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데다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종으로 보도된 ‘헌법문제조사회 시안’을 보면 대폭적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단 정부 안이 공표되고 이것에 대하여 개정하라고 요구하면 「일본의 통치 체제에 대한 개혁」(SWNCC 228)이 가장 주의를 촉구하고 있던 헌법 개정이 ‘연합국에 의해서 강요된 것’임을 공공연히 세계에 알리게 되고, 일본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 포츠담선언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활동을 시작한 극동위원회의 개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천황의 전범 소추나 천황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한 극동위원회와 심각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휘트니는 특종기사가 난 다음날인 2일 맥아더에게 “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그들이 정식으로 결정하여 제출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새로 제출할하는 것과 같이 강제하는 것보다는 헌법개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에 그들에게 지침을 부여하는 쪽이 전술로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진언했다. 이 제안을 받은 맥아더는 3일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헌법 초안을 기초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을 열거한 ‘맥아더 노트’를 휘트니에게 제시하고, 휘트니는 4일 라벨과 케이디스 등 민정국 행정부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기초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마쓰모토 위원회의 헌법 개정 요강

한편 일본 정부 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마쓰모토 조지[松本烝治⁴] 위원장은 스스로 정정한 ‘헌법 개정 요강’을 2월 8일에 연합국총사령부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군사 관련 규정은 제11조 중 ‘육·해군’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군’으로 고치고 제12조의 규정은 ‘군의 편제 및 상비병 비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바꾸었다.⁵ 요컨대 천황의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인정된 채 군의 편성과 군사비의 결정을 의회에 의한 법률사항으로 고친 것이다.



그림 3 마쓰모토 조지

마쓰모토는 ‘헌법 개정 요강’에 첨부한 설명서에 포츠담선언 제10항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확립’의 취지에 따라 기초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휘트니 등은 이 안을 대일본제국헌법 체제의 미온적인 수정에 지나지 않고 가장 보수

- 4 역사 주 - 마쓰모토 조지[松本蒸治, 1877~1954]. 도쿄 출신으로 일본의 상법학을 확립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도쿄제국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에 유학한 후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되어 상법, 민법 강좌를 담당했다. 1945년 시데하라 내각의 국무대신으로 헌법 개정의 중심적 존재로 활동했다.
- 5 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2조는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역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개정 요강’의 작성에는 내각 법제국의 이리에 도시로[入江俊郎]와 사토 다쓰오[佐藤達夫]가 관계했는데 육·해군의 편제 및 군사비를 법률사항으로 한 것에는 “종래와 같이 육·해군이 다시 설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일파의 고루한 사람들의 몽상을 저지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군비전폐를 오늘날의 실상에 비추어 군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전폐하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상술한 것과 같이 몽상을 품는 자를 암암리에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헌법 중 육·해군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대해서」, 『일본국헌법 제정 자료 전집(1)』)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문제조사위원회에서는 마쓰모토 안 외에 미야자와 도시요시가 손질한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한 을안(乙案)도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공표되지 않았다.

적인 민간 초안보다 뒤쳐진 것이며 언뜻 보아도 ‘개정’이란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개정 요강’은 어디까지나 대일본제국헌법의 조문만을 수정한 것이며 정치 체제나 국민인권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자세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조문의 자구 손질만으로 시종한 작업과정부터 명백했다. 천황 주권의 위상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된 게 없고, 국민의 권리도 대일본제국헌법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법률로 제한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국총사령부는 스스로의 초안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 개정 요강’에 대한 각서 작성과 총사령부 초안 기초를 위해 철야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월 13일 ‘헌법 개정 요강’에 대한 총사령부의 회답을 청취하려고 방문한 마쓰모토 조지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외상, 종전연락사무국 참여(參與)였던 시라스지로(白洲次郎)에 대해 휘트니는 “일본의 헌법개정안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서로서 최고사령관이 수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高柳·大友·田中,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 I』)라는 말을 시작으로 천황 상징제와 전쟁포기를 기축으로 하는 연합국총사령부 안을 제시했다. 휘트니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이 천황제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휘트니는 특히 ‘최고사령관은 이 문서를 통해서 패전국인 일본에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걷는 데 정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쟁포기 조항이 갖는 의의를 역설했다.

마쓰모토 등에게는 칭찬벽력과 같았지만 그것은 개정 작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내각 법제국의 사토 다쓰오가 ‘일본국헌법 수태의 날’이라

고 회상한 것과 같이 헌법, 아니 일본 사회의 생을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이 연합국총사령부가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의 방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쓰모토는 어디까지나 ‘헌법 개정 요강’의 재고를 촉구하는 요청을 계속하여 2월 19일에 겨우 각의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21일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과 맥아더의 회담에서 전쟁포기 논의에 대한 보고를 거쳐 22일에 연합국총사령부 안의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면 맥아더가 ‘세계의 정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고 하며 추천한 전쟁포기 조항은 어떠한 제정과정을 거쳐 헌법9조로 결실을 맺은 것일까.

2. 전쟁포기 조항의 기초 과정

맥아더 노트

1946년 2월 3일 헌법 개정에 도입되어야 할 ‘필수요건(musts)’으로 맥아더가 휘트니에게 제시한 것이 ‘맥아더 노트’ 내지 ‘맥아더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 중 중요한 세 개 항목⁶은 “1. 국가의 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천황의 지위와 세습의 황위를 정하고 천황의 직무와 권능은 국민의 의사에 따른다, 2. 자위전쟁의 포기, 3. 봉건제도의 폐

⁶ 종래 ‘맥아더 노트’는 ‘맥아더 3원칙’으로 불리는 것처럼 천황의 지위와 전쟁포기 등 세 항목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영국 예산제도를 따른다’, ‘의회 의원제로의 변경’ 두 항목이 추가되었다. 전자는 메이지헌법 제71조의 예산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것, 후자는 화족제도와 귀족원 폐지에 따른 조치로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와 황족 이외의 귀족의 권리를 현존자 1대에 한하고 화족의 정치적 권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중 헌법9조와 연결되는 것이 제2항이다(이하 설명을 위해 편의적으로 문장마다 ①, (1), (i) 등의 부호를 붙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전쟁은 폐지한다.
- ② 일본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 나아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도 포기한다.
- ③ 일본은 그 방위와 보호를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이상에 맡긴다.

이상의 세 규정과 “④ 일본이 육·해·공군을 갖는 권능은 장래에도 고려하지 않고 교전 상태의 제반 권리가 일본군에게 부여되는 일도 없다”는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이 중 ①, ②는 이미 검토한 1928년의 부전조약(→224쪽) 제1조 “체약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 또한 그 상호관계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를 따른 것이다. 단, ①의 전쟁의 ‘폐지(abolished)’와 ②의 전쟁의 ‘포기(renounces)’는 의미가

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is abolished, ② Japan renounces it as an instrumentality for settling its disputes and even for preserving its own security, ③ It relies upon the higher ideals which are now stirring the world for its defence its protection, ④ No Japanese Army, Navy or Air Force will ever be authorized and no rights of belligerency will ever be conferred upon any Japanese force.

다르며 부전조약에서는 ‘포기(renounces)’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①이 종래 국제법의 전제로 되어 있던 ‘제도로서 전쟁’을 모두 폐지하고, ②의 ‘자위로서 전쟁’도 특별히 포기한다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부전조약이 참고가 된 것은 전쟁포기 조항의 수정을 담당한 케디스가 나중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단, 이 조항이 이미 맥아더 노트에 있었던 점을 보면 맥아더 자신도 부전조약을 참고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맥아더의 임지였던 필리핀의 1935년 헌법 제2항 제3조에 부전조약을 전제로 “필리핀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③에서 말하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제연합을 가리키며 전쟁을 포기한 일본의 ‘방위와 보호’는 국제연합에 위임한다는 것이 상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자위로서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②의 조항인데 그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맥아더 노트에서부터 헌법9조까지의 조문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허시와 케디스에 의한 조문화

맥아더 노트의 전쟁포기 부분과 관련해 당초 이것을 전문에서 선언하도록 하는 허시 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그러면 법적인 규범성이 희박하게 된다고 해서 맥아더의 지시로 본문에 두게 되었다. 그때 법적인 실효성을 지니지 않는 선언적 성격을 갖는 ③의 부분은 전문에 두어졌다(→50쪽). 허시(Alfred R. Hussey)가 전문으로 기초한 1차안의 전쟁포기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전쟁은 폐지한다.
- (2) 어떠한 나라든 다른 나라와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The threat of forces is forever renounced as a means for settling disputes with any other nations).
- (3)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여하한 전력을 갖는 권능은 장래에도 고려하지 않고 교전상태의 제반 권리가 국가에 부여되는 일은 없다.

이 단계에서 맥아더 노트에는 ④로 원래는 별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항을 나누지 않고 (3)으로 하나의 조문이 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맥아더 노트 ②가 사라지고 그 후 부활하는 일 없이 최종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디스는 자위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삭제했으며 휘트니 민정국장도 동의했다고 회고했다.⁸

그러나 허시가 기초한 전문의 단계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부전조약에서도 자위전쟁에 대해서는 유보되어 있었다는 생각

⁸ 케이디스는 이누마루 히데오[犬丸秀雄]에게 보낸 1981년 8월 4일자 편지에 “그와 같은 문언(文言)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보존의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는 나에게서 비현실적(unrealisty)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犬丸秀雄 감수(1989), 『일본국헌법제정의 경위』)라고 썼다. 1950년에 맥아더가 일본의 재군비화를 요청한 이후의 GHQ 관계자의 증언은 전쟁포기 조항 자체가 비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재군비를 정당화할 필요도 있어서 스스로가 기초한 당시의 의도를 그 정당화에 따라서 설명하기 쉬우므로,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 근거해서 삭제되었을 텐데, 허시 개인의 자발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휘트니가 2월 4일 민정국의 회합에서 지시한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즉 휘트니는 그 자리에서 헌법기초안에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연합헌장의 원칙들은 우리가 헌법을 기초하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연합헌장의 제51조(→241쪽 각주)에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잠정적 기관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헌장이 집단적 자위권과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1945년 6월 25일에 조인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독일과의 전쟁과 오키나와전은 끝났으나 일본과의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합국의 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하여 설립된 유엔(United Nations)이 그 헌장에서 가맹국의 집단적 자위권과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쟁의 정당한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이 의미에서 전쟁포기의 지향과 유엔헌장의 규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으며 그것이 헌법9조의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1956년의 국제연합 가입에 즈음해서 군비철폐·전쟁포기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국제연합헌장이 전쟁포기 조항에 부여한 중요한 의의는 간과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맥아더 노트에서 허시·케이디스 안으로 조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서 볼 수가 있다. 즉 맥아더 노트 ①과 ②에서 함께 상정되어 있었던 것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무력의 발동으로서 전쟁이었는데, 허시 안에 (1)에서 ②와 같은 자위전쟁을 특히 거론하는 일

없이 전반적인 전쟁을 폐지한 다음 (2)에서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도 포기한다는 규정이 첨가된 것이다.

이 수정은 (1)에 규정된 전쟁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상의 강한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도 국제연합헌장과 관련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4의 ‘모든 가맹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도 삼가야 한다’에서 인용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부전조약을 비준하면서 전쟁 상태로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국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채 ‘사변’이라고 칭하면서 ‘사실상의 전쟁’을 수행한 것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영구히 포기해야 할 것으로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의 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군사력 발현이 거론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무력의 존재를 영구히 포기하기로 되었다. 그러한 이상 이 조항만으로도 전력 불보유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는 ‘삼가야 한다’고 한 국제연합헌장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9조 제1항의 차이가 있다.

또 (3)에서 ‘기타 어떠한 전력(other war potential)’이 첨가된 것도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군사공장의 무기 생산력 등도 잠재적인 전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이 총력전으로 바뀐 것에 비추어 군사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목적으로 삽입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전상태의 제 권리’가 부여되지 않

는 주체가 ④의 ‘일본군’에서 ‘국(state)’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쟁포기 조항은 (3)이 독립 조문이 되었기 때문에 2개조로 되었는데 최종적인 연합국총사령부 안에서는 하나의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정리되었다.

연합국총사령부 안 헌법8조

이렇게 하여 전문으로 기초된 전쟁포기 관계의 조문은 일부가 전문에 남겨진 것 이외에는 신헌법에서 평화주의의 결정적 중요성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하여 맥아더의 지시에 의해 제1장에 두게 된 것이다. 그 의도에 대해서 2월 22일 전쟁포기 규정을 어디까지나 원칙적 규정에서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 마쓰모토 조지와 요시다 시게루 등에게 휘트니는 ‘이례적이고 극적인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제 최고사령관이 시데하라에게 말한 것처럼 이 조항은 항구적 평화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계에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쟁포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원칙들의 선언 속에 매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확실하게 돋보이는 형태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맥아더 원수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째로 이 원칙에 따라 (일본이) 세계로부터 호의적으로 주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일본이 세계로부터 호의적인 눈으로 주시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高柳·大友·田中,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 I』)

그러나 허시와 케이디스에 의한 수정을 거친 연합국총사령부 안에서는 제1장이 대일본제국헌법에 비추어 ‘천황’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2장 전쟁의 포기(Renunciation of War)’는 제8조로 옮겨졌다(3월 2일의 일본 정부 안에서 천황 조항이 1조 증가했기 때문에 제9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휘트니는 앞서 말한 22일의 회담에서 “이 원칙을 헌법 초안의 제1장이 아닌 제2장에서 규정한 것은 천황 및 천황이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으로서 이 원칙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포기를 신헌법 초안 제1장에 두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라고 변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물론 신헌법을 국민이 지지하기 쉽도록 한다고 휘트니가 강조해 온 방침에서, 또한 천황을 전범으로 소추하지 않기 위해 전쟁포기 규정을 둔다는 맥아더의 기본원칙에서 보더라도 ‘천황’의 장에 대한 배려는 불가피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했던 것은 포츠담선언에서 요구한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로 만들어졌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와, 지장이 없는 한 피점령국의 기본 법제를 존중할 것을 규정한 헤이그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대한 고려였다. 이 규칙에 따라 일본국헌법도 헌법제정회의 등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⁹ 굳이 대일본제국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의 장별 편성도

9 민정국의 헌법 개정에 관한 공식 견해인 「일본의 정치적 재편성」에서는 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지 않은 이유를 헤이그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관련지어서 “순수하게 법률적인 견지에서는 현행 헌법(=대일본제국헌법)의 틀 내에는 전면 개정을 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와 같이 기구를 만드는 것은 헤이그의 규약을 파괴하는 군사점령자의 부적당한

대일본제국헌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월 13일에 일본 정부에 제시된 총사령부 안의 제8조는 (i)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전쟁은 폐지된다. (ii)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타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iii) 육·해·공군 기타 어떠한 전력도 장래 인정되지 않고 교전상태의 제 권리가 국가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3항 1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전쟁포기 조항을 포함한 연합국총사령부 안에 대해서 마쓰모토 조지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며 회답을 꺼렸기 때문에 19일에는 48시간 이내로 회답 기한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2일까지 회답의 연기를 요망했다. 휘트니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헌법 초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천황의 존엄과 일신을 보호하고 수정된 형태로 천황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의 국민들 중에 도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합국으로부터 대단한 호의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연합국의 일본 관리 기간을 현저히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각료가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맥아더와 휘트니 등이 신헌법 초안에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천황의 전범 불소추 및 천황제 유지 문제와 헌법9조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관습이라고 생각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헌법9조의 확정을 향하여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 ‘헌법 개정 초안’으로

마쓰모토 등은 이러한 정치적 효과보다는 스스로의 안을 고집했지만 총사령부 안에 대한 회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22일 각의에서 제1장과 제2장의 마쓰모토 조지 번역을, 26일의 각의에서 전체에 대한 외무성 가역을 배포하고 토의에 들어갔다.

그 후 마쓰모토 밑에서 이리에 도시로[入江俊郎]와 사토 다쓰오[佐藤達夫]¹⁰가 조문 정리에 들어가 ‘3월 2일 안’이라고 불리는 일본 정부의 문안을 작성했다(→50쪽). 그때 총사령부 안의 전문은 생략되고 마쓰모토가 기초한 헌법9조에는 총사령부 안의 (i)과 (ii)가 이어져 “전쟁을 국권의 발동으로 인정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를 타국과의 쟁의의 해결 도구로 하는 것을 영구히 폐지한다”고 하는 제1항이 되고, (iii)은 “육·해·공군 기타 전력의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2항이 되었다. 제1항에서는 전쟁의 폐지와 무력에 의한 위협·행사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한정되어 있어야 할 ‘타국과의 쟁의 해결의 도구로 하는 것’이 ‘전쟁’에도 관련이 되도록 읽을 수 있게 되어 함께 ‘영원히 폐지한다’로 되었다. 또 (iii)에서는 ‘국가에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율적 규정이었던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율적 규정으로 되었다.

10 역자 주 - 사토 다쓰오[佐藤達夫, 1904~1974].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내무성 관료로 있다가 법제국으로 옮겼다. 전후에 일본국헌법의 기초에 참가하고 1947년에는 법제국 장관을 지냈다. 저서로 『日本國憲法成立史』가 있다.

이렇게 하여 총사령부 안을 일본어로 성문화한 작업의 결과는 3월 4일 마쓰모토와 사토에 의해서 연합국총사령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때에도 '3월 2일 안'은 각의를 거치고 있지 않은 미정원고라고 해서 보고만으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합국총사령부는 성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마쓰모토는 도중에 퇴석했지만 홀로 남은 사토가 한숨도 자지 않은 채 30시간에 걸쳐 조항을 검토하여 3월 6일에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을 발표하였다(신문 게재는 7일).



그림 4 사토 다쓰오

이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은 2월 1일 『마이니치신문』의 특종으로 보도된 이래 정부의 헌법 개정 작업을 전혀 모르고 있던 국민에게는 전혀 다른 초안이었다. 이때 천황은 칙어 발표를 통해 “짐은 앞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일본국 정치의 최종 형태는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일본국민이 정의의 자각에 의해서 평화의 생활을 누리며 문화향상을 희구하고 자진해서 전쟁을 포기하여 친근함을 만방에 알리는 결의임을 바라며 헌법의 근본적 개정으로 국가 재건의 기초를 정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도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일본국 국민이 인류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헌법에서 안으로는 근본적 민주정치의 기초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에 솔선해서 전쟁의 절멸을 기해야 합니다. 즉 국가주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은 영구히 포기하고 타국과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결의를 내외에 선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맥아

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면적으로 승인한 새롭고도 계몽적인 헌법을 일본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천황 및 일본 정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것에 깊은 만족을 표한다. 이 헌법은 5개월 전에 내가 내각에 대해서 발한 최초의 지령 이래 일본 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 관계자들의 노고가 넘치는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모임 후에 기초된 것이다

이는 매우 솔직하게 신헌법이 일본 국민을 계몽할 의도를 가지며 게다가 일본 정부에 지시해 작성토록 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일본 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가 어떠한 연락 하에 어떠한 조사와 회합을 추진해 온 결과로 ‘헌법 개정 초안 강령’이 완성되었는지는 국민에게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주권과 전쟁포기라고 하는 대일본제국헌법과는 다른 기축으로 구성된 요강은 놀람과 함께 신시대의 호흡을 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요강을 발표한 지 거의 1개월 후인 4월 10일, 헌법 개정을 심의하게 된 전후 최초의 중의원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부인 참정권이 인정된 후 처음 치러진 국정선거이며 여성의원이 탄생한 점에서 특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최대의 정치적 쟁점에 관해서는 거의 유권자의 판단재료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투표일이 되기까지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이 안으로서는 발표되어 있었지만 정식 정부 안은 아니었으며 정부 안 이외의 헌법안을 국회 심의에 부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라가나 구어문 헌법

투표 일주일 후인 4월 17일 정부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때 국민은 또다시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 가타가나 문어체로 쓰여 있던 대일본제국헌법과 달리 히라가나 구어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천황이 스스로 제정하여 국민에게 하사한 흠정헌법과 전혀 다른 문체로 국민 스스로의 결의 표명이 ‘우리는’ 혹은 ‘일본 국민은’이라고 주어로 쓰여 있었다.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서 한문의 법률용어로 수놓아졌던 문어체를 바꾸는 것은 연합국총사령부도 일본 정부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일변하여 히라가나 구어체로 바뀐 것은 3월 6일 안도 마사쓰구[安藤正次, 미타카국어연구소장]를 회장으로 문학자인 야마모토 유조[山本有三], 국제법학자인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 판사인 미야케 쇼타로[三宅正太郎] 등 80명이 조직한 ‘국민의 국어운동 연맹’이 시데하라 수상에게 제출한 ‘법령의 표기방법에 대한 건의’ 등이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히라가나 구어화는 연합국총사령부 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의 냄새를 지우고 싶다는 마쓰모토 조지 등의 생각과도 합치했다. 이에 따라 이리에 도시로 법제국 장관 등이 구어화 작업¹¹을 했고, 4월 5일 각의에서 승인되었다.

¹¹ 이리에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이 초안의 현저한 특징은 형식상으로 우리 법제사상 획기적인 구어체 히라가나를 채용하고 용어를 매우 평이하게 한 점이다. 이상적으로는 장래 초등학교의 초등과에서 일상적으로 이 헌법에 친숙해질 것을 염원한다. 이 헌법이 다년간 요망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법 민주화의 추진력이 되고 이에 따라 국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갈 것이다. 장래 제정될 법령도 신헌법이 성립한 후에는 가능한 한 이 헌법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4월 18일.



그림 5 요시다 시게루

이렇게 하여 제정된 ‘제국헌법 개정 초안’에서 헌법9조는 “국가 주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타국과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기타의 전력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되어 제국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것이다.

제국의회에서의 자위 논의

1946년 6월 25일 제국의회로서는 마지막인 제90회 특별의회는 헌법 개정을 심의하는 헌법의회로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헌법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개회 전 두 개의 성명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즉 5월 29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¹² 수상은 추밀원에서 초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연합국총사령부가 헌법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통과시킬 것을 염려한 극동군사위원회와 미국 국무부가 맥아더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였다. 그리고 맥아더도 6월 21일에 “지금 의회에 제출된 정부 초안은 일본인에 의한 문서이며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초안 그대로 채택할지, 수

¹² 역자 주 -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 전후 점령기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립하기까지 5차, 총 7년간 수상을 지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평화공작을 도모하다가 육군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어 전후에 화평주의자로 매김했다. 1951년 전면강화론에서 후퇴하여 자유주의 국가들과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더욱이 일·미 안보조약의 체결로 군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미국의 냉전 전략에 밀려들게 되어 외교의 자주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다.

정을 가할지, 부결할지, 즉 그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일본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의원의 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의회의 토의 자유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선거로 선출된 국민 대표에 의한 헌법 심의야말로 포츠담선언 이래 중시되어 온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으로서의 정치체제 선택’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맥아더 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 의사 표명의 자유에는 헌법안을 부결할 자유도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자유로운 토의가 보장된 의회에서 헌법 개정의 초점으로 주목을 모은 전쟁포기 조항이 과연 자위권까지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찬부의 대립이 있을 것임은 쉽게 예상되었다. 그리고 요시다 수상은 6월 25일 중의원 의원 하라 후지로[原夫次郎]의 질문에 대해서 “전쟁포기에 관한 본안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자유권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9조 제2항에서 일체의 군비와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전쟁도 교전권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근년의 전쟁은 자위권의 이름으로 치러진 것이 많습니다. 만주사변도 그러하고 대동아전쟁도 그러합니다”라고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또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의원이 전쟁에는 침략전쟁이 있으며 자위전쟁은 정의의 전쟁인 이상 침략전쟁만을 포기한다고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시다 수상은 6월 28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전쟁포기에 관한 헌법 초안에는 국가 정당방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해하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년의 전쟁은 국가방위권의 이름으로 치러진 것이 많은 것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당방위권을 인정한 것이 때때로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교전권 포기에 관한 조항이 기하는 바는 국제평화단체의 수립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평화단체의 수립에 의해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전쟁을 방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에 의한 전쟁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당방위 국가의 방위권에 의한 전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전쟁을 유발하는 유해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만약 평화단체가, 국제단체가 수립된 경우에는 정당방위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시에 자위전쟁을 합헌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기까지 정부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상이라는 것의 재미와 무서움은 그것이 반드시 발상한 사람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보급되어 가는 점에 있는데, 요시다 수상의 이 발언도 반공 의식에 의한 말씨울 종류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요시다의 신념의 목소리로 전달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요시다의 진의가 답변처럼 정말로 자위전쟁을 부정하고 국제 평화단체의 수립에 있었는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약 1년 후에 요시다의 뜻을 받든 외교관 아사카이 고이치로[朝海浩一郎]가 대일이사회의 이사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맥마흔 불과 캐나다의 주일 캐나다 대표였던 E. H. 노먼에게 10만 명 정도의 군대와 소규모 공군 병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적어도 헌법 제정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에서 공적으로 수상으로서 답변한 이상 그것이 전 국민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요시다가 전혀 자각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또 이 시점에서 일본은 일체의 군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인 이상 그것을 전제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게다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유엔 등 국제평화단체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관 출신의 현실 정치가 요시다 시게루의 선택으로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아시다 수정의 진실

본회의에서의 이러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 검토는 중의원에서 아시다 히토시[芦田均]¹³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국헌법개정위원회소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비밀회의로 개최되었다. 8월 1일,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밑줄친 부분의 추가와 진

¹³ 역사 주 -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1887~1959]. 교토 출신의 외교관, 정치가, 법학자.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외무성에 들어가 러시아, 프랑스, 터키, 벨기에에 주재했으며 러시아혁명을 직접 경험하고 파리강화회의도 경험했다. 전쟁기에 군부에 비판적이었으며 전후에는 일본자유당 창립에 참가했다. 1946년에는 중의원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그림 6 아시다 히토시

하게 강조한 부분의 지구 변경을 한 수정안이 결정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현행 규정이 되었다. 이 소위원회에서의 수정 중에 헌법 9조의 해석상에 큰 문제가 된 것이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고 하는 아시다의 제안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것을 아시다 수정이라고 부른다.

이 수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아시다가 1951년 1월이 되어 “전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경우에는 국책 수행의 도구로서 전쟁 또는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침략전쟁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 나의 주장은 헌법 초안의 심의 이래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다. 신헌법은 어디까지나 평화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유지를 위해 자위력을 갖는 것은 천부의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毎日新聞』, 1월 14일)라고 하여 수정 제안이 전력 불보유를 침략전쟁에 한정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는 헌법제정 시부터 인정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맥아더는 이미 1950년 1월 1일에 연초 성명에서 일본국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표명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무력에 의하지 않는 자위권은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8월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실질적인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위전쟁을 위한 군비’라

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헌법9조의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의 이래 일관된 ‘원래의 입법취지’의 ‘고백’으로 제공한다는 데에 아시다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1953년 3월에 미국과의 ‘상호방위원조협정’ 등을 포함한 MSA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원조를 받는 대신에 일본의 방위력 점증이 정해지자 7월에는 종래의 보안청¹⁴이 방위청으로 격상되고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자위대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자위대법에 의해서 전후 처음으로 외적에 대한 방위의무가 규정되자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고 하는 아시다 수정에 따라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전력의 보유는 ‘원래부터’ 합헌이었다고 하는 논의가 더욱 정치적 의미를 강화해 갔다.

그러나 1995년 9월 제국헌법 개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속기록이, 1996년 1월에 『아시다 히토시 일기』가 공개되자 아시다 수정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진의’는 반드시 실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즉 일기에는 가장 중요시되었어야 할 수정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고, 속기록에는 “앞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쌍방 모두가 국제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싶었지만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했다. 다시 말하

¹⁴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맥아더의 요청으로 8월에 조직된 경찰 예비대는 정員 7만 5000명으로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휘를 받았다. 이에 앞서 1948년 아시다 히토시 내각은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운수성의 외부국으로서 순시선과 항공기를 갖춘 해상보안청을 설치했는데, 1952년에는 제3차 요시다 내각에서 해상경비대가 해상보안청 내에 신설되어 이것이 경비대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42년 7월에 보안청이 발족하자 경찰예비대를 개편한 보안대와 경비대가 그 조직 하에 들어갔다.

면 양쪽 모두 일본 국민의 평화적 희구의 염려로부터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1항의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를 첨가한 수정과 같은 취지에서 제2항에도 이것을 첨가해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문으로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서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로 대체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원회에서의 수정 설명이었다.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수정할 때에는 이것에 의해서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입법자 의사는 일절 표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역으로 아시다의 발언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은 원래 병립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제2항의 전력 불보유·교전권 부인에는 아무런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사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소위원회에서 그는 “헌법으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말한다면 보유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1946년 8월 24일의 본회의 위원장 보고에서도 아시다는 “전면적으로 군비를 철폐하고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은 아마 세계에서 이것이 효시이다”라고 말하며, “인류 진보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하나의 새로운 시기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국내외에 선언할 즈음에 일본 국민이 다른 열강에 앞서서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평화세계를 창조하는 열의가 있다는 것을 적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라고 그 획기성을 찬양했던 것 등을 감안한다면 당시 아시다는 제1항의 전쟁포기 취지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이중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2항의 수정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본회의 등에서 이 정도의 말이 진의도 아니고 본의도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개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원래 아시다는 2월 22일의 각의에서 전쟁포기 조항에서 대하여 대일본제국헌법과 상반된다는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문부상의 의견에 대해서 “전쟁폐기라든지 국제분쟁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서 중재와 조정의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상은 이미 부전조약(Kellog Pact)과 국제연맹 규약(Covenant)에서 우리 정부가 수락한 정책이며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적측은 일본이 이러한 조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또 구래의 흥정헌법이라고 해도 만주사변 이래 항상 유전되어 왔다. 흥정헌법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進藤榮一·下河邊元春, 『芦田均日記』 제1권)라고 비판했다. 아시다는 또한 전쟁포기 조항이 부전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과 국제연맹 규약의 계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일본제국헌법과는 전혀 다른 헌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단, 그것은 전쟁포기가 그대로 자위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아시다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시다는 중의원에서 수정을 끝마친 다음 귀족원의 논의에서 법학자 마키노 에이치와 다카야나기 겐조 등과 헌법9조 하에서 일본의 재군비 가능성을 논했다. 그것에 대하여 헌법 개정 문제 전임 국무상이었던 가나모리 도쿠지로

[金森德次郎]는 자위권은 있지만 제2항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정의 의미 부여를 바꾸어 부전조약 체결 시에 취해진 것과 같은 유보를 헌법9조에도 적용하는 해석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국헌법 공포일에 맞추어 재빨리 출판된 『신헌법 해석』(다이아몬드사)은 자위전쟁과 제재전쟁에서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내지만 수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설령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이 단독으로 군비를 갖추어 자위전쟁과 제재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조약을 시야에 넣으면서 국제연합에 가맹한 경우의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⁵

문민조항의 추가

이와 같이 아시다 수정의 ‘숨겨진 의도’가 한국전쟁 발발과 경찰예비대 창설 상황에서 표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고 하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1951년까지는 자위를 위한 전력도 보유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하다고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헌법 주해서로 가장 많이 읽히고 다수설을 구성하고 있었던 법학협회편 『주해 일본국헌법 상』(1948년)이 헌법 구조를 “이 정도로 철저하게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까지도 폐지하여 완전한 평화주의를 채

15 케이디스도 아시다 수정이 장래의 자위군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경찰력(police force)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했다”(田中英夫, 『일본헌법제정 각서』)고 한다.

용한 헌법은 따로 찾을 수 없다. 그 의미에서 본장의 규정은 세계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동위원회는 아시다 수정의 의도가 표명된 것과 달리 재군비의 길을 열기 위한 어떤 공작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처음부터 표명했다. 특히 중화민국 대표는 아시다 수정에 의해 제1항에서 특정된 국제 분쟁 해결 목적 이외에 군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를 표명하고 소련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대표도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극동위원회는 총사령부를 통하여 군인이 국무대신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빌리언(문민) 조항을 헌법에 추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아시다 수정을 전제로 심의하던 귀족원에서는 담당인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徳次郎] 대신이 자위를 위한 전력도 보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는 일본에서 문민 이외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 쓸데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의 제66조 제2항¹⁶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극동위원회의 중화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가 문민 조항에 강하게 집착한 것은 전쟁 전의 군부대신 현역무관제가 일본을 군국주의화로 이끈 제도적 보장이 된 전례를 경계하고, 그것이 일본의 정치적 전통으로서 부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은 민정국 법규과의 로웰(Milo E. Rowell)이 1945년 12월 단계에서 정리한 「일본

¹⁶ 당시 civilian에 해당하는 일본어가 없어 무신(武臣)에 대응하는 문민(文民)이라고 했다. 그것은 군대 경력이 없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견해로는 구 육·해군의 직업군인이라도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지 않으면 문민’이라고 간주하여 퇴직한 전직 자위관도 문민이라고 했다. 즉 현재 문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직의 자위관뿐이다.

의 헌법에 대한 준비적 연구와 제안」에서 “1920년대 초 일본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향해 가던 시기에 육·해군 대신은 현역의 대장·중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요건이 단기간 폐지된 적이 있다. 군국주의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개혁을 미련 없이 사장시켜 버리고 …… 단기간에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여 하원까지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高柳·大友·田中,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 Ⅰ』)라고 전쟁에 이른 과정을 분석하고 신헌법에서는 군부가 다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부 조직의 모습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도 연결된다.

문민조항은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역사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이해에 기초하여, 일본이 재군비화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가운데 군인이 다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이며 헌법9조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4. 헌법9조의 반전사상

9조의 발안자 문제

이와 같이 헌법9조의 전쟁포기·군비철폐 조항은 직접적으로는 맥아더 노트에 의해서 제시되었지만 누가 최초로 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료에 따르는 한 1946년 1월 24일에 맥아더를 방문한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이 헌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때 군비철폐라는 생각을 시사하고 그것을 맥아더와 휘트니가 헌법 조문에 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타당한 이해일 것이다.

이 외에도 전쟁포기의 발안자가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 체결을 추진해서 A급 전범용의자로 소추된 전 이탈리아 대사 시라토리 도시오[白鳥敏夫]¹⁷였다고 하는 증언이 변호사인 히로타 요지[廣田洋二]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시라토리는 스가모감옥에 수감된 1945년 11월 26일 요시다 시게루 외상을 만



그림 7 시라토리 도시오

나 천황제와 전쟁포기 문제 등 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영문서간에 적어서 12월 10일자로 요시다 앞으로 제출했다. 이 서간은 당연히 미군의 검열을 받았으며 요시다에게 배달된 것은 다음해인 1946년 1월 20일 전후였다. 이 서간은 시라토리의 간청에 따라 시데하라 기주로에게도 보내졌다고 한다. 시데하라가 맥아더와 만나 전쟁포기 사상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이 1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검열 중에 시라토리의 영문서간을 본 맥아더 혹은 같은 편지를 읽은 시데하라 어느 쪽인가가 힌트를 얻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히로타의 견해였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다와 시데하라에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읽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전쟁포기의 제언과 그 외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戰犯”白鳥敏夫と憲法第九條, 『日本週報』 제374호, 1956)고 한다.

¹⁷ 역자 주 - 시라토리 도시오[白鳥敏夫, 1887~1949]. 지바현[千葉縣] 출신으로 정치가이자 외교관. 1913년부터 외무성에서 근무했으며 만주사변 당시 국제연맹의 비판에 대항하는 외교정책의 대표적 역할을 했다. 1940년에 들어 대정익찬회 총무로 활동했으며 전쟁 종결 후 A급 전범으로 지정되어 종신 금고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시라토리 서간에는 헌법 개정 문제의 핵심으로 “일본의 우리는 절대 평화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8월 15일의 조치를 받들어 『만세태평』의 기초는 신헌법에서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 이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금 외전으로 치달지 않게 하겠다는 천황의 엄격한 확약, 어떠한 사태, 어떠한 정부 하에서도 어떠한 형식 인지를 불문하고 국민은 병역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국가 자원의 어떤 부분도 군사목적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조항이 신일본 근본 법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사상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라토리는 이 편지를 극동국제군사재판 법정에 제출할 것을 희망했지만 웹 재판장에 의해서 각하되었다고 한다.

시라토리 서간은 병역거부권과 전력 불보유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전쟁포기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단, 시라토리는 1928년에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정권이 파리에서 부전조약에 조인했을 때(→231쪽)의 수행원이어서 부전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다. 그 시라토리가 전력 불보유 등의 조항을 신헌법의 중핵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맥아더 노트가 제시되기 이전에도 전쟁 부정을 헌법에 명기한다는 발상이 일본인으로부터 제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패전 후의 전쟁포기 사상

물론 패전 후에 전쟁포기의 반전사상을 표명한 사람이 시라토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미 패전 이전인 8월 14일에 요코하마 정금(正金)은행 총무부장이

있던 기우치 노부타네[木内信胤, 패전 후 대장성 종전연락부장. 요시다 시게루와 이케다 하야토 등의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군비가 아니라 학문과 덕에 의한 신일본 건설을 위해 “자진해서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 없는 신일본에 종래의 헌법은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신일본에 부적당하다”(「時局收拾の一構想」)는 구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육군중장이었던 엔도 사부로[遠藤三郎]는 8월 18일,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 수상에게 군대 불필요론을 설명하고 “천황폐하의 명령에 의해 전 세계에 앞서서 형식상의 무장을 해제할 것”(遠藤三郎(1974), 『日中十五年戦争と私』)을 진언했다. 더욱이 전쟁 전부터 식민지 포기와 군비철폐를 주창한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후일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 폐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무장 없는 평화일본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그 공덕이 세계에 미치는 대비원(大悲願)을 세울 것을 요한다”(「靖國神社廢止の議」, 『東洋經濟新報』 10월 13일)며 일본부터 세계의 비무장을 위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민간의 헌법간담회가 1946년 2월쯤 기초하고 있었던 신 헌법안에서 변호사 운노 신키치[海野晋吉]가 제1장 총칙에 ‘제5조 일본국은 군비를 갖지 않는 문화국가로 한다’고 하는 군비철폐 조항을 제안했는데, 평화주의는 전문에서 강조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한다. 또 헌법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군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주장한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는 맥아더 노트에 앞서 1946년 2월에 집필한 논문에 “영구히 전혀 군비를 갖지 않는 국가-그것만이 진정한 평화 국가이다-로서 세워가는 것이라는 대방침을 확립할 각오가 필요”(『改造』,

1946년 3월호)하다며 ‘일본국은 평화주의를 국시로 한다’는 규정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15년 가까이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비철폐나 반전을 주창하는 것은 형법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배척되었고 그러한 사조에 지속적으로 침습된 사람들에게 전쟁포기나 군비철폐라고 하는 발상이 좀처럼 나오기 힘들었던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패전과 함께 언론이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며 군비와 헌법에 대한 논의를 일반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1945년 10월 13일에 치안유지법과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임시단속법 등이 폐지된 이후이다. 그 제약을 생각한다면 국민 측에서 군비철폐에 대한 헌법안 등이 자유롭게 나오게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다카노 이와사부로[高野岩三郎]와 스즈키 야스조[鈴木安藏] 등이 헌법제정국민회의를 제창한 것은 1946년 1월 25일이었다. 맥아더 초안이 나오기 1개월 전이었던 것이다.

시데하라 기주로의 반전사상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¹⁸가 전쟁포기에 대한 ‘발안자’라는 것은 시데하라의 주변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¹⁹하고 맥아더도 『맥아더

¹⁸ 역자 주 -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1872~1951]. 오사카 출신의 외교관, 정치가로 1896년 외무성에 들어가 조선, 영국 등의 영사관에서 근무했다. 1924년 외상으로 취임하였고 1931년 만주사변 처리에 실패하여 정계에서 물러났다. 전쟁시기에는 요직에 들지 않았다. 패전 후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 내각의 후계 수상으로서 1945년 10월 정계에 복귀하여 ‘천황인간선언’ 기초, 헌법제정 준비 등 전후 일본의 체제 성립을 지휘했다.

회상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시데하라 수상이 신헌법을 작성할 즈음에 이른바 ‘전쟁포기’ 조항을 포함하고 그 조항에서 동시에 일본은 군사기구를 일절 갖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구 군부가 언젠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을 미연에 없애는 것이 되고 또 일본에는 다시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킨다는 이중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 시데하라의 설명이었다. ……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든지 매우 흥분시킨다든지 하는 것에는 거의 불감증이 되어 있었지만 이때만은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림 8 시데하라 기주로

맥아더는 또 1951년 5월 미국의 상원 군사외교합동위원회에서의 증언, 1955년 1월 샌프란시스코의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했다.

상원 군사외교합동위원회의 증언에서 맥아더는 일본인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전쟁의 폐절(the abolition of war)’과 ‘전쟁의 비합법화

19 시데하라 기주로의 친구였던 추밀고문관 오다이라 고마츠치[大平駒麿]의 딸 하무로 사치코[羽室三千子]가 시데하라 담화를 써서 남긴 ‘하무로 메모’와 측근인 히라노 사부로[平野三郎], 「헌법의 진실과 사상-시데하라 수상과 헌법 제9조」, 『세계』 제220호, 1964년 4월호 등 다수, 시데하라평화재단 편(1955), 『시데하라 기주로』도 참조.

(outlawing war)’를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용어에서도 그가 1920년대의 전쟁 비합법화 운동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시데하라 기주로는 당초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1946년 1월 30일의 각의에서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그에 앞서 시데하라는 1946년 1월 1일의 천황조서를 영문으로 기초했는데 이것은 포츠담선언을 중시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관민이 함께 평화주의를 철저히 하고 교양이 풍부하게 문화를 구축하고 이로써 민생의 향상을 도모하고 신일본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평화주의를 들고 있다.²⁰ 케이디스는 여기서 일본의 평화국가 건설 의사를 파악하여 헌법9조의 기초로 참고하고 나아가 전쟁포기 조항을 발안한 사람이 천황과 시데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시데하라가 발안했는지 아닌지는 밀실에서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심의에 임했던 의원에게도 국민에게도 시데하라의 헌법9조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그의 공적인 발언과 논설 등이다.

시데하라가 전쟁포기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한 것은 연합국 총사령부 안을 수락한 2월 22일의 각의에서 전날에 이루어진 시데하라·맥아더 회담에 대한 보고에서였다. 거기서 시데하라가 말했다고 아

²⁰ 영문 초고는 ‘to construct a new Japan-pacific in every line of national activity’였는데, *Nippon Times*, 1946년 1월 1일의 게재문에는 ‘we will construct a new Japan through throughly being pacific’이라고 되어 있다.

시다 히토시가 기술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맥아더가 “제2장(초안)과 같이 국책 수행을 위해서 하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성명을 내어 일본이 도덕적 지도권(Moral Leadership)을 장악해야만 한다”(『芦田均日記』 제1권)고 말한 데 대해, 시데하라는 “지도권(Leadership)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누구도 추종자(follower)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맥아더는 이에 대해 “추종자가 없더라도 일본이 잃는 바는 없다.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 자가 나쁜 것이다”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쟁포기의 세계사적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맥아더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3월 20일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귀족회의 자문에서 시데하라는 전쟁포기가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스스로의 견해로 제시했다.

제9(의 전쟁포기)는 어느 헌법에도 유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여 다른 나라도 이것을 따라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포기는 정의에 근거한 올바른 길이어서 일본은 오늘 이 큰 깃발을 들고 국제사회의 들판을 단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발자취를 밟고 후방에서 따라오는 국가가 있든 없든 고려할 바가 아니다. 사실 원자폭탄의 발명은 세상의 주전문자에게 반성을 촉구한 것인데 금후는 다시 이것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한 파괴적 무기도 발명될지 모른다. 오늘날 유감스럽지만 세계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무력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후일 새로운 병기의 위력으로 단시간에 교전국의 대·소도시가 모조리 잿더미가 되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하루아침에 몰살되는 참상을 보기에 이르면 열국은 마침내 각성하여 전쟁포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때 나는 이미 묘지 안에 있겠지만 그 묘지 그늘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열국이 이 대도를 따라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싶다.(久江俊朗, 『憲法成立の經緯と憲法上の諸問題』)

이에 대해 추밀원 의장인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패전시의 수상]는 헌법9조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로 위대한 사고방식’이며 ‘강함은 죽음의 무리이며 유약함은 삶의 무리이다’라고 하는 노자의 사상과 통하며 군비철폐야말로 일본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그 후 시데하라는 헌법9조가 가지는 핵전쟁시대의 문명사적 의의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고 1951년에 간행된 자서전 『외교 50년(外交五十年)』에서 전쟁에 끌려들어간 분노와 비탄의 목소리를 전차 안에서 들었던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이 “헌법 중에 미래 영원히 그러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즉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전폐해서 민주주의에 철저히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의 서문을 기술했던 8일 후인 1951년 3월 시데하라는 78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이미 1950년 경찰예비대가 발족되고 1951년 1월에는 아시다 히토시에 의한 헌법9조 제2항의 수정은 자위의 전력보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허구’에 의해서 재군비가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그 아시다 수정의 진실이 반세기 가깝게 봉인되어 있는 동안 헌법9조는 재군비에 의해서 사문화되어 감과 동시에 실정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세의 정면에 서게 된 것이다.

취약함에 대한 자비로움을 더하면서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인류는 겨우 여기까지 온 것인가’라는 감상을 갖게 된 분과 ‘역시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새롭게 한 분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에게 지난 30여 년은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상과 운동의 사실에,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선인들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일이 많았던 집필의 나날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반전사상과 그 제도화가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증명했을 뿐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몇 톤이나 되는 무거운 철문을 새끼손가락 하나로 열어가려는 행위는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

이 움직이게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노력일 것입니다. 혹은 그것은 촛불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은 바람에 흔들려 금방이라도 꺼질 듯합니다. 그러나 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이 다시 살아나 천천히 빛을 발하듯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작업으로 반전사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강인한 의지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반전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강함은 반드시 그 위력을 과시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전사상은 다른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반전사상은 취약하고 무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잇고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전사상의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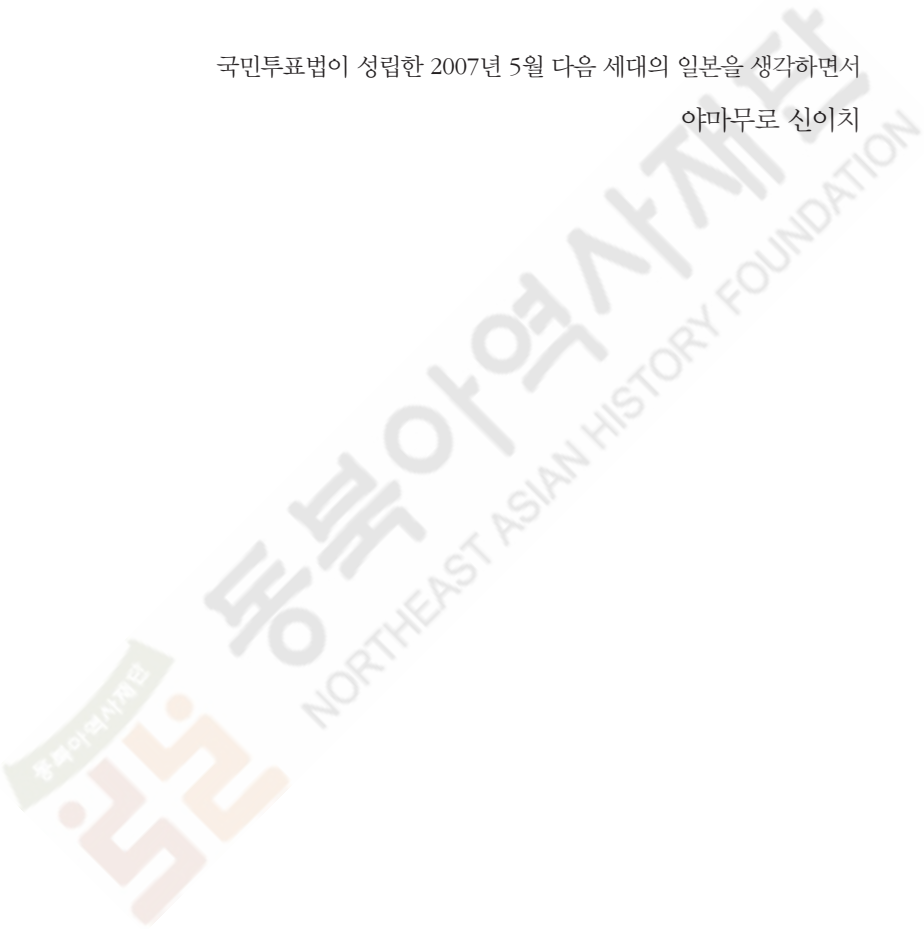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국헌법9조 이후에도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등이 반전을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었으며, 2003년에는 개인의 전쟁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1977년 NGO(비정부조직)의 활동으로 대인지뢰금지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등 이제는 정부만 조약을 탄생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NGO와 국제연합 등과 연계하여 비폭력으로 평화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이라는 행동계획도 진행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회의에서 정리된 ‘동북아시아의 액션 아젠다’에서는 헌법9조가 21세기의 동북아시아를 반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중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헌법9조로 흘러들고, 헌법9조를 하나의 원천으로 하는 듯한 새로운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밑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맥을 여기서 끊어버릴지 혹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져 가던 기력을 뒷받침하여 마지막까지 챙겨주신 아사히신문사 오카 에리[岡惠理]와 오히라도모코[大原智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투표법이 성립한 2007년 5월 다음 세대의 일본을 생각하면서
야마무로 신이치



참고문헌

■ 전반에 걸친 문헌

芦部信喜 外 編著, 『日本國憲法制定資料全集』, 信山社出版(『日本立法資料全集』의 일환으로 71권.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간행 중).

淺野一朗·杉原泰雄 監修(2003), 『憲法答弁集』, 信山社出版.

家永三朗 責任編集(1993~1994), 『日本平和論大系』 全20卷, 日本圖書センター.

石田雄(1989), 『日本の政治と言葉』 下, 東京大學出版會.

佐藤達夫 著·佐藤功 補訂(1962~1994), 『日本國憲法成立史』 全4卷, 有斐閣.

鈴木俊朗 外 編(1980~1984), 『内村鑑三全集』 全40卷, 岩波書店.

高柳賢三·大友一朗·田中英夫 編著(1972),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 全2卷, 有斐閣.

深瀬忠一(1987), 『戦争放棄と平和的生存權』, 岩波新書.

山内敏弘(1992), 『平和憲法の理論』, 日本評論社.

■ 제1장

福澤諭吉, 『文明論之概略』, 岩波新書.

大森實(1975), 『戦後秘史5 マッカーサーの憲法』, 講談社.

竹前榮治(2002), 『GHQの人びと』, 明石書店.

芦部信喜 著·高橋和之 補訂(2002), 『憲法』, 岩波書店.

樋口陽一 外 著(1994), 『注解法律學全集一憲法 1』, 青林書院.

■ 제2장

ルソー 著·宮治弘之 譯(1978), 「サン=ピエール師の永久平和論抜粹」·「永久

平和論批判』、『ルソー全集』第4卷, 白水社.
桑原武夫 編(1968), 『ルソー研究』(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岩波書店.
カント 著·宇都宮芳明 譯, 『永久平和のために』, 岩波文庫.
宇都宮芳明(2006), 『カントの啓蒙精神』, 岩波書店.
朝永三十郎(1922), 『カントの平和論』, 改造社.

■ 제3장

山崎正董 編(1938), 『横井小楠·遺稿編』, 明治書院.
横井小楠 著·花立三郎 全譯注, 『國是三論』, 講談社學術文庫.
早稲田大學大學史編集所 編(1978~1982), 『小野粹全集』全6冊, 早稲田大學出版部.
中村正直(1967), 『所跋文集』, 『明治文學全集 3明治啓蒙思想集』, 筑摩書房.
家永三郎 編, 『植木枝盛選集』, 岩波文庫.
家永三郎 外 編(1990~1991), 『植木枝盛集』全10卷, 岩波書店.
大久保利謙 編(1960~1981), 『西周全集』全4卷, 宗高書房.
西周「兵賦論」[植手通有 編(1972), 『日本の名著 34 西周·加藤弘之』, 中央公論社].
井田進也·松永昌三 外 編(1983~1986), 『中江兆民全集』全18卷, 岩波書店.
中江兆民 著·桑原武夫·島田虔次 譯·校注, 『三醉人經綸問答』, 岩波文庫.
中江兆民 著·井田校 注, 『一年有半·續一年有半』, 岩波文庫.
松永昌三 編, 『中江兆民評論集』, 岩波文庫.

■ 제4장

平和協會(2005), 『平和』(『近代日本「平和運動」資料集成』全7冊, 坂口滿宏 解題, 不二出版).
藤本清一郎 編(1950~1955), 『透谷全集』全3卷, 岩波書店.
田中正造全集編纂會 編(1977~1980), 『田中正三全集』全21卷, 岩波書店.

『平民新聞』[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2), 『週刊平民新聞』 I・II, 明治文獻資料刊行會].

幸徳秋水全集編集委員會 編(1995), 『幸徳秋水全集』全14卷(復刻版), 日本圖書センター.

■ 제5장

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1), 『新紀元』(複製版), 明治文獻資料刊行會.

東洋經濟新報社 編(1970~1972), 『石橋湛山全集』全15卷.

海野芳郎(1972), 『國際連盟と日本』, 原書房.

大沼保昭(1975), 『戰爭責任論序説』, 東京大學出版會.

伊香俊哉(2002), 『近代日本と戰爭違法化體制』, 吉川弘文館.

川上曉弘(2006), 『日本國憲法第9條成立の思想的淵源の研究』, 專修大學出版局.

■ 제6장

近衛文麿, 『戰後歐米見聞録』, 中央文庫.

アンリ・バルビュス 著・田邊貞之助 譯, 『砲火』 『クラルテ』 岩波文庫.

小牧近江(1922), 『アリン・バルビュスの芸術と思想』, 世界思潮研究會.

李修京(2003), 『近代韓國の知識人と國際平和運動』, 明石書店.

武者小路實篤(1988), 『ある青年の夢』(『武者小路實篤全集』全2卷), 小學館.

ガントレット恒(1949), 『七十七年の思ひ出』, 植村書店.

杉森長子(1996), 『アメリカの女性平和運動史』, ドメス出版.

市川房枝 監修・兒玉勝子 著(1981), 『婦人參政權運動小史』, ドメス出版.

栗屋憲太郎 外 編(1995), 『水野廣徳著作集』全8卷, 雄山閣出版.

内村鑑三 著・龜井俊介・道家弘一郎 譯(1984~1985), 『内村鑑三英文論說翻譯篇』, 岩波書店.

■ 제7장

古關彰一(1989), 『新憲法の誕生』, 中央公論社.

佐々木高雄(1997), 『戦争放棄條項の成立経緯』, 成文堂.

参議院事務局 篇(1952), 『分類帝國憲法改正審議録・戦争放棄編』, 新日本法規出版.

入江俊郎(1976), 『憲法成立の経緯と憲法上の諸問題』, 第一法規出版.

犬丸秀雄 編著(1989), 『日本國憲法制定の経緯』, 第一法規出版.

進藤榮一·下河邊元春 編著(1986~1992), 『芦田均日記』全7卷, 岩波書店.

遠藤三郎(1974), 『日中十五年戦争と私』, 日中書林.

宮澤俊義(1969), 『憲法と天皇』, UP選書, 東京大學出版會.

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 著·津島一夫 譯(1964), 『マッカーサー回想記』全2卷, 朝日新聞社.

幣原喜重郎(1951), 『外交五十年』, 讀賣新聞社.

幣原平和財團 編(1955), 『幣原喜重郎』, 幣原平和財團.

저자와 역자 소개

■ 야마무로 신이치

1951년 구마모토시[熊本市]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중의원법제국 참사,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수, 도호쿠대학 조교수 등을 역임. 현재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저서로는 『법제 관료의 시대-국가의 설계와 지의 역정(法制官僚の時代-國家の設計と知の歷程)』, 『근대 일본의 지와 정치-이노우에 고와시에서 대중연예까지(近代日本の知と政治-井上毅から大衆演藝まで)』(木鐸社),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기축·연쇄·투기(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 『유라시아의 강변에서-동시대로서의 아시아로(ユーラシアの岸邊から-同時代としてのアジアへ)』(岩波書店), 『증보판 키메라-만주국의 초상(増補版 キメラ-滿州國の肖像)』(中公新書),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에서 보는 일본과 세계(日露戦争の世紀-連鎖視点から見る日本と世界)』(岩波書店), *Machuria Under Japanese Dominion: Encounters with As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등이 있다.

■ 박동성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도쿄대학 문화인류학 박사. 현재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 저서로는 『혼혈에서 다문화로』(공저), 역서로는 『쌀의 인류학』, 『누에르족』, 논문으로는 「지역사회의 자기정체성과 역사의 관광자원화」, 「일본의 한 지역의 사회사와 향토사 운동」, 「해외한인 청소년과 민족정체성의 의미」, 「일본의 공중목욕탕: 한 지방도시의 사회사와 센토의 변천」 등이 있다.

찾아보기

ㄱ

가가와 도요히코 261, 262
가나모리 도쿠지로 309, 311
가시와기 기엔 195, 216
가쓰 가이슈 125
가와마타[川俣] 사건 185
가타야마 쉐 200
가토 가즈하루 171, 177
가토 히로유키 192
간트레트 쓰네코 263, 267
개헌 논의 26
고노에 후미마로 249
고마키 오우미 259
고바야시 타키지 260
고토 쇼지로 131
고토쿠 슈스이 164, 188, 189
교전권 56
교전법규 82
9조회 29, 30
구와다 구마조 179
국가분쟁 115
국가연합 104~106, 113
국가자위권 163
국민개병제 87
국민군 87
국민주권 106, 118
국민총동원령 87
국제공법 132
국제법 115, 118, 133, 136, 137, 211, 226, 242
국제부인회 263

국제분쟁 49, 55, 62, 223, 233, 305
국제십사위원회 209
국제연맹 206, 216, 220, 237, 242, 243, 249, 251, 254
국제연맹협회 254, 255
국제연합 60, 206, 241, 244, 291, 294
국제연합헌장 240, 242, 294
국제평화 307
국제헌장 54
군비철폐 47, 57, 59, 63, 101, 118
군비철폐론 178
군비축소 57
군주주권 104
그로티우스 79
극동국제군사재판 232, 239
극동군사위원회 302
극동위원회 282, 284~286, 311
기우치 노부타네 315
기타무라 도코쿠 171
기타미카도 지로 173

ㄴ

나카무라 마사나오 133
나카에 초민 156
나폴레옹전쟁 88, 93, 169, 206
노사카 산조 303
뉘른베르크재판 239

ㄷ

다나카 쇼조 183, 213
दारु이 도키치 179
다이쇼 데모크라시 247

다조에 데쓰지 214
 다카노 이와사부로 66
 대동아전쟁 303
 대일본제국헌법 274
 도미즈 히론도 189
 도쿠토미 소호 174

무전주의 186
 무차별전쟁론 59, 80
 미야 슈지 4
 미야자와 도시요시 285, 315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55
 미즈노 히로노리 270

ㄹ

러일전쟁 93, 177, 188, 197, 198, 205
 레빈슨 226
 루소 85, 102, 103, 112
 리튼보고서 237
 리튼조사단 237

ㄴ

마루야마 간지 182
 마사히케 메구무 269
 마쓰모토 조지 25, 280, 286, 288, 295,
 297, 298, 301
 마키노 노부아키 248
 만국공법 133, 136
 만국공의정부 139, 144~147
 만국부인참정권협회 263, 264
 만국평화연맹 171
 만국평화회 138
 만국평화회의 207, 213
 만주사변 236, 239, 303
 맥아더 25, 281
 맥아더 노트 286, 289, 291~293, 312,
 315
 무상정법론 148
 무샤노코지 사네야쓰 261
 무장권 150, 151

ㄷ

반전사상 261
 반전조약 231
 베르사유조약 218, 221
 베스트팔렌 조약 79
 부인 참정권 263, 264
 부인교풍회 264, 265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 263, 265
 부인평화운동 263
 부전조약 225, 226, 229~233, 235~
 237, 240, 243, 254, 273, 291, 309
 블로흐 208

ㄸ

사카이 도시히코 189
 사카타니 시로시 153
 사토 다쓰오 298
 사회민주당 180, 181
 사회민주협회 190
 사회주의협회 181, 214
 삼성조정위원회 283, 28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7
 생 피에르 99~101, 107, 108
 선전포고 237
 세계공화국 113
 세계국가 113

세계대합중정부론 129
 세계무상헌법 145, 147
 세계법운동 254
 세계시민 115
 세계시민법 115, 116, 117, 127, 155, 161
 세계연방 61
 세계연방론 131
 세계정부 138
 세계정부론 131
 쇼트웰 226
 스미야 에쓰지 260
 스키 간타로 320
 스키 야스조 149
 스티븐 독트린 236
 시게루 수상 306
 시데하라 기주로 25, 280, 299, 312, 313, 316, 318
 시라스 지로 25
 시라토리 도시오 313
 시오즈 세이사쿠 272
 쓰다 마미치 152

○

아베 요시시게 309
 아베 이소오 165, 192
 아시다 수정 306, 307, 310
 아시다 히토시 305
 아시오광독사건 184
 안전보장이사회 241
 앙리 바르뷔스 256, 259, 260
 야나이하라 다다오 269
 야마가타 아리토모 152
 야마지 아이잔 192

야시마 가지로 265
 에바라 소로쿠 177
 에비나 단조 198
 엔도 사부로 315
 연합국총사령부 281, 299, 300
 열국의회동맹 208
 영구평화 107, 108, 111, 113, 117, 160
 영구평화론 117, 118, 156, 206
 영구평화안 105
 오노 아즈사 129
 오키마 시게노부 177, 247
 요시다 시게루 25, 288, 295, 302
 우에무라 마사히사 176
 우에키 에모리 138
 우에하라 에쓰지로 252
 우치다 고사이 231, 314
 우치무라 간조 164, 165, 184, 189, 195, 196, 212, 274
 운노 신키치 315
 유엔개발계획 69
 이노우에 가오루 247
 이노우에 히사시 29
 이다사건 92
 이리에 도시로 298, 301
 이상단 184
 이시바시 단잔 315
 이시이 기쿠지로 251
 이시카와 산시로 200
 이와쿠라 도모미 91
 이타가키 다이스케 131, 138
 인민주권 104
 인민주권론 85, 104
 일본국제연맹협회 250
 일본부인참정권협회 265

일본부인평화협회 266
일본평화회 175, 177, 212
입헌정치 144

ㄸ

자위권 52, 53, 303
자위대법 55
자위전쟁 49, 51, 232, 235, 243, 306
자유민권운동 134, 148
저항권 150
전력 불보유 27, 58, 110
전시국제법 79, 81
전쟁 전면 포기설 51
전쟁중재제도 206
전쟁폐절 63
전쟁폐지론 128, 197
전쟁포기 27, 47, 63, 76, 94, 95, 97,
101, 110, 118
전쟁합위무차별론 80, 109, 169, 206,
233
정진론 78
제남사건 234
제인 애덤스 262
제재전쟁 49, 51
존 듀이 228
중립법규 81
중재위원회 224
중재재판 217
중재재판소 177, 209
중재재판제도 212
중재제도 211, 223
집단안전보장 75, 76
집단안전보장정책 228
집단안전보장체제 206, 242, 243

집단적 자위권 241
징병제 87~89, 111

ㄹ

천황 불소추 284
청일전쟁 93, 176, 178, 188, 196

ㅋ

칸트 107, 108, 111, 113~116, 140,
155, 229
케이디스 229, 291, 293
켈로그·브리앙조약 225, 239
클라르테운동 256, 258~261

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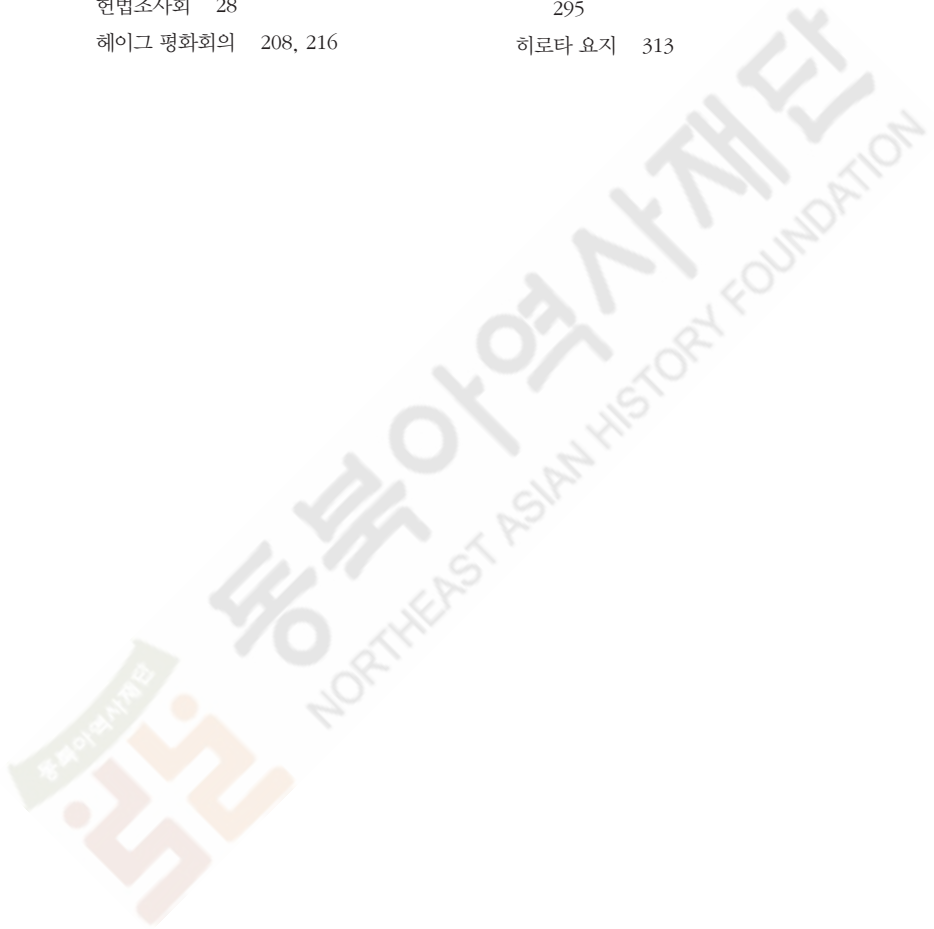
톨스토이 173

ㅍ

파리강화회의 217, 218
파리조약 225
파리회의 214
파비앙 협회 271
평민사 187, 214
평화국가연합 114
평화연합 113
평화주의 212
평화주의헌법 46
평화헌법 46
평화협회 169, 212
평화회의 211
포츠담선언 280, 281, 296, 299, 303

ㅎ

- 하토야마 이치로 27
- 헌법 옹호 국민연합 27
- 헌법문제조사위원회 280, 286
- 헌법조사위원회 315
- 헌법조사회 28
- 헤이그 평화회의 208, 216
- 헤이그조약 281
- 혁명권 151
- 호즈미 시게토 253
- 호향병 149
- 후쿠자와 유키치 46, 178
- 휘트니 24, 25, 285, 286, 288, 292, 295
- 히로타 요지 313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5

헌법9조의 사상수맥

초판 1쇄 인쇄 2010년 11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1월 29일

지 음 아마무로 신이치

옮 김 박동성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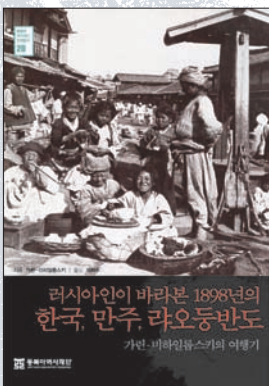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199-0 93910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0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라오둥반도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584쪽 | 가린-미하일롭스키 지음 | 이희수 옮김



21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
540쪽 |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포지오 지음 | 이재훈 옮김

憲法9條の思想水脈



일본국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헌법 제2장에서 유래한다. 제2장은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제목은 「전쟁의 포기」이다. 전쟁, 위협,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뿐 아니라 전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내용이다.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한 이후 일본은 과거 전쟁의 비참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새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인류평화를 구현할 이상적인 헌법으로 여겨졌다. 반포된 이후 헌법9조는 여러 가지 방식

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전쟁 포기와 자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자위대의 창설이나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으로 위헌 논의가 당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며 최악의 환경파괴 행위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반목했던 인간집단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몇 백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인간성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전쟁의 명분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전쟁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전쟁이 무가치하다는 반성이 없다면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염치가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지속적으로 전쟁을 외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사꾼이나 정치꾼일 것이다.

9 788961 871990
ISBN 978-89-6187-199-0
값 14,000원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5

헌법9조의 사상수맥

동북아역사재단



헌법9조의 사상수맥

지음 아마무로 신이치
옮김 박동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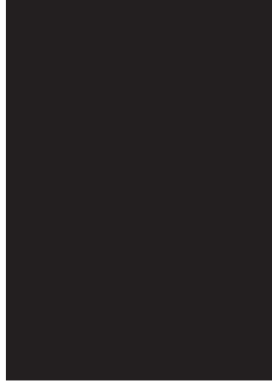
지음 **아마무로 신이치** 山室信一

1951년 구마모토시[熊本市]에서 출생하였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중의원법제국 참사,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수, 도호쿠대학[東北大學] 조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토대학[京都大學]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논저로는 『법제 관료의 시대-국가의 설계와 지의 역정(法制官僚の時代-國家の設計と知の歷程)』(1984, 木鐸社),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기축·연쇄·투기(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2001, 岩波書店, 아시아 태평양상 특별상 수상), 『유라시아의 강변에서-동시대로서의 아시아로(ユーラシアの岸辺から-同時代としてのアジアへ)』(岩波書店), 『중보관 키메라-만주국의 초상(増補版キメラ-滿州國の肖像)』(2004, 中公新書),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에서 보는 일본과 세계(日露戦争の世紀-連鎖視点から見る日本と世界)』(岩波書店), 『Machuria Under Japanese Dominion : Encounters with As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등이 있다.

옮김 **박동성** 朴東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東京大學]에서 문화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논저로는 『혼혈에서 다문화로』(공저, 2008, 일지사), 『쌀의 인류학』(역서, 2001), 『누에르족』(역서, 2008), 『지역사회의 자기정체성과 역사의 관광자원화』(2009, 한국문화인류학회), 『일본의 한 지역의 사회사와 향토사 운동』(2007,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일본의 공중목욕탕 : 한 지방도시의 사회사와 센터의 변천』(2003, 지역사학회) 등이 있다.

표지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 이불 부근에서 독가스에 노출된 영국병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